

연구보고서 2023-38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이주연

이정은·이상정·임성은·조정우·김희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정우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차장
	김희진	김희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구보고서 2023-38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앤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95-9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38>

발|간|사

유엔(UN)의 대안적 양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정에서 분리되었거나 분리될 위험이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국제적인 기준을 보여준다. 그 중 가능한 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양육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탈시설 전략을 통해서 가정보호 제도를 확충하는 것은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부는 올해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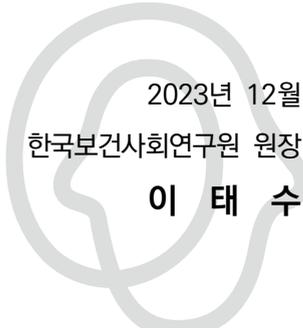
이와 같은 현 시점은 6·25 전쟁 이후 대규모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전쟁 고아를 보호해 온 경험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대규모 시설에 보호된 아동이 다수인 현실에서 한국의 아동보호체계가 나아갈 방향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기회임을 시사한다. 시설보호 대신 가정보호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책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한 국외 선형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효과적이고도 아동중심적인 가정보호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정책요소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가정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양육조치로 보호되는 데에 대한 저해요인을 가정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의 실무자와 공무원, 위탁부모들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고, 위탁가정에 보호된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위탁가정 진입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어떠한 서비스를 경험해 왔는지를 확인하여 가정보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정보호가 보호대상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보호 제도의 개념과 범위를 구명하고, 아동보호의 영구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확고한 정책 지향점을 설정하는 등 정책의 방향성의 설정과 가정위탁의 질 제고와 규모 확충, 가정위탁 제공 기반과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적 방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아동보호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에 실질적인 대화와 행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이주연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이상정 연구위원, 이정은 부연구위원, 임성은 부연구위원과 함께 원외의 경남사회복지관 조정우 박사과 김희진 법률사무소 김희진 박사 등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 대하여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원내 박세경 선임연구위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이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실무자, 공무원, 그리고 특히 자신의 귀한 경험을 공유해 준 위탁부모와 자립준비청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5
제1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개념	17
제2절 선행연구 고찰	25
제3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제도 및 현황	39
제1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제도	41
제2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현황	63
제3절 시사점	82
제4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경험과 인식	87
제1절 아동보호체계 실무자 및 위탁부모의 인식	90
제2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경험	141
제3절 가정보호 대안적 사례 경험	184

제5장 국외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	197
제1절 일본사례	199
제2절 미국사례	250
제3절 불가리아·리투아니아 사례	269
제6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297
제1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쟁점	299
제2절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301
참고문헌	321

표 목차



〈표 2-1〉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의 가정(형)보호의 범위	23
〈표 2-2〉 가정보호의 스펙트럼과 구성요소	24
〈표 3-1〉 정부의 가정위탁 활성화 6대 중점과제	44
〈표 3-2〉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중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분야	45
〈표 3-3〉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및 자격	52
〈표 3-4〉 2022년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예산지원 단가	60
〈표 3-5〉 기초자치단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충남, 2022년 기준)	61
〈표 3-6〉 연도별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세부 보호유형별 보호비율	68
〈표 3-7〉 연도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추이	72
〈표 3-8〉 2021년 기준 신규 가정위탁 사유	73
〈표 3-9〉 2021년 기준 위탁아동의 장애 및 학대 여부	74
〈표 3-10〉 2021년 기준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75
〈표 3-11〉 가정보호 세부유형별 보호대상아동의 규모 및 비율의 추이	76
〈표 3-1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78
〈표 3-13〉 2021년 기준 위탁부모 연령	78
〈표 3-14〉 위탁유형별 위탁부모의 소득	79
〈표 3-15〉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에 따른 평균 위탁기간: 보호 중 아동	80
〈표 3-16〉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에 따른 평균 위탁기간: 보호종결 아동	80
〈표 3-17〉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종결사유	81
〈표 3-18〉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종결 후 배치 현황	82
〈표 4-1〉 실무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92
〈표 4-2〉 실무자 면접조사 항목	93
〈표 4-3〉 실무자 면접조사 주요 결과	95
〈표 4-4〉 주요 질문 내용	143
〈표 4-5〉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146
〈표 4-6〉 A1의 위탁경로	147
〈표 4-7〉 A2의 위탁경로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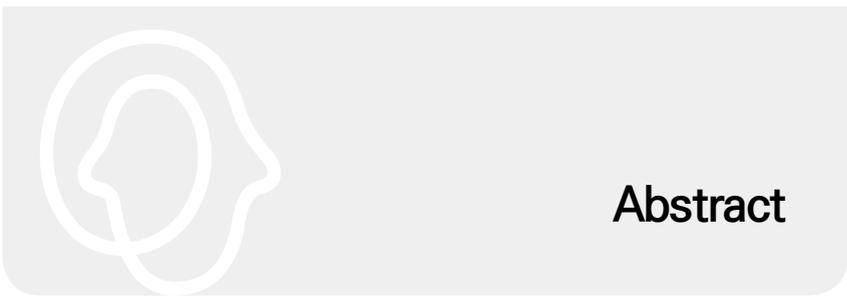
〈표 4-8〉 A3의 위탁경로	149
〈표 4-9〉 A4의 위탁경로	150
〈표 4-10〉 A5의 위탁경로	151
〈표 4-11〉 A6 위탁경로	152
〈표 4-12〉 A7의 위탁경로	154
〈표 4-13〉 A8의 위탁경로	155
〈표 4-14〉 A9의 위탁경로	156
〈표 4-15〉 A10의 위탁경로	157
〈표 4-16〉 A11의 위탁경로	158
〈표 4-17〉 연구 대상자들의 가정위탁 사유	159
〈표 4-18〉 연구 대상자들의 위탁가정 변경	163
〈표 4-19〉 위탁기간 동안 경험한 위기와 대응	173
〈표 4-20〉 국내 사례 인터뷰 참여자 개요	185
〈표 4-21〉 그룹홈 A 규칙	188
〈표 5-1〉 요보호 체계 및 보호아동의 현황과 체계별 요보호 아동 수 변화의 추이	204
〈표 5-2〉 시설별 입소아동의 다양화 현황	206
〈표 5-3〉 지역에 따른 가정보호율의 격차	207
〈표 5-4〉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및 제도의 변천	215
〈표 5-5〉 가정위탁 연수 커리큘럼	217
〈표 5-6〉 가정위탁세대에 지급되는 지원내역	219
〈표 5-7〉 ‘가시화(見える化)’ 항목	228
〈표 5-8〉 후쿠오카시의 가정위탁 활성화 사업 현황	229
〈표 5-9〉 후쿠오카시의 가정위탁 활성화 사업 현황	230
〈표 5-10〉 소규모 그룹케어 현황(2021년10월1일 기점)	235
〈표 5-11〉 패밀리홈 설치 경위와 운영상의 과제	246
〈표 5-12〉 2021년 아동보호조치 현황	258
〈표 5-13〉 EU 기금의 사용 현황 (2014~2020년)	277



〈표 5-14〉 행동계획에 명시된 '5개 프로젝트' 및 기타 주요 활동	280
〈표 5-15〉 리투아니아의 원가정 상실 아동을 위한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전환 계획	289
〈표 6-1〉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활성화의 쟁점	300
〈표 6-2〉 본 연구의 가정보호 개념정의	302
〈표 6-3〉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영구성 계획의 절차에 대한 개념도	305

그림 목차

[그림 3-1]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원칙	47
[그림 3-2] 일반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절차	56
[그림 3-3] 일시가정위탁 책정 절차	57
[그림 3-4] 전체 아동 수와 보호대상아동 발생 규모 연도별 추이	64
[그림 3-5] 전체 아동 수 대비 보호대상아동 발생 비율 연도별 추이	65
[그림 3-6] 연도별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배치규모 추이: 가정외 보호 세부유형별 ...	66
[그림 3-7]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세부 보호유형별 보호규모 추이	67
[그림 3-8] 아동 십만명 당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수	68
[그림 3-9] 전세계 아동 십만명 당 시설보호 아동 수 비교	69
[그림 3-10] 전체 보호대상아동 대비 발생원인별 아동 비율 연도별 추이	71
[그림 3-11]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별 보호아동 수	77
[그림 5-1] 일본 가정적 보호의 추진 방향	211
[그림 5-2] 위탁가정 양육포괄지원 사업의 전체상	226
[그림 5-3] 시설의 소규모화 가정의 예	237
[그림 5-4] 아동양호시설 후타바카쿠엔의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 현황	242
[그림 5-5] 아동보호 단계	252
[그림 5-6] 가정외 보호조치 절차	253
[그림 5-7] 위탁보호 종료 이유	254
[그림 5-8] 미국의 위탁보호 아동 수	257
[그림 5-9] 위탁가정 경제적 지원(뉴욕주 사례)	259
[그림 5-10] 국가별 아동의 시설보호 비율	271
[그림 5-11] 2013년 OD 캠페인 국가의 탈시설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 동향	275



Abstract

Strategies for Expanding Family-Based Care for Children in Need : A focus on foster care policy

Project Head: Lee, Juyeon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deriving measures to expand family-based care for children in need to ensure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operationally defined the concept of family-based out-of-home care and reviewed related prior studies. Secondly, it examined the system of family-based car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oster care placements and drew implications.

Thirdly, the perceptions of child protection system practitioners and foster parents on family-based care were explored, alongside the experiences of young adults who had been in foster care during their childhood. Cases of other countries relevant to increasing the capacity of family-based care for children in out-of-home care, including the enhancement of foster care and downsizing of residential care in Japan, the promotion of kinship foster car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crease of family-based care in Bulgaria and Lithuania, were analyzed to draw lessons applicable to the domestic context. Lastly, the research sought alternatives against barriers inhibiting the increase of family-based care

Co-Researchers: Lee, Jungeun, Lee, Sang Jung, Lim, Sung Eun, Cho, Jeong-Woo, Kim, hee-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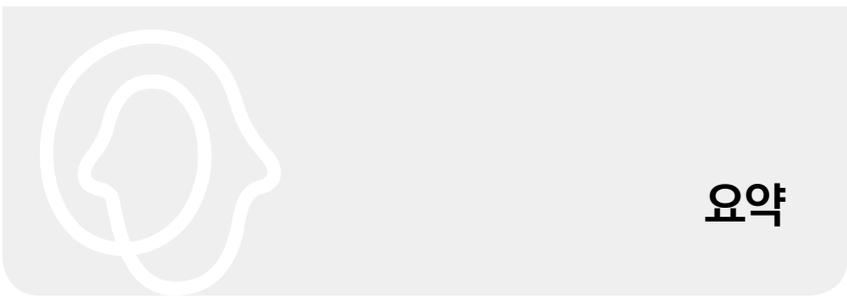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capacity and derived measures for its enhancement.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lear concept and scope for family-based out-of-home care to safeguard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n need of alternative care. It was identified that adequate support aligned with the priorities of each type of family-based care, such as living with original family, adoption, or foster care, is crucial. Moreover, expanding the capacity of foster families and enhancing professional support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were deemed essential.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enhancing case management services and strengthening infrastructures such as manpower and budget, to ensure that family-based care becomes the preferred option for children in out-of-home care.

Furthermore,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declare concrete deinstitutionalization plans, including the specifics of ceasing new out-of-home placements in residential care, to demonstrate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transitioning towards family-based care. This transition aims to provide children in need of alternative care with family-based care options where they can thrive, ensuring their best interests.

Key words : family-based care, foster care, deinstitutionalization, children in out-of-home care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설보호는 아동의 애착형성과 전반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아동이 어릴수록, 시설보호가 장기화될수록 부정적 결과는 심화된다고 알려져있다. 전쟁고아에 대한 시설보호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가정 외 아동에 대한 보호는 1981년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시설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으며, 국제사회는 한국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기반양육을 촉진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여전히 일시보호를 포함한 시설로 배치되는 아동이 가정보호되는 아동보다 더 많으며, 아동 십만명 당 시설보호아동의 규모는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가정위탁의 활성화가 시급히 가속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을 시설보호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가정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개념을 검토하여 가정보호의 정책적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제도 현황과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가정보호 활성화 저해요인 등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쟁점에 대응 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선협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정보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원가정 보호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있어서 가정보

4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호의 개념은 ‘가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가정보호보다는 가정형 보호라는 용어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가정형 보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의 탈시설에 대한 시각과 견해에 차이가 발생해왔으므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이유로 위탁부모 발굴의 어려움, 배치 소요시간이나 위탁부모의 선호도 등 아동의 욕구 중심의 가정위탁 책정이 어려운 문제,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위탁가정의 한계, 인식과 홍보의 문제, 인력이나 예산 등 가정보호 기반의 부족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친인척위탁부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탁부모의 풀을 확충하고, 전문위탁가정의 자격기준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지원하며, 치료적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성 및 서비스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양육보조금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위탁가정 및 아동 대상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제고하며, 가정위탁 제공 기반의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정보호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하고, 아동보호의 영구성을 확보하며, 친족돌봄 등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월가정 및 친부모 대상 개입을 확충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위탁아동은 위탁가정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와 위기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 및 아동 대상 사례관리서비스의 강화와 질제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 보호대상아동, 가정기반보호, 가정위탁, 탈시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는 아동의 애착유형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체적·인지적·사회정서적 발달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kermans-Kranenburg et al., 2011; Nelson, Fox & Zeanah, 2014; van Ijzendoorn, Bakermans-Kranenburg, Coughlan, & Reijman, 2020; Harlow, 2022).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시설보호 서비스의 질과 관계없이 나타나며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만 2세 이하)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Bakermans-Kranenburg et al., 2011; van Ijzendoorn et al., 2020). 시설보호가 장기화될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적 결과와 후유증은 증가하며, 시설보호 아동을 가정형 보호로 전환할 경우 아동의 성장 및 인지 등의 발달결과는 호전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van Ijzendoorn et al., 2020).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과 유엔 결의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정보호, 입양 혹은 가정위탁 등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해왔으며, 한국에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과 가정보호의 확충을 권고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웰빙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환경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유엔아동권리위원회, 1989),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시설보호

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가정기반의 아동보호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0).

2009년에는 제64차 유엔총회의 ‘아동 대안양육 지침에 대한 결의안’이 발표되어, 아동에게 있어 대안적 양육 필요 시 가정기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시설보호는 탈시설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강조되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제23조). 또한 유엔총회에서 “시설보호는 가정에 가장 가까운 소규모로 운영하여 아동의 욕구와 권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제123조), 양육시설은 회원국들이 가정형 양육체계를 구축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하였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제154조 c항).

이렇듯 최근의 국제적 변화 요구에 따라 정부는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20년 기준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66.2%가 여전히 시설보호 조치되고 있는 등(시설보호아동의 41.5%는 대규모 양육시설 보호)(보건복지부, 2020) 탈시설 전략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2019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여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조치(입양 및 가정위탁)를 하도록 하였으며(관계부처합동, 2019), 2020년에는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도입하였으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그에 따른 변화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 후,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위탁을 활성화할 것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연구’와 2023년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를 수행 중으로(관계부처합

동, 2023), 보호아동의 탈시설 방안과 로드맵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문가정위탁지원제도 마련, 양육보조금 증액, 예비위탁부모 발굴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 보호율의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며, 가정위탁보호의 대부분(2020년 기준 90.3%)은 조부모에 의한 위탁과 친인척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가정위탁이 미미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보호대상아동 중 입양이 되는 비율은 전체 가정 외 보호의 1.7%(2020년) 수준으로 최근 감소추세에 있어(보건복지부, 2020),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보호의 주된 유형은 가정위탁이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정보호되고 있는 보호아동의 76.7%(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를 차지하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시설보호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전문적 사례관리 등의 보호서비스 및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 7,978세대의 위탁가정에 9,894명의 위탁아동이 보호되고 있으나 이들의 상담, 교육, 치료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18개소(총 213명의 종사자)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상담원은 총 125명으로 상담원 1인당 76명의 아동과 62세대의 위탁가정을 담당하고 있어(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위탁아동 및 가정의 욕구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사례관리나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 - 자립지원프로그램, 직업교육, 멘토링, 심리상담 및 치료, 자립전담요원의 사례관리 등 - 는 주로 시설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위탁가정의 아동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이상정, 2020).

국의 선행연구 결과 드러난 가정위탁의 긍정적 효과(van Ijzendoorn et al., 2020)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가정위탁이 아동보호에 가장 긍정적

이라는 보고(김선숙, 박호준, 2020; Kang, Chung, Chun, Nho, & Woo, 2014; Lee et al., 2017)와 함께 그룹홈이 가정위탁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장혜진, 최은희, 윤혜미, 2014)되는 등, 가정위탁의 성과에 대하여 상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외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시설보호의 비중을 줄이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견인해왔다. 미국의 경우 1900년대 초반 가정기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외보호아동의 시설보호 비율을 62.4%(1910년)에서 37.6%(1960년)까지 감소시킴과 동시에 동 기간 가정위탁아동의 비율은 20.8%→79.2%로 제고하였으며, 가정형 보호 조치를 명시한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제정 이후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Barr, 2019). 유럽의 경우 주로 구소련 지역의 EU회원국²⁾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와 EU, 각 회원국의 협력 하에 대규모 시설보호 중심 아동보호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기반 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제로 전환을 시도해왔으며, 2017년까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에서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 비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UNICEF, n.d.a). 아동보호 관련 법제도의 정비, 예산의 확보 등으로 가정위탁을 활성화한 결과, 세르비아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의 수를 4분의 1수준으로 축소, 가정위탁은 5배 확충하였으며, 불가리아도 위탁가정의 수를 10배 이상 확충한 것

2)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루지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터키 및 우크라이나 등 11개 EU회원국이 해당됨.

이다(UNICEF, n.d.a).

반면 일본은 2016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기반의 아동보호를 최우선시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높은 수준의 시설보호비율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김형태 외, 2017). 다만 가정기반의 아동보호 대신 대규모 아동양호시설을 소규모 그룹홈, 소규모 그룹케어, 패밀리홈 등으로 소규모화 및 전문화하고 있으며, 아동을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 혹은 가정으로 전원 및 복귀하는 지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김형태 외, 2017).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에 상응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아동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고 특히 가정보호의 대표적 유형인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개념과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가정보호의 경험과 쟁점을 살펴보며, 아동보호체계 실무자, 위탁부모의 인식과 경험,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경험,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위탁 경험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탈시설과 가정보호 활성화를 수행하였던 선험국(일본, 미국, 불가리아 및 리투아니아)의 경험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간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를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시설보호의 단계적 축소 전략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제도를 검토하고, 보호대상아동과 가정보호 배치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아동보호체계 실무자 및 위탁부모의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립준비청년의 아동기 가정위탁 경험을 탐색하고, 가정보호 대안적 사례 경험을 검토하여 가정보호 활성화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와 관련된 국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가정보호 활성화 및 시설소규모화 사례, 미국의 친인척 가정위탁 활성화 사례, 불가리아 및 리투아니아의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를 검토하고 각 절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가정보호 활성화의 저해요인 등 쟁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심층 면접조사, 사례연구방법,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현황 자료, 아동의 시설보호 및 가정보호 관련 법제도 및 정책자료, 가정보호 관련 선행연구를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자립준비청년 대상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기에 가정 위탁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11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가정보호 경험 및 인식 등을 파악하였으며,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실무자 및 위탁부모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입양기관,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아동보호 체계 내의 가정위탁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10인을 대상으로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저해요인 및 촉진요인 등 쟁점을 파악하고, 가정보호 활성화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였다. 또한 가정보호 대안적 사례의 운영경험이 있는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실무자 2인을 대상으로 대안적 사례의 성공 및 저해요인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셋째, 문헌연구를 통해 국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외의 가정보호 활성화 정책³⁾ 중 일본의 가정보호 활성화 및 시설소규모화 사례, 미국의 친인척 가정위탁 활성화 사례, 불가리아 및 리투아니아의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별 시사점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계 및 실천현장의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아동의 탈시설 및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3) 국외사례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한국의 아동보호는 오랜 기간 동안 시설보호, 비밀입양주의와 친족에 의한 위탁가정 운영이 주를 이루는 특성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은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비율이 낮고, 위탁가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서 선진국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선정하였음. 최근에 이르러 획기적으로 가정위탁의 비중을 확충해 온 구소련 지역 EU 회원국 중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의 사례를 검토하여 가정보호 활성화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또한 한국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보호의 활성화와 더불어 소규모 그룹홈이나 패밀리홈 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개념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제 2 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개념

이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현황과 욕구를 살펴보고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에서 다루어져왔던 관련 용어들을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은 법제도 상의 용어이다(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의 부재, 보호자로부터의 이탈, 학대 등의 상황에 처한 아동으로 보호자가 양육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 부적당한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정의된다(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이 구문은 보호대상아동을 사건(보호자의 부재와 이탈 및 학대)의 발생 뿐 아니라 보호자의 양육방식의 적합성 및 양육역량을 국가가 판단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모호한 특성을 보인다. 더구나 법조문 상에 포함된 “등”이라는 단어는 보호자의 부재·이탈이나 학대가 아니더라도 자녀양육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상황과 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있다(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따라서 그 실제적 범주는 보호자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의 부적합성을 판단하는 정책

적·실천적 기준에 따라, 보호자의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지지적 서비스의 충분성에 따라, 그리고 보호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육의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편견(이미정, 2011)이나 지원정책의 변화(류정희 외, 2021)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4항〉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자료: 아동복지법 (202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이렇듯 범주의 명확한 설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연구들은 보호대상아동의 정책적 범주를 가능한 폭넓게 확장할 것을 요구해왔다(박세경 외, 2014;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제철웅, 장영인, 2019; 류정희 외, 2021; 이봉주 외, 2022). 이는 포괄적 범주의 설정이 정책적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정 외 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어 왔기 때문이다(류정희 외, 2021).

반면 아동의 시각에서 볼 때 보호대상아동은 사적 영역에서의 보호자를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상황에 처하여, 새로운 보호자를 맞이하게 되거나 이미 맞이한 상황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이 주로 가정 외 분리보호와 복귀 및 자립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 대상으로서 보호대상아동의 개념은 원가정으로부터 아동의 분리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협의의 범주를 적용하고 있다(류정희 외, 2021). 유엔의 아동에 대한 대안적 보호 지침(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에서도 원가정이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 없거나, 유기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국가가 대안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명시하였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p.3).

본 연구의 초점은 아동의 원가정 분리 이후의 보호조치로서 가정보호를 검토하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원가정 분리 이전의 아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보다는 협의의 보호대상아동의 개념을 적용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보호조치의 요인과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의 상실 - 앞서 언급하였던 복합적인 보호자의 상황과 입장으로부터 기인된 - 에 따라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되도록 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기초치된 아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원가정 보호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있어서 가정보호의 개념은 ‘가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 ‘가정’을 원가정의 의미로 해석하였을 때, 가정보호는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하여 상실하였던 원가정 보호를 되찾는 의미일 것이며, ‘가정’을 원가정과 더불어 법적인 가족의 의미로 확장하는 경우 입양이 가정보호로 포함될 것이다. 또한 그 범주를 확대가족으로 넓힌다면 민법 상 친족에 의한 보호 및 양육과 혈연가정위탁이 가정보호에 해당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정’을 환경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위탁가정이 가정보호에 포함될 것이다.

기존 국내 문헌에서는 가정보호라는 개념보다는 원가정 보호와 가정형 보호라는 용어를 주로 활용해왔다. 가정형 보호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보

호 유형으로 국내 선행 문헌이 규정하는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장영인(2020)과 이주연, 조경옥, 최지훈(2019)는 입양,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등을 가정형 보호로 정의하였으며, 류정희(2021)는 입양, 가정위탁을 가정형 보호로 보았다. 임성은 외(2020)는 입양, 가정위탁 뿐 아니라 소속사회가 이루어진 공동생활가정을 가정형 보호로 포함하였다. 이는 일본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외 보호로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적 환경”에 패밀리홈(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하는 것(조정우, 2022, p.40)과 유사한 개념이다. ‘가정형’ 보호가 가정은 곧 집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족관계라는 법적관계 혹은 정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리적인 환경이라면 보호장소가 개별 주택의 형태이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예를 들면, 자기만의 방)까지도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이봉주 외(2022)에서도 국내에서 가정형보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보호관련 기관 간의 탈시설에 대한 시각과 견해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제4조 3항에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법률 제 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다만 정책 실무지침에서는 가정보호가 입양과 가정위탁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사업안내 매뉴얼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를 입양과 가정위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 p.28), 정부가 제안하였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가정형 보호’로 입양과 가정위탁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국내 아동보호정책에서 ‘가정보호’라는 용어는 원가정보호와 차별되는 가정외 보호조치로서 입양과 가정위탁을 의미하며, ‘가정보호’와 ‘가정형 보호’라는 용어

는 혼용되고 있으며, 그룹홈과 양육시설 등의 시설보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입양 지원의 기본방향(p.28)〉

-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지원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입양 등)**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필요

〈가정위탁보호의 목적(p.67)〉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2023). 아동사업안내 매뉴얼, p.28, p.67

국제적으로는 UN이나 UNICEF 등에서 언급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중에 가정보호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는 ‘부모보호(parental-care)’ ‘가정기반 보호(family-based care)’, ‘가정같은 보호(family-like care)’와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부모보호에는 원가정 보호와 입양이 포함된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p.7). 입양을 가정형 보호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입양⁴⁾은 부모-자녀가 혈연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부모로부터 영구적인 보호를 받는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므로 부모보호로 보고 있다.

가정기반 보호(family-based care)는 친족돌봄과 가정위탁, 후견보호 등으로(UNICEF, n.d.a), “가족과 함께 가정적인 환경에 거주하는 장단기 보호조치”(UNICEF, 2020, p.4)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가정형 보

4) 단, 입양절차가 모두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입양예정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모보호로 보지 않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p.7).

호의 범주에서는 그룹홈이나 소속사화된 그룹홈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형태는 모두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institutional care⁵)에 해당한다. 시설보호는 “유·무급의 직원이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기반이 아닌 집단 환경”으로 양육시설, 그룹홈 및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보호 되어 생활하는 생활시설을 포함한다(UNICEF, n.d.a). 시설보호 중 대규모의 양육시설(institutions)이 아닌 소규모의 그룹홈은 가족과 같은 환경(family-like environment)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가족과 같은 보호(family-like care)”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기반 보호(family-based care)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이와 관련하여,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9항에 대한 일반견해(General Comment on Article 19: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에는 이러한 ‘가정과 같은(family-like)’ 환경의 그룹홈이나 독립거주(independent living)가 정책적으로 아동의 가정기반 보호를 대체하게 되는 현상을 경계한다. 이에 따르면 ‘가정과 같은 보호’는 가정에 의한 보호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룹홈 등이 활성화될수록 아동이 가정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UN CRPD, 2017).

5) Residential care 와 Institutional care 모두 가족이 아닌 구성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보호되는 조치를 의미하나 Institutional care 는 residential care 중에서도 지역사회와 격리된 대규모 시설의 형태로 아동의 개인특성과 욕구에 따른 보호가 어렵고, 엄격한 규칙과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으로 특징지워짐(UNICEF, 2020).

(표 2-1)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의 가정(형)보호의 범위

구분	보건복지부 (2023)	포용 국가 아동 정책	장영인 (2020)	이주연 외 (2019)	류정희 (2021)	임성은 외 (2020)	UNICEF (2020)	UN (2010)
원가정보호							부모 보호	부모 보호
입양	가정 보호	가정형 보호	가정형 보호	가정형 보호	가정형 보호	가정형 보호	가정·반 보호	가정·반 보호
가정위탁								
친족돌봄			+	+		+		
소년소녀가정								
그룹홈								
시설								

그렇다면 ‘가정과 같은’ 환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족의 특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결혼이나 출산 등 법적·혈연적 관계와 같은 장소에서 공동거주한다는 점(유영주, 1993), 그리고 애정 및 친밀감 등 정서적 관계와 자원의 공유(Olson & Defrain, 1994) 등으로 볼 수 있다. ‘가정과 같은 환경’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의 특성을 기반으로 보호조치 간의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가정보호의 구성 요소를 혈연관계, 법적인 부모, 가정의 정서적 환경, 가정의 물리적 환경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보호조치별로 가정보호의 구성요소들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원가정 보호는 제시된 모든 가정보호 요소들을 충족하며, 입양은 혈연관계 외의 요소들을 충족한다. 혈연 가정위탁과 친족돌봄은 법적인 부모 이외의 요소들을 충족하며, 비혈연 가정위탁은 가정의 정서적·물리적 환경을 충족한다. 소규모 그룹홈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충족한다⁶⁾. 따라서 가정보호의 스펙트럼에서 모든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원가정보호부터,

6) 해당 그룹홈이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는 집의 형태, 구성원의 수, 개인적 공간 및 기구 등의 활용정도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추정됨.

입양, 가정위탁, 친족돌봄까지는 시설보호에 대비되는 가정보호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원가정보호와 입양은 가정보호이면서도 부모보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앞서 제기한 ‘가정과 같은’ 환경은 가정보호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2〉 가정보호의 스펙트럼과 구성요소

구성요소	부모보호 -----		가정기반보호 -----		시설보호	
	parental care		family-based care		residential care	
					family-like care	
혈연관계	원가정보호		혈연 가정위탁	친족돌봄		
법적인 부모			+	+		
가정의 정서적 환경		입양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가정위탁	친족돌봄	소규모 그룹홈	
						대규모 시설

본 연구에서는 가정보호의 스펙트럼 중 부모보호의 범주(원가정보호 및 입양)보다는 가정기반 보호의 범주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원가정과 입양가정이 법적인 가족으로 영구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원가정이나 입양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의 특성을 대부분 잃게 되고, 보호서비스가 아닌 지지적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원가정복귀 서비스가 있으나, 이는 가정위탁이나 시설 등에 보호된 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서비스의 일종이지 보호조치가 아니다. 반면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적이고도 가정을 기반으로 하며, 위탁가정에 보호되는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보호서비스의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보호대상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보호의 규모를 확충하는 것, 둘째는 가정보호의 질차와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소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영역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가정보호의 규모 확충

국외에서는 19세기에 시설보호중심의 아동보호로부터 20세기에 이르러 가정보호의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Myers, 2008). 1900년대에는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의 발전과 함께 시설보호아동의 발달저하와 애착형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Barth, 2002; 노혜련, 장정순, 1998). 이 시기 Spitz는 보호자와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운 시설보호아동의 발달저하를 '시설병'(hospitalism)으로 일컬었으며 (Spitz, 1945), Bowlby는 발달저하의 주된 원인이 시설보호로 모성적인

양육과 애착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Bowlby, 1951). 이러한 연구들은 보호자와의 애착형성이 용이한 가정보호가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모색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위탁제도의 확대를 견인하였다.

가정위탁의 활성화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가정위탁제도의 도입과 기반마련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연구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수행되어 온 연구들은 당시 친인척의 선의와 희생이 없는 가정보호가 제공되기 어려웠던 상황을 지적하면서(배태순, 2000), 대부분 보호대상아동이 배치되었던 시설의 열악한 환경, 보육사 대비 아동의 높은 비율, 보호의 전문성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이배근, 1993). 2000년대 초기까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던 가정위탁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조항 개선, 가정위탁의 절차와 선정방식 등의 법제화, 재정지원과 위탁가정 지원기관 설치 등 가정위탁제도가 사회에 안착하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의 마련 등이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허남순, 2000; 이은정, 2002; 박현선, 2004).

그 이후에 수행되어 온 가정위탁의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가정위탁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에 기여해왔다. 위탁가정에서 보호된 아동의 신체적 발달성과는 시설보호아동 대비 긍정적이며(김경희, 반정호, 2005), 정서행동영역에서도 위탁아동보다 시설보호아동의 우울 및 행동문제가 더 높았고,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은 더 낮게 나타났다(Kang et al., 2014; Lee et al., 2017; 이주연 외, 2019). 주관적 성과 인식에 있어서도 시설보호아동과 비교해 가정위탁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원가족, 동네, 학교 및 가족 등의 경험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김선숙, 박호준, 2020), 시설유형 중에서는 양육시설아동 대비 위탁아동의 만족도가 높았다(이상정 외, 2017). 다만, 일부 연구에서 공동

생활가정 아동의 성과가 가정위탁 보호 아동보다 긍정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장혜진 외, 2014; 이상정 외, 2017).

다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성과에 근거한 가정보호 활성화 필요성에 동의하였음에도(정익중, 우석진, 강현아, 전종철, 이정애, 2012; 이주연 외, 2019; 강현아 외, 2020) 최근 위탁가정의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이봉주 외, 2022) 이유로는 위탁부모의 발굴과 유지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가정위탁을 하게 되는 계기는 종교적인 이유, 이타심, 개인적인 만족감, 혈연관계에서 오는 책임감, 과거의 긍정적 아동양육경험 등으로 나타났다(김진숙, 이근무, 2005; 권지성, 정익중, 2013). 그러나 한국사회의 혈연중심의 자녀양육 문화와 가정위탁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홍보의 부족(김진숙, 이근무, 2005; 이주연 외, 2019; 강현아, 정익중, 강현주, 이화조, 오세현, 2020), 위탁아동 돌봄 시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 어려움,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위탁아동의 일탈이나 적응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권지성 외, 2012)은 가정위탁 확충의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 Hanlon 외(2021)는 미국의 지난 20여년 간 발표된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한 결과, 보호대상아동이 고연령이거나 특수한 욕구가 있는 경우 위탁부모의 연결이 어려우며, 위탁부모 양성교육 과정에서 위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탈락하게 되는 상황, 자격승인 절차의 까다로움이나 예비 위탁아동과의 관계에서 예상되는 문제, 지원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염려,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의 부정적 관계 등이 (예비)위탁부모가 가정위탁을 시도하거나 재시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의 문제행동과 통제의 어려움, 애착관계 형성의 어려움, 아동의 친부모의 간섭, 친자녀와의 갈등, 양육비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더불어

외부 기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탁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진숙, 이근무, 2005). 미국의 위탁가정 및 아동 대상 조사 결과를 분석한 강현아(2006)의 연구에서는 비혈연 관계일수록, 아동의 연령(위탁기간)이 높을수록, 위탁아동의 문제행동이 높다고 인식될수록, 위탁부모-위탁아동 간 애정이나 소속감이 낮을수록 중도 해지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위탁아동의 특수한 욕구나 문제행동이 새로운 위탁가정의 책정을 저해하고 기존 위탁가정의 위탁해지의 원인이 되는 데에 대하여 이들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는 전문화된 위탁가정을 구축하고(강현아 외, 2020), 자격기준을 두고 보수를 지급하는 전문적인 직업 형태의 위탁가정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었다(이주연 외, 2019).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혈연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 등의 방안이 거듭 제기되었다(김희연, 박은미, 이주연, 2006; 이주연 외, 2019; 강현아 외, 2020).

위탁가정의 발굴과 유지에 기여하는 촉진요인으로 강현아 외(2020)는 위탁부모로서 첫 번째 시도(위탁) 시에 긍정적인 경험이 위탁의 재시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외연구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전반적 어려움이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거나, 유연성, 탄력성, 타인과의 협력 등이 용이한 개인·관계적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탁부모로 유입되거나 위탁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lon et al., 2021). 이러한 촉진요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현아 외(2020)는 신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의 기회를 보장할 것과 성공사례의 홍보를, Hanlon외(2021)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의 개선, 효과적인 홍보 및 광고, 기존 위탁부모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로서의 자

신감과 유연성 및 협력 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 가정보호의 질과 절차의 개선

위탁아동의 장기적 발달성과에 있어서 가정위탁이 대규모 시설보호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Sonuga-Barke et al., 2017; van Ijzendoorn et al., 2020), 위탁아동이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대비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도 일부 있다(장혜진 외, 2014; 이상정 외, 2017). 국외 연구에서도 잘 준비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위탁보호를 하게 될 경우, 위탁아동의 신체적·행동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한 경우가 있다(Villodas, Litrownik, Newton, & Davis, 2016). 따라서 양질의 가정위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가정위탁제도 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위탁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질과 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탁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원가정 분리 이전에 빈곤이나 폭력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곤 하며, 주로 친부모의 가출, 질병, 사망 등의 어려움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분리에 따른 상실과 불안 및 낙인감 등을 경험한다(정혜선, 김진숙, 2004). 시설보호아동과 비교해 볼 때, 위탁아동은 자립지원서비스 등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낮으며, 서비스 이용률 또한 낮게 나타났다(이상정, 2020). 뿐만 아니라 보호환경에 있어서도 위탁아동이 열악한 측면이 확인되었는데, 위탁아동은 보호기간 동안 지출에 대한 염려와 제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보호종료 이후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더 많았다(주해란, 길건혁, 이예진, 안태구, 2022). 그러나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위탁아동들은 보호종료 이후에도 위탁가정과 연결감과 안정감이 있었으며, 반면 시설아동은 자립의 부담이 위탁아동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주해란 외, 2022). 가정위탁과 비교할 때, 시설보호가 발달성과는 낮으나, 비용부담이 최소 3~4배에서 8배까지 더 높다는 연구결과는(Desmond & Gow, 2001; Mulheir, 2015; 우석진 외, 2015), 위탁가정의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는 위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탁부모의 자격, 승인 및 양성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Zeijlmans, López, Grietens, & Knorth, 2017; 강향숙, 강현아, 정익중, 오세현, 2021; 정익중, 오정수, 2021; 이봉주 외, 2022). 가정위탁의 책정 시 영향을 요인 중에서 사례의 긴급성, 아동의 행동적인 문제, 형제자매의 유무, 연령, 특수욕구, 발달수준, 위탁부모의 거주환경, 가족구성원, 지원기관과의 관계 등 사례의 개별적 특성은 일차적으로 고려사항이 된다(Zeijlmans et al., 2017). 그러나 책정의 성공여부에는 책정당시에 양질의 위탁가정의 충분성, 위탁 책정까지의 시한, 책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및 근속기간, 슈퍼비전의 질 등 외부적인 요인들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Zeijlmans et al., 2017). 이러한 의미에서 위탁아동의 위탁가정 책정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나, 다수가 이 업무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으며, 위탁가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봉주 외, 2022). 국내에서 양질의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위탁가정에 아동이 배치되기도 하며, 가정보호로 책정된 아동

을 시설로 재배치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봉주 외, 2022). 또한 과거에 위탁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 보호가 요구되는 심각한 특수욕구가 있는 아동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탁부모의 소진, 위탁부모-아동 간의 갈등, 위탁 중지 등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향숙 외, 2021). 따라서 이와 같은 위탁아동과 가정 간의 책정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정익중, 오정수, 2021).

위탁부모의 자격승인에 있어서 소득요건은 위탁아동의 성장환경의 열악함, 빈곤으로 인한 기회의 박탈 등 경제적 어려움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특히 위탁의향이 있는 조부모·친인척 등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고령의 연령대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렵고 재정적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승인이 되기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예를 들어 TANF 수급대상자) 그 밖의 자격요건이 부합한다면, 가정위탁 수당을 지급하여 위탁아동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Berrick & Boyd, 2016). 다만, 혈연위탁가정에서 수급 가능한 가정위탁 수당과 서비스는 일반 위탁가정보다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위탁 수당 등의 재정적 지원이 가정위탁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고자 결정하는데에 있어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Hudson & Levasseur, 2002), 재정적 차이가 혈연위탁아동의 보호의 질을 저해하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Berrick & Boyd, 2016).

위탁가정의 자격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전문위탁가정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다. 위탁아동들은 원가정에서 친부모의 양육능력의 상실이나 방임 및 학대, 가정폭력 목격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의 어려움, 일상생활 습관이나 절제가 어려움, 학대나 폭력 피해 트라우마로 인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 이혁구,

2007; 정혜선, 김진숙, 2004; 강현아, 2005). 뿐만 아니라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위탁가정에 보호되는 과정에서 상실감이나 슬픔, 스스로에 대한 비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정혜선, 김진숙, 2004). 이러한 트라우마와 더불어 장애, 인지·정서·행동 상의 어려움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위탁아동들은 일반적인 위탁부모가 적절히 양육하기 어려운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이봉주 외, 2022). 치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위탁가정이 마련되고 배치될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전문위탁보호의 전문성은 치료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외부의 치료적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장혜림, 김시아, 김선숙, 김희주, 정정호, 2021). 이와 더불어 전문위탁부모의 자격 기준을 보다 엄격히 마련하고, 양성 및 보수교육 등을 확충하는 등의 전문성 강화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성 강화의 노력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선화, 서해정, 정익중, 2021; 이봉주 외, 2022).

다수의 선행연구는 위탁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서비스의 질 제고가 가정위탁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국내 문헌에서 위탁아동들이 위탁 중 경험하게 되는 다면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어려움은 위탁의 유형별로 다소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비혈연 위탁아동의 경우 혈연위탁에 비하여 버려졌다는 느낌을 더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인척이나 조부모 가정을 전전하다가 일반위탁가정으로 오게 되는 표류의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성, 정익중, 2013).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며, 갈등이나 적응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 등은 위

탁의 증지나 가출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강현아, 2005; 김연정, 정선영, 2022). 또한 위탁가정의 문화나 양육방식의 이질감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은 특히 비혈연 위탁아동일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 이혁구, 2007).

혈연 위탁아동은 비혈연 위탁아동에 비하여 소득수준이나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정혜선, 김진숙, 2004; 양심영, 2003; 허남순, 2004). 그 중에서도 조부모 위탁아동은 사실상의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책임감과 돌봄 및 가사 부담, 고령인 조부모 상실의 두려움과 불안,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차이 등 갈등 요인,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이현주, 2007; 권지성 외, 2012). 친인척 위탁아동은 위탁가족 구성원과 관계의 수준과 갈등의 여부가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성 외, 2012).

이러한 위탁가정과 아동의 환경, 관계의 갈등,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사례관리서비스의 목표이나, 아직까지 위탁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서비스가 이렇듯 세심한 개입을 하기에는 전문성, 빈도, 자원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신건철, 신민선, 2011; 권지성, 정익중, 2013; 강현아 외, 2020). 사례관리의 부족이나 부정적인 경험이 위탁의 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상기할 때, 사례관리서비스의 질 제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Zeijlmans et al., 2017). 국내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빈도 등이 불충분하며, 위탁센터 담당자 1인당 사례 수 또한 과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신건철, 신민선, 2011). 특히 위탁가정 내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

가 어려우며, 개입할 충분한 역량이나 자원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지성, 정익중, 2013; 강현아 외, 2020).

2. 아동의 탈시설 방안

시설보호아동의 탈시설 방안은 시설보호아동 혹은 (시설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정보호의 양과 질이 확충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가정보호의 활성화는 탈시설의 결정적 요건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국외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 전후의 발달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시설보호 아동은 신체, 인지, 행동 및 사회성 등에 있어서 가정보호아동보다 전반적으로 발달이 저하되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보호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et al., 2014). 시설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전원된 이후에 아동의 발달성도가 호전되었으며(Fox, Almas, Degnan, Nelson, & Zeanah, 2011), Sonuga-Barke 외(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시설에서 가정으로 재배치된 연령 또한 이르면 이룰수록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Sonuga-Barke et al., 2017), 가능한 이른 시기에 가정보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시설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는 가정보호와 탈시설을 위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시설보호가 보호대상아동의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애착 및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해왔다(Brown, 2009; Johnson & Gunnar, 2011; Juffer,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2017; Nelson et al, 2014; Zeanah et al., 2009). 여

러 영역 중 특히 신체발달과 인지 및 지적발달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컸으며, 불안정 애착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van Ijzendoorn et al., 2020). 시설보호의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의 연령이 24개월 이하인 경우 가장 심각하였으며, 이 기간을 지나 시설에 배치된 아동은 부정적 결과가 비교적 감소되어(Vorria, Wolkind, Rutter, Pickles, & Hobsbaum, 1998), 24개월 이하의 연령대에 있어 가정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시설보호의 질적인 요소 또한 부정적 발달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소련지역에서 행해졌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대규모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방임은 이들에게 있어 심각한 수준의 발달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으며(Rutter, Sonuga-Barke, & Castle, 2010), 양육자 대 아동의 비율이 낮거나 양호한 생활환경 등 시설보호의 질이 높은 경우, 아동의 발달저하 수준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orria et al., 1998). McCall 외(2019)는 양육자 대 아동의 비율이 10명~30명인 대규모 시설과 3명~6명인 소규모 시설을 구분하였으며, 대규모 시설의 경우 아동과 양육자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격감하므로 발달에 부정적 성과를 가져옴을 지적하였다.

국내 연구들도 과거 국내 아동양육시설의 엄격한 규칙, 대규모 집단 양육, 인권침해와 학대 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김희연, 김형모, 김정숙, 2007).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분리되어 있고, 가정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강압적 분위기와 체벌, 사생활 침해, 또래폭력 경험 등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사회성의 저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해왔다.(하승민, 임동호, 2006; 김귀분, 김미영, 2001; 이은주, 박명숙, 2016)

국내에서 시설보호아동의 부정적인 발달성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반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다루어졌다. 일반아동과 비교해 시설보호아동은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고 문제행동 수준이 다소 높으며(성미영, 2006), 학업수준과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다고 보고되었다(오승환, 2003). 애착에 있어서도 시설보호아동의 안정애착인 비율이 일반아동보다 낮고, 정서기능이 낮으며(홍수현, 김경희, 2005), 심리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정선옥, 2002; 조정순 외, 2009). 사회성에 있어서도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낮은 발달성과를 보였는데, 이강이와 성미영(2003)은 시설보호아동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친사회적 전략을 사용하기 보다는 강제적 문제해결을 하므로써,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지한 바와 같이 탈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이 배치될 수 있는 가정보호의 거처가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위탁가정의 확충이 요원한 상황에서, 탈시설 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 대안을 모색해 왔으며,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의 활성화와 더불어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전환과 시설의 소규모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시설의 다기능화는 보호대상아동의 변화하는 특성과 욕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치료시설과 이용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김희연 외, 2007; 임성은 외, 2020).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변화에 따라 치료적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나 환경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의 필요성 또한 지적되었다(김희연 외, 2007; 이봉주 외, 2022).

대규모 시설을 가정과 같은 단위로 소규모화하거나 시설 내에 거주공간에서 개인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소규모화 방안 또한 탈시설의 대안으로 제안되어 왔다(이은주, 박명

숙, 2016). 국외에서는 소규모화 시설은 가정보호로 간주하지 않고 시설 보호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위탁가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6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이 대안적 보호조치로 제공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10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UNICEF, 2020, p.21).

3. 시사점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주제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아동발달에 있어서 애착의 중요성과 시설보호 대비 가정위탁에서 나타난 아동발달 및 적응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면서, 가정보호 활성화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는데 기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의 규모 확충을 위하여, 국내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가정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홍보의 확대, 위탁가정의 다각적인 어려움 등에 대응하고 신규 위탁부모의 성공경험을 적극 지원하며 위탁부모 대상 전문화된 양성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나 사례관리 시에 제공인력-위탁가정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위탁가정의 유형이나 위탁아동의 특성별로 경험하는 욕구와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정보호의 질과 절차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탁아동이 시설보호아동 대비 발달성도가 비교적 좋고 비용부담도 낮은 데에도 불구하고 국내 위탁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이나 이용률 등이 낮고, 일부 열악한 보호환경이 지적되어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에서 위탁가정-아동 책정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국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위탁 책정의 여러 요인들(책정시한, 담당인력의 전문성,

슈퍼비전 등)을 국내에서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위탁가정 대상 재정적 지원이 위탁의 시작이나 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탁 보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가정위탁의 질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문헌에서 위탁아동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과 특수한 욕구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위탁가정이 이러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적 보호의 요소를 강화하고 전문위탁부모의 자격기준 강화, 관련 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위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환경, 관계 등에서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서비스의 전문성이나, 빈도, 연계되는 자원의 수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 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결과는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 기간을 단축하고, 어린 연령의 아동일수록 우선적으로 탈시설하거나 가정보호로 배치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설에 보호된 아동일 경우에도 이른 시기에(혹은 가능한 빨리) 가정보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보호에 있어서 가정보호의 일부 요소를 반영하여 보호의 질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대안적인 방안이 되고 있고, 아동 발달에 있어서 비교적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또한 있음에도, 이러한 시도가 시설보호의 부정적인 영향을 무효화하지는 못하다는 연구결과들은 탈시설에 가정보호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제도 및 현황

제1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제도

제2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현황

제3절 시사점

제 3 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제도 및 현황

제1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제도

1.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제도화 과정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호는 한국전쟁과 그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의 전쟁고아를 고아원 등 민간시설에서 보호하다가 아동복지법의 제정(1961년)과 함께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공되면서 시작되었다(장영인, 2021). 당시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 법률 제912호, 1961. 12. 30., 제정; 제9조 3항)하여, 위탁을 법적 규정으로 포함하였으며, 1961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위한 민법 외의 조치를 최초로 규정하였다(고아입양특례법 법률 제1745호, 1966. 2. 23., 일부개정; 제1조). 이 시기 대표적인 보호조치 중 하나였던 입양은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이 주를 이루었으며,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았던 반면, 시설보호아동의 양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볼 때(아동복지법 제21조), 가정위탁과 입양 등의 가정보호의 부담은 온전히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지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는 주로 시설보호와 해외입양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김현용, 1994). 긴급구호적인 보호조치에 머물렀던 시설보호가 지속되면서, 시설보호는 보호대상아동의 주요한 보호방식의

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해외입양의 규모가 연간 8천명 이상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와 보호 회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었다(김현용, 1994).

가정위탁은 198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아동복지법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제11조 제3항)와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제11조제4항)에 의하여 위탁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전달체계나 비용지원 등 서비스가 제도화되지 못하여,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 의한 비공식적 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다만 민간 입양기관 등에서 입양 전 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위탁가정을 운영하였고, 사회복지재단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가정위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양육비와 위탁가정의 관리 등은 모두 민간기관에 일임되었다(허남순, 길호섭, 박영순, 1999),

정부주도의 가정위탁제도는 1988년~1991년 경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가 있으나, 위탁가정이나 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중단되었다가(허남순 외, 1999),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가정위탁에 대한 조항을 두고 보호비용(양육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서(아동복지법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공공의 역할이 제도화되었고, 2003년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및 확대하기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 2023).

2000년 이후 위탁가정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2004년)를 비롯하여 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2006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2010년)하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2019년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위탁 양육보조

금의 인상 및 초기 정착금 지원 등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위탁가정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문 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 이에 따라 위탁가정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기준의 연령별 차등화 및 금액의 인상(2020년),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2020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확대(2020년) 등이 시행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9).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family-based) 양육을” 촉구하였으며, 아동의 탈시설 계획을 마련하여 시설보호를 감축 및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가정환경 상실 아동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자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제32조항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44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2020). 가정위탁 활성화 6대 중점과제는 예비 위탁부모의 풀을 늘리고, 가정위탁 홍보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아동용품 구입비, 양육보조금의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등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고, 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화하여 보호비를 지급할 것과 일시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탁의 유형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견인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 원가정 복귀의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다.

<표 3-1> 정부의 가정위탁 활성화 6대 중점과제

6대 과제	주요 내용
예비 위탁부모 발굴·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위탁부모 약500여명 추가 발굴 - 위탁부모 양성 보수교육시간 확대 및 전문위탁 양성교육 20시간 신설 - 가정위탁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공공캠페인 - 지자체 매뉴얼 제공 및 교육 시설 검토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위탁 시 아동용품구입비(월 100만원) 신설 - 연령대별 차등화된 양육보조금 지원 기준 강화(월 20만원 → 30~50만원)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등 위탁유형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 고려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사례 관리 프로그램 개발,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원 지급) - 위탁가정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일시위탁 제도 도입
후견인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자 친권상실사유외의 구체화로 후견인제도 활성화 - 위탁아동 및 부모의 심리치료 비용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의 보장 범위 확대
원가정 조기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정 복귀를 위한 정기적 면접교섭의 지원근거 마련 -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강화
가정위탁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분소 설치

자료: 보건복지부 (2023.4.13.). 공정한 성장 기회,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윤석열 정부가 실현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800000&bid=0027&act=view&list_no=375822 로 부터 내용 발췌 및 요약

2023년 발표된 현 정부 아동정책에서는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3대 추진분야와 10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분야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와 관련해 '위탁부모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아동양육관련 비용의 지원 확대,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관계 개선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여 후견인 선임절차를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유기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자체장이 자동 지정되도록 법을 개정하며, 위탁아동의 의료, 교육 및 금융 관련 서비스 등 필수적인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표 3-2〉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중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분야

정책구분	주요 내용
취약계층의 원가정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지원계획의 단계적 확대(시설아동 전연령, 기초수급가구 아동 12세 이상 가입) -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관계 개선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 마련,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집중 사례관리 실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을 위한 보호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의 1인 1실 기능보강 우선 지원, 치료실·놀이실 설치 지원 확대 - 위탁부모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위탁아동의 성장발달 비용지원 등 발굴 지원 - 10년 이상 중장기 관점의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 입양체계의 공공성 확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
출생미신고아동보호 등 촘촘한 아동복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보호출산제 보완적 도입 추진 - 보호자와 가구 내 사정으로 돌봄위기에 처한 가구의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 (2023.4.13.). 공정한 성장 기회,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윤석열 정부가 실현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5822로부터 내용 발췌 및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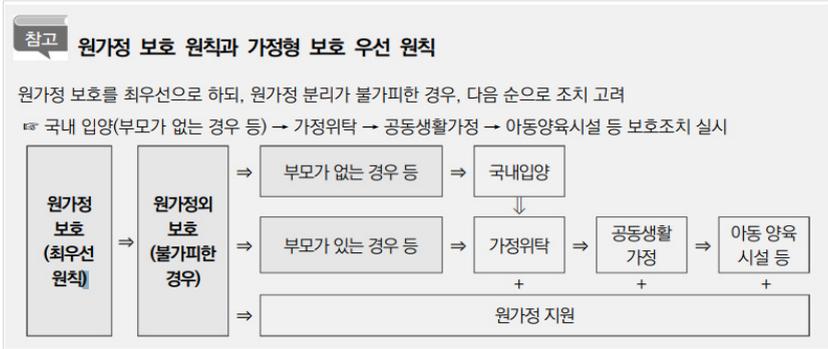
2.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가. 법령 상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아동복지법 법률 제6151호, 2000.1.12. 전부개정) 성장할 것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였다. 또한 모든 아동은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보호하되, 원가정으로 신속한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아동보호에 있어서 이러한 가정보호의 원칙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도 재차 언급되어 있다. 지침에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원가정 보호의 원칙’과 ‘가정형 보호 우선의 원칙’을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될 경우 ‘일시적이고 최소한 기간에 한’하도록 규정하였고, 분리보호 시에는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입양이나 가정위탁이 어려운 경우에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의 순으로 분리 배치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그러나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과는 달리, 실제 보호대상아동은 여전히 시설보호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신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36.5%만이 가정보호될 뿐, 63.5%는 시설보호조치되고 있으며, 양육시설로 배치되는 아동의 비율(29.0%)이 공동생활가정 배치 비율(15.9%)보다 더 높았다(보건복지부, 2022). 이렇듯 보호대상아동의 배치 규모로 비추어볼 때,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

[그림 3-1]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원칙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p.4.

나. 가정위탁제도

1) 가정위탁제도의 목적 및 유형

가정위탁제도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서 보호하는 데에 있다(보건복지부, 2023, p.67). 가정위탁의 목적에서는 가정보호 우선 원칙만이 제시되어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일시적 보호로서의 가정위탁과 가정보호의 영구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정보호 우선 원칙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 중에서도 2세 이하의 아동을 명시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23), 이는 시설보호가 원가정 분리보호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의 위탁유형은 과거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조부모 외의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가정위탁, 비혈연 관계의 보호자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으로

2021년 6월 30일 부터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으로 변경되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3, p.72). 기존에 대리양육과 친인척가정위탁 및 비혈연 일반가정위탁은 일반가정위탁으로 통합되었으며, 전문적인 자격기준을 갖춘 보호자에 의해 보호되는 전문가정위탁과 일시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가정위탁이 도입·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72).

전문가정위탁은 특별한 욕구가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는 유형이며, 일시가정위탁은 3개월 미만(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 시, 추가 3개월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 및 양육을 제공하는 위탁가정이다(보건복지부, 2023, p.72). 이러한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위탁을 일반가정위탁으로 지칭하며, 일반가정위탁은 장단기 등 보호기간이나, 혈연·비혈연 등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간의 관계 차이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3, p.72).

2) 가정위탁의 대상

가정위탁의 대상아동은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과 25세 미만의 보호연장아동이다. 위탁아동이 18세에 도달하였을 때, 위탁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25세에 이를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들을 보호연장아동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69). 위탁유형별로는 전문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에서 별도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36개월 미만 연령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으로 범주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p.72). 또한 일시가정위탁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과 연동하여 학대피해아동 중 즉각분리 조치로 분리된 미취학(6세 미만)의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72). 특히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형태의 보호인 쉼터나 일시보호시설의 대안으로 일시가정위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의 대상아동을 전체 보호대상아동으로 두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 중 위탁아동으로 책정되는 경우에만 위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위탁의 책정 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의 우선 고려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 밖의 책정과 관련된 대상기준은 지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책정은 지자체별 또는 사례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중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친족보호를 받는 아동인 경우, 가정위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은(이하 친족보호) 보호대상아동을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규정된 범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 및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5조제1항제2조). 민법 상 친족에 해당하는 범위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므로, 아동의 외가 및 친가의 8촌 이내 관계인 사람과 형제자매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친족 중 4촌 이내인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혈연관계의 일반위탁 가정과 동일한 관계가 있는 보호자에 의한 보호로 볼 수 있다.

민법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자료: 민법, 법률 제19098호, (2022)

그러나 친족보호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로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친인척관계의 범위 외에 보호자의 자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연령기준이나 가구 내 아동 수 뿐 아니라 범죄와 학대 및 정신질환 전력 등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보호 환경이 부적합하더라도 아동보호체계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이 매우 낮아 위탁가정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가정환경일 지라도 아동보호체계에서 이를 관할하지 않는다.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친족보호를 온전히 비공식적이고도 사적인 영역에 두고 있다는 점은 보호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에 미흡한 조치로 여겨진다.

3) 위탁가정 선정기준 및 자격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며, 다음 표와 같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조). 공통적으로 위탁가정의 소득수준의 양육적합성, 종교의 자유 인정, 연령기준(부모 각각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 가구 내 18세 미만 자녀 수, 가구 내 거주자의 성범죄, 폭력학대 및 정신질환 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일반위탁가정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73). 또한 미혼·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양육경험이 없더라도, 위탁아동 양육적합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선정이 가능하며,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없어야 하고,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침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73). 이에 더하여 위탁가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가정조사자료와 이웃을 통한 확인을 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p.73). 따라서 '18세 이후에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을 책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다가 보호종료연령에 도달하여 종결되는 성인이 아동인 형제·자매를 위탁아동으로 보호할 때에는 위탁부모의 연령기준(부모 각각 25세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79).

위탁부모의 자격기준은 전문위탁가정과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①친인척보호 외 가정위탁보호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②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심리관련 학과 졸업하여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키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조). 따라서 3년 이상 친인척위탁 경험만으로는 전문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수는 없으나 3년 이상 비혈연 위탁경험이 있다면 전문위탁가정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위탁가정의 경험이 없더라도 전문자격이 있다면 전문가정위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전문위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혈연위탁가정 중에서도 전문위탁가정의 선정기준과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전문

위탁가정으로 위탁의 유형을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 82).

〈표 3-3〉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및 자격

구분	위탁가정의 기준
전문 가정위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다.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마.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가정위탁보호자(「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및 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 또는 2)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사.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일반 가정위탁 및 일시가정 위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나.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자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조

4) 위탁가정 교육 및 승인체계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된다. 위탁부모의 양성교육은 위탁가정으로 책정되기 이전에 예비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수교육은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양성교육 중 일반위탁이나 일시위탁의 경우 주양육자에 대한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가정위탁사업, 위탁보호자의 역할, 부모교육, 위탁아동의 특성, 실제적 양육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방법, 후견인의 역할 및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174). 전문위탁이나 일시위탁 중 위기가동보호사업 수행 보호자의 경우에는 양성교육 소요시간이 주양육자 20시간 이상으로 필수 수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양육자의 경우 5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174). 전문위탁의 교육과정은 일반위탁의 교육과정에 추가적으로 학대피해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영유아, 위기 청소년 등 전문위탁가정의 주된 보호대상아동의 특성에 대한 교육과 위탁부모로서의 양육스트레스 예방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174).

보수교육은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위탁부모의 역할, 양육기술교육, 부모자녀 관계, 자녀학습, 진로지도, 원가정 관계 등에 대한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을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및 방문교육 등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174).

위탁가정의 승인은 신규 위탁가정이나 혈연위탁가정이 그 외 유형(비혈연, 전문, 일시)과 승인방식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일반위탁 중 신규 일반위탁가정은 위탁가정 책정절차와 연동되어 책정 시에 사

례결정위원회에서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58). 특히 혈연위탁에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비 위탁부모를 발굴해 두기에 어려우므로 혈연위탁은 다수가 위탁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과 함께 심의자격이 부여된다. 혈연위탁보호 희망자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시군구 등 지자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승인 및 책정에 대한 심의는 시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76).

비혈연 위탁에 해당하는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 등은 위탁보호 희망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가정으로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양성교육을 수료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23, p.80).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가정에 대한 가정조사를 실시하여, 추천서, 가족동의서 및 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한다. 시군구에서는 범죄경력과 아동학대 정보를 조회하고 적합한 경우 (예비)위탁가정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보건복지부, 2023, p.80). 일시 및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자격이 승인된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전국의 전문위탁가정 pool을 등록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를 전국에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가정으로 승인이 된 이후에 재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점검 시에 해당 보호조치가 위탁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86).

5) 가정위탁 책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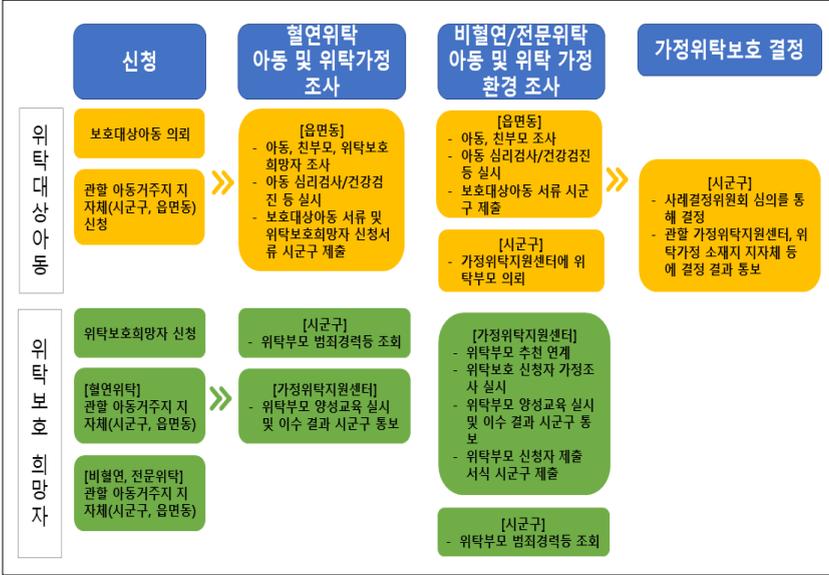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책정 절차는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일반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나, 일반가정위탁 중 혈연 가정위탁의 경우에 위탁가정-아동의 매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읍면동에서 위탁희망가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23, p.76).

읍면동은 지역사회에서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으로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 및 친부모를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하고 이를 시군구로 연계한다(보건복지부, 2023, p.76). 만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혈연위탁보호 희망자가 존재하는 경우, 위탁보호 희망자의 가정조사까지도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시군구로 결과를 보고한다(보건복지부, 2023, p.76). 혈연위탁보호 희망자가 없을 경우, 시군구는 아동 및 친부모의 상황을 점검하고, 가정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 추천을 의뢰한다(보건복지부, 2023, p.80).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비혈연 및 전문위탁가정 위탁보호희망자에 대한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 해당 아동의 보호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추천하고, 시군구에서는 위탁보호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보건복지부, 2023, p.80). 시군구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책정을 심의하고 보호조치를 결정한 후 책정결과를 보호자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통지한다(보건복지부, 2023, p.80).

56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그림 3-2] 일반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pp.76, 80의 내용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일시가정위탁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일시위탁보호 희망자를 발굴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시군구에서는 가정조사를 수행하고,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일시위탁가정으로 승인한다(보건복지부, 2023, p.84). 일시위탁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일시보호 의뢰를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적합한 일시위탁가정을 연계하여 배치결과를 시군구에 보고하면 일시위탁의 책정이 완료된다(보건복지부, 2023, p.84).

[그림 3-3] 일시가정위탁 책정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p.85.

6) 위탁아동 및 가정 대상 지원

위탁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으로는 첫째 사례관리서비스가 있다. 가정위탁으로 책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군구 보호 및 관리계획을 토대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구에 보고한다(보건복지부, 2023, p.86).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일시(위기) 위탁의 경우 3일 이내에 보호가정을 방문하고, 이후 주1회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그 밖의 비혈연 위탁은 보호조치 후 2주 이내, 혈연위탁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아동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연 4회 이상의 사례관리서비스 등 위탁가정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시군구 또한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에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우선으로 양육상황과 원가정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사례관리 시 개입의 유형은 기본사례와 통합사례로 구분하여 제공하

며, 기본사례는 가정환경 및 욕구 사정 시에 어려움의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한 사례로 연 4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제공하고, 연1회 이상의 재사정 주기를 두나, 통합사례는 월별 최소 1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제공하며 분기별 1회 이상의 재사정 주기를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104). 사례회의는 사례별 기본사례 연 1회 이상, 통합사례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104).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더불어 가정 및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사례관리 개입 시에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원가정-위탁아동 간의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원가정 복귀가 예정되는 경우, 복귀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원가정복귀 준비 서비스는 복귀 예정일 3개월 이전부터 준비하며,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아동, 위탁가정 및 원가정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131). 원가정복귀와 보호조치의 변경 혹은 종결과 관련하여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를 하는 기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이나 원가정복귀 결정, 보호조치의 변경 및 종결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시군구이다(보건복지부, 2023). 위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는 경우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을 경우이거나 보호종료 연령에 도래하여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경우(보건복지부, 2023) 혹은 재배치, 사례이관 및 보호조치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153). 사례관리 종결 이후 사후관리는 원가정복귀, 입양 및 기타 종결의 경우 1년 동안 4회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종결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연 1회로 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보

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159).

또한 위탁가정과 아동을 위한 현금급여가 지원된다.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양육보조금 및 전문아동보호비 혹은 일시위탁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상해보험가입과 심리검사·치료비 등이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23, p.101). 이 중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은 2021년부터 위탁아동의 연령별로 차등화되었으며, 금액 또한 인상이 되어 만 7세 미만은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이상, 만7세~13세 미만은 월 40만원 이상, 만13세 이상은 월 50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p.101). 전문아동보호비는 전문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일시위탁보호비는 아동 1인당 월 3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아동용품구입비는 신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p.101).

다만 이러한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규모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2022년 기준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예산지원단가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전남 등은 아동연령에 상관없이 월 30만원을, 광주, 대전 등은 310만원을 전북, 경북은 250만원을 지급하고, 세종과 제주는 연령에 따라 300~5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은 시군구별로 양육보조금 예산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정부의 양육보조금 지원 권고안을 수용한 광역지자체는 5개 시도로 나타났으며(이현정, 2019), 2022년 기준으로도 6개의 광역지자체 중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기초지자체마다 지원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혁, 2022). 이들 광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양육보조금 사업에 시도비를 매칭하고 있지 않으며, 100% 시군비로만 양육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었다.⁷⁾

60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표 3-4〉 2022년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예산지원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단가			일시가정위탁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만7세미만	만7세~13세	만13세 이상		
서울	300	300	300	30/일	1,000
부산	300	300	300	30/일	1,000
대구	300	300	300	30/일	1,000
인천	300	400	400	30/일	1,000
광주	310	310	310	-	-
대전	310	310	310	-	-
울산	300	300	300	1,000/월	1,000
세종	300	400	500	-	-
경기	300	300	300	1,000/월	500
강원	180~300	180~400	180~500	-	1,000
충북	150~300	200~300	230~300	-	500~1,000
충남	260~360	260~360	260~360	-	1,000
전북	250	250	250	900/월	
전남	300	300	300	-	1,000
경북	250	250	250	30/일	-
경남	150~300	150~400	150~500	-	500~1,000
제주	300	400	500	30/일	1,000

자료: 보건복지부(n.d.a). 2022년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예산지원 단가(비공개). 내부자료.

다음 〈표 3-5〉는 시도비 매칭없이 100% 시군비로만 양육보조금 예산을 산정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의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을 정리한 결과이다.⁸⁾ 2022년 기준 적게는 12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 수준으로 시군마다 양육지원금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정착금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아동용품구입비 예산 역시 지자체마다 상이했다. 2019년 기준으로 아동용품구입비 등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위탁가정이 12.3%라는 결과(이현정, 2019)와 마찬가지로 2022년 기준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보령시와 청양군의 경우 2세 미만의 학대아동

7) 반면 2022년 기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군에서 30만원 정액의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해당 예산은 도비 10%, 시군비 90%로 구성되었음.

8) 해당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기재된 세부사업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지원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탁시 혹은 초기 위탁시 아동용품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별도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지자체간 차이가 있었다.

〈표 3-5〉 기초자치단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충남, 2022년 기준)

(단위: 원)

구분	세부사업명	개인당 월별 지원금액 ¹⁾	예산액
천안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260,000**	650,000,000
공주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41,429*	103,220,000 (101,400,000)
보령시	가정위탁양육비	200,000	79,700,000
아산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178,444*	249,600,000 (224,840,000)
서산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250,000	195,000,000
논산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177,500*	43,200,000 (42,600,000)
계룡시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	120,000	27,000,000
당진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150,000	133,000,000
금산군	가정위탁양육지원(자체)	366,667*	39,600,000 (38,400,000)
부여군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276,603*	97,200,000 (86,300,000)
청양군	가정위탁양육비지원	300,000	118,800,000
홍성군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120,000	97,600,000
예산군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200,000	142,840,000
태안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200,000	45,500,000
서천군	요보호아동지원	329,333*	65,520,000 (59,280,000)

주: 1) 개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www.lofin365.go.kr)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자료에 입력된 사업개요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업하였음. 단, *표시가 있는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의 경우 사업개요에 개인당 월별 지원금액을 고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업개요에 기재된 '관내 보호아동 수'를 결산액으로 나누어 월별 지원금액을 대략적으로 유추한 값으로 실제 지원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표시가 있는 천안시의 경우, '관내 보호아동 수'가 기재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천안시의 홍보자료(<https://blog.naver.com/fastcheonan/222633491663>)를 활용하여 월별지원금액을 제시함.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23).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2.12.31. 기준)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에서 2023. 10. 5. 인출.
시민의 천안(2023). 천안시,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아동 지원 강화. <https://blog.naver.com/fastcheonan/222633491663>에서 2023. 10. 11. 인출.

양육보조금 외에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다. 기초생활급여는 위탁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로 월 55만원 수준으로 제공되며, 주거급여는 월 10~19만원이 지급되고, 의료 및 교육급여의 수준은 위탁아동 개인별로 상이하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p.33-41). 상해보험가입비는 아동 1인당 연간 68,500원으로 지원되며, 심리치료비는 필요시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수준)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p.33-41). 그 밖에 보편적 급여로서 8세 미만 아동 대상 아동수당(월 10만원)과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p.33-41).

현물급여로는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지원되며, 위탁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p.33-41).

위탁아동의 자립준비를 위하여 월 10만원 이내로 디딤씨앗통장이 지원되며, 자립정착금이 1인당 1,000만원 이상 지방이양하여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진학자금 또한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p.33-41). 그 밖에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LH건설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pp.33-41)

7) 위탁아동 및 가정 지원 인프라

이와 같은 위탁아동 및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 및 인력은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이 중심이 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전국의 시군구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18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종사자 수는 총 225명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 등이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84명(69가정)으로 적지 않은 편이다.

제2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현황

이 소절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제도에 따른 조치 규모, 추이 및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의 보호대상아동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규 발생 규모와 그 중 가정보호 아동의 비중을 살펴보고, 원가정 외 보호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전체 규모와 가정보호 아동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보호대상아동 신규 발생 규모와 가정보호 현황

지난 20여년 간 보호대상아동의 신규 발생규모⁹⁾는 감소해왔다. 2001년 기준 총 21,816명에서 2011년 8,436명으로 급격한 감소폭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기준 4,521명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각년도b). 이러한 보호대상아동 발생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지난 20여년 간 전체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기준 11.9백만명에서 2021년 7.5백만명까지 떨어졌다(감소율 36.9%)(통계청, 각년도). 따라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감소는 이와 같은 인구의 자연감소분을 일부 반영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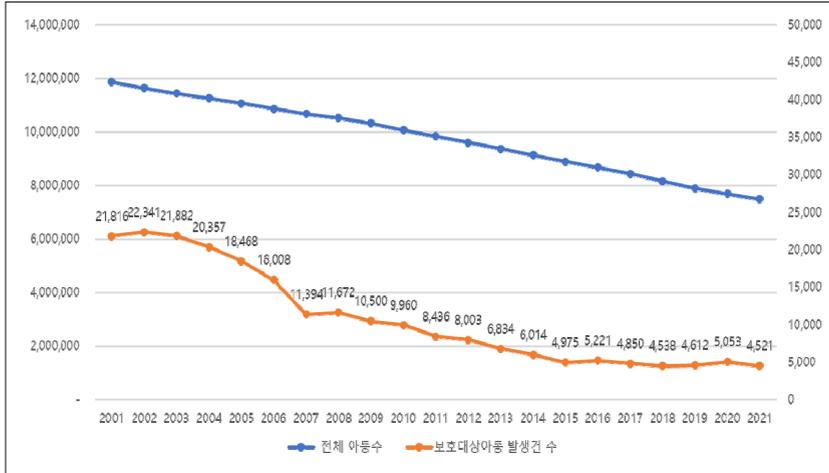
9) 당해연도에 발생 이후 귀가하거나 보호자가 인도해 간 사례까지 모두 포함

64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로 보인다.

[그림 3-4] 전체 아동 수와 보호대상아동 발생 규모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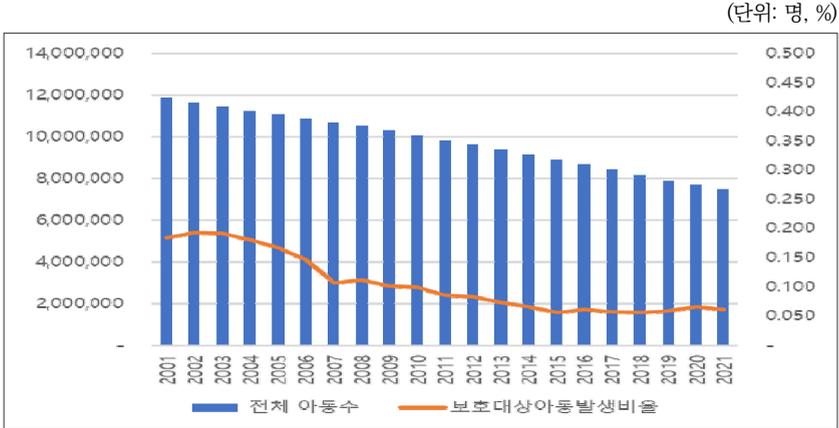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b).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에서 2023. 6.17. 인출

전체 아동인구 대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비율로 살펴보면, 최근까지도 전체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보호대상아동의 비율은 0.060% 수준에서 다소 정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전체 아동 수 대비 보호대상아동 발생 비율 연도별 추이



주: 보호대상아동 발생비율에 적용된 보호대상아동의 규모는 ‘귀가 및 보호자 인도’건을 포함한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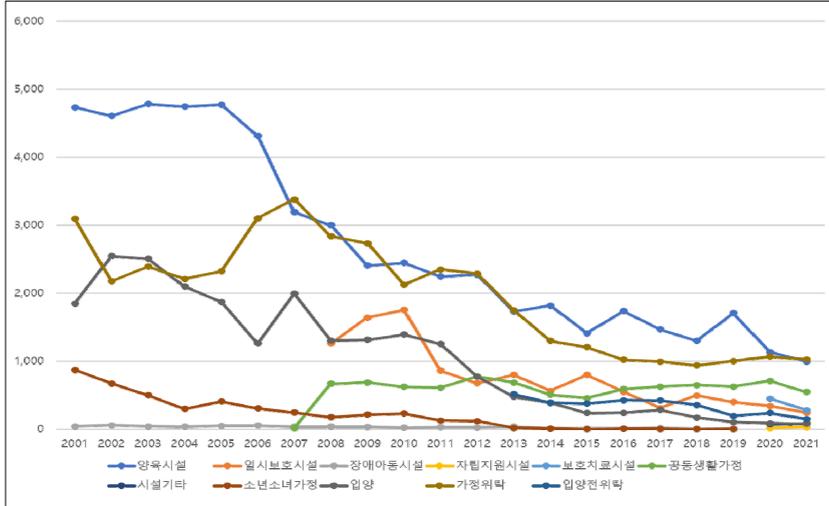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b).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vers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3.06.17. 인출.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visual/nsportalStats/detailContents.do?statJipyoid=3640&listId=A&vStatJipyoid=5072>에서 2023. 6.17. 인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비중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2006년 이전에는 아동양육시설이 4,0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이 배치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가정위탁(3,378명)이 양육시설(3,189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가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양육시설 배치아동의 수가 가정위탁보다 많았다. 2021년에는 가정위탁 배치아동(1,028명)이 양육시설(996명)보다 다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보건복지부, 각년도b).

전반적으로 볼 때, 시설보호에서는 과거 대규모 양육시설에 주로 배치되던 아동이 일시보호시설과 그룹홈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으나 여전히 양육시설에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입양과 소년소녀가정의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가정위탁이 가장 대표적인 가정보호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보건복지부, 각년도b).

[그림 3-6] 연도별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배치규모 추이: 가정외 보호 세부유형별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b).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nt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3. 6.1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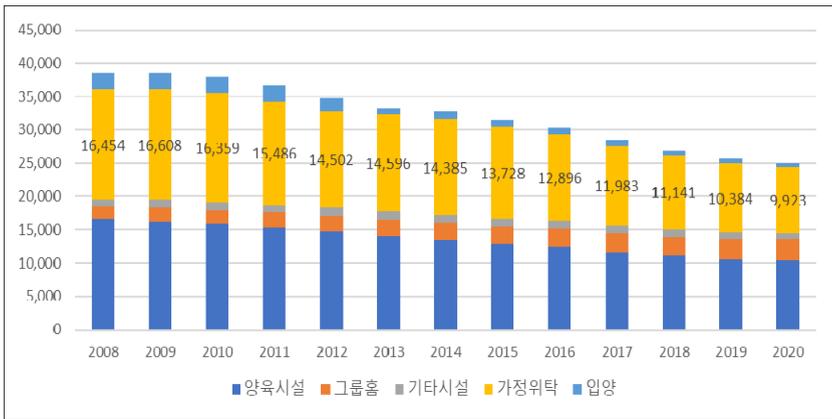
2. 보호대상아동 전체 규모 중 가정보호 현황

신규 발생 건을 포함한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5년 간 보호대상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2008년 38,597명에서 2020년 기준 24,896명까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각년도b).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또한 16,706명('08)에서 10,351명('2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룹홈 보호아동은 1,664명('08)에서 3,126명('20)으로 2배 가량 증가해 왔고,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등의 기타 시설에 보호되는 아동의 수는 1,217명('08)에서 1,004명('20)으로 다소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각년도b). 입양아동은 연도별 변화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2008년 기

준 2,556명에서 415명('20)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각년도b). 가정위탁은 16,454명('08)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9,923명이 보호되었다(보건복지부, 각년도b).

[그림 3-7]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세부 보호유형별 보호규모 추이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b).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3. 6. 17. 인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율은 2008년 42.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39.9%로 나타났으며, 입양비율은 2020년 기준 2.0%에 그쳤다. 시설보호 비율은 2008년 50.7%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기준 58.2%에 달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보호대상아동 보호방식에서는 시설보호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각년도c).

68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표 3-6〉 연도별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세부 보호유형별 보호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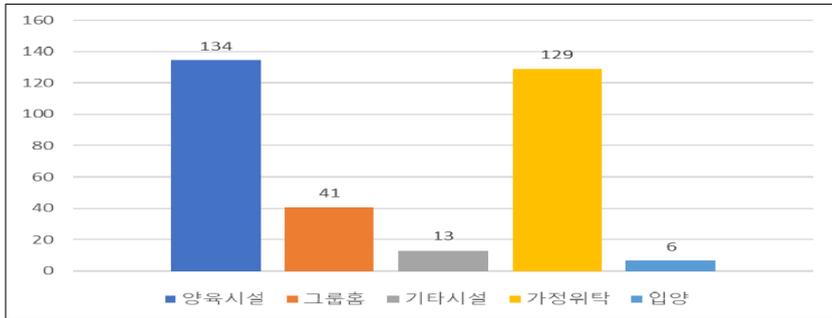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전체 아동수
	양육시설	그룹홈	기타시설	소계			
2008	43.3	4.3	3.2	50.7	42.6	6.6	38,597
2009	42.1	5.2	3.3	50.6	43.1	6.3	38,561
2010	41.5	5.6	3.3	50.5	43.0	6.5	38,011
2011	41.7	6.1	3.2	51.1	42.2	6.7	36,682
2012	42.3	7.0	3.5	52.8	41.7	5.4	34,736
2013	42.2	7.5	3.6	53.3	43.9	2.8	33,238
2014	41.0	7.9	3.6	52.5	43.9	3.6	32,775
2015	40.8	8.4	3.8	52.9	43.7	3.4	31,422
2016	41.2	9.1	4.1	54.4	42.7	2.9	30,223
2017	41.0	9.9	4.0	54.8	42.1	3.0	28,446
2018	41.3	10.7	4.1	56.0	41.4	2.5	26,887
2019	41.2	11.5	4.2	56.9	40.4	2.7	25,702
2020	41.6	12.6	4.0	58.2	39.9	2.0	24,896

자료: 보건복지부 (각년도c). 보건복지통계연보

이번에는 전체 아동 수 대비 보호유형별 아동 수를 확인해 보았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 십만명 당 양육시설보호 아동은 134명, 그룹홈 41명, 기타시설은 13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위탁 129명, 입양은 6명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ICEF, 2023).

〔그림 3-8〕 아동 십만명 당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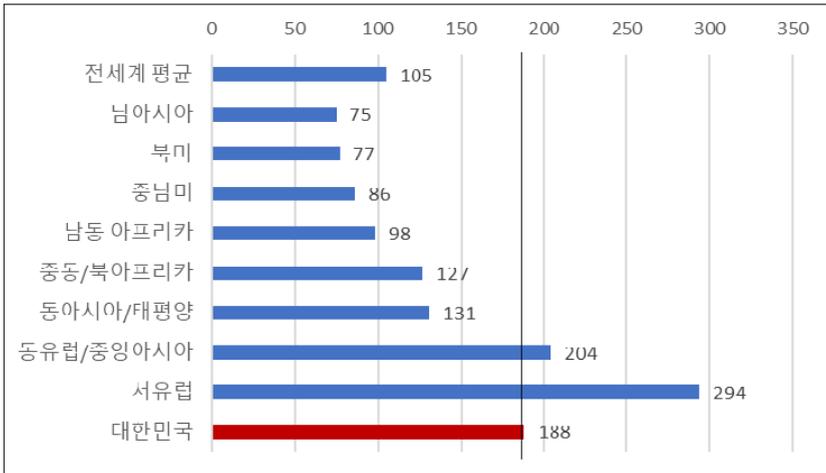


자료: UNICEF(2023). UNICEF Global Database, <https://data.unicef.org/topic/child-protection/children-alternative-care/>로부터 2023. 8. 10.에 인출

양육시설, 그룹홈 및 기타 시설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규모는 아동 십만명 당 188명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위탁에 보호되는 경우보다 1.45배 가량 더 높은 수치이다. 이를 UNICEF 데이터베이스에서 취합된 국외의 시설보호율과 비교해 보면, 전세계적으로 아동 십만명 당 105명이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미(77명)의 2.5배 수준이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도 더 높은 편이다(UNICEF, 2023).

[그림 3-9] 전세계 아동 십만명 당 시설보호 아동 수 비교

(단위: 명)



주: 통계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세계 131개국의 시설보호아동 수를 바탕으로 UNICEF에서 산출한 자료이며, 일부 국가는 미제출하였음. 한국의 경우 미제출하여,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하였음.

자료: UNICEF(2023). UNICEF Global Database, <https://data.unicef.org/topic/child-protection/children-alternative-care/> 로부터 2023.8.10.에 인출

3.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보호아동의 특성

가.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유기, 미아, 미혼부모·혼외자, 학대 등의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은 아동의 개인적 및 가정적 특성과도 연관이 된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은 통계작성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¹⁰⁾, 기준변경 전후 절대적 수치의 비교는 불필요하다. 보호대상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충분한 통계나 공개된 자료가 부재하므로 이 소절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특성의 비율을 검토하여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미혼부모·혼외자의 비중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학대(39.2%), 비행·가출·부랑(6.9%), 유기(6.8%) 등의 순이었으나 학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학대가 전체 발생원인의 60.4%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각년도a). 이후 2008년 통계기준의 재정비를 거치면서 부모이혼등(31.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가, 2021년 10.4%로 감소추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 각년도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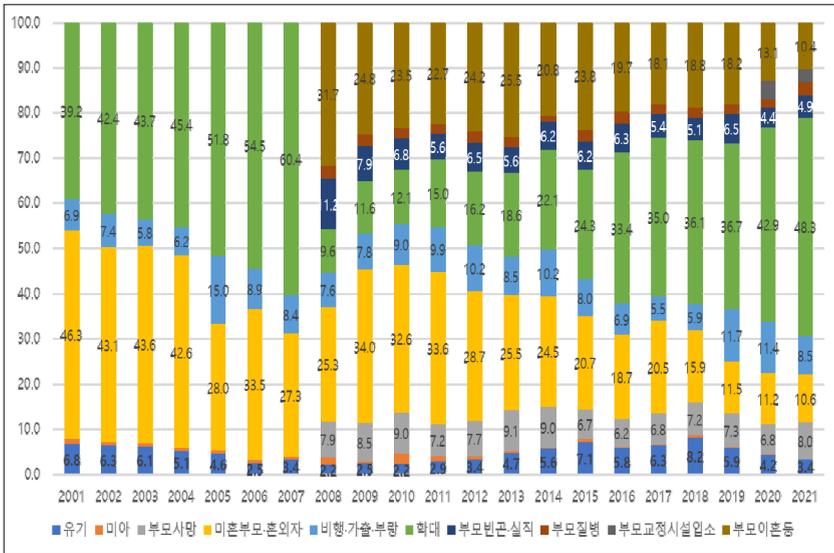
전체 발생원인 중에서 학대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각년도a). 2008년 9.6%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48.3%로 전체 보호대상아동 발생건의 절반가량이 학대로 인한 보호자 분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각년도a). 아동학대 및 방임의 특성 상 부모가 가해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

10) 당초 '유기, 미아, 미혼부모·혼외자, 비행·가출·부랑, 학대' 등 5개 기준에서 2008년 '부모사망, 부모빈곤·실직, 부모질병, 부모이혼등' 4개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부터 '부모교정시설입소' 항목이 다시 추가되어 총 10개의 기준을 두고 집계되고 있음.

피해아동은 분리조치되는 경우, 원가정복귀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학대피해가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 등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혹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개별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3-10] 전체 보호대상아동 대비 발생원인별 아동 비율 연도별 추이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a).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03_K000008&lang_mode=ko&vw_cd=MT_OTITLE&list_id=213_001_002_001_007&conn_path=14에서 2023. 6. 17. 인출

보호대상아동 발생 통계에서 집계되고 있는 아동의 개인 특성은 성별과 장애여부 정도이다. 성별의 경우 2018년에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에서 여아(51.1%)가 남아(48.9%)보다 다소 많았으나, 전반적으로는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각년도b). 장애여부의 경우 2016년 기준 2.9%의 보호대상아동이 장애가 있었으나 최

근 다소 증가추세이며, 2021년에는 전체의 3.5% 아동에게 장애가 있었다(보건복지부, 각년도b).

〈표 3-7〉 연도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추이

(단위: %, 명)

연도	성별		장애여부		전체
	남아	여아	비장애	장애	
2016	50.7	49.3	97.1	2.9	4,583
	2,324	2,259	4,451	132	
2017	50.4	49.6	96.9	3.1	4,125
	2,080	2,045	3,998	127	
2018	48.9	51.1	96.7	3.3	3,918
	1,914	2,004	3,789	129	
2019	52.8	47.2	96.5	3.5	4,047
	2,135	1,912	3,905	142	
2020	53.1	46.9	95.8	4.2	4,120
	2,188	1,932	3,948	172	
2021	50.7	49.3	96.5	3.5	3,437
	1,741	1,696	3,316	121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b).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3. 6. 17. 인출

나. 가정위탁아동의 특성

가정위탁아동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1년 기준 가정위탁이 이루어진 위탁아동의 가정위탁 사유를 살펴보았다. 부나 모의 사망, 부모의 이혼과 더불어 학대 및 방임, 부모의 별거 및 가출 등이 주요한 사유로 파악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다만 앞서 살펴본 보호대상아동의 전체 발생 건 중 48.3%가 학대 및 방임이었음에도 가정위탁에서 학대피해아동의 비중은 18.2%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전문위탁이나 일시위탁의 학대 및 방임아동 보호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전문위탁과 일시위탁에 보호되는 신규 아동의 수가 매우 적은 편(각각 92명, 74명)으로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학대로 인한 발생 건 중 극히 일부만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혈연위탁의 경우 위탁사유가 부나 모의 사망(24.5%), 부모의 이혼(21.5%), 부모의 별거 및 가출(15.6%)이 주요한 원인이며, 학대 및 방임(11.1%)은 낮은 편으로, 혈연위탁이 아동의 친부모에게 닥친 불행이나 별거·이혼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의 안전망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비혈연 일반위탁에 배치되는 아동의 가정위탁 사유는 학대 및 방임(23.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혼모 및 혼외출생(15.1%), 부모의 별거 및 가출(14.5%), 시설의뢰(9.3%) 등으로 혈연위탁의 위탁사유와는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전문위탁의 50.0%가, 일시위탁의 62.2%가 학대 및 방임이 원인이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8〉 2021년 기준 신규 가정위탁 사유

(단위: 건,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가출	이혼	부모 수감	실직/빈곤	부모 질병	학대/방임	미혼모(부)/혼외출생	시설의뢰	부모 장애	기타
계	1,333	73	261	190	240	103	24	50	243	66	24	14	45
	100.0	5.5	19.6	14.3	18.0	7.7	1.8	3.8	18.2	5.0	1.8	1.1	3.4
일반(친인척)	995	70	244	155	214	94	18	37	110	23	2	6	22
	100.0	7.0	24.5	15.6	21.5	9.4	1.8	3.7	11.1	2.3	0.2	0.6	2.2
일반(친인척 외)	172	3	15	25	16	6	5	5	41	26	16	6	8
	100.0	1.7	8.7	14.5	9.3	3.5	2.9	2.9	23.8	15.1	9.3	3.5	4.7
전문	92	-	1	7	8	3	-	1	46	13	4	1	8
	100.0	-	1.1	7.6	8.7	3.3	-	1.1	50.0	14.1	4.3	1.1	8.7
일시	74	-	1	3	2	-	1	7	46	4	2	1	7
	100.0	-	1.4	4.1	2.7	-	1.4	9.5	62.2	5.4	2.7	1.4	9.5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44.

이번에는 전체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위탁아동들의 장애 및 학대 여부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보호대상아동 전체 발생 건 중 장애아동의 비율(3.5%)과 비교할 때, 가정위탁에 보호되는 아동 중 장애아동의 비율은 3.7%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전문위탁(10명), 비혈연 일반 가정위탁(64명)에 보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의 비율은 전반적으로는 4.8%로 매우 낮았으나, 전문위탁(45.5%)과 일시위탁(32.6%)에서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9〉 2021년 기준 위탁아동의 장애 및 학대 여부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학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계	9,541	9,190	351	9,080	461
	100.0	96.3	3.7	95.2	4.8
일반 (친인척)	8,452	8,175	277	8,200	252
	100.0	96.7	3.3	97.0	3.0
일반 (친인척 외)	947	883	64	797	150
	100.0	93.2	6.8	84.2	15.8
전문	99	89	10	54	45
	100.0	89.9	10.1	54.5	45.5
일시	43	43	-	29	14
	100.0	100.0	-	67.4	32.6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30

위탁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많았으나 전문위탁의 경우 남아의 비율(61.6%)이 더욱 높았고, 일시위탁의 경우 여아의 비율(55.8%)이 남아보다 높았다. 위탁아동의 연령은 17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이상, 14~16세, 11~13세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혈연위탁의 경우 이러한 경향과 동일한 비율 분포를 보였으나, 비혈연 일반위탁의 경우 17~19세(20.1%) 다음으로 4~7세(17.1%), 8~10세(15.5%) 등으로 연령대가 낮은 아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문위탁과 일시위탁의 경우에는 특히 어린 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일시위탁의 74.4%와 전문위탁의 45.5%가 1~3세 영유아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10〉 2021년 기준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남아	여아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9,541	4,930	4,611	201	564	894	1,332	1,856	2,462	2,232
	100.0	51.7	48.3	2.1	5.9	9.4	14.0	19.5	25.8	23.4
일반 (친인척)	8,452	4,331	4,121	58	374	736	1,211	1,723	2,268	2,082
	100.0	51.2	48.8	0.7	4.4	8.7	14.3	20.4	26.8	24.6
일반 (친인척 외)	947	519	428	66	162	147	108	124	190	150
	100.0	54.8	45.2	7.0	17.1	15.5	11.4	13.1	20.1	15.8
전문	99	61	38	45	19	9	13	9	4	-
	100.0	61.6	38.4	45.5	19.2	9.1	13.1	9.1	4.0	-
일시	43	19	24	32	9	2	-	-	-	-
	100.0	44.2	55.8	74.4	20.9	4.7	-	-	-	-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18

4. 가정보호의 현황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중의 대다수는 혈연가정위탁이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탁보호하고 있는 혈연가정위탁이 65.9%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인척이 보호하고 있는 혈연가정위탁은 24.7% 가량 차지하고 있다(2020년 기준). 전체 혈연가정위탁의 비중은 2008년 92.6%에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가 2012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2020년 기준) 90.6%에 달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11〉 가정보호 세부유형별 보호대상아동의 규모 및 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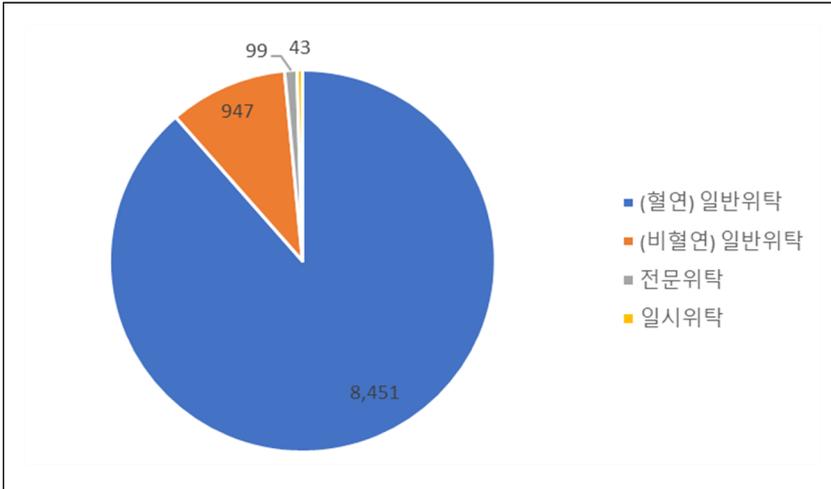
구분	계		조부모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비혈연) 가정위탁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2008	16,454	100.0	10,709	65.1	4,519	27.5	1,226	7.5
2009	16,608	100.0	10,947	65.9	4,503	27.1	1,158	7.0
2010	16,359	100.0	10,865	66.4	4,371	26.7	1,123	6.9
2011	15,486	100.0	10,205	65.9	4,260	27.5	1,021	6.6
2012	14,502	100.0	9,732	67.1	3,831	26.4	939	6.5
2013	14,596	100.0	9,776	67.0	3,843	26.3	977	6.7
2014	14,385	100.0	9,550	66.4	3,816	26.5	1,019	7.1
2015	13,728	100.0	9,127	66.5	3,556	25.9	1,045	7.6
2016	12,896	100.0	8,578	66.5	3,348	26.0	970	7.5
2017	11,983	100.0	7,950	66.3	3,100	25.9	933	7.8
2018	11,141	100.0	7,426	66.7	2,801	25.1	914	8.2
2019	10,384	100.0	6,905	66.5	2,572	24.8	907	8.7
2020	9,923	100.0	6,542	65.9	2,447	24.7	934	9.4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16

2021년 기준 위탁가정은 총 7,801가정으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 가정이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위탁가정은 9.9%에 그쳤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전문위탁가정은 0.8%, 일시위탁 가정은 0.4%에 불과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0년 대비 혈연가정위탁에 배치된 아동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비혈연 일반위탁의 8.9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그림 3-11]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별 보호아동 수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위탁아동의 규모는 9,540명으로 조부모 위탁아동이 64.0%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 위탁아동이 24.6%, 일반위탁아동은 9.9%, 전문위탁아동이 1.0%, 일시위탁아동은 0.5% 등의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각 세부 위탁유형별로 위탁 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아동의 중등학령 이상인 비율은 71.8%로 가장 높았고, 미취학아동의 비율은 5.1%에 그쳤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반면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51.0%가 초등이하이었고, 미취학아동의 비율 또한 24.1%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미취학아동의 비율은 일시가정위탁에서 9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위탁아동의 경우에도 64.6%가 미취학, 22.2%는 초등학령으로 어린 아동들이 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78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표 3-1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단위: 명)

구분	가정위탁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일시 가정위탁
'21년 말 기준 가정 수	6,931		775	66	29
보호아동 현원	6,107	2,344	947	99	43
미취학	432		228	64	41
초등	1,947		255	22	2
중고등	3,991		314	13	0
기타	2,082		150	0	0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18.

위탁부모의 연령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60세~69세인 비율(31.4%)이 가장 높았으며, 70세~79세(25.1%), 50~59세(18.9%), 80세 이상(12.2%) 등의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위탁유형별로는 혈연위탁인 경우 70대 이상인 비율이 4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으며, 비혈연 일반위탁은 60대가 36.8%, 50대가 36.3%이었고, 전문위탁과 일시위탁의 부모 연령대는 비교적 다소 낮은 편이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13〉 2021년 기준 위탁부모 연령

(단위: 명)

구분	계	위탁부모 연령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7,830	42	71	188	669	1,478	2,462	1,968	952
	100.0	0.5	0.9	2.4	8.5	18.9	31.4	25.1	12.2
일반 (친인척)	6,931	42	71	148	517	1,142	2,157	1,910	944
	100.0	0.6	1.0	2.1	7.5	16.5	31.1	27.6	13.6
일반 (친인척 외)	775	-	-	31	113	281	285	57	8
	100.0	-	-	4.0	14.6	36.3	36.8	7.4	1.0
전문	66	-	-	6	22	28	10	-	-
	100.0	-	-	9.1	33.3	42.4	15.2	-	-
일시	29	-	-	3	14	11	1	-	-
	100.0	-	-	10.3	48.3	37.9	3.4	-	-
기타	29	-	-	-	3	15	10	1	-
	100.0	-	-	-	10.3	51.7	34.5	3.4	-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104.

위탁부모의 소득수준은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만원 이상(11.7%), 100~150만원 미만(11.3%) 등의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특히 혈연 위탁가정에서 월 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부모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을 보였으며,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비율이 7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비혈연위탁가정의 경우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아, 혈연위탁과 대비되는 경향을 보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14〉 위탁유형별 위탁부모의 소득

(단위: 명)

구분	계	위탁부모 소득(월 수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파악 안됨
계	7,830	3,405	854	881	567	609	210	918	386
	100.0	43.5	10.9	11.3	7.2	7.8	2.7	11.7	4.9
일반 (친인척)	6,931	3,347	826	801	495	470	139	470	383
	100.0	48.3	11.9	11.6	7.1	6.8	2.0	6.8	5.5
일반 (친인척 외)	775	51	27	72	68	121	60	375	1
	100.0	6.6	3.5	9.3	8.8	15.6	7.7	48.4	0.1
전문	66	4	-	2	2	9	7	40	2
	100.0	6.1	-	3.0	3.0	13.6	10.6	60.6	3.0
일시	29	1	-	2	-	2	1	23	-
	100.0	3.4	-	6.9	-	6.9	3.4	79.3	-
기타	29	2	1	4	2	7	3	10	-
	100.0	6.9	3.4	13.8	6.9	24.1	10.3	34.5	-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110.

전체 가정위탁아동들의 위탁보호기간은 평균 6년으로 나타났으며, 비혈연 일반위탁(6년 9개월), 혈연위탁(5년 9개월), 전문위탁(2년 5개월), 일시 위탁(2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15〉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에 따른 평균 위탁기간: 보호 중 아동

구분	혈연위탁	비혈연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	전체 가정위탁
평균 위탁기간	5년9개월	6년 9개월	2년 5개월	2개월	6년
아동 수	8,452명	947명	99명	43명	9,541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31.

위탁종결아동을 기준으로 평균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8년 7개월로 보호 중 아동 위탁기간보다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위탁유형별로는 혈연위탁(9년1개월), 비혈연 일반위탁(7년8개월), 전문위탁(1년 8개월), 일시위탁(9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보호 중 아동의 위탁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보호종료 아동의 위탁기간은 혈연위탁에서 가장 길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16〉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에 따른 평균 위탁기간: 보호종결 아동

구분	혈연위탁	비혈연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	전체 가정위탁
평균 위탁기간	9년1개월	7년8개월	1년8개월	9개월	8년7개월
아동 수	1,428명	107명	7명	39명	1,581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81.

위탁종결아동의 가정위탁 종결 사유는 전반적으로 보호연장종결(49.5%)과 만18세 이상으로 종결(1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그 밖에 친가정복귀(13.5%), 위탁가정의 환경변화(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위탁유형별로는 혈연위탁에서 보호연장종결(52.5%)과 만18세 이상으로 종결(17.4%)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혈연 일반위탁에서는 보호연장종결(29.9%) 다음으로 친가정복귀(19.6%), 만18세 이상으로

로 종결(11.2%) 등의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전문 위탁과 일시위탁은 친가정복귀로 인한 종결이 가장 높은 비율(각각 42.9%, 53.8%)을 보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입양은 전체 종결건 중 0.6%에만 해당하여 가정위탁에서 보호되다가 입양이 되는 사례는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17〉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종결사유

(단위: 명, %)

구분	계	위탁종결사유								
		친가정 복귀	위탁 가정의 환경 변화	위탁 가정과 친가정의 문제	아동과 위탁 가정의 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	만28세 이상으로 종결	보호 연장 종결	입양	기타
계	1,581	214	21	1	8	7	260	782	10	278
	100.0	13.5	1.3	0.1	0.5	0.4	16.4	49.5	0.6	17.6
일반 (친인척)	1,428	169	14	1	2	2	248	750	2	240
	100.0	11.8	1.0	0.1	0.1	0.1	17.4	52.5	0.1	16.8
일반 (친인척 외)	107	21	6	-	6	5	12	32	4	21
	100.0	19.6	5.6	-	5.6	4.7	11.2	29.9	3.7	19.6
전문	7	3	1	-	-	-	-	-	-	3
	100.0	42.9	14.3	-	-	-	-	-	-	42.9
일시	39	32	-	-	-	-	-	-	4	14
	100.0	53.8	-	-	-	-	-	-	10.3	35.9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79.

위탁종결 후 아동이 어디로 배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전체 위탁종결 아동 중 연장종료(43.1%)와 보호종료(7.4%)되는 아동들을 제외하면, 친가정복귀(14.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취업(13.0%), 시설입소(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및 그룹홈)가 3.1%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혈연위탁의 경우 시설입소 비율이 다소 낮을 뿐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비혈연 일반위탁의 경우 친가정복귀(20.6%)와 시설입소(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및 그

8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그룹 합산, 14.9%) 비율이 혈연위탁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전문위탁과 일시위탁의 경우 친가정복귀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입소비율(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및 그룹홈 합산)이 각각 57.2%, 15.4%로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표 3-18〉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종결 후 배치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종결 후 배치											
		친가정 복귀	양육 시설 입소	일시 보호 시설 입소	그룹홈 입소	소년소녀가정 세대채택 정	입양	진학	취업	군입대	자립준비		기타
											보호 종료	연장 종료	
계	1,581	223	33	10	7	-	11	8	206	11	117	681	274
	100.0	14.1	2.1	0.6	0.4	-	0.7	0.5	13.0	0.7	7.4	43.1	17.3
일반 (친인척)	1,428	178	17	4	3	-	2	6	196	11	111	655	245
	100.0	12.5	1.2	0.3	0.2	-	0.1	0.4	13.7	0.8	7.8	45.9	17.2
일반 (친인척 외)	107	22	9	4	3	-	6	2	10	-	5	26	20
	100.0	20.6	8.4	3.7	2.8	-	5.6	1.9	9.3	-	4.7	24.3	18.7
전문	7	3	2	1	1	-	-	-	-	-	-	-	-
	100.0	42.9	28.6	14.3	14.3	-	-	-	-	-	-	-	-
일시	39	20	5	1	-	-	3	-	-	-	1	-	9
	100.0	51.3	12.8	2.6	-	-	7.7	-	-	-	2.6	-	23.1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88.

제3절 시사점

이 절에서 국내 가정보호제도와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가정위탁제도는 위탁가정과 아동의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제

시해왔다. 전문가정위탁제도와 일시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고, 위탁가정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인력을 확대하고, 위탁부모의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과 더불어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보호대상아동 중 시설보호의 비중이 가정위탁의 비중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십만명당 시설보호아동 규모는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가정위탁의 활성화가 시급히 가속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 제도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있어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과반이상이 시설로 보호조치되고 있으므로 원칙의 실현이 아직은 요원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위탁제도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보호의 영구성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충분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위탁아동의 평균 보호기간이 8년 7개월인 것을 감안해볼 때, 가정위탁의 일시보호적인 특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영구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 보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후견인 자격의 확보 시점과 적극적인 원가정의 복귀 준비에 대한 지원과 입양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위탁보호대상 아동의 선정기준으로는 연령과 보호대상아동 여부 외에 별도의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호대상아동의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위탁가정으로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제도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아동의 욕구나 필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친족보호아동은 사적인

영역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그 현황 또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가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인 조손가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대상 가구의 발굴 및 신청은 읍면동에서, 선정은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23). 조손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은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손가족에서 보호되는 아동이거나 조부모가 아닌 친인척에 의하여 비공식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지원 또한 제공되기 어렵다(여성가족부, 2023). 아동복지법 상 친족보호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친족보호아동의 발생과 현황, 그리고 욕구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도적으로 전문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이 도입되었으나, 학대피해아동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학대피해 및 장애 관련 욕구가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현행 전문가정위탁의 자격요건으로(위탁가정 경험 3년 또는 각종 자격증) 미루어 볼 때,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가정보호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정위탁이 치료적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과 전문적인 양성교육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위탁가정의 승인절차는 신규 위탁인 경우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재승인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탁의 책정절차는 위탁유형별로 상이한데, 혈연위탁의 책정보다는 비혈연위탁이나 전문위탁의 책정에 관련 기관의 역할이 더 복잡하게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위탁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례관리서비스의 빈도는 연 4회 이상(통합사례의 경우 월 1회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 분리보호

대상아동의 상황을 점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관과 인력이 제한적으로,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대상 아동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은 가정 위탁지원센터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면접교섭 단계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때,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을 준비시키는 부분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정의 회복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위탁가정의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급규모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만 13세 이상)까지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부 시도에서는 시군별로도 양육보조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거주지에 따라 위탁가정이 수령하는 현금급여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의 국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위탁가정의 유형별로는 여전히 혈연 위탁가정이 비혈연 일반 위탁의 약 9배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 및 일시위탁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위탁사유의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볼 때, 혈연위탁은 아동의 친부모에게 닥친 위험상황에서 아동 보호의 안전망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혈연위탁은 학대 및 방임 피해아동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특성을 보여, 어느 한 유형을 줄이기 보다는 두 가지 유형 모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열째, 위탁종결 후 시설로 입소하는 비율이 특히 비혈연 일반위탁가정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의 보호체계 내에서 표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로 전원하게 된 사유를 파악하여 최대한 가정보호에서 시설로 이동하는 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경험과 인식

제1절 아동보호체계 실무자의 인식

제2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경험

제3절 가정보호 대안적 사례 경험

제 4 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경험과 인식

현행 가정위탁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3).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위탁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동이 보호되는 물리적 공간을 시설에서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위탁가정에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위탁과정과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보장·확대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법률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중장기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주된 관심은 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비율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규모 등으로 확인되는, 위탁가정으로의 배치에 있다. 위탁가정으로 배치된 이후의 아동의 삶과 경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많지 않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하고, 이들의 정착과 성장 그리고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실무자의 경험과 이를 직접 경험하는 위탁아동의 삶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실무자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위탁아동이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가정의 배치와 정착, 갈등과 위기, 그리고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가정위탁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위탁부모의 인터뷰 분석과 가정위탁을 경험하고 자립한 청년들의 경험을 사례연구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실무자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현행 가정위탁 업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파악할 뿐 아니라 가정위탁을 경험한 청년들이 자립하기까지의 삶의 궤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위탁과정에서 고려되었어야 할 지원체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제도의 쟁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위탁 아동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도되어 왔던 대안적 사례들을 분석하여 대안적 사례를 통해 경험한 한계와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안적 사례들은 공동생활가정의 원가정 복귀 지원 사례와 양육시설의 시설 소규모화 사례로 가정보호의 경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동생활가정의 원가정 복귀 지원 사례를 통하여 위탁아동 보호의 영구성과 원가정 복귀 지원에 주는 함의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며, 시설 소규모화 사례를 통해 탈시설의 맥락에서 가정보호의 대안적 방안에 필요한 정책적 요소가 무엇인지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1절 아동보호체계 실무자 및 위탁부모의 인식

아동보호체계 내 가정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위탁부모의 아동보호경험을 살펴보고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무자와 위탁부모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면접조사의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실무자 및 위탁부모 면접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및 방법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보호가 아동보호체계 실무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정보호의 촉진·저해요인과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참여자의 모집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추천을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도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¹¹⁾과 참여의사가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로는 아동보호체계 현장에서 가정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로 ① 보호대상아동의 초기면접, 배치 및 양육점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 ② 위탁가정을 발굴 및 연계하고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실무자, ③ 입양기관의 실무자 그리고 ④ 보호대상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양육하는 위탁부모 등 네 가지 유형의 실무자와 위탁부모를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해당 업무경험이 일정 기간 이상인 실무자 중 이 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실무자를 선정하였으며, 위탁부모의 경우 위탁가정의 유형별로 아동보호 경력이 5년 이상이고 65세 이하로 인터뷰가 가능한 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전문위탁부모와 일시위탁부모의 경우 해당 제도의 도입 이후 2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아동보호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인으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2인, 가정위탁지원센터 2

11) 아동보호전담요원 1년 6개월 이상,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 5년 이상

인, 입양기관 담당자 1인, 위탁부모 5인(친인척, 대리, 비혈연, 전문, 일시 각 1인)으로 구성되었다.

〈표 4-1〉 실무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지역	기관유형	경력
A	여	30~40대	수도권	시군구	2년 미만
B	여	30~40대	수도권	시군구	2년 이상
C	여	30~40대	비수도권	가정위탁지원센터	5년 이상
D	여	30~40대	수도권	가정위탁지원센터	5년 이상
E	여	30~40대	수도권	입양기관	5년 이상
G(비혈연)	여	50대~60대	비수도권	비혈연 일반위탁모	5년 이상
H(일시)	여	50대~60대	비수도권	일시위탁모	2년 미만
I(전문)	여	30~40대	비수도권	전문위탁모	5년 이상
J(친인척)	여	30~40대	비수도권	친인척위탁모	5년 이상
K(대리)	여	50대~60대	수도권	조부모위탁모	5년 이상

조사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으로, 연구진이 사전에 작성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나 조사대상자의 답변내용에 따라서 질문지 내용 외에도 추가 질문을 제시하여 심층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온라인 화상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일대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특히 위탁부모의 경우 사적인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인터뷰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인터뷰 보다는 일대일 인터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의 경우 양육 점검이나 긴급한 사례에 대응 등의 사유로 조사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5주 가량으로, 조사참여자(그룹) 당 1회씩 회당 약 2시간씩 소요되었다.

분석자료는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개인정보 활용 및 녹취 동의를 받

아 회의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녹취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조사자료의 분석은 연구진이 녹취록을 읽으면서 주제별로 범주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도출된 범주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용문의 출처는 첫 번째 면접조사 참여자는 A로 두 번째 참여자는 B 등으로 참여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하였다.

나. 조사내용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질문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마련되었는데,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실무자 대상 질문지와 위탁부모 대상 질문지로 구분하였다. 아동보호체계 실무현장에서 가정위탁 업무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관 실무자 조사의 경우 기본정보, 아동보호 업무 수행 경험,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위탁부모 조사의 경우 기본정보, 위탁부모로서의 경험,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등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4-2〉 실무자 면접조사 항목

구분	조사내용	
아동보호 관련 기관 실무자	기본정보	연령, 성별, 기관유형, 직책, 담당업무, 현 직책의 업무경력, 아동보호관련 전체 업무경력
	가정위탁업무 수행 경험	담당업무의 현황, 절차 및 특성, 현재 업무 상 담당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현황 및 특성, 아동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경험하는 어려운 점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의 의미, 가정보호의 필요성, 가정보호를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및 지원체계, 가정보호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정부의 가정보호 활성화 정책 및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의견, 가정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분	조사내용	
위탁부모	기본정보	연령, 성별, 가구형태, 위탁가정 유형, 가정위탁 기간
	위탁부모로서의 경험	위탁부모가 된 계기(최초, 두 번째 이후[여러번 위탁아동을 보호한 경험이 있는 경우]), 위탁아동들의 특성, 위탁부모-아동 간 매칭 및 배치, 위탁아동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 위탁아동보호에 있어서 어려운 점, 위탁아동과 원가정과의 관계, 위탁아동과의 이별과정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의 의미, 가정보호의 필요성, 가정보호를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의 한계, 가정보호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정부의 가정보호 활성화 정책 및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의견, 가정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사 결과

가. 주요 결과

면접조사 결과로 도출된 주요 주제들은 실무자들이 가지는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 가정보호 저해요인, 가정보호 촉진요인, 일시적 가정보호에서 영구보호로의 전환 어려움,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기 세부 주제와 내용들로 정리하였다.

(표 4-3) 실무자 면접조사 주요 결과

주제	세부주제	주요 내용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최선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기하지 않는 일관된 주양육자의 존재감 아동의 정서적 안정 시설보다 적은 사회적 낙인감
	가족이라는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 줌 엄마로서의 역할(친밀감)을 해 나감
가정보호 촉진요인	유대관계와 사명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연 간 유대관계 위탁부모의 봉사정신과 사명감
	도움이 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치료, 부모교육, 물품지원
	위탁부모의 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회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
	위탁가정에서 선호하는 아동의 특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		
가정보호 저해요인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위탁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
	예비 위탁가정 인력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혈연 위탁가정의 부족 위탁가정이 기피하는 아동에게 주어지지 않는 가정보호 기회
	위탁아동 돌봄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아동의 특성 돌봄의 어려움
	위탁가정 대상 서비스의 질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보다 충분하지 않은 지원금과 서비스 시설보호보다 복잡한 배치절차 위탁유형별로 상이한 절차(조건) 인력의 부족과 잦은 교체
일시적 가정보호에서 영구보호로의 전환 어려움	영구보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아동의 정서적 안정 원가정 복귀 후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
	쉽지 않은 원가정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이 두절된 친부모 변하지 않는 친부모 친부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
	가정위탁→입양의 유인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은 별도의 체계 입양 시 경제적 지원 감소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원금 및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지원금 증액 및 국비지원 지원의 증대
	인력증대 및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부모 양육기술 교육 강화 인력의 근속기간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 1인당 사례 수 감소 방안 마련
	대안적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적 위탁부모 도입 가정보호 외 대안적 방안 필요
	홍보 및 연계 확대	

나. 실무자와 위탁부모의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

1)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최선의 조치

가) 포기하지 않는 일관된 주양육자의 존재감

실무자들은 위탁가정의 보호자들이 위탁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양육 의지가 높은 반면 시설의 경우 아동이 문제행동이나 일탈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보호조치 변경을 의뢰하는 쉬운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들은 보호 중 주양육자가 거의 변경 되지 않으므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외부 상황의 변화나 자극에 대하여 수용성이나 대응력이 더 높은 편이라고 언급하였다. 실무자는 위탁가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위탁부모가 아동의 삶에 주는 의미와 존재감은 시설보호아동이 가질 수 없는 아동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가정위탁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믿게 된 이유이기도 하였다.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가정위탁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아이들의 보호조치를 바꿔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만나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시설에서 만약에 아동이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친구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상황이 될 때에는 보호조치에 대한 변경을 좀 요청하시는...(A)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준 그 보호자 1명이 그 아이한테 주는 존재감이 뭐 저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가정위탁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A)

반면 시설의 보육사는 시설장이나 보육사의 퇴사 혹은 보육사별로 담당하는 아동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주 양육자의 변동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설아동의 입장에서는 양육스타일이나 양육방

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나) 아동의 정서적 안정

실무자들은 위탁아동들이 시설보호아동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가정 내에 아동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의지할 사람이 일관되게 존재할 뿐 아니라, 위탁 부모에게 아동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가정보호가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최선의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설과 비교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정 보호가. 훨씬 아이들한테는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시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표현. 닭장 같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거기 닭장 같아서 가기 싫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B)

저희가 지금 3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모두 다 정말 가정 보호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의 조치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저희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형의 보호율타리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좀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호조치를 할 때 사실 가정형 보호조치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싶은 소망도 있기는 합니다.(A)

다) 시설보다 적은 사회적 낙인감

시설보호는 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규모 시설의 경우 아동이 지인과 친구들에게 거주지를 밝히게 되면 시설아동으로 낙인이 되기 쉬워 주변에 주거지를 알리지 않는 시설아동들이 있었다. 반면 가정위탁은 가정의 환경에서 거주하므로 시설아동에 비해 낙인의 두려움이 적다고 여겼다.

2) 가족이라는 울타리

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 줌

실무자와 위탁부모들에게 있어 가정보호의 의미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있어서 원가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아이에게 울타리가 되는 가정과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엄마’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갈등의 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정서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로서 가정위탁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이 성인이 되어 본인의 가정을 가지게 될 때, 가정의 의미와 가정보호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저희 집에 온 아이가 내가 그때 왜 다른 시설로 안 가고 가정 위탁에 가고 싶었는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좀 몇 살 좀 커서 시설에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얘기를 많이 했대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뭘 사줬고 잠은 어떻게 재워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재워 본, 준 적이 없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를 만들고 싶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살고 싶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될 건데 내가 엄마, 아빠를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엄마, 아빠를 할 수가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I)

나) 엄마로서의 역할(친밀감)을 해 나감

위탁부모들은 가정위탁을 통해 위탁아동의 친부모의 어려운 환경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친모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친정엄마’가 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위탁아동들에게는 엄마로서 최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실행하면서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가정위탁이 단지 가정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가족의 의미가 더해진다.

친모들이 우리 딸들 나이 때다 보니까 아이도 안타깝지만 친모들도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위탁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친모들이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친모들도 돌봄을 못 받고 자랐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육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어른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른이 친정엄마 같은 어른이 돼주고 싶더라고요.(G)

이 아이가 지켜보는 과정 중에 엄마가 막 진짜 물, 불을 안 가리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적극 지지? 엄마 말을 다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생긴 거 같아요. 그 이후에. (I)

다. 가정보호의 촉진요인

1) 유대관계와 사명감

혈연위탁가정의 경우 위탁가정의 발굴이나 위탁가정으로의 책정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나 시간이 일반위탁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고 위탁부모와 아동 간에 이미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존재한다면 위탁가정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혈연위탁모의 경우 친인척의 사망, 미혼모였던 자녀의 가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친권포기 등 혈연관계에 있는 위탁아동 친부모의 상황이 어려워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되면서 위탁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가족으로서의 책임감과 연민 등이 아동을 시설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본인의 가정에서 위탁하게 된 주요한 이유라고 보았다. 아동이 친부모를 상실했을 당시에 본인의 가정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친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가족으로서의 책임감과 유대관계는 가정보호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실 남이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설로 보내기로 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이제 가족들이 그냥 와서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고 다음 날 본인이 가서 데리고 오겠다 하고 그냥 애들을 무작정 데리고 와서 그러면서 살게 됐어요. (중략)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여동생이랑 너무 좋지 않게 살았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J)

저희 세대의 상식으로는 아이의 생명은 우리의 생활이나 나의 어떤 입장,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고려 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0순위예요. 생명이 먼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선택지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K)

위탁아동 보호 중에도 위탁부모와 친부모 간에 연락이 가능하고, 친부모와 위탁아동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배려가 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혈연과 가족 간 유대로부터 이어진 위탁가정과 친부모 간의 연결고리(끈)으로 볼 수 있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면접교섭 진행하는 가정위탁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사망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외국인이신데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이 불가해서가지고 지금 고모님께서 양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고모님께서도 이제 친모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조금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가지고 그 친구들은 오히려 원가정에 복귀한다기보다는 지속, 계속 교류하고 지낸다 라고 많이 느끼고 있어서..(A)

비혈연 위탁가정의 경우 혈연위탁의 봉사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위탁부모인 지인의 권유 등으로 가정위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혈연이나 다른 유대관계는 없으나, 예비 위탁부모가 가지는 사명감과 연민, 봉사정신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를 견인하는 데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제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우울증이 왔죠. 그래서 제가 미스(miss) 때부터 다녔던 봉사를 가던 시설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애네 그 자매 중에 작은 아이가. 두 돌이 안 지난 3살인데. 계단 밑에 이렇게 서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보니

간. 한 번만 눈을 깜빡하면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울지를 않고 울음을 꼭 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재를 내가 키워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던 거죠. (I)

2) 위탁가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들과의 갈등이 있거나 다양한 위기의 상황에서 사례관리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례관리담당자는 위탁부모들에게 있어서 상담자이며, 지지자,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제공자 그리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위탁부모들은 정기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에게 고충을 토로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같이 키워요” 라는 사례관리자의 말에 크게 지지가 되었다는 위탁부모의 언급은 위탁가정의 고충을 극복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사례관리서비스의 정서적·지적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가 모를 때마다 전화하고 이렇게 막 힘들면 울고, 울면서 또 그러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이 키운다라고 얘기를 뭐, 우리 같이 키워요라는 그런 게 제 머릿속에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 같이 키우자고 했으니까 전화를 좀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중략)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 저기 아현이, 성현이 아기들 이렇게 그 국가에서 지켜보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더 함부로 못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게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J)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상담할 수 있는. 사실 직접적인 도움이 없더라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필요를 누가 들어줬을 때 우리는 또 해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해소가 좀 되었고. (G)

심리치료와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또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에게 트라우마나 정서행동 상의 어려움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은 아동의 스

트레스를 줄여주고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위탁부모도 위탁아동을 양육함으로써 인하여 받게 되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상담서비스를 통해서 덜어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상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도 상담 받고 저도 상담 받고 그랬거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중략) 이제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사실은 어디, 누군가한테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서 저도 그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J)

(전문심리상담)기회를 통해서 제 양육의 문제인지 아이의 기질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얘가 어떤 기질의 아이다. 어떤 행동 특성이 더 도드라진다. 에 대해서 명문화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G)

위탁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데에 있어서 부모교육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내용이 아동을 지도하고 양육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 시 다른 위탁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위탁부모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도움 받았던 거는 정기적인 부모 교육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친 아이 양육에 도움 받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친아이를 둘이나 키워봤지만 그래도 내가 몰랐던 부분.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G)

의무 교육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정말 빠지지 않고 갔거든요. 그래야지만 정보 같은 것도 알고 이제 그 같이 모여 있는 분들에서의 또 그런 유대감, 그냥 말은 없지만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J)

양육보조금 외에도 육아용품 등의 물품지원이 가능한 경우 정부나 가정위탁지원센터(법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지원은

위탁아동의 초기정착 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육아용품 구입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의 가정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낮추고 영유아의 서비스 진입장벽 또한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지원으로 물품 지원을 저희들이 초기 정착할 때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생계비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기 정착 때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아이 육아용품의 도움을 받았죠.(G)

전문위탁이 생기기 전에는 영유아를 받게 되면 사실 육아용품이 전혀 없는 집에서 아이를 받게 되면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작은 금액에서부터 고가액까지 육아용품이 많이 필요한데. 국가 지원이 없을 때는 초기 법원에서 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적게는 한 80 그 선에서 지원해 주시다가 지금은 만약에 전문위탁으로 영유아가 배치가 되면 국가 지원으로 초기 육아용품이 100만 원 국가에서 나오는 걸로 알아요. (G)

3) 위탁의 성과와 보람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을 가정위탁의 성과로 여기고 있었으며, 위탁아동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경험하였을 때, 가정위탁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위탁부모가 경험하는 성과와 보람은 위탁부모가 가정위탁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회복하는데에 도움이 되었다.

제가 딱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직장까지 보내는 게 저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중학교 졸업하고 부사관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저희 신랑하고 같은 공군 하사로 지금 가 있어요. 아, 너무 너무 부듯하고. 제가 개는 되게 힘이 들었는데 그런 게 기억이 (울먹거림) 나지 않고 그냥 고맙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지금은. (J)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잠복 결핵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약 복용도 시작하게 되고 방임이니까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아이 상태를 아니까 아이의 영

양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게 되고 아이가 3개월 있는 동안 3kg가 불어서 갔거든요. 아이가 회복돼서 가는 걸 봤을 때 이 위탁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더 몸으로 실감하게 됐죠.(G)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 양육의 성과와 보람을 경험하게 될 때, 위탁부모로서의 의미와 사명감도 더 강화되고 재차 삼차 위탁아동을 위탁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위탁부모로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친인척 위탁이나 일반위탁을 했던 위탁부모에게 일반가정위탁을 비롯하여 전문가정위탁이나 일시가정위탁 등을 다시 의뢰하고 있었다. 기존에 위탁아동보호의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힘들었겠구나. 그냥 공감해줬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그 행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막 폭력하고 했던 게. 그때 처음 느꼈어요.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애랑 막 많이 싸우고, 어쩔든 막 트러블이 많았었어요. 결국에 나중에 갈 때는 굉장히 아이가 마음 편해진 얼굴로 갈 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 힘들어도 좀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H)

두 번 보내면서 힘들었는데 힘든 건 나지만 위탁된 아이들이 이 위탁보호가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몸으로 느꼈잖아요. 위탁을 통해서 어떤 필요가 아이들한테 채워지는지 제가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위탁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더 결심하기가 편했어요.(G)

4)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

위탁가정과 아동의 책정 결정은 지자체 사례결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실무자들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이 책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예비 위탁가정과 예비 위탁부모 그리고 위탁아동에 대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보고하였는지가 책정과 예비 위탁부모 및 아동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성과 업무지속성 그리고 위탁가정-아동의 책정 전 조사의 질 등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의 기회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결정 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런 위탁부모를 책정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각 전문가들이 모아서 가지고 이런 걸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전담요원이 이 사례를 어떻게 얼마큼 많이 알고서 설명하냐에 따라 달라요. 당연히 위원들은 종이에 적힌 내용이나 이야기 듣는 걸로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역량에 따라 좀 다르게 되는 것 같고.(C)

라. 가정보호의 저해요인

1)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시각

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친부모를 상실한 아동이 발생했음에도 확대가족 내에서 보호가 가능하고 가정위탁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특히 기존에 조부모 혹은 친인친과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정에서, 가정위탁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친족돌봄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위탁가정으로 책정되지 않은 조손가정이나 친인척 돌봄의 경우 지자체의 보호대상아동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조사 참여자 중 한 위탁부모는 가정위탁제도를 모르고 위탁아동을 돌보고 있다가, 의료와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아 후견인이 되기 위한 친권소송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담당자를 통하여 가정위탁제도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애를 위해서 보험을 하나를 들려고 해도 친권에 걸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친권 소송을 냈어요. 그 소송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되기까지 한 1년 넘게 걸렸는데, 후견인으로 되면서 가정법원에서 가정위탁제도와 연결이 되서 위탁아동으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신청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K)

친족돌봄가정 중 일부는 읍면동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욕구가 파악되고 발굴되어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공식 아동보호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위탁가정으로 책정을 거

부하기도 하고, 책정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정부 개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그러나 다수의 경우 가정위탁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발굴되지 못하거나 자격조건(연령, 소득, 친부모와의 관계 등)에 부합하지 못해서 책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공식 친족돌봄 가정의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현금 및 서비스 지원은 공식 위탁아동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친족돌봄을 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현황은 파악이 어렵다. 친인척 보호자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미인지로 인하여 책정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족돌봄 아동은) 저희가 보호대상 아동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관찰 구역 내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다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저희가 그 보호서비스 대상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그런 지원금이나 아이들에 대한 뭐 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위탁아동과 조손 가정의 아동이랑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차이는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A)

가정형 보호의 제일 첫 번째가 친족, 그건가? 근데 제가 그게 자료를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가. 사실 카운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족, 조손 가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주민 센터에서 가정위탁이라는 걸 아시는 그런 주무관님을 만나면 가정위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정위탁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조손 가정으로 계속 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C)

나) 위탁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

실무자들은 위탁가정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례관리와 양육점검을 위한 방문 시에도 위탁가정에서 이를 지원이라기 보다

는 감시로 느끼게 된다든지,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지출처에 대한 증빙 요청과 같은 기관의 개입을 불필요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위탁부모에 대해서 잠재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있지는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 상황 점검을 갈 때 보호자분들하고 신뢰 관계를 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애네들이 나와서 학대에 대해서 혹시 이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를 검사하러 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반응하시는 보호자도 있었기 때문에...(A)

2) 예비 위탁가정 인력풀 부족

가) 비혈연 위탁가정의 부족

가정위탁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조치하고자 하더라도 예비 위탁가정이 충분하지 않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위탁가정 중 특히 비혈연 가정위탁이 가능한 예비 위탁부모의 인력풀은 열악한 상황이다. 비혈연 가정위탁의 인력풀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시도단위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위탁가정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시도단위의 인력풀로는 책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국 단위에서 타 시도에 의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국단위로 의뢰하게 되더라도 위탁부모 책정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위탁 부모 풀이 있는지 일단은 전화로 먼저 여쭙보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 특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의뢰서를 그럼 일단 넣어봐 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의뢰서랑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사실 한 번도 매칭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는.(B)

예비 위탁부모가 많지 않은 이유는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홍보는 드물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차원에서 지역 내에 부모들이 모이는 곳에 안내책자 제공 등 제한적인 홍보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계가 많다고 하였다. 전국적으로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제가 최근에 홍보 캠페인도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2003년부터 가정위탁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가정위탁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부모는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 없고. 그래서 근데 이걸 홍보가 사실은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각자 각 센터에서 각 지역에서만 정말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하니 인지도는 높아질 수 없고 그러니 위탁부모 발굴은 당연히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C)

예비 위탁부모를 최초로 모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예비 위탁부모에 대한 양성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위탁부모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탁부모 자격심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는 예비 위탁부모 교육대상자 중에서 실제 위탁부모로 발굴되는 비율을 10% 미만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위탁 부모 풀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저희도 여쭙봤었는데 어, 일단은 교육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100명이다 하면. 그중에서 진짜로 하실만한 이제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 교육을 듣고 나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 이제 또 걸러지게 되고. 이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다 보면은 또 거의 또 한 그중에서 또 한 80%가 다 걸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부모 발굴하시는 게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00명 있다 치면 10%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B)

나) 위탁가정이 기피하는 아동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가정보호 기회

위탁가정 인력풀에 위탁이 가능한 가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비 위탁부모의 선호에 따라서 매칭이 좌우되는데, 위탁가정들이 기피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보호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아동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으로 이들은 가정위탁으로 의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상 만 6세 이하 아동들은 가정형 보호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동들에 대해서 의뢰가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사실 5세, 6세도 사실은 매칭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아예 영유아보다는 약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나이를 선호하시는 위탁부모님도 계시긴 하나 보통은 더 어린 친구들. 그래서 한 3, 4세, 그다음에 1, 2세 이렇게 많이들 또 원해서 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가장 많이 위탁이 되는 것 같아요.(C)

사실 위탁부모님이 모든 아이들을 다 맡으시는 건 아니시고 위탁부모님들도 선호하시는 희망하시는 아이들의 연령대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동 의뢰가 발생해도 쉽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C)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시설에서도 선호도가 높으므로 기존 시설보호조치가 된 영유아는 가정보호로 보호조치 변경을 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보다는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공급자의 선호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보인다.

베이비박스에서 한 번 시설로 조치가 된 아이들 중에서 가정형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중략) 여기 시설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왜 그 보호 변경을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죠.(A)

반면, 중고등학령대의 아동은 가정보호 뿐 아니라 시설에서도 보호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보호조치 시에는 아동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데, 아동들은 대부분 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찾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시설보호라도 될 수 있도록 아동의

동의를 구하고자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연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 없어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겨진다.

시설도 그렇고 가정위탁도 그렇고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지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대로 고등학교 2학년이나 뭐 이렇게 분리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져서 중장기 시설로 가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설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략) 아이들이 뭐 이제 시설에 대한 일단은 조금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또 뭐가 이제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득하는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해요.(A)

학대피해아동 또한 위탁가정이 선호하지 않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전문가정위탁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영유아와 학대피해아동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대피해아동이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학대로 인하여 긴급히 분리되는 시점에 시설보호(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조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설로 기보호조치된 상태에서 다시 가정위탁으로 변경 조치가 어렵다고 하였다.

학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리될 당시부터 우선 시설로 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시설로 가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정위탁을 조금 먼저 우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정위탁에서 학대 피해 아동으로 조금 성장한 그런 친구들을 맡아주시겠다 흔쾌히 나서는 분이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A)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가정보호조치가 어려우며, 중증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조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문위탁가정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상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위탁가정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처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찾기 어려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시설에 보호를 의뢰하고 있다.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작년에 보호조치 했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영아였는데 뇌병변이 있어가지고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자체는 꿈도 꾸지는 못했고요. 장애인복지법 시설을 찾을 때도 사실 수도권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되게 먼 지역으로 이 아이가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중증장애일수록 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도 하죠.(A)

위탁가정으로 매칭되지 못하고 시설에서도 기피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은 주로 시설보호 중 일탈행동이나 우범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실무자나 또래 아동들과의 갈등이 많고 적응이 어려운 경우로, 이러한 아동들은 시설에서도 보호조치 변경 의뢰가 빈번하기 때문에 여러번 보호처를 옮겨다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에서 만약에 아동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 친구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보호조치에 대한 변경을 좀 요청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일탈행동이나 우범과 관련된 내용이지, 보통은. 네.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그런 뭐 형 문제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뭐 그런.(A)

정말 심했던 친구가 있었어서 전국에 있는 시설들이나 쉼터나 다 전화를 한 2번씩 돌렸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일시 보호하는 기간은 끝나갔고 이미 오바가 됐는데 받아주는 시설은 없고 그래서 보장원에다가도 문의드리고 했었어요. (중략) 그랬는데 사실 돌아오는 답변은 어, 그래도 이제 알아서 잘 지자체끼리 설득을 해서 보내서라는 대답이었거든요. (B)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보호를 거절한 아동의 경우 청소년쉼터로 보호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청소년 쉼터는 고연령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며, 입·퇴소와 일상생활에 대한 규칙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이 선호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 쉼터로 보호되면 수급비 등 아동보호체계를 통한 지원이 끊기는 등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단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룹홈은 일단 아이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연령이 많아서 첫 번째 커트를 당했고, 이 친구가 흡연 문제도 있었고. 도벽도 있고. (중략) 쉼터가 양육시설이나 우리 아동복지시설보다는 규제가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쪽으로 더 많이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중략) 아이들이 보통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 수급으로 변경해서 수급비가 들어가면서 아이들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쉼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가 않아서 이 친구가 지금 거주지 불명 상태인데도 거기 입소해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B)

3) 위탁아동 돌봄의 어려움

가) 위탁아동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

위탁부모들은 위탁으로 의뢰되는 아동들이 학대 및 방임의 경험 등으로 건강 상의 문제가 있거나, 장애, 행동 및 정서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른 시기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학대 및 방임아동의 경우 회복을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아동이나 행동 및 정서 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노숙을 하다가 발견이 돼서 왔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옷 입은 몸 부분 빼고 손, 얼굴, 머릿속까지 다 벌레, 벌레가 물려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울통불통 막 이렇게 다 짓무르고 막 이렇게 왔어요, 아기가. 몸무게도 온전치 않았었고요. (중략) 엄청 예민해 있었어요, 걸음도 못 걸었죠, 기어 다니지도 못 했어요. 14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그 정도 되면 몇 가지 단어도 할 텐데 전혀, 의사소통, 서로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왔던 아이였는데.(H)

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간의 갈등은 위탁아동이 이전에 거주하였던 원가정이나 시설에서의 생활경험과는 상이한 생활규칙이나 문화에 반발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춘기 시기에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그냥 뭇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어,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서로 이제 그런, 이제 같이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도 그랬고 또 첫째가 사춘기가 이제 오는 상황이 었기 때문에 그 아이랑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중략) 엄마랑 살 때는 집이 하숙집이었다, 아침에 그냥 학교 가서 점심 학교에서 먹고 다녀와서 아동, 뭐 지역 센터에 가서 저녁 먹고 12시까지 놀다가 집에 와서 자고 그런, 그런 생활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여기 집에 와서는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 하면서 애는 그게 힘들었었나 봐요. (J)

위탁아동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위탁종료를 하기로 마음먹을 정도의 위기가 온 경우도 있었으나, 아동을 보낼 곳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위기를 넘기기도 하였다.

제가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못 키울 상황까지 치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종료를 한다고 가정위탁 센터에도 얘기를 하고 구청에서도 종료를 하면 이제 보내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이의 성향으로서는 가정 위탁을 보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한 아이인 거예요. (중략) 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 된 아이를 받아줄 수 있다. 제가 짐을 다 싸놓고 시설을 가라라고 했는데 그쪽 시설에서 또 못 받아준다는 또 연락이 왔대네요. 그래서 구청에서 조금만 더 양육을 해달라 이 아이는 그때 시설은 절대로 안 간다.(I)

다) 체력적인 부담과 육체적인 어려움

위탁부모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신생아와 영아를 보호하는 위탁부모의 경우 위탁아동을 돌보는 데에 있어서 체력적인 한계가 크고 위탁아동의 하루 일과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일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조부모의 경우에는 고통으로 인하여 이러한 육체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였다.

생후 2개월이니까 아직 낫남도 안 잡혀 있고 갓난아기다 보니까,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생활이 전혀 뒤바뀌게 되죠. 신생아 위주로 돌아가는 생활 패턴. (G)

아이가 어렸을 때는 손이 참 많이 가잖아요.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하면 대상 포진이 왔는데 대상포진의 통증보다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어깨 통증이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상 포진이 온지 모를 정도로.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가 됐으면 무지하게 아프셨을 텐데 모르셨어요?(K)

조부모의 경우, 아동이 성장하면서 본인도 고령화되다보니 질병이 생기거나 신체건강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이나 단절을 경험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본인이 더욱 고령화되어서 손자녀인 위탁아동보다 먼저 사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실은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요즘에는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60이 넘기는 했는데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건강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면 할 수 있겠지. 라고 했는데 그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좀 (중략) 애를 키울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K)

라) 경제적 어려움

위탁부모들은 경제적으로는 위탁아동의 중고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정부에서 방과후 교육비는 지원이 되나, 중고등학생 시기의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의 학교적응과 이 후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사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학교 때 학원비가 많이 들었죠. 친구가 가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 친구가 3명이니까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을 애가 다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가정위탁센터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게 연계를 좀 해달라 했더니 올해는 안 됐는데 작년에 200만원 지원 받았어요. (I)

4) 위탁가정 서비스 양과 질의 문제

가) 시설보다 충분하지 않은 지원금과 서비스

(1) 시설 대비 적은 위탁가정의 양육지원금

실무자들은 시설보호와 가정보호 아동 간에 실제 수급하는 지원금이나 서비스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시설보호아동보다 물질적인 지원에서 더 낮은 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위탁가정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우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설의 경우 운영비와 지원금 보조가 가능하나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외에 다른 현금성 지원은 소액이며 지자체별로 차이도 크다. 시설은 정부의 지원금 외에도 후원금이나 서비스 자원의 모집 또한 용이한 편이나 위탁아동들은 이러한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어쨌든 위탁부모가 된다는 거는 경제적인 소득과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또 그만큼 충분히 경제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외부 후원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C)

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프로그램화돼서 아이들한테 서비스 제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가족여행이라든지 가족 뭐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에서는 운영비나 뭔가 이제 보조되는 형태로 그런 지원금들이 있는데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양육보조금하고 구 자체적으로 뭔가 저희는 따로 명절지원금이나 뭐 용돈 이런 거. 이런 게 나가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뭔가 프로그램성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가정위탁지원센터마다 조

금 다를 것 같아요. (A)

인터뷰에 참여한 실무자는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편이나 일반위탁의 경우 전문위탁가정 대비 2분의 1 혹은 3분의 1 수준이며, 그마저도 지자체 별로 상이하다고 언급하였다. 위탁가정에 대한 이와 같은 현금성 급여의 수준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월 12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재작년 초부터 3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지자체에 권고 사항으로는 50만 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자체 예산이 다들 다르다 보니까 예산 책정 때 밀려서 12만 원, 18만 원, 그러다가 최근에 30만 원이 된 거죠. (G)

(2) 교육비, 물품구입비와 피복비 부족

위탁아동을 위한 교육보호비의 경우 교육분야, 연령대 그리고 금액 등에서 제한이 있다. 즉, 학령기 아동 대상 예체능 분야에 한정해서 월 일정 금액 미만으로 실비 지원이 되고 있으나, 미취학아동이나 대학생 혹은 예체능 외에 기타 과목에 대한 학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위탁가정에서 아동의 학령이 높아지면서 학원비나 학습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한 편이라고 하였다.

사실 그렇게 넉넉하신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해 주시는 집들은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학원비를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교육보호비를 지원을 하지만 학습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예체능 쪽만 지금 20만 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원이 되고는 있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까지도 또 지원이 되고 (중략) 아이 뭐 학원만 보내더라도 100만 원은 그냥 뭐 요즘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드니까요 (B)

일시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이 가정 내에 보호되는 기간은 단기간이

나 위탁되는 아동의 연령대나 발달특성이 상이하며 빈번하게 교체되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피복비와 영아를 위한 유모차 및 카시트 등 초기 물품구입비 등이 부담이 되나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방임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없이 와요. 옷마저도 약간 분리수거장에서 막 그냥 가져다 입힌, 자기 개월 수에 맞지 않는 옷 막 이런 것도 입고 오고. 전에 14개월 아기가 발에 이렇게 발 시꺼멓게 이렇게. 지금 양말도 안 신고, 10월인데. 이렇게 온 경우는 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 옷을 다 사줬었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애들 키울 때하고 다르게 엄청 많이, 옷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지원해줄 수 있냐고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받는 그거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H)

(3) 드림스타트 이용 제한

뿐만 아니라 위탁아동들은 서비스 유사·중복 지원을 이유로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드림스타트가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와 중복되는 것임에는 공감하나,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는 저연령아동의 아동발달과 조기개입을 위한 사례관리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 목표와 상이하며, 드림스타트에서 직접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위탁아동들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드림스타트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위탁아동은 사실 드림스타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지침상. 중복서비스로 가가지고.(C)

최근에 이제 찾아봤었는데 드림스타트 매뉴얼상에 그게 명시가 되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림스타트에서 저희(가정위탁) 보호서비스를 연계가 되면 드림스타트사업을 종결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매뉴얼상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뭔가 똑같은 보호 체계로 봐야 되나에 대한 좀 고민이 있기는 하죠.(A)

(4) 사례관리서비스 및 양육점검의 충분하지 않은 빈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양육점검은 분기당 1회 수준이었으며 그 밖에도 위탁아동이나 위탁부모의 요청이나 연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양육점검이 이루어진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비혈연은 책정 후 1~2주 간은 매일 가정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게 되나, 혈연인 경우에는 책정 후 2달 이내에 가정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례관리 빈도는 2021년 전까지는 연 1회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탁가정이나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반기에 1회, 2023년부터는 분기에 1회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특히 고위험군으로 구분되면 월1회 연락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담원 1인당 사례 수가 50사례 이상이다 보니 분기마다 1회, 고위험군은 월 1회 이상으로 사례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한 분기당 한 번은 나가구요.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뭐 이제 틈틈이 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또 나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집에 이제 갑작스럽게 뭐 수해가 나가나 불이 나가나 막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뭐 연락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같이 얘기 나누기도 하거든요. 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전화 주셔가지고. 그럴 때는 자주 이제 찾아뵙기도 하고.(A)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부터 전담요원들 생기면서 저희도 반기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도록 되어져서 조금 더 연락이 잦아진 거지만 사실 한 상담원이 52 가정을 분기마다 그리고 사실 위험군이, 고위험군이면 월 1회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또 그 관계 형성을 맺거나 또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건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C)

고위험사례로 구분하는 절차는 위탁가정 책정한 이후 가정방문조사 시 수행한 위험사정 결과에 따라 선정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 당시에 선정되지 못하고 사례관리 하는 동안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를 포착해서 고위험군으로 사례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였다. 분기별 1회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이나 위탁가정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아동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 오거나 위험요인에 대하여 호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저희가 보고 있는 고위험군은 지금 가정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나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가정들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부모님들과의 갈등을 가지는 경우, 사실 비혈연 같은 경우는 전문위탁이 되면 어쨌든 고위험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많이 케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문제 사항을 떠나서 아이의 특수성 때문에 고위험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혈연관계 같은 경우는 아이의 비행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조부모에 좀 강압적이거나 통제적인 성향이 보인다거나 어쨌든 우리의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고위험으로 분류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합니다.(C)

나) 시설보호보다 복잡한 가정보호 배치절차

가정위탁은 시설보호보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시설보호와 비교할 때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된다고 하였다.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따를 때, 양친의 친권자 동의서를 모두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시설에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가정의 보호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친권자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에 대해 우려하여 양친 모두의 친권자동의를 확보되지 못하면, 영유아라고 하더라도 가정보호로 조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서를 친권자한테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설 입소할 때도 시설 보호에 대한 저희가 동의서를 받기는 하는데, (중략) 이게 아무래도 추후에 조금 친권 있으신 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아동이 이렇게 보호조치 됐다 라는 거에 민원을 제기하실 소지

가 있다, 있는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고 그 친구가 연령이 조금 많이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안정된 가정형 형태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했었거든요.(A)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하고자 하더라도 실제 위탁가정으로 보호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닿지 않는 친권자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타 지자체에 협조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된 서류 준비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적어도 2~3개월이 소요되는 편이다. 시설보호에는 1개월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편이라는 언급과 비교해 볼 때, 가정보호로 배치되는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설보호 대비 2~3배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가 가정위탁이 되게 어려운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설 보호로 배치되는 것보다 가정위탁으로 배치하는 게 절차가 더 까다로워요. 더 복잡해요. 시설로 전환시키는 거는 전담요원들이 금방 신청서만 쓰면 입소 신청서만 쓰면 되는 일인데 가정위탁으로 아동을 배치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더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번거로워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게 한 가지의 이유인 것 같고.(C)

일시가정위탁의 경우 위탁을 위한 서류작업만도 최소한 한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였다. 서류작업기간동안 시설에서 보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위탁으로 일시보호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일시위탁 기간은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된 기간까지 포함해서 6개월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위탁으로 가정보호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일시 가정위탁이 일시시설보호보다 더 선호되기 어려운 대안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위탁가정이 아닌 보호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주로 일시보호기관에 머무르거나 일시적으로 친인척 돌봄 혹은 시설보호 등으로 이루어

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만일 일시적으로라도 시설에 머무르게 되면, 이후에 가정위탁으로 유형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실질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이나 유기 미아인들 긴급하게 일시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이 발생했을 때 가정위탁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대상,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이 또 일시 보호 시설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일시 보호 시설에서 어느 기간 있다가 애네들이 이제 준비가 서류가 준비가 되고 뭔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아이들이 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는 기간들이 1주에서 2주 정도. 아이가 일시 위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짧아야 1, 2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보통 한 달? (중략) 위기형 아동들에 대한 가정위탁도 실제적으로 아이가 발생하는 시점에 긴급하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거든요.(B)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특성 상 아동학대와 같이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일시 위탁가정으로 즉각 보호되기가 어려우므로 영유아 아동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대피해쉼터나 일시보호시설로 보내졌다가 다시 가정위탁으로 보내지는 상황이다.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일시 위탁가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러한 선택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말 완전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분리가 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조금 스트레스가 될 건데 이게 또 시설에 들어갔다가 또 가정위탁으로 뭐 일시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긴급하게 아이들을 바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B)

위탁과정과 아동 간에 매칭이 이루어지더라도 책정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일시위탁의 경우 위탁될 아동을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의 반복이나 위탁의 공백 등은 예비 위탁부모

로 하여금 사명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비 위탁부모의 풀이 적어서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배치되지 못하는 이면에는 예비 위탁부모 또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특성의 아동이 배치되지 않아 역할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처음에 교육 받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랑 매칭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주를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안 왔어요. (중략) 제가 신생아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대부분 미혼 모긴 했는데 한 번도 매칭이 되지 않았어요. 시설이나 입양 기관이나 뭐 이런 데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신생아 때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정 연계가 돼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H)

다) 위탁부모 선정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

위탁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업무매뉴얼 상에 기재된 요건들로 위탁부모와 아동의 연령 차이, 가정 내 정신질환유병자 유무, 아동학대나 범죄경력에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한다고 하였다. 비혈연 위탁가정의 경우 일정 소득수준 이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혈연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가정의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대체로 수급가정은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다. 혈연 위탁가정으로서의 소득기준을 두지 않는 이유로는 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 예비위탁가정의 소득이 기준선 이하여서 아동이 시설로 배치되는 것보다는 예비위탁가정에 후원이나 물적 지원을 연계하면서 위탁가정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더 나은 선택이라는 입장이었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최소한의 기준만 두자. 저희도 사실 명확하게 뭔가 매뉴얼을 우리끼리 만들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최소한 수급인 가구에서는 못하도록. 정말 최소한이에요. (중략) 기준을 세우는 것도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 그 금액에서 모자라게 됐을 경우에 아이가 거기에 매치가 안 되고 아이를 시설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 더 좀 아이한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친인척들이 보호를 해주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B)

라) 인력의 부족과 잦은 교체

이들의 사례관리 업무량은 담당자 1인당 50~60 사례 정도의 수준이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실무자는 1인당 담당 사례 수가 52~58 사례 정도라고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40~50 사례로 그 중 5분의 1 정도가 가정위탁에 보호된 아동의 사례라고 하였다. 관할 지자체별로 위탁가정, 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수에 따라서 담당자의 사례 수에도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업무량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과중하다고 인식하였다.

1인당 그래도 50케이스 정도는.. (중략) 이 아동들 중에서 가정위탁은 지금 열 케이스 정도 돼요 (A)

저희 직원들은 한 사람당 한 52 케이스에서 한 58 케이스 정도를 맡고 있고(C)

위탁가정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한 양육점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을 통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및 센터의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가정과 아동의 입장에서는 라포형성이 어렵고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거부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탁가정과 아동의 지원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센터의 인력의 전문성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담요원들도 진짜 많이 바뀌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만두시는 게 많아요.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더 거부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여러 명이 와서 항상 자신에 대한 걸 뭔가 얘기하게 하고 뭔가 묻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뀌고 이러니까.(C)

바뀌기도 했었어요.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J)

마) 위탁가정 양육환경의 질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었다. 특히 혈연위탁의 경우 위탁아동 대상 역부양 요구, 교육관이나 양육방식이 통제적이고 변하지 않는 조부모로 인한 갈등의 심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보답을 요구하는 친인척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탁아동들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혈연 위탁가정의 양육환경과 보호의 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리위탁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정서적으로는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근데 영케어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역부양하는 일들이 정말 생기고. 그리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부모가 키워줬으니 나에게 보답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지금은 대리 친인척도 위탁부모님들이 적절한 소득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일반위탁과 동일해졌지만 이전에 책정된 가정들은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았고 (C)

뿐만 아니라 혈연위탁가정 중 가정위탁이나 자립지원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여 서비스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온 것으로 볼 때, 위탁부모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많이 알려주신다고 알려주는데 사실 위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기저귀라든가 분유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저귀 다 떨어지고 우유로 다 떨어졌을 때야 기저귀하고 분유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K)

위탁부모들은 위탁가정의 아동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위탁부모들의 연령대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교실식 수업방식으로 익힐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에는 한계가 많다는 입장이다. 위탁아동과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있을 때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집이나 컨설팅, 자조모임 등에 대한 욕구가 컸으며, 일회성의 수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주입식 교육 있잖아요? 실습 아닌 실습. 체험 아닌 체험. 이런 일을 이렇게 좀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면 아, 그때 그 엄마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 이런 기억들이 남을 건데. 우리는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 교수님은 앞에 오셔가지고 PPT 보면서 설명을 하시면 기억에 남지 않는 거죠. 돌아가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I)

마. 일시적 가정보호에서 영구보호로 전환 어려움

1) 쉽지 않은 원가정 복귀

가)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매뉴얼 상 원가정복귀 지원 역할 부재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들은 위탁가정에 대한 원가정복귀 지원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본인들의 업무지침 상 원가정복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가정복귀에 대한 점검은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는 지자체에 원가정복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은 수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친가정 만남은 사실 센터든 저희 쪽에서도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친가정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가정 만남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일반위탁이나 일시보호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도 친가정을 케어를 하고 계시니까 그 상황을 보고 센터하고 저희 가정하고 조율을 해서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

(B)

나) 연락이 두절된 친부모

위탁가정의 입장에서 위탁아동의 친부모와 연락을 직접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혈연위탁가정의 경우에도 친부모가 가출, 아동유기 등으로 친부모와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이들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일반위탁가정은 지자체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하지 않으면 친부모와 연락이 닿을 수 없고, 원가정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원가정복귀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경찰에다가 좀 부탁을 해보기도 했었고. 범피자가 아닌 이상에는 일부러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불심검문에 걸린다든가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화번호라도 좀. 부탁도 해봤었는데 잘 안됐고요. 아들을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됐거나 못했거나인데 그걸 끌어다 붙여놔 가지고 그게 과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또 들기도 하고요. (K)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네가 마음 편하게 있다 가라는 의미에서 그냥 편하게 잘 있다 가게만 해주지 제가 뭐 따로 노력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H)

다) 변하지 않는 친부모

친부모가 있는 보호대상아동 중 수감이나 입원 등 학대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원가정복귀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은 친부모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우며, 원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아동이 다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였다.

사실은 원가정 복귀가 잘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정말 많지는 않은데 간혹 학대로 분리가 됐다가 어머님이 교육이나 사례 관리를 받으시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셔서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아이들이 이제 원가정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음, 다시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들이요. (B)

비학대로 인한 아동분리 중 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양육의지가 없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도로 원가정의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의 낮은 양육의지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질환과도 맞물려 문제가 증폭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복귀가 되었을 때, 아동들은 원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방임, 학대 등 재분리가 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학대는 거의 경제적거나 부모님들이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전혀 없으시거나..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회복을 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고, 양육 의지가 없으시니까 아이들이 돌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정신적인, 질병, 개선이 안 되죠.(B)

계속 돌보다가, 친부가 아이들을 양육하겠다 해서 중간에 애들을 데려갔었어요. 데려갔다가 음, 한 이제 햇수로는 3년 차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방치해두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중략) 이렇게 양육할 거 같으면 양육을 포기해라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그냥 다시 데려왔어요.(I)

라) 원가정의 변화를 견인하기에 부족한 지원

실무자들과 위탁부모들은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친부모의 양육의지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저희 집에 있던 아이들은 친가정에 복귀를 했더니 위탁 아동으로 살 때보다 더 학업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더 안 좋은 거죠... 아이를 이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려면, 부모의 경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모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잘 키워야지 하는 그 책임감, 부모의 마음,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는 원가정 복귀가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I)

조사참여자들은 현행 아동보호체계가 원가정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자녀를 위탁가정으로 보내고 나면 충분한 지원이 없이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자녀를 가정에서 분리하게 되기까지의 복합적인 문제들은 가정 내 자원의 고갈이나 양육의지의 소진 등으로 시간이 가면서 자발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며 오히려 악화되기 쉽다.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가정과 친부모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아동보호체계 내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현재까지는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이가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의 지침을 보면 원 가정의 복귀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장기 보호가 더 많이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냥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이 많이지고 활성화가 될수록 친부모의 책임감은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맡기는 친부모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가 돼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위탁가정과 아동과 가정형 보호에 대한 지원은 되나 사실 원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나 개입이 적극적이지는 않거든요. 저희 지침상에도 필수적이지 않고. 평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자체가 열심히 친부모를 자극해서 빨리 애를 데려가세요. 하시는 것도 아니고.(C)

어쨌든 아이를 보호 조치를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친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맡길 때는 데려갈 거예요. 하다가 장기간 보호가 되면 애가 안 보이다 보면 편하니까 당연히 데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드시고 그러면 장기위탁이 일시위탁을 했다가도 장기위탁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생각하거나 어쨌든 이 사회가 정책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어쨌든 친부모가 이 아이를 위탁하지 않는 그러한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서 친부모가 아이를 더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인데 근데 어쨌든 버려지거나 어쨌든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후선책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C)

양육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에 대해서 시설이든, 가정위탁이든 조치를 하고 난 후에 면접을 한다거나 아이한테 계속 뭔가 푸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아이들도 그러면 나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G)

2) 입양의 유인 부족

참여자들은 위탁아동이 입양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드문 일이라고 하였다. 입양대상인 보호대상아동은 입양기관에서 관할하는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한 일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와는 다른 보호경로를 갖게 된다. 위탁가정에서 장기로 아동을 보호하다가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빈번하지 않다. 이는 위탁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꺼려하는 부모들이 위탁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서 지금 9년 차인데 입양된 케이스는 한 케이스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입양을 전제 하에 가정위탁을 하신 건 거죠. 언젠간 입양을 할 건데 지금 일단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하다가 하겠다.(C)

사실 우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데 일부를 덜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탁이기 때문에. 입양이면 그 부담을 100% 저희가 해야 되니까. 위탁가정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위탁가정을 하시지는 않아요.(G)

바.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새로운 예비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실무자들과 위탁부모들은 예비위탁가정의 발굴이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예비 위탁가정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의 증액, 직업적 위탁부모의 양성,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 강화,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기술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위탁부모들은 지자체별로 위탁가정의 규모가 늘지 않고 있어, 기존의 위탁부모들이 위탁아동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위탁가정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은 한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예비위탁가정을 발굴하여 예비위탁가정의 풀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하였다.

위탁가정 자체가 예비위탁가정 자체가 적어요. 저희도 대구에 위탁가정이 50 가정을 넘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그 50 이내의 가정들이 또 다른 아이를 또 위탁하고, 하나가 됐다가 둘이 됐다가 셋까지 위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해보신 분들이 이 부분을 더 절실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데려오고 또 세 번째 데려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비 위탁가정들이 늘어나서 그 인프라가 가득 채워져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발생하면 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맡아줄 가정들이 많아야 되는데, 해보신 가정들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이게 이번 지금 이 참여도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참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많이 들거든요.(G)

2) 양육보조금의 증액

무엇보다도 다수의 위탁가정이 혈연위탁가정으로 조손가정인 대리위탁가정의 비율이 높으며, 위탁부모인 조부모가 고령화되면서 경제활동이나 소득활동에 제한이 심화되므로 양육보조금을 증액하여 현실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반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현재 수준으로는 위탁부모가 개인적으로 추가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위탁부모들은 개인의 사명감이나 봉사정신만으로는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가정위탁에 관심과 기여할 의사가 있는 잠재적 위탁가정들을 유

인하기 위해서는 양육보조금을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가정위탁이 첫 시작이 너무 위탁가정에 개인의 봉사 정신이나 사명감에 기대서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국가적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한 개인의 봉사 정신이나 사명감에 기대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개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을 수 있겠어요. (G)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현금 급여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기초생활수급비와 양육보조금인데, 양육보조금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충분성 등에 따라 월 15만원부터 월 50만원까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지방이양사업의 특성 상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정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진짜 양육 보조금마저 복지부에 권고하는 거를 집행하는 사실 지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국가국비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거리에 있는 직접 서비스를 할 수가 없으니 지자체마다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고. (C)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의 보호초기 필요한 물품비와 피복비 등에 지출이 크며, 장기 가정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탁아동을 위한 교육비와 심리치료비 등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사교육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한 과목 당 월 30만원~50만원 가량인 데에 반해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학원비는 예체능 과목에 월 20만원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위탁부모들은 수급비와 양육지원금을 모두 학원비에 소진하더라도 충분히 교육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이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시설 차원에서 후원이 가능한 사교육기관을 연계하

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탁아동들은 이러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탁부모들은 바우처 등 현금급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탁아동을 위한 교육비에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생계비는 우리가 그냥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놓는다고 식비로 할 수 있지만은 교육비는 사실 부담이 식비와 차원이 다르게 크니까. 저희도 큰아이 학원 하나 중고등학교 때 보내면 30만 원, 50만 원 하나만 보내도 그래 되는 상황에 한 아이 당 저희가 생계급여가 6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아이 적금으로 한 20 빠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40에 아이 철마다 의료비, 그리고 아이가 뭐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그런 거 빼고 나면 사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G)

일반 가정위탁이 수당이 사실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아이 한 명당 양육하는데 40만 원은 사실 턱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를 내가 내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위탁 부모님들이 대단하다고는 정말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어, 지원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한테. 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한 달에 40만 원씩 받고, 아이를 아예 내가 데리고 양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고 (B)

3) 직업적 위탁부모의 양성

가정위탁의 활성화 방안으로 유급 위탁보호를 제도화하는 방안 또한 제안되었다. 아동보호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보호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위탁가정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위탁보호자에 대한 급여는 위탁아동에 대한 수급비 혹은 양육지원금과는 별개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는 위탁 부모님들도 이거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월급을 드릴 수, 그렇게 막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시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수익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면은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더 또 참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뭐 봉사의 개념이잖아

요. 지금은. 수당이 나가긴 하지만 그게 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위탁 부모님들한테 월급으로 나가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아닌 거니까.(B)

4)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 강화

실무자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가정위탁에 대한 전국적인 대국민 홍보의 강화이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하여 사회적 인지도와 관심이 증가한다면 더 많은 가정이 위탁가정을 희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위탁부모들 또한 가정위탁 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면 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간극장에 한 번 나오니까 정말 그 달에는 정말 전화가 진짜 많이 왔었고. 대국민 정말 좀 공중파에서 홍보되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요즘에는 드라마에서도 약간 위탁의 그런 유형의 드라마들도 있고 나면 또 그런 거 한 번 나오면 또 연락이 오시고 하시거든요. 정부에서 대국민 홍보를 좀 해줘야 가정형 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가정형 보호가 활성화 되려면 어쨌든 위탁부모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되는데 그게 없이는 탈시설 해봤자 애들은 갈 곳이 없는 거니까.(C)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그냥 아이들, 저기 데리고 와서 그냥 살려고 했는데 그 주민센터에서 알려주셨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그래서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알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알려, 광고,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J)

5) 위탁부모의 양육기술 교육 강화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위탁보호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기술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조부모와 같이 위탁아동과 연령 차이가 크고 양육방식에 대하여 세대 차이가 있는 경우 양육에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양육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양육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위탁의 활성화

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 할머니들이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이렇게 저희가 아우, 그냥 할머니니까 아우, 내가 저놈 시키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혼구녕을 내놨다. 아니면은 막 꿀밤을 때려줬다. 궁디팡팡을 해줬다. 막 이제 이런 애기들을 하시면서 아이고, 참 그렇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긴 하거든요?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주 양육자의 양육 스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B)

특히 양육기술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는 위탁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시기와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위탁아동과 부모 간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시기라고 하였다. 위탁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아동에게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와 자립과 관련된 수당 등에 대한 수령 및 사용권한이 아동에게 있음에도 실제 위탁 부모에게 주어지는 댓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 아이들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갈등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특성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 아이를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어려우시고 요즘 아이들도 또 다르다 보니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럼, 저희가 가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라서 그렇고 뭐 이제 좀 그냥 봐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또 이제 그분들 이해 자체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사춘기 친구들 아니면 이제 그 미취학에서 취학 단계로 넘어갈 때? (B)

그거는 정말 아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딤 씨앗 통장은 어쨌든 아이들 위탁하시고 난 뒤로 매달 입금을 하시는데 생계비 나오는, 아이들의 생계비에서 입금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호 주체였다 보니까 그런 재정 관리를 내가 하고 있다가 내가 넣어준 거지 않냐. 가 돼서 정작 디딤 씨앗 통장을 받았었을 때 그럼 정부지원으로 받은 매칭금은 내가 가지고 입금한 건 내가 가지겠다. 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었고. 정착금을 받았을 때 이거는 가정에 우리 집에 빛이 좀 있으니, 너 때문에 키우다 빛 땀으니까 그거 값야라. 이런 분들도 계셔서 가지고 저희가 위탁부모님들 대상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드

리고 있어요. 아직도 정말 이제는 좀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혈연관계에 있는 위탁부모님들은 그것을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C)

6) 기관 간 업무협력 및 역할 정비

위탁가정과 아동의 상황에 대한 점검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가정의 입장에서 양자 간에 역할의 모호함이나 역할의 중복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주로 역할을 할 것인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지자체의 상황별로 상이하다. 일부 지자체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시 동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지자체는 사례관리 시에 양 기관 간 전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탁아동의 사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주사례관리기관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각 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연계에 대한 지침 또한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역할의 모호함 때문에 사실 전담요원이 생기고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가정방문을 둘 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동일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님이 겪는 고통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사례 점검이라는 것이 어쨌든 중복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느꼈고. 그리고 서로 어쨌든 두 명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명이 할 때 책임감과 둘이 하다 보니까 그건 전담요원이 하겠지. 거기는 가정위탁에서 하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역할 분담이 있어서 사실 지금도 그 과도기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전담요원들과 저희가 뭔가 같이 유관기관들과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논의를 해서 사례를, 통합적인 사례 개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C)

7) 인력에 대한 투자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관련 인력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인력의 교체가 잦기 때문에 위탁가정 및 아동과 라포가 형성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양질의 사례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담당자의 교체는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계의 수준 또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전담요원들도 진짜 많이 바뀌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만두시는 게 많아요.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가정위탁도 마찬가지고 전담요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업무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업무 과부화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고. 전담요원들도 보면 사실 가정위탁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쨌든 지금 뭔가 아동보호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정부에서 계속 이슈되고 있다 보니까 업무들이 더 많아지시나 봐요. 그래서 어떤 구는 사실은 전담요원이 1년에 한 세 번 정도 바뀌신 곳도 있으시가지고 그렇게 되면 같이 가는 게 쉽지는 않죠.(C)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1인당 담당사례 수가 50~60사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례관리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사례관리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가정형 보호를 하겠다. 위탁이 많아진다. 하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버거운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 케이스가 지금도 50 케이스가 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많아진다. 과연 이게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런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센터가 어쨌든 각 시도별로 하나씩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가정형 보호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리적 물리적인 이렇게 좀 힘들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처럼 시군구에 뭔가 그런 가정형 보호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생긴다거나 어쨌든 가정형 보호가 활성화되는 건 긍정적이거나 그러려면 변화되거나 개선돼야 하는 게 굉장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C)

8) 대안적 보호방안 고려 필요

실무자들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에는 가정보호가 아닌 대안적 보호방안에 대한 고려 또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가정위탁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위탁가정의 규모가 보호대상아동의 규모를 초과하는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전히 위탁가정의 선호도로 인해 일부 보호대상아동은 가정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대안적인 아동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화가 나오. 애들을 모아놨다가 탈 시설화 시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탈 시설화해서 시설의 문을 열었으면 그 아이를 받아줄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난 다음에 탈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받아줄 가정은 마련이 안 돼 있고 탈 시설화, 탈 시설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도대체 저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생각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G)

제가 보호조치를 할 때 뭐 이제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탈 행동이나 뭐 도벽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진짜 보호조치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더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네. 현재도 사실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가정형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정말 어디를 가야 하지? 라는 걱정. 시설마저 못 가게 되는 건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에 대한 걱정이 되기는 하죠. (A)

3. 시사점

실무자 대상 인터뷰 분석 결과,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의 양육의지, 주양육자의 변경이 거의 없는 양육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위탁아동을 포기하지 않는 일관된 주양육자가 위탁아동의 삶에 주는 존재감은 시설보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정보호의 특성이다. 시설보호와 비교할 때, 아동의 정서적 안정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낙인의 우려 또한 적은 편이다.

실무자는 가정보호의 의미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가족 관계와 갈등 및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보호환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실무자에게 있어서 가정보호는 가정 외 보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가정보호를 촉진요인으로 실무자들은 위탁부모의 아동 간의 유대관계와 위탁부모로서의 사명감을 주목하였다. 위탁부모와 아동 간에 이미 일정 수준의 친밀감이 있는 경우, 위탁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로서의 책임감과 비혈연 위탁부모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연민, 봉사정신 및 사명감 등은 위탁보호를 시작하는 데에 촉진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촉진요인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혈연위탁부모의 자격에 아동과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이웃이나 지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위탁아동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 자립 등의 성과는 위탁부모에게 보람이 되며, 위탁의 유지와 재삼차 위탁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므로, 현재 위탁부모의 양육경험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의 위기 상황에서 사례관리서비스, 심리치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부모교육, 양육보조금, 물품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은 위탁가정의 유지와 위기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육보조금의 국비사업으로 전환과 증액의 욕구가 파악되었으며, 위탁 초기 물품비, 피복비와 초등 고학령 이상 아동의 사교육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물품 및 교육지원이 가능한 바우처, 후원 등을 연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기술 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사례중심의 참여가능한 교육 기회의 확충이 되

어야 한다.

또한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의 특성이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질병과 부담 등 신체적인 어려움, 중고등학령의 사교육비 마련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등을 토로하였다. 드림스타트는 중복 지원을 이유로 지원이 어려우며, 사례관리서비스 및 양육점점의 빈도가 위협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위탁의 포기와 중단 등의 위험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례관리서비스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위탁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부모의 역량강화와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의 책정 결정과 개입 시에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역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 인력의 전문성과 근속율을 높이고 가정조사와 사례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력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정보호의 책정 및 배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탁 대상아동에게 있어서 위탁가정의 심의와 승인, 매칭 및 배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일시보호 위탁가정과 친족보호의 연계성을 높여, 시설보호로 배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위탁가정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는 무엇보다 가정위탁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 시각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 기존 위탁부모들이 위탁아동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위탁가정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 상황은 한계가 많으므로, 새

로운 예비위탁가정의 발굴과 풀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의 강화는 예비 위탁가정의 규모, 특히 비혈연 위탁가정을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정복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침과 친부모와 원가정의 준비를 지원하는 개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친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어려움, 정신질환 등 빈번하게 제기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원가정 복귀 후 재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또한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에서 입양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거의 드물다는 실무자들의 지적은 가정위탁에서 입양으로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부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위탁아동을 위탁가정에 보호하다가 입양으로 전환하기에 용이한 절차적 방안과 유인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의 규모를 확충하기 위하여 직업적 위탁부모를 양성하는 방안 또한 일부 실무자의 의견으로 제안되었는데, 정책마련에 앞서 직업적 위탁부모가 다수의 아동을 보호하면서 급여를 받는 형태의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볼 것인지 공동생활가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위탁가정의 확충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위탁가정에 배치되기 어려운 아동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보호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실무자들은 위탁가정의 아동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며, 실제 위탁가정-아동 간의 매칭과 책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탁가정에서 주로 선호되지 않는 학령기 이상 연령대의 아동,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문제행동이 빈번한 아동 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마련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정위탁의 발굴과 양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2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경험

아동기에 위탁가정에 보호되었던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위탁경험을 살펴보고 가정위탁의 장기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면접조사결과와 분석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분석 개요

가.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자립전담요원 등 관계자 인터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정위탁 이후 아동들의 다차원적인 삶의 경험들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 표본(Purposive Sample) 방식으로 연구대상자를 섭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위탁가정으로 배치된 이후의 적응과 함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관한 경험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탁가정에서 보호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자립했거나 자립을 앞둔 청년으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로 가정위탁의 평균 기간이 6년임에 따라 3년 이상 위탁가정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가정위탁의 종료 이후 자립한 지 5년 이내의 청년들로 한정하였다. 이는 가정위탁제도가 지금의

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부터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현 시점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가정위탁에 대한 평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유형과 경로에 따라 일정 비율의 청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위탁유형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을 일정 비율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외하였으며, 원가정 복귀나 위탁 중지, 양육자 변경과 같은 다양한 위탁 경로를 경험한 대상자를 일정 비율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조사개요 및 안내문을 올려 직접 신청을 받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들의 추천으로 섭외하였다. 이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으로 대상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쳤으며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연구동의서를 사전에 송부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동의하고 조사에 참여한 1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섭외는 전문조사업체를 활용하였으며, 전문조사업체에서 수집한 연구 참여자에 관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연구진이 직접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나. 조사 내용 및 자료 수집 방법

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과 같은 일반적인 기본정보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는 위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배치 이전의 경험부터 자립 이후까지의 과정을 질문하였다. 위탁가정 배치 이전의 경험과 배치 과정, 양육자의 변경과 자립의 과정 등이 주요 질문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위탁기간 동안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위탁부모와의 유대와 각종 지원체계의 경

험, 원가정과의 관계와 함께 갈등과 위기의 경험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했던 지원, 현재 필요한 지원 등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2023년 8월 4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접은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접 중 연구참여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면접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다.

〈표 4-4〉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주요 질문
기본정보	- 연령, 교육 수준, 직업, 거주지 등
보호요인의 발생부터 자립까지의 경로	- 가정위탁 배치 이전의 경험 - 위탁가정으로의 배치와 적응 - 양육자의 변경: 표류의 경험? - 자립의 과정
위탁기간 동안의 경험	- 위탁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 원가정과의 관계 - 지원체계의 경험 - 갈등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
종료 이후의 평가	- 위탁가정의 재선택으로 확인한 위탁기간의 자기평가 - 종료 이후 위탁부모와의 관계
안정적인 가정위탁의 정착(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위탁기간 중 필요했던(혹은 도움이 되었던) 지원 - 자립 이후 필요했던(혹은 필요한) 지원

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면접조사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었다(승인번호 제2023-0094호).

우선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질문지를 통해 인터뷰의 대략적인 질문 내역을 전달하였으며, 참여자의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하며 연구목적과 연

구절차,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구 참여동의서를 함께 송부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 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동의서에 서명한 연구대상자만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또한 위탁기간 동안의 경험, 원가정과의 관계 등을 회상하고 이야기함에 있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고, 불편한 질문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터뷰 시작 직전에 다시 한번 고지하였다. 진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민감한 질문에는 응답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참여자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나 내용들은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활용하였다.

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Case Study Analysis)을 활용하였다. Stake(1995)는 사례연구란, 특정 사례의 독특함과 복잡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 사례가 전개되는 상황과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라 하였다. Yin(2002)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례연구인데, 사건과 관련된 행동들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때로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일련의 흐름을 구성한다.

삶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서는 삶의 맥락 전체에서 각 단위에 대한 심도 있고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다(Patton, 1990). 사례연구가 맥락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구체적인 맥락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Stake, 1995) 가정위탁을 경험한 청년들

의 삶과 심리적 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사례연구방법의 적용은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의 다중분석단위를 가지고 있다. Yin(2002)은 여러 개 합쳐져 있는 다중 사례연구일 경우 개개의 단일사례 연구를 별도로 제시한 후, 단일 사례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단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총 11인으로 위탁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대리위탁(조부모)을 경험한 청년이 4인이었으며, 대리위탁과 친인척위탁을 모두 경험한 청년 1인이 포함되었다. 친인척 위탁은 4인의 청년이 해당되었으며, 이중 1인의 청년은 친인척위탁과 시설보호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친인척위탁과 일반위탁을 모두 경험한 청년 1인이 포함되었다. 3인은 일반위탁에 해당된다. 이들 연령은 22~27세로 나타났으며 2년제 대학 졸업(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위탁가정에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15.7년으로 나타났다.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위탁가정에서 거주한 기간과 가정위탁제도의 보호를 받은 기간은 차이가 있었다. <표 4-5>는 연장보호기간을 포함한 실제 위탁 기간을 의미하며, 복수의 위탁가정을 거친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낸 총 기간을 합산한 값이다. 위탁기간이 20년이 넘는 청년이 3인이었으며 7인의 청년은 12년 이상 긴 기간 가정위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호 종료를 앞둔 1인의 청년을 포함하여 6인의 청년은 보호가 종료되지 3년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보호 중인 A11을 제외한 10인은 독립하여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보호가 종료된 대상자들은 모두 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인터뷰 시점에서 A3과

A7을 제외한 8인의 청년은 모두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A3은 지원받은 LH 임대주택에서 친지가 거주하고 있어 별도 거처를 마련하여 월세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A7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았으나 구직활동을 위해 타지역에 이동하여 단기로 월세를 지불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표 4-5〉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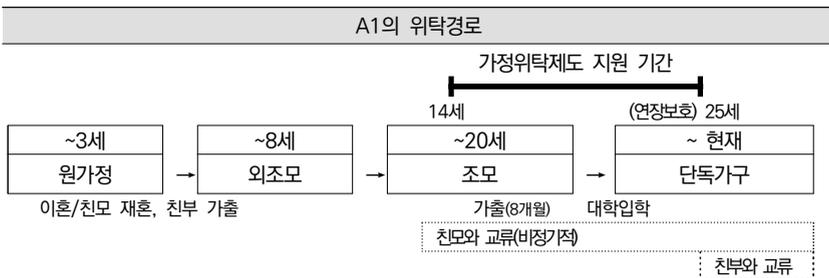
	연구 대상자	보호 유형	연령	학력	가정 위탁 기간 ¹⁾	보호 종료 후 기간	현재 거주형태
1	A1	대리위탁	27	4년제 대졸	16년	4년	LH 임대주택
2	A2	대리위탁	23	4년제 대재	18년	1년	LH 임대주택
3	A3	대리위탁	24	2년제 대졸	12년	4년	단기임대 (월세)
4	A4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26	4년제 대졸	16년	4년	LH 임대주택
5	A5	친인척위탁	26	4년제 대졸	22년	3년	LH 임대주택
6	A6	친인척위탁	23	4년제 대재	20년	2년	LH 임대주택
7	A7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25	4년제 대졸	12년	1년 6개월	단기임대 (월세)
8	A8	친인척위탁, (+시설보호)	22	4년제 대재	4년 (4년)	2년	LH 임대주택
9	A9	일반위탁	24	2년제 대졸	17년	4년	LH 임대주택
10	A10	일반위탁	23	4년제 대졸	22년	1년 5개월	LH 임대주택
11	A11	일반위탁	22	4년제 대재	16년	(24.10. 종료 예정)	위탁가정

1) 보호 종료 이전에 원가정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낸 기간을 의미하며, 복수의 위탁가정을 거친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낸 총 기간을 합산하였으며, 연장보호기간도 합산한 값임.

가. A1(대리위탁: 조모)

A1은 친부모 이혼 후 외조모의 집에서 초등입학 전까지 거주하다가 초등학교 입학 을 앞두고 조모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조모의 집에서 대학교 입학 전까지 거주하였다. 초등 저학년 때 재혼한 친모와 만날 수 있었으나 만남 직후 친모가 연락을 끊었으며, 중학생이 된 이후 A1이 친모를 다시 찾고 재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류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A1의 조모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했고 A1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조모의 일을 도왔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가출하기도 했다. 4년제 대학 진학과 동시에 독립하였고 기숙사와 원룸 자취 등을 거쳐 현재 LH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다. 연로한 조모를 가끔 찾아가고 있고, 성장과정에서 연락이 끊어졌던 친부는 A1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경제적 지원 요청을 위한 연락이 이어지고 있었다. A1은 위탁종료 시점에서 확인한 자료를 통해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위탁아동 대상이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위탁기간 동안 한 번도 위탁아동 관련 서비스를 받거나, 관련 담당자와 상담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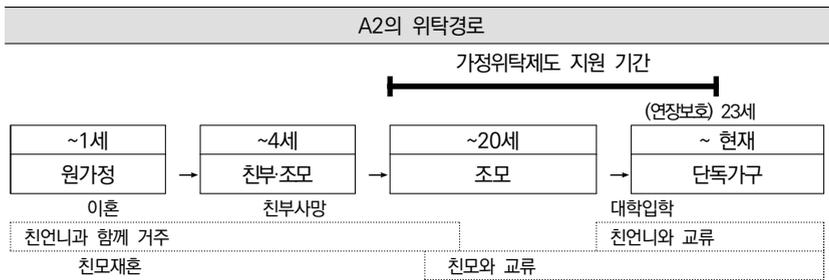
〈표 4-6〉 A1의 위탁경로



나. A2(대리위탁: 조모)

A2는 친부모의 이혼 이후 친부, 조모와 함께 거주하다 4세 무렵 친부가 사망하면서 조모와 세 살 터울의 친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조모와 동거 중에 친부가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위탁가정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조모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혼자 집에 남겨져 있던 기억이 많다고 말했다. 언니와 정서적 교류는 적었고 초등학생 시절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학교사회복지사가 A2의 우울한 상태를 알고 외부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다니게 되면서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다. 후원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혼한 친모와 연락이 닿아 현재까지 연락하고 있으나 정서적 유대가 깊지 않다고 말했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했고, 4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게 되면서 독립했다. 21세에 처음으로 가정위탁 지원센터 직원을 만났고, 수급비나 지원금 등 경제적인 문제로 자립 과정에서 조모와의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자립 이후에는 조모에게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끔 찾아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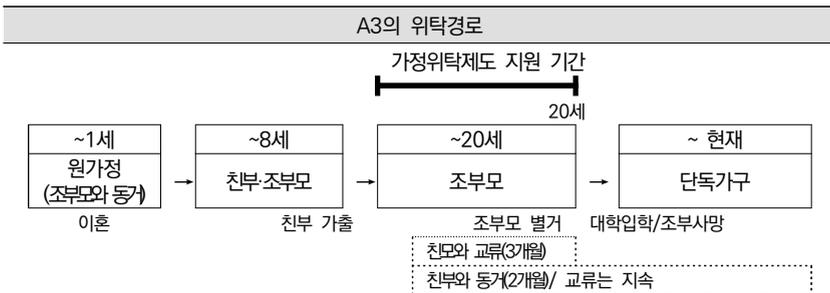
〈표 4-7〉 A2의 위탁경로



다. A3(대리위탁: 조부모)

A3는 친부모와 조부모와 함께 살다가 1세 때에 친부모의 이혼으로 친모는 떠나고 8세까지 친부와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조부모와 A3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친부와 연락이 끊겼다. 조부모는 정부지원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A3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가정위탁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참여의 경험은 긍정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친모는 중학생이 되어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종교 활동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몇 개월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친부를 찾고 친부와 잠시 함께 살기도 했다. 친부는 일을 하기 위해 떠났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A3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조부와 조모가 별거하게 되면서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의 일부를 조모에게 드리게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월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를 통해 위탁아동지원금과 LH임대주택을 알게 되었으나 관련한 경제적 문제로 조모와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독립하여 가끔씩 조모를 만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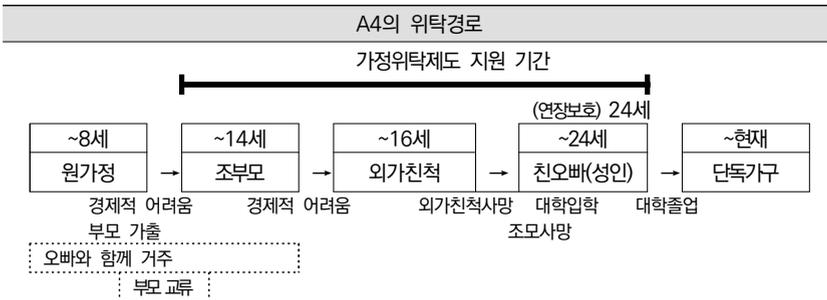
〈표 4-8〉 A3의 위탁경로



라. A4(대리위탁: 조부모, 친인척위탁: 외삼촌)

A4는 8세에 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부모집에 가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미 조부모는 사촌들을 대리 양육하던 상태였고 다섯 살 터울의 오빠와 함께 조부모집에서 거주하였다. 초기에는 친부모에게 가끔 연락이 왔으나 끊겼고, 현재까지 연락은 닿지 않고 있다. A4가 14세가 되었을 때 조부모의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A4는 타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던 외가친척으로 위탁가정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혼 후 혼자 살던 외가친척은 A4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사망하면서 혼자 남은 A4는 성인이 된 친오빠에게로 위탁가정을 변경하게 되었다. A4는 새로운 지역에서 오빠와 함께하는 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이후야 자립담당자와 몇 번의 상담을 하게 되었으며, 보호종료 이후 자립정착금으로 독립했다. A4는 위탁아동 지원에 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친 경험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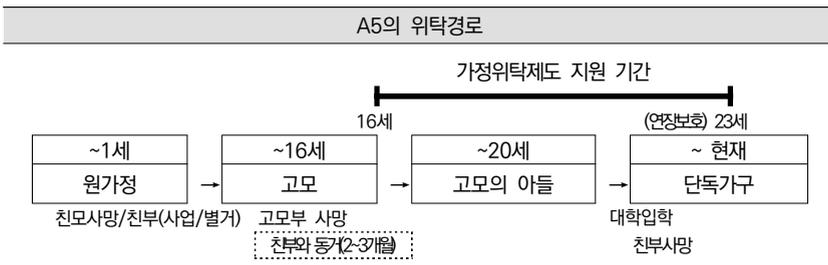
〈표 4-9〉 A4의 위탁경로



마. A5(친인척위탁: 고모)

A5는 출생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친모가 사망하고 친부가 어린 A5를 홀로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모 집으로 보내졌다고 기억했다. 당시 고모는 성인 자녀가 있었고, A5의 사촌도 함께 보호하고 있었다. A5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고모부가 사망하고, 사촌도 월가정으로 복귀하면서 고모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사망한 고모부의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5세 무렵 사업에 실패한 친부가 돌아와 잠시 함께 거주했으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친부와 갈등을 겪고 친부가 다시 나가게 되면서 사망 전까지 왕래는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모가 경제활동으로 타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고모의 성인 친자녀와 LH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따로 거주했다. A5는 초등학교 2학년때까지 고모를 엄마로 알고 엄마로 부르고 지냈으며,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하지만 독립하면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이가 멀어졌으며, 독립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고모가 투병 중이어서 가끔 찾아가서 만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자립 시점에 확인한 공식적 자료에 따르면 A5가 정식으로 가정위탁지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시기는 15세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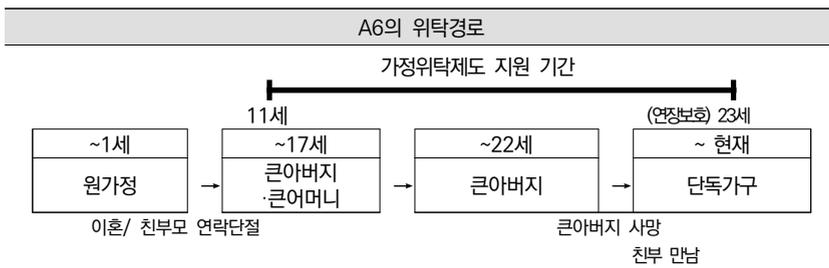
〈표 4-10〉 A5의 위탁경로



바. A6(친인척위탁: 큰아버지)

A6는 주민등록등본상 2세에 큰아버지 가정에 정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친부모는 이혼한 것으로 들었을 뿐 친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친부 역시 A6가 성인이 된 후 큰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한번 만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큰아버지에게는 A6와 스무살 가량 차이가 나는 친자녀들이 있었으나 독립한 상태여서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생활했다. 고등학교 시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별거하면서 A6는 큰아버지와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큰어머니와 돈독한 관계는 계속 유지해 왔고 독립한 현재에도 큰어머니와 근거리에 거주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6는 큰어머니를 친엄마로 생각했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한 이야기를 큰어머니와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딤돌 통장을 해지하면서 위탁아동임을 인지하였고, 위탁아동으로 지원받은 기간은 11세부터로 되어있다는 사실 역시 그때 알게 되었다. 위탁아동으로 받은 서비스는 없었으며, 자립청년지원 등에 대한 정보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 입학 이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 3년 가량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위탁아동임을 인지한 이후 자립지원금으로 복학을 하고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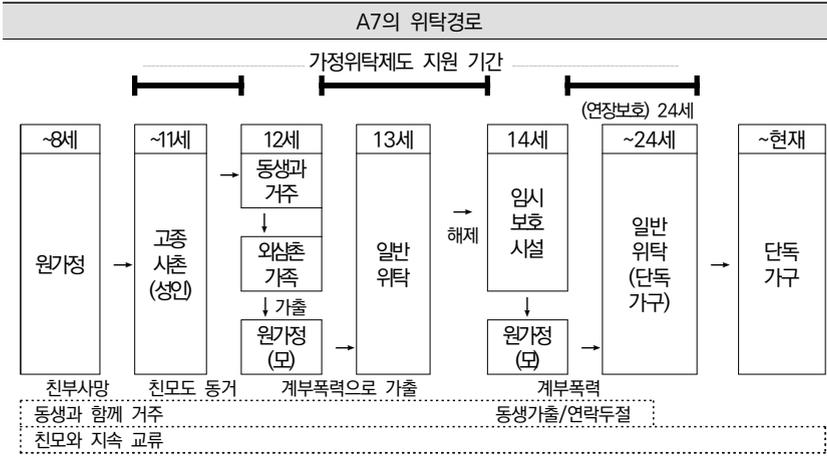
〈표 4-11〉 A6 위탁경로



사. A7(친인척위탁: 고종사촌, 일반위탁)

A7은 고모의 이혼으로 남겨진 4명의 고종사촌들과 함께 11세까지 원가정에서 지냈다. 8세 때 친부가 사망한 이후부터 성인인 고종사촌이 위탁부모로 지정되어 있었다. 11세 무렵 친모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고종사촌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친모는 남동생과 A7을 집에 남겨두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기억했다. 한동안 남동생과 같이 살던 A7의 집에 실직한 외가 친척들이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함께 지내는 과정이 힘들었던 A7은 동생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 친모에게 갔다. 그러나 친모의 남자친구는 술을 마신 후 폭력을 행사하여 A7은 동생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 교회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목사님 가정에 위탁이 되어 1년 가량 함께 거주하였으나, 목사님 가정 여건이 어려워져 위탁을 중단하게 되었고, A7과 동생은 몇 주간의 일시보호시설 생활을 거쳐 다시 친모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친모 남자친구의 폭력은 다시 반복되었다. 친모와 더 이상 함께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한 A7은 다시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결국 목사님 가정으로 재위탁 되었다. A7과 동생은 목사님 집 근처에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여 독립하여 지냈으며, 2년 뒤 남동생이 가출하면서 A7은 홀로 거주하였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았고 4년제 대학교에 입학했다. 위탁부모는 양육지원금을 잘 저축했고, LH 임대를 받아 거주지를 이주한 이후에도 위탁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친모는 돈이 필요할 때 가끔 연락이 온다고 하였다.

〈표 4-12〉 A7의 위탁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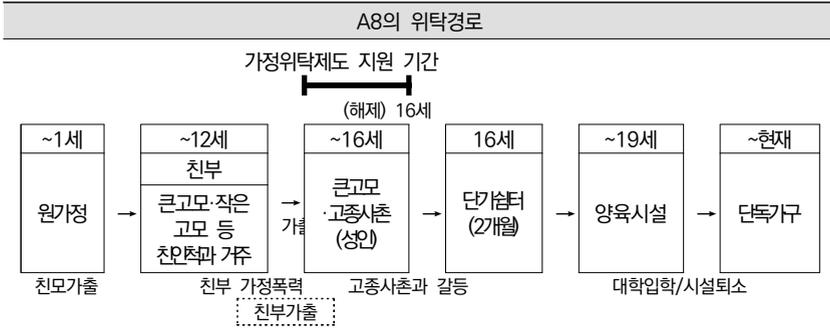


아. A8(친인척위탁: 고모, 시설보호)

A8은 갓난아기였을 때 친모가 가출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 무렵까지 친부와 함께 살았다. 짧은 시기였지만 큰고모와 작은고모의 가족과 함께 산 기억이 있다고 했다. 친부의 폭력적 성향으로 A8은 가출하고 큰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큰고모 집에는 큰고모의 성인 아들인 고종사촌이 결혼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큰고모와 아들가족과의 갈등이 있었고, A8 역시 고종사촌과의 갈등을 겪었다. 결국 A8은 집을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고종사촌과의 심화된 갈등으로 거주지를 고민할 새 없이 당일 집에서 나와 여성전용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몇 개월 쉼터에 거주하다가 양육시설을 선택해서 입소하였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립한 A8은 현재는 LH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친부는 A8이 고모의 집에 있는 동안 소식은 전해 들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라고 했다. 3년여간 위탁해 준 큰고모와는 집을 나온 이후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

〈표 4-13〉 A8의 위탁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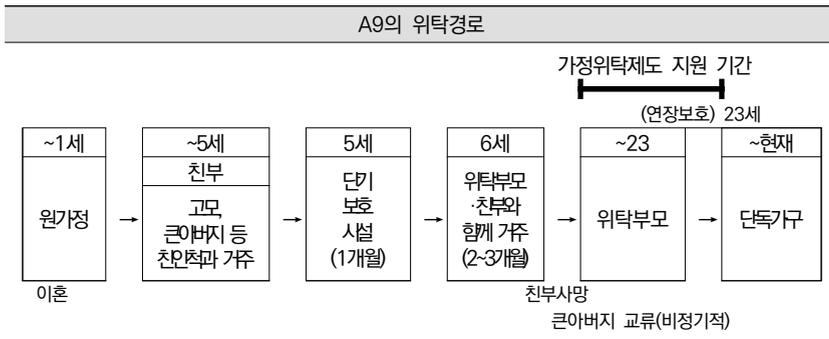


자. A9(일반위탁)

A9은 어린시절 친부모가 이혼을 하고 친부와 둘이 살거나 고모, 큰아버지와 함께 지냈다고 기억했다. 친부는 실직 상태였으며, 우울증도 겪는 등 생활고가 심하여 A9을 시설로 보내기로 마음먹었고, A9은 임시보호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먼 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친부에게 일 자리를 마련해주고 A9을 데려와 함께 살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임시보호 시설에 있던 A9을 데리고 온 친부는 지인 부부의 집에서 일을 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친부가 사망하였고, 결국 함께 살던 지인 부부가 A9을 위탁하게 되었다. 친모와는 왕래가 없었으며 위탁과정에서 친권포기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현재까지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탁 초기에 위탁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나, A9이 중학생이 될 무렵 위탁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사를 하거나 압류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위탁부모는 A9이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도 자취를 위한 보

증금과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었고, A9은 주말마다 위탁부모의 집으로 와서 시간을 보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A9이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 본인이 수급자였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A9은 위탁부모의 집에서 나와 현재까지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

〈표 4-14〉 A9의 위탁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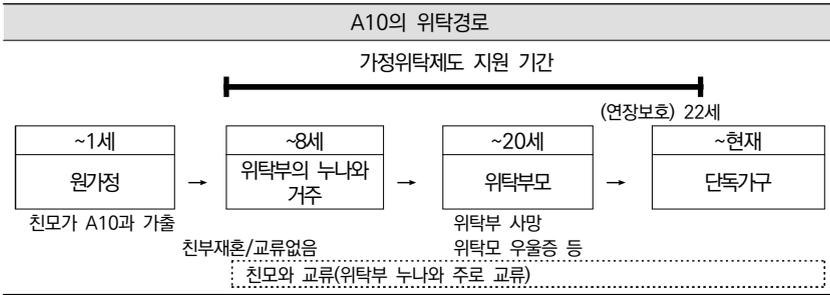


차. A10(일반위탁)

A10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친모의 사연을 들은 현 위탁부의 누나가 친모와 A10을 보호하면서 위탁가정에 거주하게 되었다. 위탁부의 누나는 A10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A10과 함께 거주했으며, 현재 까지도 A10과 가깝게 지내고 있고, A10의 친모와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A10의 친모는 타지에 거주하고 있고 A10을 데리러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으며 가끔 만남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친부는 A10이 위탁되었을 때 찾아와서 위탁을 반대 하기도 하였으나, 재혼 후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교류는 없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위탁부가 사망한 이후 위탁모가 우울증과 암 등의 질

병을 앓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다. A10도 사춘기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으나 위탁모와 의지하고 위탁모의 간호를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이야기했다.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기숙사와 자취를 거쳐 현재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탁모는 위탁모의 친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방학이나 주말에는 위탁모의 집으로 가서 지내는 등 현재까지 교류하고 있었다.

〈표 4-15〉 A10의 위탁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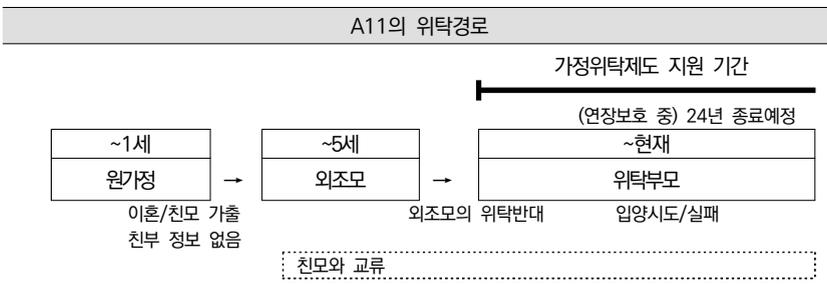


카. A11(일반위탁)

A11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친모는 가끔 방문했으며, 친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외할머니가 생업으로 밤늦게 귀가함에 따라 A11은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했다. 6세 무렵부터는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현재 위탁모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가정위탁 절차를 밟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가정위탁 진행 과정에서 위탁을 반대하는 외할머니와의 마찰이 있었고, A11은 그 과정에서 위탁가정에 머무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8세 무렵부터 정식 위탁아동으로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위탁 당시 위탁부

모의 자녀들도 함께 거주했으나 곧 독립하였다. 위탁부는 공무원이었고 위탁모는 어린이집 이외의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 위탁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위탁부는 A11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고자 노력했다. 위탁부는 중학생이 된 A11에게 자립수당과 수업비에 대해 설명해주고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위탁기간 중 위탁부모가 A11을 입양하고자 했으나 친모가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할머니와 친모는 여전히 연락하며 만남을 유지하고 있으며, A11에게 함께 살자고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A11은 거절했다. A11은 보호종료를 1년 앞둔 현재도 위탁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이라고 했다.

〈표 4-16〉 A11의 위탁경로



3. 가정위탁과 지원체계의 경험

가. 위탁가정으로의 진입과 이동

우선 연구 대상자들의 위탁가정 진입 배경과 함께 위탁가정의 배치와

이동에 관한 경험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원가정의 이혼이나 친부 혹은 친모의 사망, 가출 등에 의해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원가정 보호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탁가정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에는 방임이나 학대 등 가정폭력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인척 위탁을 경험한 A8은 친모의 가출 이후 친부의 폭언과 폭력 등을 피해서 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을 경험한 A7은 계부(친모 남자친구)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하였고, A10은 친부의 가정폭력을 피해 친모와 함께 집을 나와 친모는 경제활동을 위해 가출하였으며, A11은 외조모의 방임이 일반위탁 가정으로 진입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연구 대상자들의 가정위탁 사유¹⁾

	id	보호 유형	친부모(양육자) 부재	친부모 이혼	기타
1	A1	대리위탁		○	
2	A2	대리위탁		○	
3	A3	대리위탁		○	
4	A4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 (친부모 가출) (위탁부 사망)		○ (위탁부모 경제적 어려움)
6	A5	친인척위탁	○ (친부 가출)		
7	A6	친인척위탁		○	
5	A7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 (친모 가출)		○ (계부 가정폭력)
8	A8	친인척위탁 (+시설보호)			○ (친부 가정폭력)
9	A9	일반위탁	○ (친부 사망)		
10	A10	일반위탁	○ (친모 가출)		○ (친부 가정폭력)
11	A11	일반위탁			○ (외조모 방임)

주 1) 복합적인 요인인 경우 모두 표시하였으며, 복수의 위탁가정에 거주한 경우 각각의 위탁사유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원가정 해체 직후 바로 위탁가정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었다. A1과 A11은 원가정 해체 이후 외조모 집에서 거주하다가 공식적인 위탁가정으로 진입하였으며, A7이나 A9은 고모나 큰아버지 등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거나 친인척 집을 이동하다가 공식적인 위탁가정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대상자 중 상당수는 공식적인 위탁가정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비공식적 친족 돌봄의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식적인 위탁가정으로의 배치 경험을 확인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위탁가정 매칭에 관한 경험은 현행 배치경로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가정위탁 절차에 따르면 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가정의 추천과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바탕으로 위탁가정을 매칭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위탁가정 매칭은 아동보호전달체계에 진입한 이후 보호시설 배치과정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일반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연구 대상자들의 위탁가정 배치과정 역시 공식적인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계부의 가정폭력을 피해 동생과 가출한 A7의 경우 다니고 있던 종교시설에서 일반위탁을 시작하였으며, 친부의 양육포기로 보호시설로 보내진 A9 역시 지인이 친부를 설득하여 시설퇴소를 하고 해당 가정에서 일반위탁을 하게 되었다. A10 역시 우연히 길에서 만난 친모의 사정을 들은 위탁부모가 친모와 A10과 함께 동거하다가 공식적인 위탁을 하게 되었으며, A11의 경우 보육하고 있던 보육시설의 원장이 방임으로 의심된 A11을 보호하게 되면서 위탁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위탁을 경험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위탁가정이

12) 물론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가정위탁제도 초기 단계에 위탁가정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매칭된 것이 아닌 혈연위탁과 유사한 형태의, 관계에 기반하여 성립된 일반위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위탁가정은 위탁가정으로 등록한 이후 보호아동을 배정받은 것이 아닌, 특정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탁가정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탁가정 진입 이후 8인의 연구 대상자는 동일한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되었으나, 3인은 공식적인 위탁가정의 변경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종료했으나 위탁부모와 동거하지 않거나 위탁부모의 별거 등으로 변화를 경험한 연구 대상자들도 확인되었다. 위탁가정의 변경이 가장 잦은 대상자는 A7였다. A7은 친부 사망 이후 친인척 위탁, 동생과 단독거주, 비공식 친인척 돌봄과 원가정 복귀를 거쳐 일반위탁 되었으나 중도 해제되어 단기보호시설과 원가정 복귀를 거쳐 다시 일반위탁되어 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A4 역시 최초 위탁가정은 연로한 조부모였으나 A4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에 따라 먼 지역에 거주하는 외가친척으로 위탁가정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외가친척의 사망은 A4를 다시 새로운 위탁가정으로 이주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이후 단기쉼터를 거쳐 양육시설로 이동하여 시설보호를 선택한 A8은 가정위탁에서 시설로 보호유형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위탁가정 변경 과정에서 공식적 지원은 부족했거나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4의 위탁가정 변경은 친인척들의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A8은 위탁가정 해제 이후 스스로 보호기관을 찾아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7은 위탁 해제 이후 아동보호체계 내로 진입하여 임시보호시설에서 거주하였으나, 준비되지 않은 원가정 복귀가 결정되면서 결국 다시 재위탁되는 아동기를 보내게 되었다. 재위탁 이후에는 위탁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 위탁가정의 주거지 근처에

서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A7과 함께 위탁가정을 이동해 온 동생은 결국 재위탁기간 동안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다.

위탁가정의 변경 과정에서 원가정에 복귀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A7이 유일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A7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결국 보호 종료기간까지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에서 원가정 복귀를 완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A5는 위탁기간 중 위탁모인 고모가 A5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 친부와 위탁가정에서 단기간 동거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들의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위탁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원가정의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A1, A2, A3, A10은 원가정과 간헐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가정에서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가정에서 필요시에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반대로 A11은 원가정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11은 위탁아동이 되었다는 것은 원가정이 불안하기 때문이므로 안정적인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친부가) 뭐 되게 약간 원가 좀 알코올 중독처럼 되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구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되어 버렸어요.(중략)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때 한 뭐 한 두세 달 정도 같이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이제 막 너무 이제 어쨌든 아버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랑이..(중략) 이제 좀 원가 되게 엄청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A5)

(원가정과) 만나는 것도 자주 했었고 연락도 자주 했었어요.(중략) 그냥 이렇게 막 깊은 질문은 아니고 그냥 우리 집에서 살자.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난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중략)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활성화한다는 거는 오히려 학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중략) (위탁을 했다는 건) 일단 가정이 원가가 불안하기 때문인 거 같아요.(A11)

이제 본인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술이 진탕 취해서 막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워서 파출소에 연행이 됐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게끔 해가지고(A1)

〈표 4-18〉에 정리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공식과 비공식, 혹은 공식과 비공식 각각의 보호체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가정위탁 진입 이전의 경험까지 고려하며 이동의 횟수는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위탁가정의 잦은 변동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위탁가정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했거나 원가정 복귀에 실패하는 등의 사유로 여러 위탁가정 혹은 시설을 전전하는 것을 표류(drift)라고 표현하며, 미국에서 보호아동이 4~5번까지 위탁가정을 옮기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보고하며 이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오정수, 정익중, 2008).

〈표 4-18〉 연구 대상자들의 위탁가정 변경

	id	보호 유형	공식 가정위탁	비공식 가정위탁 (친족 돌봄)	기타
1	A1	대리위탁	1회	1회	* 가출(약 8개월)
2	A2	대리위탁	1회		
3	A3	대리위탁	1회		* 위탁부모 별거
4	A4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3회		
6	A5	친인척위탁	1회		* 사촌과 독립(2년)
7	A6	친인척위탁	1회		* 위탁부모 별거
5	A7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3회	1회	- 원가정 복귀 2회 - 단독거주 1회 - 임시보호시설 1회 * 마지막 일반위탁은 별도

	id	보호 유형	공식 가정위탁	비공식 가정위탁 (친족 돌봄)	기타
					주거지에서 단독생활함(8년)
8	A8	친인척위탁 (+시설보호)	1회	(n회)	- 시설보호(단기터, 양육시설)
9	A9	일반위탁	1회	(n회)	(임시보호시설 1회)
10	A10	일반위탁	1회		
11	A11	일반위탁	1회	1회	

주: 괄호 안은 첫 번째 위탁가정 진입 전의 경험을 의미함

나. 위탁가정 지원에 관한 경험

일부 연구 대상자들은 앞서 그림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위탁가정에서 거주한 기간과 위탁가정으로 공식적인 지원을 받은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연 위탁이었던 A1과 A5, A6의 경우는 위탁가정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공식적인 위탁가정 지원체제로 진입하는 등 위탁가정 내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과 공식적인 위탁가정으로 지원을 받은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물론 현재 20대 초중반인 면접대상자들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고려해본다면 가정위탁지원체제의 제도화 초기에 나타나는 미인지 혹은 미발굴에 의한 사각지대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식적인 위탁가정 지원체제로 진입한 이후, 혹은 초기부터 위탁가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의 경험 역시 경제적 지원을 제외한 정기적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의 경험은 적었다. 보호 종료 시점이나 연장보호 이전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가정위탁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A3와 A9, A7과 A8 정도였으며 상당 수 연구 대상자들은 보호 종료 시점이나 연장보호

이전에 전담요원을 만나거나 직접 상담을 받은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제도를 전혀 몰랐거나, 위탁부모로부터 위탁아동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경우, 자립 준비 과정에서도 자립청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21살 초반쯤에 알았네요. 자립정착금이. 그런 게 나온다더라. 그래서 누가 어디서, (중략) 군청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머니가 말하는 내용만 들어서 사실 그게 자립지원전담요원인지를 몰랐고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할머니도 그냥 누가 왔다 가면 군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아, 면사무소에서 왔다 가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A1)

아예 몰랐어요. 위탁가정이라는 것도 알게 된 지 딱 종료되고 나서 알아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기초수급자구나. 부모님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초수급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구나만 알았어요. 디딤씨앗통장? 그게 있었는데 이게 끝나서 종료가 되서 위탁 관련 센터였나? 그쪽으로 가서 이걸 해지를 하면서 이제 아, 이걸 위탁가정이라고 부르는구나를 알고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위탁가정이었구나 하고. (중략) 그걸 알지 못해서 이제 휴학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아쉬웠던 것 같아요.(A6)

저는 성인 돼서 21살 때였나.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그전에는 뭐 그냥 할머니가 그냥 저희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했지 금전적인 것까지는 아예 몰랐어요. 위탁센터 직원을 처음 만나서 저보고 그 사례관리라고 해서 그냥 얼굴 한번 보자. 해서 얼굴을 봤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오셔서 팜플렛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한 달에 얼마 나오고 보호 종료되면 또 지원금 나오고 아마 대학교 갔을 때도 200만원 받았을 거다. 이런 말하셔서 알았어요(A2)

국가장학금 이런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때 이제 20살 이미 입학하고 나서 한 학기 정도 지났을 때 알아가지고 이미 등록금을 냈을 때 알아서 아,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한 20살 초반 때부터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시작을 해보고 이제 뭐 주변에 뭐 어떻게 뭐 장학금을 어떻게 신청해서 이렇게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혼자 막 공부하고 찾아봤었던 것 같고(A4)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런 자립 준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이제 작년 말에 알게

됐는데 뭔가 이런 걸 좀 일찍 알았으면 아, 뭐 알바하고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에 뭐 좀 더 공부하고 뭐 이럴 수 있었을 텐데(A5)

한편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기적인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이 용했던 대상자들의 경우 개인차는 있으나 만족도나 도움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위탁처의 잦은 변경을 경험한 A7은 전담요원의 상담과 지원을 많이 받았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A3나 A9의 경우는 전담요원과의 면담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거나 참여했던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A8 역시 전담요원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었으나 1년에 1~2회, 위탁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A8의 위기 상황에 큰 도움을 주진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탁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이들을 충분히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제가 마침 정부 가정위탁 센터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가지고. 매번 매주? 매달? 제가 가서 상담을 했었고.(중략) 사실 위탁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긴 했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한 10번 넘게 담당자분들이 바뀌었거든요.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매년 바뀌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역담당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란 잘 지냈는데 일단 친밀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호가 종결되고 나서 디딤돌인가? 거기서 자립준비 청년들 그냥 관리해주고 그런 조직 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랑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위탁가정, 자립준비 청년들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슨 지원 사업이 있고 어느 커뮤니티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A7)

소속한 그 센터에서 얼굴을 보자 라고 하셨던 게 중학교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1;1로 알게 되고 이런저런 설명도 듣고 교육도 받고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교육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왜 달라. 라는 걸 느꼈다고는 해도 위탁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도장이 찍힌 기분이었거든요. 중학교 되자마자 모르는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A3 얼굴 좀 볼까? 이러시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마음 아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하는데 그게 그때는 솔직히 전혀 와 닿지도 않았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다르지. 라는 생각으로 나 좀 나 억울해. 나

아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동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낙인찍히고.(A3)

상담을 1년에 한 번 했으나. 저도 그때 상담을 두 번 밖에 한 적은 없긴 한데. 그때 상담할 때도 집에서 했어 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많이 못했었거든요.(A8)

그게 저 위탁 센터에서 막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 때, 초등학교 이럴 때는 저는 도대체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략) 그리고 생활비 이런 거는 너무 부족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항상 뭐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문화 체험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옛날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막 없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A9)

위탁아동으로서 받고 있는 지원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인지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대상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아동에게 주어지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가장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고 있었던 대상자는 A11이었는데, 위탁부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 대상자는 이러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뒤늦게 본인이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지원금의 사용처를 두고 위탁부모와의 갈등을 빚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센터) 선생님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긴 했는데 돈에 대한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부모와의 관계를, 네. 부모와의 관계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생활은 어떻게거나 환경적인 얘기를 하지 금전적인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죠.(A9)

제가 중학교 때 알았나? 중학교 때 알았을 거예요. (중략) 제가 어느 정도 크니까 아버지가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되면서부터는 아예 제가 그거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어요.(A11)

다. 위탁가정의 위기와 갈등

위탁가정도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위탁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는 위탁가정마다 상이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일부는 위탁가정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였으나, 일부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위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명의 연구 대상자가 위탁기간 중 겪은 가장 큰 위기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문제와 위탁부모의 별거, 사망, 출산 등에 의한 위탁가정 내 변동, 그리고 위탁부모와의 신뢰 붕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많은 위탁가정에서 경우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혈연위탁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위탁기간 중에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 위탁가정의 유지와 위탁아동들의 건강안정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에서 조모와 함께 생활했던 A1의 가정 형편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시도한 A1의 8개월 간의 가출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도피라는 측면이 컸으며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마무리 되었다. A2는 위탁초기부터 지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스스로 학업에 매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3과 A4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A3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 경제의 일부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A4의 조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A4를 더 이상 위탁하지 못하고 새로운 위탁가정으로 보내면서 위탁을 해제하게 되었다.

그 시골, 할머니, 그런 삶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가출을 했고. 꽤 길게 했어요. 8개월 정도 했어요. 집을 나갔고. 집을 나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할머니하고 뭐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할머니를 보러 아예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었고. 할머니랑 이제 뭐 전화도 하고 가끔. 1주나 2주에 한 번씩 할머니를 보러 간다든가 그러기는 했는데(A1).

가정환경 어려운 애들 나와서 후원받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중략) 어린 마음에 막 놀림 당하고 부모님 안 계시다고 놀림 당하고 이래서 계속 그냥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복지 선생님이 아시고 상담 센터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상담센터에 다녔어요(A2)

집에서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는 걸 알게 되시니까 더 의지하는 게 커진 것도 있고. 이제는 그게 당연해지시더라고요. 나중이 되니까. 안 벌면 왜 안 버냐고 하시더라고요.(A3)

이제 가게도 너무 어려워지고 그때 당시에도 할머니가 몸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냥 가게 안에 있는 천막, 그냥 커튼 하나로 구분되어 있는 방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몸도 커가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는 여기서는 더 이렇게 키우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외가 쪽에 이제 누구든 이렇게 책임을 좀 이렇게 저렸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A4)

일반위탁 가정의 경우 위탁 초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았으나, 위탁기간 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위탁을 경험한 4인 중 A9, A10, A11이 해당된다. A9의 경우 위탁부모의 사업 실패를 겪었으며, A10도 위탁부의 사망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A11 역시 중학교 재학시절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이사를 가는 등 위기를 겪었다.

위탁가정의 경제적 위기는 위탁아동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9는 경제적인 문제로 위탁부모가 위탁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저희 집이. 옛날에는 사업이 되게 잘 됐어요. 그때 저를 데려오셨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때부터 경제적으로 이제 좀 힘들어졌잖아요. (중략) 빨간 딱지도 붙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걸 다 제가

봤, 제가 겪었어요. (중략) 집에 가세가 기울 때 너무 불안했던 게 좀 컸어요. 왜냐하면 집에 한 사람도 없어야 돈이 덜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매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략) 언제든지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보내면 나는 끝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저는 입양이 아니잖아요. 위탁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저를 보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A9)

이제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집안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위탁 엄마가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큰 빚을 지게 되고 가족들이 불뿔이 흩어지고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중략) 그래도 저는 위탁 부모님하고 이사 가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A11)

다음으로는 위탁부모의 사망이나 별거, 출산 등에 따른 위탁가정 내의 변동에 따른 위기로 나타났다. A4의 경우 위탁부인 외삼촌의 사망을 겪었으며, A6은 위탁부모의 별거로 일정 기간 위탁부인 큰아버지와 생활을 했다. A7은 위탁모의 출산을, A10은 위탁부의 사망과 위탁모의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탁가정의 변동은 위탁가정을 보다 공고하게 결속해주기도 하지만 위탁을 해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A6은 위탁부모의 별거로 위탁부와 거주하였으나, 위탁모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성인이 되고 위탁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10의 경우에도 위탁부가 사망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위탁모가 병에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위탁모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친자녀들과 함께 위탁모를 간병하며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4의 경우 홀로 지냈던 위탁부인 외삼촌의 사망은 위탁의 해제와 위탁가정의 이동으로 이어졌다. A7은 최초 위탁시 부부가구에 위탁되었으나, 이후 위탁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위탁 해제를 경험하였다. 이후 임시보호시설과 원가정을 거쳐 다시 해당 가정에 재위탁되어 위탁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나 이들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다.

중학교 1학년 때 가정위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심해지셔가지고. 또. 뇌경색도 오시고 이렇게 암도 걸리시고 하시다가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언니(위탁모의 친자녀)한테 연락해서 엄마 병원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중략)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도 누워서, 제가 다 어머니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간병했었던 것 같아요. (A10)

이제 좀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때 이제 처음 충격 아닌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중략) 뭐 집 정리라든지, 뭐 유산 정리라든지 그리고 또 외삼촌도 이혼은 하셨지만, 가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막 오셔서 이렇게 정리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어쨌든 제 상황에서는 아, 또 다시 혼자가 됐고, 그럼 또 난 어떡하지 이제 슬픈 것도 슬프지만 아, 나는, 나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되게 컸었던 것 같고(A4)

그리고 목사님 가정(일반위탁 가정)에도 아기가 생기면서 약간 저희가 같이 지냈는데, 여건이 좀 안 돼서 중간에 이사를 하고. 저희도 했고. 그래서 결국 다시 임시보호시설 갔다가 다시 엄마한테 갔던 것 같아요(중략) 근데 거기서도 또 약간 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목사님이랑 얘기를 잘 해서 목사님네로 들어가면서 목사님 집 바로 근처에 월세 방을 얻어가지고 월세 방에서 지냈어요. (중략) 그렇게 지내다가 2년 정도 지나서 동생이 14살 때 동생이 집을 나갔고요. 이후로는 혼자 알아서 지내긴 했는데, 늘 목사님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잠만 따로 자는 느낌이었어요. 저녁도 늘 같이 먹고(A7).

마지막으로 위탁부모와의 신뢰 붕괴는 위탁가정과의 단절을 야기하는 주요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뢰가 붕괴되는 결정적 지점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이유가 다수를 차지했다. A2의 경우 보호 종료를 앞두고 본인이 수급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A2가 수급비를 직접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조모와의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나타났다. A3의 경우도 조모의 잦은 경제적 지원 요구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A3 모르게 A3 명의의 LH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조모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A5 역시 독립하는 과정에서 남아있지 않은 위탁지원금을 보며 그간 가지고 있던 서운함이 강화되어 독립 이후 한동안 위탁가정과의 접촉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이었던 A9도 수급비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탁부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져 위탁부모와의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탁부모와의 다양한 갈등은 위탁아동들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위탁을 해제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 내에서 가족 간 갈등이 심했던 A8은 결국 중도에 위탁가정을 나오게 되었고 쉼터를 거쳐 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2학년 들어서부터 수급비를 알게 돼서 그때 막 가정위탁센터에서 와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수급비 받고 있냐. 대학 진학할 때 지원금 200만 원 주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는 제가 받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나도 대학교 왔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다. 라고 해서 내가 수급비 받으면 안 되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중략). 약간 이렇게(싫어) 하셔서.(A2)

할머니가 대가를 많이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너를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것도 못 받냐. 넌 나한테 이것도 못 해주냐. 라고 하는 말이 좀 많아지고. 낯선 말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자마자 집을 나왔고 가끔씩, 가끔씩 할머니를 보니까 사이 좋더라고요. 가끔씩 만나니까 그냥 할머니도 잘 지냈냐. 이런 말을 하시고. 그러면 또 좋은 얘기만 하게 되니까 또 괜찮다가 좀 그 시간이 길어지면 또다시 돈 얘기를 하시면 저 또 회피하고 그냥 나 집에 갈게 하고서 가게 되고.(A3)

아, 사실 뭐 고모한테 좀 뭔가 뭐 약간 실망했던 부분도 막 이제 00시(타지역) 가는데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고모가 통장을 관리하잖아요. 이제 뭐 통장 받았는데 이제 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아, 뭔가 내가 이제 부모라고, 내가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아, 뭐 내 자녀한테 이제 뭐 00시 가는데 이제 뭐 그거를 막 아득바득 다 뭔가 쓰는 거 자체가.(A5)

저는 제 이름으로 수급비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하니까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1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시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수급비가 나오는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나한테 이걸 숨겨?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 성인이었잖아요. 통장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고 수급비가 들어올 통장

이 있는지도 몰랐고(A9)

큰고모랑 사촌오빠랑 새언니가 (중략) 트러블이 엄청 많았어요. 항상 매일 싸우고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일단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었어요. (중략) 사촌오빠한테 말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다. 집을 나가고 싶다. 그래서 오빠가 알겠다. 그럼 오늘 8시까지 짐 빼라. 이래가지고. 주변에 쉼터를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육원을 아예 자체를 몰랐어가지고. 그런 데 있는지를. 그리고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몰랐어가지고. 그때 당장 일단 짐을 빼야 될 상황이었어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여성 전용 쉼터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위탁 해제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성 쉼터에서 거기서 이제 2개월 살았어요.(A8)

〈표 4-19〉 위탁기간 동안 경험한 위기와 대응

	id	보호 유형	주된 위기와 갈등	대응 및 결과
1	A1	대리위탁	- 조모와 가시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 8개월간 가출을 하였으나 자발적 귀가후 위탁종료함
2	A2	대리위탁	- 보호종료를 앞두고 지원금 통장의 명의 변경 과정에서 위탁모(조모)의 반대로 갈등	- 한동안 교류하지 않았으나, 연락을 재개함
3	A3	대리위탁	- 위탁부모 별거에 따른 위탁모(조모)의 잦은 경제적 지원 요구, 위탁지원금 사용처 등으로 인한 갈등	-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 A3의 임대주택에 친지가 거주함에 따라 별도 거주지로 독립함
4	A4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 위탁부모(조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 대리위탁이 해제되고 친인척위탁(외삼촌)으로 이동
			- 위탁부(외삼촌)의 사망	- 친인척위탁이 해제되고 위탁자를 오빠로 변경함
			- 가사일 분담 등에 따른 오빠와의 갈등	- 보호종료 이후 독립함
6	A5	친인척위탁	- 독립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에 관한 갈등 발생	- 보호종료 이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음
7	A6	친인척위탁	- 위탁부(큰아버지)와 위탁모(큰어머니)의 별거	- 위탁모와 관계는 지속
5	A7	친인척위탁, 일반위탁	- 위탁모(일반위탁)의 출산	- 위탁이 해제되고 임시보호시설을 거쳐 원가정으로 복귀함 - 다시 재위탁되었으나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id	보호 유형	주된 위기와 갈등	대응 및 결과
				별도의 주거지에서 거주함
8	A8	친인척위탁 (+시설보호)	- 위탁모 및 위탁모의 자녀(고종사촌)와의 갈등	- 갈등이 심화되어 위탁해제 - 시설로 이동, 위탁가정과 연락하지 않음
9	A9	일반위탁	- 위탁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A9의 수급비, 지원금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 경제적으로 - 위탁가정에서 독립하였으며 연락하지 않음
10	A10	일반위탁	- 위탁부의 사망으로 인한 위탁모의 건강악화	- 위탁모를 간병하고 서로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함
11	A11	일반위탁	- 위탁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가족내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함

라. 위탁가정에서의 정서적 유대

11인이 경험한 가정위탁에 진입 이후 위탁부모와의 정서적 거리는 연구 대상자들마다 상이했다. 우선 위탁가정을 이동하지 않고 한 가정에서 위탁을 지속한 8인의 대상자 중 위탁부모와 정서적으로 충분한 유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인이었다. 3인 중 1인은 혈연위탁가정에서 생활한 A6이었으며, 2인은 일반위탁가정에서 성장한 A10과 A11이었다. 이들에게 위탁가정은 일반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가족이라고 설명했다. A11의 경우 위탁가정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원가정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들 역시 사춘기를 겪으면서 위탁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일반가정들처럼 방황으로 인한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중학교 1학년 때 가정위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 되게 힘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가정위탁 어머니가 저를 되게 의지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고 그렇게 잘, 가족처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가족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진짜 가족.(중략)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다른 가정이나 시설로 갈 선택지가 있었다고 해도) 안갈거

예요. 제가 가면 엄마가 혼자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내팽개친 느낌이에요.(A10)

어, 어머니랑은 되게 음, 뭐라 해야 되지. 친구? 네. 친구 같다? 그랬고 그리고 아버지랑은 음, 어?
(웃음) 아버지랑은 조금 더 아, 아버지랑은 조금 원수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웃음)(A6).

아빠는 일단 저희 위탁 가족 내에서 애인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친하고.
엄마도 친해요. 엄마도 거리낌 없고.(중략) 정말 가족 한 명이 없다고 하면 저는 제정신으로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전 그 정도로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저도 사춘기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에는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이 한 가정은 칼로 물 베기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A11)

나머지 5인 중 2인의 연구 대상자는 위탁기간 전반을 고려했을 때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를 맺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모가 위탁한 A1과 A2의 경우였는데, 조모 홀로 손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아동들과 유대를 맺을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1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조모를 도와 일만 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A1과 동일하게 조모의 보호를 받았던 A2 역시 할머니가 바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항상 혼자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어렸을 때 계속 일만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도와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논일, 농사 일, 밭일, 이런 농사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 집안일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셸프였어요. 왜냐? 할머니는 이른 아침에 밥만 상에 차려놓고 나가니까. 밥을 해놓으면 밥을 이제 할머니 해주시면 먹고 설거지하고 또 뭐 집 청소한다든지 집 정리한다든지(A1)

할머니도 일을 하셔야지고 집에 가면 혼자고 밥도 못 챙겨 먹으니까 저녁 프로그램까지 항상 학교에서 들고 집으로 왔었는데, 이제 할머니도 밤늦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항상 집에 혼자 있었어서 저 초등학교 때 우울증 걸리고 그랬었어요. 할머니도 저희 말아서 길러주신 것도 엄청 감사는 한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할머니 기억도 많이 없고 막 밖에 어디 간다거나 집에서 제대로 밥 먹었던 기억도 많이 없었어가지고. 거의 약간 발생했다? 방치됐다? 이런 느낌이었어 가지고.(A2)

한편 3인의 대상자는 위탁 초기에는 위탁부모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나 사춘기, 위탁부모와의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으며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위탁한 A3은 어린 시절에는 위탁부모에 대한 신뢰가 컸으나 사춘기를 겪는 과정과 경제적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으며, 고모가 위탁을 한 A5도 초기에는 엄마라고 생각할 만큼 좋았던 기억도 있으나 사춘기를 겪고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이야기 했다. 일반위탁이었던 A9의 경우도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 나는 왜 쓸 수 있는 엄마 아빠 이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할머니가 저를 꼭 껴안아주시면서 내가 있지 않냐. 할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안아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같이 껴안고 그냥 엉엉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중략) 할머니 혼자 남겨 되니까 그런 짐들? 이런 거를 할머니가 혼자 다 짊어져야 되시다 보니까 슬슬 저한테 많이 기대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기대셨는데 대학교가 돼서는 더 좀 심하셔가지고 그때는 할머니가 대가를 많이 바라셨던 것 같아요.(A3)

한 중학교 때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느낌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 고모가 아, 내 엄마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껴지는 순간들? 그런데 그런 게 되게 안 좋게 다가오는 순간들. 뭐 그런 것들.(A5)

한편 위탁가정의 이동을 경험한 대상자들의 경우, 위탁가정을 이동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상실과 적응의 문제 등이 있으나 안정적인 양육자를 만난 경우 이동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충분히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외삼촌을 거쳐 오빠의 집으로 이동한 A4의 경우는 조부모에 대한 애정과 함께 안정감을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조부모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진 외가친척 집에서도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급작스러운 위탁부의 사망 이후 성인이 된 오빠의 집으로 이동한 A4는 오빠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어린나이에 집안일을 떠맡는 과정에서 오빠와 갈등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A4와 같이 위탁가정의 이동경험이 있는 A7의 경우에도 위탁가정을 이동하고 위탁 해제와 재위탁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부모에게서 안정을 느끼고 애착관계를 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8의 경우는 위탁가정에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못했으며, 이는 A8이 위탁가정을 떠나 시설로 입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냥, 그냥 엄마, 아빠 대신 같은 존재가 그냥 있다는 거에 대한 정말 그, 안도감. 저한테는 그냥 제일 마지막 그래도 남아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총략) 외삼촌이 최대한 뭐, 저한테 비싼 걸 해주진, 브랜드 피자를 사주지 못해도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동네에 있는 저렴한 피자라도 사주려고 노력하셨던 게 그때 느껴졌었기 때문에(A4)

하숙집처럼 지냈어요. 좀 친자식이랑 조카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거기서 많이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A8)

마. 자립을 위한 지원과 경험

현재 위탁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A11을 제외한 10인의 대상자들은 모두 보호종료와 자립을 완료하였고 혼자 거주하고 상태였다. 실제로 이들의 독립은 보호종료 시점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5인은 연장보호 기간이었으나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통학 등의 사유로 기숙사나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방식으로 독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인의 대상자는 연장보호 기간 동안은 위탁가정에서 거주하고 보호종료 시점에서 독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A7은 두 번째 일반위탁을 시작한 16세부터 독립가구에서 거주하였으며, 약 2년 동안은 동생과 함께 거주했으

나 동생의 가출 이후 홀로 거주하였으며, 시설로 이동한 A8은 보호종료 시점인 퇴소 시점에서 자취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독립에 대한 욕구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히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욕구로 확인된 경우도 있으나, 위탁 기간 동안 발생한 갈등을 벗어나고자 하는, 위탁가정을 떠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독립을 서두른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을 위한 준비나 지원이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연장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금을 바탕으로 독립한 대상자도 있었으나 학업 등의 사유로 연장보호 이전에 독립한 경우 보증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전에 독립한 A1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디딤돌 통장을 해지하고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고 보증금 없는 자취방을 구했다. 역시 보호종료 이전에 대학 입학으로 독립을 시작한 A2는 기숙사 입소시 1년치 기숙사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결국 친인척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기숙사를 퇴소하고 쉼어하우스나 친구집, 원룸 등을 전전하며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종료 후 자립정착금으로 독립한 경우에도 정보부족이나 정착금의 수준이 높지 않은 관계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의 독립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들의 낮은 정보접근성은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활용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쨌든 좀 뭐 약간 상처받는 말들도 많았고 그리고 좀 뭔가 개인적으로 아, 뭔가 나왔으면 안 그랬을 거 같은데라는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뭔가 약간 OO지역으로 오게, 가게 된 것도 뭔가 좀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뭔가 빨리 뭔가 좀 여기서 뭔가 벗어나고 싶은?(A5)

저희(대학교 기숙사)가 1년 단위로 돈을 내야지 입주 자격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느낌? 그래서 300만 원 넘게 한 번에 냈어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그 돈을 대신 내주셨고. (중략) 기숙사 나왔을 때 그때 원룸이나 셰어하우스에서 전전하면서 살았는

데, 원룸 같은 경우는 월세가 엄청 비싸서 부담스러운데 그때 또 코로나 터지고 학교 갈 이유가 없으니까 막 언니 집에서 지내거나 막 한 달 동안 언니 집에서 지내거나 막 친구 집에서 지내거나 계속 이렇게 전전하면서(A2)

오빠랑 둘이 지내는 이런 스트레스랑 트러블에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졸업을 하면서 그, 정착금이라고 해야 되나? 400만 원인가. 그때 나왔었던 정착금이라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좀 몇 백만 원 모아놨던 거를 보태가지고 그때 그냥 무작정 자취를 하겠다 하고 집을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수중에 있는 돈으로 내가 일단 구할 수 있는 집을 구해서 일단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도 그냥 백팩에 짐 챙겨가지고 버스 타서 이삿짐 옮겨가지고 그렇게(A4)

사실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친구들도 보호가 종료되면, 다 같이 자립준비청년인데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중략) 가정위탁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하고 비슷한 맥락이 많아요. 정보접근도가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서 보호 종료,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해서 이해해서. (중략)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40-50명 친구들 통상 요즘 재원하고 있는데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다 한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중략) 보호환경 당시의 자원의 차이, 자립 교육을 얼마나 또 받을 수 있느냐.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 그런 거에 의해서 보호아동의 자립준비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A1)

4. 보호 종료 이후의 평가

마지막으로 보호 종료 이후 위탁부모와의 관계와 가정위탁 재선택의향을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우선 보호 종료 이후 위탁부모와의 관계는 위탁기간 동안 맺은 정서적 친밀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위탁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맺은 A6, A7, A10, A11은 종료 이후에도 위탁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위탁부모와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낮았던 A5, A8, A9는 종료 이후에 위탁부모와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끔 안부를 묻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부모 가정에서 위탁된 A2와 A3의 경우에는 조부모와 간헐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부모 부양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는 조부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제일 마음에 항상 걸리는 건 할머니도 감사하고 정말 잘하고 싶고 연락도 자주 하고 싶고 그런데 또 막상 전화 오고 볼 시간이 되면 안 받고 싶고 안 보고 싶어요. 그냥 뭔가 회피하고 싶은.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막 전화로 아프다 막 이러시고 제가 성인 되어서 막 돈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답답해요. 좀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유도 되니까 도와드리고 싶은데. 계속 한두 번 돈 보내주면 끝도 없다는 걸아니까 (A2)

할머니가 저한테 바라는 건 금전적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중략)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저에게 주는 돈을 할머니가 쓰시고 있었고(중략) 억울하죠.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A3)

한편 가정위탁 이외의 보호체계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가정위탁을 선택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7인의 대상자는 가정위탁을 선택할 것이라 답했으나, 4인의 대상자는 가정위탁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유보하거나 시설보호를 택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가정위탁을 선택한 이들은 가정위탁에서 얻은 안정감과 만족감이 큰 경우도 있었으나, 가정위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며, 혈연위탁의 경우 뿌리를 알 수 있고 최소한의 내편이 있다는 점에서 가정위탁의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위탁가정을 여러 차례 이동한 A4와 A7 역시 가정위탁을 선택했으며, A7은 불안정한 혈연위탁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일반위탁가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5와 A9는 시설보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선택할 수도 없고 가정위탁 과정에서 힘들었던 경험으로 인해 가정위탁을 재선택할 의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5는 가정위탁, 특히 혈연위탁의 경우 위탁하는 것이 위탁부모의 의지가 아닌 상황에 떠밀리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

강하지 못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음을 강조하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A1은 오히려 편리하고 지원이 많은 시설에서 원가정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위탁가정과 시설을 모두 경험한 A8 역시 불안정한 위탁가정보다는 시설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던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키우는 면도 있잖아요. 뭐 이제 부모님은 뭐 이제 자기 자식이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원해서, 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해서 낳은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이제 뭐 밀려서 밀려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맡게 된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뭐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양육 태도가 이제 좀 아무래도 뭔가 아이에게 좀 안 미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A5)

다행히 고등학교 때 시설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수급자 중에서도 자립 청년 생들이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모든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략) 왜냐하면 일단은 가정위탁에 있으면 아무래도 일단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아무래도 그 뭐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기관에서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보육원에서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 후원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다 지원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더 풍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일단은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 일단은 가족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본인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A8).

5. 시사점

본 절에서는 위탁가정에 정착하고 자립에 이르기까지 위탁아동들이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가정의 배치와 정착, 갈등과 위기, 그리고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례연구 방식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위탁아동들은 위탁 이전 뿐 아니라 위탁가정에 진입한 이후

에도 위탁처의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식적인 위탁가정으로 지정이 되어 지원을 받기에 앞서 다양한 형태의 친인척 돌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공식적으로 위탁가정에 진입한 이후에도 이동의 경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동은 위탁의 해제나 위탁처의 변경뿐 아니라 공식적인 위탁가정은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이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변화를 추적하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둘째, 위탁아동을 맞이할 수 있는, 위탁가정으로서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부 혈연위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일반위탁가정에서도 관찰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일반위탁가정은 모두 공식적인 위탁가정으로 진입한 이후 보호아동이 배치된 것이 아닌, 특정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위탁가정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혈연위탁가정뿐 아니라 일반위탁가정 역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탁가정의 부적절한 선택이 위탁아동의 표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혈연 위탁가정에서 관찰된 경제적 어려움 역시 위탁아동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웠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탁부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탁아동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결국 위탁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 역으로 위탁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점에서 혈연 위탁가정의 장기적 변화를 관찰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정위탁의 최우선 목표가 원가정 복귀이나, 성급한 복귀는 위탁

아동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원가정 복귀보다는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였다는 점에서 건강한 원가정을 준비하는 별도의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위탁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체계의 세부적 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한 경우는 적었으며, 이용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위탁아동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성인이 되기 이전에 정기적인 상담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적었다. 상담을 받더라도 위탁부모와 함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거나, 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인해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물론 최근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지난 경험보다는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담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많고, 상담주기가 길다는 점에서 지원체계의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탁아동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모든 면접 대상자들이 강조하였다. 위탁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혹은 받고 있는 지원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대상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충분한 정보 제공은 위탁아동들의 자립을 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으며, 위탁부모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섯째, 위탁가정은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내의 불화, 위탁부모의 사망이나 출산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기를

겪으며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사이가 더욱 끈끈해지기도 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함으로써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위탁가정에서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탁을 해제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는 등 관계가 종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가정이 그러하듯 위탁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간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서적 유대가 깊은 경우 위기 극복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탁부모와 아동이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사춘기등 아동의 성장 과정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탁가정의 경제적 변화 등을 포함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역시 필요하다. 가정내 위기와 갈등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가정보호 대안적 사례 경험

본 절에서는 가정 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가정보호 활성화와 탈시설 시도 경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정 외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과 탈시설을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서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시도 사례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들 관련 기관의 시설장 또는 실무자 인터뷰, 현장 방문, 내부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뷰 개요

가정보호 대안적 사례 경험 분석을 위한 인터뷰 참여자 선정기준은 가정보호 활성화 및 탈시설을 시도한 실무 경험자로서, 원가정복귀 지원, 소규모 그룹홈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의 시설장 또는 종사자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직접적인 보호 서비스와 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시설장을 면담하였다. 인터뷰는 2023년 5월 8일과 9일에 각각 한차례 진행하였다.

〈표 4-20〉 국내 사례 인터뷰 참여자 개요

구분	연번	직위	지역	방식
공동생활가정	A	시설장	서울	대면 인터뷰 현장 방문
아동양육시설	B	시설장	경기	대면 인터뷰 현장 방문

2. 원가정복귀 중심 보호를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사례

가. 가정복귀사업 도입배경 및 운영방식

1) 도입배경

그룹홈 A의 가정복귀사업 도입 배경은 시설장의 개인적인 경험 및 성찰과 아동복지 학계의 제안을 실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룹홈 A의 대표는 본인이나 시설의 종사자들이 친부모를 대체할 수 없고, 시설의 거주·생활환경이 아동 자신의 가정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호아동들을 통해 깨달았다고 한다. 즉,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그룹홈 선생님보다는 ‘부모

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그룹홈과 달리 그룹홈 A에서는 아동들이 종사자를 '쌤'이라고 부른다. 그룹홈도 가정이어서 여타의 그룹홈에서는 아빠, 엄마로 부르기도 하고, 원장님, 수녀님, 목사님, 삼촌, 이모로도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룹홈 A에서는 종사자들이 부모의 역할을 잠시, 대신하는 존재로서 최소한의 몫만 겨우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어설픈 아빠, 엄마보다 선생의 도리를 한다는 점에서 '쌤'이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그룹홈(시설)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시설 아이는 몸만 커지지 마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시설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부모처럼은 못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니고 쌤입니다.” (A)

최근 분리보호아동에 대한 원가정복귀 지원 강화를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원가정복귀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룹홈 A는 2016년부터 가정복귀 중심으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룹홈 A의 가정복귀사업은 이벤트성 또는 정기성 사업 형식이 아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였다. 가족과 갑자기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목적으로 '보호아동과 가족과의 일상적 관계 맺기'가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룹홈 A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네이버 카페와 밴드를 통해 회원들에게만 아동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글, 사진, 동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자신, 퇴소아동, 아동들의 가족, 결연가족, 후원자까지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야외활동, 아동과 원가정 가족·결연가족·후원자와의 만남,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기적 SNS 활동은 가족관계 회복 및 유지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2) 운영방식

그룹홈 A의 가정복귀사업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동이 그룹홈 A에 처음 입소하면 종사자들은 초기 1~2개월은 부모와 연락하지 않고 아동과 관계를 쌓아가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종사자들이 부모를 먼저 만나게 된다. 부모와의 최초 만남은 가정방문 형식으로 대표와 종사자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택한다. 그룹홈 A 대표는 이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보고 있는 당사자로서 부모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관계 형성(라포)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부모는 아동과 분리된 후 소식을 듣기 어려우므로 종사자들은 이들에게 아동의 소식과 현황을 알려주고, 부모 입장에서 아동과의 관계와 사연을 듣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애착물건을 집에서 가져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돕는다고 하였다. 부모에게는 SNS에 가입하여 아동들의 일상을 볼 수 있도록 하며, 형제·자매가 만남을 희망하는 경우, 그룹홈 A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아동이 분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종사자-부모 만남을 여러 번 가진 후 아동과 부모가 서로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종사자, 아동, 부모가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여러 차례 가진다고 하였다. 이후 주말마다, 방학마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양측의 동의 하에 단계별로 만남을 확대해 나가며,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와 아동의 여행에 안전을 위해 종사자 1명이 따라가는 ‘그림자여행’도 그룹홈 A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종사자가 부모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가 직접 그룹홈으로 방문하는 등으로 접촉의 방식과 횟수를 늘려간다고 하였다.

가족복귀사업의 핵심은 ‘관계 개선’이다. 그룹홈 A 대표는 시설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임을 강조한다. 그룹홈 A에서는 별도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동과 부모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룹홈 A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이 규칙들은 모두 가족관계 회복과 원가정복귀를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 종사자 선생님들과, 대안가족과, 멘토와, 퇴소하여 가족에게 돌아가고 자립한 아동과 함께 지지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룹홈 A의 원가정복귀는 순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21〉 그룹홈 A 규칙

구분	내용
연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아동의 입학, 졸업, 진로 선택, 학부부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종사자는 수시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알림. • 부모도 자녀가 궁금할 때 언제든지 연락함.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방학 때 아동들이 부모님 집 방문 • 집으로 갈 때는 성적표, 작은 사진앨범을 보냄(매일 크고 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의 공백을 부모가 사진으로 추억하며 채울 수 있게 하는 배려임).
아동 만나러 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입학, 졸업, 병원 등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든지 그룹홈 A으로 와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 일 년에 한 번 있는 그룹홈 A 송년회에 부모님 초대 및 참석
여행 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퇴소아동 만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살기 위해 그룹홈 A을 떠난 아동들과 만나기 • 매해 진행되는 그룹홈 A 전체 캠프(2박 3일)에 현재 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자립아동, 부모님, 가족, 자원봉사자를 초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듣고 나누기 •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가, 찾아와 만나기

3) 무연고 아동

부모 사망이나 연락 두절로 아동이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부모가 수감된 상태의 무연고 아동의 경우, 종사자는 아동과 함께 부모의 묘지나 납골당을 방문하거나 교도소 면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만일 만남을 거부하면 아동과 어린 시절 생활했던 동네, 학교, 집을 찾아 아동을 통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도록 하며, 종사자는 아동과 함께 해당 아동이 그룹홈 A에 오기 전에 살던 지역으로 추억여행을 떠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동의 부모와 접촉을 시도하고 성장배경을 알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룹홈 A에서는 새로운 보호자를 찾고 만들어 주는 ‘대안가족’ 결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룹홈 A의 대안가족은 수년간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아동들을 오랜 기간 봐오고 이미 친분이 많이 쌓인 관계이다. ‘봉사자’나 ‘후원자’라는 명칭 대신 ‘대안가족’, ‘멘토’라는 책임감의 무게를 얹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아동들과 1:1 매칭된 멘토 선생님들이 아동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고 있다. 방학·명절과 같이 다른 아동들이 원가정을 방문하는 시기에 무연고 아동들은 대안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정복귀사업의 성과

1) 보호아동

그룹홈 A 가정복귀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아동들이 원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룹홈에서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졌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친가족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가족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해소되고 애정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부모와의 전화통화가 길어지고 애착행동이 많아지면서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해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비록 가정으로 바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동의 행동이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우울감도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2) 부모(가족)

부모가 아동과 분리되어 지내게 되면 부모로서의 박탈감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이 점차 감소하거나 자녀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서로에 대한 정보 부재, 연락 두절, 관계 단절이 점차 확대되면서 부모와 아동은 분리상태에서 관계회복이나 원가정복귀가 점차 요원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홈 A에서는 빈번한 접촉과 관계맺기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를 직접 키우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부모들은 본 사업을 통해 자녀 및 종사자와 자주 통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며 자녀와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가 차츰 개선되며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 함께 하는 여행, 더 빈번한 연락과 만남 뿐 아니라 그룹홈 근처로 이사를 하기도 하였다(조소연, 노혜련, 2018).

보호아동과 그 가족들은 지지체계가 부족하였으나, 그룹홈 A의 원가족 복귀사업을 통해 지지체계가 확장되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과 가족들은 종사자와 상의하고 물어보는 동반자적·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였고, 다른 아동의 가족이나 대안가족과도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또 다른 지지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조소연, 노혜련, 2018).

3) 종사자

그룹홈 A 대표는 종사자 역량이 가정복귀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룹홈 A의 아동들은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 대한 종사자의 언행과 태도를 지켜보면서 종사자를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였다. 그룹홈 A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종사자들이 아동의 부모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지지체계의 근간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 가정복귀사업의 한계

원가정복귀는 모든 보호아동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이나,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결과’로서의 원가정복귀에 대한 두려움이다. 실제로 모든 보호아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오히려 원가정복귀보다 다른 대안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원가정복귀 후 아동보호체제로 재진입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시설 종사자는 실패할 수 있는 ‘결과’로서의 원가정복귀에 대한 염려와 원가정에 대한 불신을 일정 수준 갖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정복귀해도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집으로 돌려보내느니 시설에서 성장하는 것이 낫다’, ‘가망 없는 가정복귀보다 자립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등의 부정적 견해가 존재한다. 그렇다보니 일부 시설에서는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가정복귀사업 추진이 어렵고, 공적

보호체계에서는 결과로서의 원가정복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의 원가정복귀 결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원가정복귀’는 친권자인 부모와 태어나고 관계를 맺었던 가족으로 돌아감을 뜻한다(김진숙, 정선옥, 최경옥, 2021). 이것은 아동이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그룹홈을 떠나 원가족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김진숙 외, 2021). 원가정복귀는 물리적 결합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원가정과의 양질의 관계 회복 및 유지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모두 해당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질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중심으로 원가정복귀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복귀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원가정복귀에 대한 긍정적 성과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아동의 가정복귀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현장에서는 아동의 시설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단편적·형식적으로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시설에서 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관심은 주변적 위치, 부수적이고 선택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정선옥, 김은영, 2020).

셋째, 열악한 그룹홈 운영 여건으로 인한 원가정 복귀 자원의 부족이다. 대다수 그룹홈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외부의 예산지원 없이 가정복귀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근무여건이나 처우가 열악하여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룹홈은 소수의 인력이 3교대로 근무하며 휴일 없이 24시간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 아동을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아동의 가족까지 만나 관계 개선을 도울 시간이 없으며, 낮선 대체인력을 활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넷째, 행정절차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이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그룹홈에서 가정복귀 사업을 진행하여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려 해도 그룹홈 시설장의 의견은 참고만 될 뿐 판단과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오랜 기간 아동을 돌보고 아동과 가족간 상호작용을 관찰해 온 시설장의 의견이 가정복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시설장들은 시설장의 자문이나 발언권 없이 지자체 공무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 대안적 방안: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시도

가. 시설현황

양육시설 B는 자립홈을 현재까지 3개호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립홈은 흔히 볼 수 있는 연립빌라와 같은 구조로, 4층짜리 건물 내 3~4층에 있는 개별 집 현관 입구에 방 번호를 부착하고, 현관벨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응답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미 시설은 개별 숙소 형태로 전환한 지 오래되어, 일반 가정집과 동일하게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이 있고,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고연령의 아이들은 1인 1실을 사용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각 호마다 성별·연령대 별로 나뉘어 거주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공동생활 공간은 식당, 활동실, 컴퓨터실, 작은도서관 등이 있다.

시설에는 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지도원만 30명 이상이다. 아동 정원은 50명이나 현원은 45명 미

만이다.

나. 소규모 그룹홈 시도 배경 및 운영방식

시설장은 시설보호가 불가피하나 보호아동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 시설 안으로만 들어와도 시설아동으로 오해하는 지역주민의 낙인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규모화를 과거 시도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시설 운영법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아, 남아집, 여아집을 임차하였다. 중고등학생 남녀로 거주지를 구분하였고, 각각 아동 4명과 종사자 1명이 생활하도록 하였다. 종사자 1명이 출퇴근 거주하면서 자립체험관과 유사하게 아동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생활하되, 기본적인 규율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공과금은 법인에서 직접 지출하고, 청소, 빨래, 장보기 음식 준비, 의류구입 등 생활비는 아동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소규모 그룹홈 운영 실패 요인과 성과

결과는 남아 그룹홈은 실패, 여아 그룹홈은 성공이었다. 시설장은 당시 실패와 성공을 결정한 요인으로 ‘재정지원’, ‘관리감독체계’, ‘선생님과의 상호신뢰관계’를 지적하였다. 남아의 경우, 소규모 그룹홈 운영 6개월만에 다시 양육시설 B로 돌아왔는데, 함께 생활하던 종사자와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 시설에서 거주하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외부 그룹홈에서 생활하다보니 남아들은 반항과 일탈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남자 종사자가 더욱 엄격히 규율을 관리하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당시 종사자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 남아들과 충

분한 관계 형성이 부족한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남자애들은 자기들을 옥죄고 압박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애들하고 선생님 나간 지 6개월만에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애들도 시설에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다고 하고. 남자 선생님은 아이들과 사이가 좋았는데 애들이 규칙도 안 지키고 반항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붙잡아두려니 더 험해지고. 선생님하고는 갈등이 심해지고, 자기들끼리는 사이 좋았어요. (B)

반면, 여아들은 어려서부터 키웠던 선생님과 외부 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미 엄마라고 생각해서 종사자와의 애착이 깊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미혼인 여성 종사자는 워킹맘처럼 주간에는 양육시설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그룹홈으로 나가 여아들과 장보기, 음식하기 등을 하면서 1년 넘게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였다.

그 선생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희생을 많이 했어요. 여자애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서 애들이 엄마라고 생각해서 애정도 깊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과 의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였어요. 그 선생님은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비로 애들 선물도 사주고 외식도 많이 하고 애들하고 이 미 애정이 깊었던 관계였지. 여자애들은 그때 나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더라구요. (B)

여아들이 외부 그룹홈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월세 인상 요구가 있었고, 추가 재정지원이 어려워 그룹홈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낮에는 아동들이 학교에 간다고 할 지라도 부모처럼 하루종일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종사자 역량이 감당되지 못하였다.

시설장은 당시에는 재정, 인력, 관리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소규모 그룹홈을 별도 운영하게 되었는데 다소 무모한 도전이었으나 아동들이 단체생활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정 구조에서 생활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4. 시사점

가정보호 대안적 사례 경험을 검토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정복귀 중심 사례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정외보호는 아동의 가족관계 회복 및 원가정복귀를 최종 목표로 하여 일시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유형에 관계없이 가정외보호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가정과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원가정복귀를 위한 초기 개입, 심리상담, 신뢰 형성, 만남 지원, 사후관리가 보호기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복귀사업의 핵심은 ‘관계 개선’이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아동 양육·보호서비스 제공도 중요하나,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보호의 대안적 방안으로서 양육시설의 소규모화를 성공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화를 위한 예산(주거비, 인력 등), 인력 및 관리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인력과 보호아동 간의 친밀감과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성과가 나타나 인력-아동 간의 개인적 친밀감과 애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미 시설에서는 가정형 거주형태로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능보강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단순히 거주 환경이 가정형이라고 하여 가정형 보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요 대비 가정위탁의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의존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시설의 소규모화나 전문·특성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면,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유형에 상관없이 가정외보호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 적은 예산과 소규모 인력으로, 시설이 자체적으로 변화하기만을 기대해서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국외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

제1절 일본사례

제2절 미국사례

제3절 불가리아·리투아니아 사례

제 5 장 국외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

제1절 일본사례

1. 일본의 가정보호 현황

가. 요보호 아동체계 현황

일본의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요보호를 받고 있는 연간 아동 수는 약 45,000명이며, 이러한 요보호 아동은 크게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에 의해 사회적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표 5-1) 참조). 일본의 가정 외 보호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의 종류는 영아를 보호하는 유아원,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피학대 아동 등 기타 환경상의 이유로 양육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호시설, 가정환경, 학교 교우관계 등 기타 환경상으로 이유로 사회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심리치료시설, 비행, 불량행위 등의 아동 및 기타 환경상의 이유로 생활지도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자립지원시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여성이 보호해야 하는 자녀와 생활하는 모자생활지원시설, 의무교육을 종료한 아동 또는 아동양호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을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며 아동자립원조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소규모 그룹케어와 지역소규모양호시설은 아동양호시설을 본원으로 두는 분원형 시설로서 대규모 집단시설의 소규모화 및 지역분

산화를 통한 이른바 탈시설화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가정화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한편 가정보호는 가정위탁과 패밀리 홈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위탁¹³⁾은 ‘양육’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입양’ 가정위탁, ‘친족’(3촌이내) 가정위탁으로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문’ 가정위탁제도는 피학대아동, 비행행동 또는 그러한 행동의 우려가 심한 아동 그리고 신체, 지적 또는 정신건강에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보호하며, ‘입양’ 가정위탁은 입양을 희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정위탁제도이다.

패밀리홈은 소규모 주거형 아동양육사업으로써 가정위탁과 조치제도¹⁴⁾의 이점을 살려 양육자의 가정에 아동을 맞이하여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양육을 행하는 것으로 가정보호체계의 일환이다. 대상아동은 가정과 동일한 양육환경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며 정원은 5명 또는 6명이다.

일본의 아동복지체계는 생활형 시설보호(residential work) 형태로 발전해 왔으나(伊藤嘉余子, 2007), 산업화에 의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요보호 아동의 양·질적인 다양화와 더불어 1994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과 함께 아동권리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요보호아동체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는 일본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총괄의견에서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일본의 시설보호에 대해 1998년 1차 권고에서는 시설중심 구조개혁 필요, 2004년 2차와 2010년 3차에서는 대안 양육체계의 가정적 환경 개선 및 강화, 나아

13) 일본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里親制度」로 표기하며 직역하면 수양부모제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가정위탁’ 또는 ‘위탁가정’으로 의역하였다.

14)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판단하여 서비스의 종류나 제공기관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게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말한다.

가, 2019년 4~5차 보고서의 권고에서는 시설보호 재정의 제한을 통한 가정형 보호 재원 강화와 탈시설화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능력확보 등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양육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일본의 국내외적 상황과 함께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기준 시설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32,945명, 80.9%, 가정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7,798명, 19.1%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시설보호의 특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3년 93.9%에 이르던 극단적인 시설보호율을 2008년 92.0%, 2013년 88.2%, 2018년 84.1%, 2021년 80.9%로 감소시켰고, 2003년 6.1%에 불과하던 가정보호율을 2008년 8.0%, 2013년 11.8%, 2018년 15.9%, 2021년 19.1%로 향상시킨 것은, 점진적이지만 가정보호제도에 대한 개선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¹⁵⁾.

일본은 “일본형 사회적 보호¹⁶⁾”를 구상하며 2003년 시설 개혁을 위한 로드맵 발표 이후 소규모 그룹케어 및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의 제도를 신설 및 강화하였다. 특히 시설의 기능 중 양육환경 및 케어 단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가정화 및 소규모화하는 것 또는 가정화 및 소규모화된 시설

15) 1990년대에도 요보호아동은 시설보호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정위탁율은 6%(1998-2001) 대로 머물러 있었으며(三輪清子, 2011, p.47), 2002년 가정위탁제도의 개정 이후 가정보호율은 증가세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동향과 변천에 대해서는 후술을 참조바란다.

16) ‘일본형 사회적 양호’란, 전국아동양호시설협의회장 이었던 후지노가 제기한 용어로 구미에서 시도한 시설 폐지를 통해 가정위탁을 이행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본의 조치제도를 통해 4~6인의 소규모 케어, 개별케어의 충실 및 강화를 도모하면서 시설과 가정위탁이 연계하여 시설의 소셜워크 기능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堀場純矢, 2019).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양호시설 근미래상 I·II(全国社会福祉協議会·全国養護施設協議会, 1995; 全国養護施設協議会, 2003)」에서 제안되었고, 국가주도의 로드맵인 「사회적양호 방안에 관한 전문위원회 보고서(厚生労働省, 2003a)」와 「사회적 양호의 과제와 장래상(厚生労働省, 2011)」에서 보다 더 구체화된다. 이는 탈시설의 논쟁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과 함께 대규모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시설화된 방식과 노력을 모두 탈시설에 포함하는 광의적 입장, 즉 탈시설화(化)에 가까운 입장이다(박수경, 2016)

을 지역으로 밀착시키는 지역분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규모 그룹케어 및 지역소규모양호시설을 추진하는 아동양호시설은 2005년에 각각 286개, 89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1,795개소, 527개소로서 약 31~33%의 증가율로 점진적인 탈시설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나. 보호아동 욕구의 다양화

1990년대까지 사회적 보호 아동은 연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혼, 입원 등 주로 보호자의 사정에 의해 양육할 수 없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복잡한 사회구조로의 변화, 개인주의 심화와 가정의 해체 등은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단순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양육을 대체하고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치료와 함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상담소가 발표한 아동학대 상담건수¹⁷⁾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의 통계건수는 207,660건으로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이 법제화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실행한 이후 약 17.6배가 증가하여 사회적 보호의 원인 중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こども家庭庁, 2023a).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둘러싸고 「방임», 「학대 및 가혹행위», 「유기», 「양육거부」와 같이 아동학대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 요보호 아동이 조치되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아동의 발생은 증가하며, 입소아동의 증가세와 함께 피학대 경험, 장애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요보호 아동이 늘어나게 되었다.

17) 아동학대상담 대응건수란 해당년도에 아동상담소가 학대상담을 접수하여 원조방침회의 결과에 의해 지도나 조치 등을 취한 건수를 말한다.

요보호아동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기능별로 단순보호기능과 치료 기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가정보호 영역에서는 가정위탁과 패밀리홈이 있으며, 시설보호 영역에서는 아동양호시설, 유아원이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특수욕구나 비행, 도벽 등 문제행동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심리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요컨대, 아동양호시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요보호아동 전달체계가 아동학대, 장애, 질병경향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입소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아동심리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표 5-2>와 같이 주요 단순보호기능 시설인 아동양호시설, 유아원, 가정위탁, 패밀리홈에 대한 2018년도의 아동 입소현황을 보면, 피학대 경험은 아동양호시설 65.6%, 유아원 40.9%, 가정위탁 38.4%, 패밀리홈 53.0%이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아동양호시설 36.7%, 유아원 30.2%, 가정위탁 24.9%, 패밀리홈 4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요보호아동의 입소증가는 단순보호기능을 중심으로 제공해왔던 가정위탁, 패밀리홈, 아동양호시설, 유아원 중심의 보호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표 5-1〉 요보호 체계 및 보호아동의 현황과 체계별 요보호 아동 수 변화의 추이

(단위: 명, 개소)

구분	2003				2008				2013				2018				2021			
	등록위탁세대	위탁세대	보호아동수	시설수	등록위탁세대	위탁세대	보호아동수	시설수	등록위탁세대	위탁세대	보호아동수	시설수	등록위탁세대	위탁세대	보호아동수	시설수	등록위탁세대	위탁세대	보호아동수	
																				시설 수
가정보호	양육	6,802	1,871	2,240	2,328	2878	2,840	3,526	10,136	3,441	4,325	12,934	3,888	4,709						
	전문	145	20	21	97	107	157	209	702	193	223	728	168	204						
	단기/임양	1,804	371	393	2,178	456	449	223	227	4238	317	321	6,291	314	348					
	친족	90	88	157	301	290	436	477	460	588	558	777	631	569	819					
페밀리홈	-	-	-	-	-	-	223	993	372	1,548	446	1,718								
비율		6.1%	2.811	8.0%	3.870	11.8%	5.629	15.9%	7.194	19.1%	7.798									
시설보호	유아원	115	3,023	123	3,299	131	3,147	605	27,026	610	23,013									
	아동양호시설	552	30,416	567	31,593	596	29,979	50	1,367	53	1,343									
	아동심리치료시설	25	768	32	1,104	38	1,235	58	1,448	56	929									
	아동자립지원시설	56	1,657	57	1,995	60	1,670	226	5,307	215	5,293									
	모자생활시설	287	7,089	278	6,552	44,543	42,037	84.1%	38,171	80.9%	32,945									
비율		93.9%	42.953	92.0%	48.413	100%	47,666	100%	1,461	423										
전체비율		100%	45,764	100%	48,413	100%	814	100%	1,795	527										
*소규모그룹케어(개소)		286(2005년)	-	395	171	-	269	-	-	-	-	-	-	-	-	-	-	-		
*지역소규모양호시설		89(2005년)	-	171	-	-	-	-	-	-	-	-	-	-	-	-	-	-		

주: 1) 가정위탁제도의 유형은 '양육' '단기'에서 2002년 '친목', '친족'이 신설, 2008년에는 '양육', '친목', '친족'으로 변경됨. 페밀리홈은 2009년 신설됨.

2) 2009년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을 도도부현이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이후 2013년 조사부터 취합되고 있음.

3) * 아동양호시설은 소규모와 및 지역분산화 계도로 개소수임. 아동수는 본원의 현원에 포함되어 있어 시설보호의 전체 아동수에 반영되어 있음.

자료: 兒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厚生労働省, 2003b; 2008a; 2013a; 2018a)와 福祉行政報告(厚生労働省, 2003c; 2008b; 2013b; 2018b; 2021)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제 구성,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 (2023.08.21.인출). 단, *는 厚生労働省(2007; 2012a)과 ことば家庭(2023a)의 '지역소규모양호시설' 과 소규모 그룹케어 실시상황 추이' 를 참조.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보호이념이 “보호·구제”에서 “자립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동양호시설이나 유아원 등 시설보호영역에서는 시설의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를 비롯하여 심리치료, 자립지원강화, 원가정 상담 및 복귀 지원, 지역(양육 및 육아)지원기능 등 다양한 전문화된 기능이 부가되었다. 이는 시설의 기능 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아동육구에 맞게 전문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정보호 영역에서는 2002년 전문 가정위탁을 도입하였지만, 2021년까지도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204명 11.9%에 불과하며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양육곤란의 어려움이 있었다(木村容子, 2012). 요보호아동 육구의 다양화로 인하여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의 시설보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양화하는 입소아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정위탁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 가운데 가정보호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2009년 신설된 것이 패밀리홈 제도이다. 즉 가정위탁율이 저조하며 시설보호가 강한 일본의 사회적 보호의 특성에 기인하여, 가정위탁형 그룹홈으로서 지자체에서 독립적 수행하던 것을 법정화한 사업이다(日本財団, 2020). 앞서 전술한 것처럼 ‘일본형 사회적 보호’에서 주장하는 것은, 구미에서 주장하는 시설의 폐지와 함께 가정보호 활성화 방향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시설보호와 가정보호가 공존하는 가운데 가정보호를 활성화해 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패밀리홈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리매김하였다.

〈표 5-2〉 시설별 입소아동의 다양화 현황

(단위: %)

구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피학대 경험	가정 보호	가정위탁		31.5	31.1	38.4	
		패밀리홈		-	55.4	53.0	
	시설 보호	아동양호시설			53.4	59.5	65.6
		자립원조홈	-	-	-	65.7	71.6
		모자생활지원시설			-	50.1	57.7
		아동심리치료시설			71.6	71.2	78.1
		아동자립지원시설			65.9	58.5	64.5
유아원			32.3	35.5	40.9		
장애	가정 보호	가정위탁	8.9	12.6	18.0	20.6	24.9
		패밀리홈	-	-	-	37.9	46.5
	시설 보호	아동양호시설	10.3	20.2	23.4	28.5	36.7
		자립원조홈	-	-	-	37.0	46.3
		모자생활지원시설	8.4	12.5	16.3	17.6	24.4
		아동심리치료시설	48.2	59.5	70.7	72.9	85.7
		아동자립지원시설	11.1	27.3	35.4	46.7	61.8
유아원	28.1	30.4	32.3	28.2	30.2		
진단 경험	가정 보호	가정위탁	12.2	15.9	14.0	14.1	14.5
		패밀리홈	-	-	-	29.8	26.6
	시설 보호	아동양호시설	16.0	20.1	20.0	20.8	18.6
		자립원조홈	-	-	-	30.6	30.4
		모자생활지원시설	29.3	32.0	32.4	34.2	27.4
		아동심리치료시설	26.2	25.5	23.6	18.1	18.8
		아동자립지원시설	12.6	15.9	20.8	18.3	16.6
유아원	62.8	66.8	61.5	65.3	59.8		

- 주: 1) 피학대 경험은 2008년도부터 자료취합을 시작.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학대정의 「신체적」「성적」「방입」「심리적」의 유형을 취합
 2) 장애의 유형은 신체허약 및 지체, 중증심신장애, 시각·청각·언어·지적·간질장애, PTSD, 반응성 애착장애, ADHD, 학습장애,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틱장애, 말더듬, 발달성 협조운동장애, 고차뇌기능 장애, 기타임.
 3) 자립원조홈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 설치·운영됨.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아동자립생활원조사를 도도부현이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활성화 되어 2013년 조사부터 취합하고 있음.

자료: 児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厚生労働省, 1998; 2003b; 2008a; 2013a; 2018a)를 참조하여 재구성.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 에서 2023.08.21. 인출.

다. 지역에 따른 가정보호 활성화의 격차

일본의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의 전환 과정은 점진적이며 다소 정책효과와 비가시적인 평가도 있으며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역에 의한 가정보호율의 격차를 지적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1; 2012b; 2016; 2017; 2021; こども家庭庁, 2023a). 최근 10년간 가정보호율을 살펴보면 최소 6%부터 최대 59%까지, 그리고 <표 5-3>과 같이 지역간 편차는 21년 기준으로 적게는 24.7%(에히메현) 에서부터 많게는 59.3%(후쿠오카)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표 5-3> 지역에 따른 가정보호율의 격차

구분	증가폭 (2011년→2021년)	가정보호율 (가정위탁+패밀리홈)		
		2011년도	2021년	
1	후쿠오카시	+ 31.4%	27.9%	59.3%
2	오카야마현	+ 28.8%	9.9%	38.7%
3	하마마츠시	+ 28.7%	14.2%	42.9%
4	사이타마시	+ 28.5%	17.5%	46.0%
5	니가타현	+ 28.3%	27.5%	55.8%
6	사가현	+ 27.4%	10.8%	38.2%
7	요코스카시	+ 22.3%	11.6%	33.9%
8	에히메현	+ 18.7%	6.0%	24.7%
9	고치현	+ 18.2%	6.6%	24.8%
10	삿포로시	+ 17.0%	18.1%	35.1%

주: 1) 가정보호율= (가정위탁·패밀리홈 보호아동 수/유아원 보호아동 수+아동양호시설 보호아동 수+가정위탁·패밀리홈 보호아동 수)×100

2) 최근 10년간 증가폭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 도도부현과 아동상담소 설치시 기준

자료: こども家庭庁(2023a).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5年4月5日). こども家庭庁支援局家庭福祉課. p.41.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정책적 요인으로 요보호아동복지체계의 행정주체인 도도부현을 관할로 하는 아동상담소¹⁸⁾의 가정위탁 업무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정위탁에 적극적인가) 그리고 아동상담소에서의 전담인력의 증원 여부가 가정위탁에 대한 지역 차이와 관련이 있었다(全国児童相談所長会, 2011; 三輪清子, 2012)

둘째,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역의 사회적 보호 시설 수, 지리적 특성, 지역 특성이나 문화나 주택 사정 등의 생활조건, 사회자원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伊藤嘉余子, 2017; 野辺陽子他, 2020). 특히 와타나베 외(野辺陽子他, 2020, pp.149-151)에 의하면, 사회적 보호 시설 수가 적은 환경이 오히려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게 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시설과 가정위탁이 근접한 지리적 특성은 공립시설의 적극적 가정위탁으로 이행 등 촉진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전환 이후 가정위탁율을 증가시킨 지역은 친족 가정위탁이나 패밀리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마다 활성화 내용에 대한 편차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가정위탁율을 증가시키지 못한 지역은 친족이나 패밀리홈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사회자원, 예산, 인력은 도시보다는 지방일수록 그 여력이 부족하여 가정위탁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도시의 경우 피학대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이 정제된 사이, 패밀리홈으로 편중되는 지역도 있었다(伊藤嘉余子, 2017).

정리하자면, 정책적 요인으로 가정위탁의 활성화에는 공공기관의 내실

18) 일본의 아동복지이념을 실현하는 아동복지 공공행정기관이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18세미만의 아동에 관한 광범위의 욕구와 문제에 대응한다. 지역의 직접적인 아동복지서비스에 수행보다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원, 보건소 등의 지역밀착형 시설 및 기관에서 의뢰된 광의적인 대응이 필요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행한다.

화와 인력증원 및 인식의 향상, 그리고 구조적 요인으로 지역성(지리적 및 복지인프라의 여력, 자원 등)의 편차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조·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공공체계의 기반강화 및 정비가 필요하다(野辺陽子他, 2020).

2. 가정위탁 활성화 방안

가.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가정양육우선' 원칙으로의 전환

사회적 보호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공적 책임으로 사회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과 함께 양육에 곤란함을 가진 가정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보호의 기본이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아동복지법 1조, 아동헌장, 아동 권리에 관한 조약 3조에 근거)'과 '사회 전체가 모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다(こども家庭庁, 2023a).

이러한 사회적 보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① 가정적 보호와 개별화 ② 발달보장과 자립지원 ③ 회복을 지향하는 지원 ④ 가족과의 연계·협동 ⑤ 지속적인 지원과 연계 접근 ⑥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지원을 두고 있다. 가정형 보호와 관련되는 원리는 ① 가정적 보호와 개별화가 관련이 있으며 모든 아동은 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양육자에 의해 양육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즉, 사회적 보호를 받는 아동 또한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 친화적인 양육환경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あたりまえの生活」'을 가정적인 보호가 가능한 환경안에서 개별적인 케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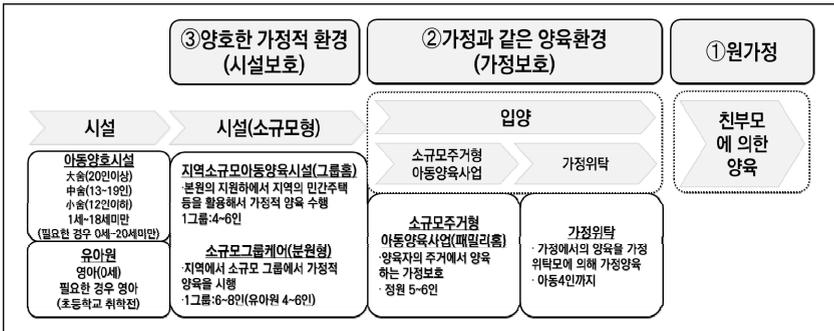
첫째, 가정양육우선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시설보호 형태를 개개인의 아동을 개별화하여 부모·자녀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갈 수 있도록 변혁해야 한다. 셋째, 시설은 사회적 보호의 지역 거점으로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가정위탁, 자립지원이나 애프터 케어(위탁해제 후 아동지원), 지역 육아가정에 대한 지원 등 고기능화 및 다기능화로 기능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장래적으로 소셜워크와 케어워크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의 이념에 대해 가정보호 원리를 원칙화하고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계기는 2010년과 2016년의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이는 이듬해 2011년 「사회적 양호의 과제와 장래상(厚生労働省, 2011)」과 2017년 「새로운 사회적 양육 비전(厚生労働省, 2017)」의 공표를 통해 가정보호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구현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의 비전은 일본 아동복지정책 역사에 있어 대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요약하면, 기존의 시설보호와 가정보호 사이에 있던 모호한 「가정적 보호」의 의미를 「가정양육우선 원칙」으로 변경하여 가정보호의 명문화를 통한 강화, 즉, 「시설」로부터 「가정」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강화시켰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정양육우선 원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취학전 아동을 시설로 신규조치 이행하는 것을 중지하고 가정위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가정양육우선 원칙을 보다 더 철저하게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3세 미만은 5년 이내,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7년 이내 각 가정위탁율 75% 이상, 학령기 이후 아동은 10년 이내 가정위탁율 50% 이상」으로

가정보호을 달성 수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도도부현 사회적 양육 추진계획」의 가시화(見える化)를 설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성과가 크게 나타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厚生労働省, 2017).

[그림 5-1] 일본 가정적 보호의 추진 방향



자료: こども家庭庁(2023a).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5年4月5日). こども家庭庁支援局家庭福祉課, p.12.

가정양육우선 원칙이란, [그림 5-1]과 같이 아동이 「①원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지원」하되,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 「②가정과 같은 양육환경(=가정보호)」에서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②의 경우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양호한 가정적 환경(=시설보호)」에서 양육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2)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변천과 그 배경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과 함께 공적 제도로서 가정위탁이 시작되며, 이듬해 가정위탁의 가정양육운영요강이 제정되어 가정위탁제도의 실제 운영방침이 규정되었다. <표 5-4>와 같이 1947년 이후 2002년까지 가정

위탁과 관련되는 특별한 개정이 없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체계의 주류가 된다. 이러한 극적인 변천의 과정을 貴田美鈴(2019)가 분류한 도입기, 쇠퇴기, 재검토기, 확대기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도입기’는 세계 2차대전 패전 후 ‘전후 처리시대’로 요보호아동 대책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성립되었다. 전쟁고아, 부랑아동의 증가로 시설보호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가정보호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아동의 노동착취문제와 인신매매문제 등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방안으로 가정위탁제도의 활용을 고려하였다. 또한, 패전 후 GHQ(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한 자유주의 국가의 재구축에 있어서 아동복지법 제정 전반에 걸쳐 영미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인 개별화 이념과 그 실천기법이 반영되어 가정위탁이 제도화에 이르게 된다(岩永公成, 2006; 貴田美鈴, 2011).

따라서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말까지 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 아동수는 양적으로 팽창한다. 1958년은 가정위탁아동수가 9,489명으로 약 40%가 가정위탁에서 보호받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가정위탁을 제도화한 이래 가장 높았다(野辺陽子他, 2020, p.9). 하지만 제도화 도입 이후 머지 않아 가정위탁제도는 한계를 드러낸다. 아동의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동의 노동을 가정위탁제도는 조건부로 용인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위탁아동이 노동력의 제공처로 악용된 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貴田美鈴, 2019:99). 한편, 아동복지현장에서는 호스피털리즘 문제가 쟁점화되어 가정보호의 필요성이 환기되었으나, 요보호아동을 보호조치되는 곳은 압도적으로 시설이 많았으며 가정위탁은 ‘쇠퇴기’로 국면에 접어들었다.

1960년대는 ‘전후 처리시대’의 종료와 함께 요보호 아동수는 1958년

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사회구조적 변화 가운데, 후생노동청은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기대를 표명하였지만, 정책적인 진전은 없으며 쇠퇴기를 맞이하였다.

1970년대는 산업화·도시화에 의한 전통적 가족의 붕괴로 양육기능의 소실을 초래하며 가정위탁을 통한 대응책으로 1974년 ‘단기가정위탁제도’를 신설하지만, 일부지역에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가정위탁 촉진책을 민간 전국가정위탁회에 일임함으로써 공적 책임과 부담을 축소시켰다(貴田美鈴, 2007, pp.90-91).

한편, 1970년대의 1, 2차 오일쇼크는 경제성장 종식을 맞이하고 1980년부터 경제 불황과 함께 야기된 사회문제의 양상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긴축정책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민간활동, 자원봉사 활성화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정부는 아동복지 정책에서 가정위탁양육을 자원봉사활동으로 명명하여, 가정위탁양육은 공적제도이지만 아동상담소의 업무 중 가정위탁조정이나 위탁 후 지원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가정위탁회의 역할로 규정하게 되었다(貴田美鈴, 2007, pp.91-94).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보장재정 악화로 대대적인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을 시행하였으며 아동복지분야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동복지의 개혁안의 가운데 하나는 가정위탁제도의 재검토이었다. 특히 1994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과 함께 가정위탁제도의 구체적인 개선과 강화의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아동학대의 사회문제로 인해 시설보호의 한계를 보완책으로 가정위탁제도는 더욱더 주목받게 되며 2002년 가정위탁제도의 개정으로 이어졌다(貴田美鈴, 2008, pp.86-87).

2002년 이후부터는 <표 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격적으로 가정위

탁제도에 대한 법 및 제도적 기반이 1~2년주기로 개정되어 제도의 강화 및 확대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좀처럼 가정위탁율의 성과는 2000년대 후반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여전히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많았다.

2009년 신설된 패밀리홈 제도와 2011년의 「사회적 양호의 과제와 장래상」의 발표에 담긴 가정보호 강화와 탈시설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시설보호의 감소와 가정보호의 증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시설보호의 변화가 가정위탁의 증대로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2016년 아동복지법개정에 의한 가정양육우선 원칙의 전환과 함께 이듬해 2017년의 「새로운 사회적양육 비전」에 발표에 의해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환경이 형성되었다. 특히 시설입소 중지의 선언과, 가정위탁 및 지원업무를 도도부현(아동상담소)의 업무로서 제도화하여 공적책임하에 가정위탁 및 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파편화되어 있는 가정위탁지원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사업(포스터링 사업)’의 초안을 제시하고, 2018년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기관(포스터링기관) 및 그 업무에 관한 가이드 라인」 책정, 2019년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포스터링)사업실시 요강」이 통지되어 전국적으로 보급 확대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표 5-4〉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및 제도의 변천

년도	아동복지법 및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개정 내용
1948	아동복지법 시행
	「가정위탁 가정양육운영요강(「里親家庭養育運營要綱」制定)」제정
1988	민법 개정에 의한 특별입양제도 실시
1997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보호
2002	「가정위탁 인정 등에 성령(省令)」 「가정위탁 운영에 관한 최저기준」 제정
	「전문」과 「친족」 위탁 신설에 의해 가정위탁 유형은 「양육」「단기」「전문」「친족」
	「가정위탁지원사업」 실시(가정위탁 연수사업/가정위탁 양육상당사업)
	일시적 휴식을 위한 원조사업(「레스파이트 케어」) 실시
2004	가정위탁부모에 의한 보호, 교육, 징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과 동일 규정추가
	가정위탁 지원사업에 「가정위탁양육원조사업」, 「가정위탁양육상호원조사업」 추가
2006	「가정위탁추진사업」 실시, 아동상당소에 가정위탁 추진요원, 가정위탁추진위원회 설치
2008	「양육」과 「입양」을 제도상 구분하여 유형을 「양육」「전문」「입양」「친족」로 변경
	양육가정위탁 연수의 의무화 및 가정위탁지원의 법정화, 가정위탁수당 인상
	「가정위탁 인정 등에 성령(省令)」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으로 규정.
	「가정위탁지원기관사업」 실시(가정위탁지원 및 가정위탁추진사업 통합)
2009	패밀리홈 제도 신설
2011	「가정위탁 가이드 라인」책정, 「가정위탁 및 패밀리홈 양육지침」책정
	「사회적 양호의 과제와 장래상」 발표
2012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 배치(아동복지시설에 지역지원기능의 일부로 설치)
2016	가정양육우선 원칙 시행
	가정위탁지원을 도도부현(아동상당소)의 업무로서 제도화.
	「입양」 가정위탁의 법정화 및 연수 의무화
2017	「새로운 사회적양육 비전(社会的養育ビジョン)」발표
2018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기관(포스터링기관) 및 그 업무에 관한 가이드 라인」 책정
2019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포스터링)사업실시 요강」
2022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서 제도화

자료: こども家庭庁(2023a).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5年4月5日). こども家庭庁支援局家庭福祉課. pp.32-33을 참고로 필자가 작성함.

나. 가정위탁제도

가정위탁에서의 아동은 특정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가정위탁 유형은 ‘양육’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입양’ 가정위탁, ‘친족’ 가정위탁으로 4종류로 분류한다.

가정위탁의 기본요건은 ①가정위탁의 연수 수료 ②가정위탁 희망 및 동거인의 결격사유 무 ③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자이며 가정위탁 교육 및 연수를 수료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단, ‘전문’ 가정위탁은 2년마다 갱신).

가정위탁 연수는 도도부현(지정도시 및 아동상담소설치시 포함)이 실시 기관이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① 기초연수, ② 인정 전 연수, ③ 갱신연수로 크게 구분된다. ‘기초연수’는 양육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회적 보호에 있어서 가정위탁의 의의와 역할, 학대, 장애, 친부모 등 요보호 아동과 그 상황에 대한 이해, 가정위탁에 요구되는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정 전 연수’는 기초연수 수료 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다. ‘갱신 연수’는 가정위탁부모로서 건전하게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식과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나, 양육법 등 정보 등을 습득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연수시간은 <표 5-5> 와 같다.

‘전문’ 가정위탁은 피학대 경험, 비행, 장애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이며 양육의 질 담보를 위해 해당 세대당 2명까지 아동 수를 돌볼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전문’ 가정위탁은 기본 요건에 추가

적으로 ‘①다음 요건 중 하나가 해당 (1.가정위탁 경험이 3년 이상, 2. 3년이상 아동복지사업 종사자, 3. 1, 2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진 자), ②전문가정위탁 연수를 수료한 자 ③위탁아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표 5-5〉 가정위탁 연수 커리큘럼

	기간	내용
기초연수	1일+실습 1일	① 가정위탁제도 기초 I ②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이해 ③ 지역의 육아지원서비스 ④ 선배 가정위탁부모의 체험담, 그룹토의 ⑤ 실습(아동복지시설 견학 등)
인정 전 연수	2일+실습 2일	① 가정위탁제도 기초II ② 가정위탁양육 기본 ③ 아동의 심리 및 ④ 아동의 신체 ⑤ 관계기관 연계 ⑥ 가정위탁상의 과제 ⑦ 아동 권리옹호와 사고방지 ⑧ 가정위탁회 활동 ⑨ 선배 가정위탁부모의 체험담, 그룹토의 ⑩ 실습(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갱신연수	1일 (미위탁 부모의 경우 시설 실습 1일 필요)	① 사회정세, 관련 개정법 등 ② 아동 발달과 심리·행동상의 이해 ③ 양육상 과제에 대응하는 연수 ④ 의견교환

자료: とも家庭庁(2023a).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5年4月5日). とも家庭庁支援局家庭福祉課. p.44.

‘전문’ 가정위탁은 제도 시행 이후 20년 남짓 정체되어 있으며 정책상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二村玲衣(2021, pp.48-49)에 의하면 전문 가정위탁제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인정요건과 연수참가의 요건의 어려움 또는 엄격함이 가정위탁부모에게 큰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위탁대상아동의 선정과 활용방법 등을 재고함에 있어서의 모호이다. 피학대 아동의 요보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전문’ 가정위탁율이 10% 남짓에 불과하여 이미 일반적인 ‘양육’ 가정

위탁에서도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위탁가정의 선정과 역할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적절한 양육을 지원하기 어려운 아동상담소의 실태와 함께 가정위탁부모지원을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체계의 미비를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단,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 차이가 존재하는 데 전술한 것처럼 민간단체의 노력이나 사회자원의 노력, 아동상담소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에 따라 그 격차는 발생하고 있다.

‘친족’ 가정위탁은 가정위탁 활성화의 촉진요인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전술하였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정위탁을 향상시킨 지역 사례를 보면 ‘친족’ 가정위탁을 활용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의 조치제도에 근거하여 요보호 체계의 아동보호에 대한 운영은 공적비용 부담금은 조치비로 받게 되며 그 기준은 아동복지시설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보호 조치비는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한 조치에 따른 경비이며,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가정위탁 등에게 위탁조치를 한 경우에 아동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다(塚谷文武, 2022).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조치를 명령한 경우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조치비의 지불의무자로서 그 아동에 대해 매월 조치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치비의 지불의무자인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아동상담소를 통해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능력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가정위탁 수당과 일반생활비, 그 외 사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친족’과 ‘입양’ 가정위탁세대는 가정위탁 수당을 지급은 제외된다. 2023년도 기준으로 ‘양육’ 가정위탁은 아동 1명당 월 90,000엔.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아동 1명당 월 141,000엔이며 2명 이후도 월액

은 동일하다. 일반생활비와 그 외 사무비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은 <표 5-6>을 참조 바란다.

<표 5-6> 가정위탁세대에 지급되는 지원내역

	구분	가정위탁세대 아동1인당 지급되는 비용	
가정위탁 수당	'양육'	월 90,000엔	2명째 이상 월액 동일
	'전문'	월 141,000엔	
	'입양'	-	
	'친족'	-	
일반 생활비 (식비, 피복피 등)	'양육'	영아 60,670엔	영아 이외 52,620엔
	'전문'		
	'입양'		
	'친족'		
그 외 사무비	'양육'	유치원비(실비), 교육비(2,210~4,380엔 및 가산비), 의료비, 학교 급식비(실비), 수학연수연행비(22,690~11,129엔), 입학 준비금(64,300~81,000엔), 특별육성비(23,330~34,540엔 및 가산비), 하계 등 특별행사비(3,150엔), 취업준비·대학진학 자립생활 준비비(82,760엔, 주거 및 생활비 포함은 198,540엔), 장제비(159,040엔), 냉난방비(870~3,640엔), 예방접종비(실비), 통원비(7,500~15,000엔), 위탁지도비(44,630엔), 시력교정비(실비) 등	
	'전문'		
	'입양'		
	'친족'		

자료: こども家庭庁(2023b). 児童福祉法による児童入所施設措置費等国庫負担金について「通知」の施行について. こども家庭庁支援局長을 참조하여 재구성

다.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 배치(아동복지시설에 배치)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의 배치는 시설의 지역지원에 대한 거점기능 가운데, 가정위탁이나 패밀리홈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시설과 가정위탁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위탁 지원 전문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은 아동양호시설과 유아원이다.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복지사 자격증 등의 전문자격과 함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설 1개소당 1명을 배치할 수 있으나 '가정위탁·지역분산화등 가속화 플랜'에 참가한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가산하여 배치 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의 주요업무는 ① 가정위탁 신규 개발, ② 가정위탁 후보자의 주말가정위탁 등의 조정, ③ 가정위탁부모에 대한 연수, ④ 가정위탁의 추진, ⑤ 가정위탁세대 방문 및 전화상담, ⑥ 휴식지원(respite care) 조정, ⑦ 가정위탁 살롱(모임) 운영, ⑧ 가정위탁회의의 활동에 참가권장 지원, ⑨ 애프터 케어(위탁해제 후 아동지원)로서의 상담 등이 있다.

2016년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아동양호시설 52.9%, 유아원 67.3%가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정된 성과이지만,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을 중심으로 개척한 신규가정위탁 케이스가 아동양호시설 256건, 유아원 191건, 시설부터 가정위탁으로 조치변경을 시킨 케이스가 아동양호시설 198건, 유아원 537건으로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유아원의 조치변경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16).

라. 위탁가정(里親) 양육포괄지원(포스터링) 사업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 사업(약칭으로 '포스터링'으로 불림)은 2016년 가정양육우선 원칙으로 전환되고 가정위탁, 패밀리홈, 입양 등(이하, 위탁가정 등)과 같이 가정보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특히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 가정의 발굴과 사정, 가정위탁 등록전·후 및 위탁 후의 가정위탁연수, 아동과 가정위탁부모의 매칭, 가정위탁세대에 대한 지원, 애프터 케어(위탁

해제 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정위탁지원에 대한 일원화된 지원서비스 및 입양에 관한 상담 및 원조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시주체는 도도부현(지정도시 및 아동상담소 설치시)이며, 전체사업 또는 일부사업은 사회복지법인, NPO 등 민간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실시주체는 세부사업을 실시하는 위탁처를 가정위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년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기관(포스터링기관) 및 그 업무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여 도도부현(아동상담소)가 수행해야 하는 포스터링의 업무의 실시 방법 및 유의점,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의 민관과 아동상담소의 관계(민·관)의 구축방법 등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여 지역단위의 체계의 구축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에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가정위탁제도 등 보급 및 촉진·리쿠르트 사업

가정위탁, 패밀리홈, 입양 등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정과 이해 그리고 일반가정부터 가정위탁 또는 입양가정에 의해 양육자가 되길 희망하는 가정양육 희망자들을 발굴·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역 가정위탁부모 또는 가정위탁 경험자에 의한 강연회나 가정위탁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가정위탁제도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것에 의해 가정위탁과 함께 입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입양’ 가정위탁을 개척 및 발굴하는 것이다. 사업의 실시 체제는 이러한 가정양육 희망자에 대해 가정위탁부모의 역할이나 의식 등에 대한 설명, 가정양육 육구사정 등을 수행하는 ‘가정위탁 리쿠르트’ 및 ‘리쿠르트 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가정위탁 리쿠르트’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5년이상의 근무경력등의 전문경력 및 자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2) 가정위탁연수·트레이닝 등 사업

가정위탁등록 및 등록 갱신에 필요한 기초연수, 등록 전 연수 및 갱신 연수와 아직 아동을 위탁하지 못한 미위탁 부모나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 시에 다양하게 직면할 사례에 대응하는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양육의 질을 확보하며 위탁가능한 가정위탁부모를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사업으로 ① 기초연수, 등록 전 연수 및 갱신 연수 사업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양육’ 가정위탁 연수 ‘전문’ 가정위탁 연수, ‘입양’ 가정위탁 연수로 분류된다. 임의사업으로 ② 미위탁부모에 대한 트레이닝사업과 ③ 위탁가정양육 포괄지원 업무 직원연수참가 촉진사업이 있다. 사업의 실시 체제는 ① 기초연수, 등록 전 연수 및 갱신 연수사업과 ② 미위탁부모에 대한 트레이닝 사업은 ‘가정위탁 트레이너’를 배치해야 하며 아동상담소에 정기적으로 연수 및 트레이닝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가정위탁 트레이너’의 자격요건은 ‘가정위탁 리쿠르터’와 동일하다.

3) 가정위탁추진사업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절한 가정위탁세대에 보호하기 위해 해당 아동과 가정위탁부모와의 교류나 관계조정을 수행하거나 아동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른 과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양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① 가정위탁부모와의 매칭, ② 자립지원계획 작성 및 정기적인 검토 또는 그 지원이다. 사업의 실시체제는 ‘위탁가정등 위탁조정원’ 및 ‘위탁조정 보조원’을 배치하며, 관련 기관의 연계와 함께 가정위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 및 아동상담소 단위에서 ‘가정위탁등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탁가정등 위탁조정원의 주요 역할은 위탁가정지원사업 전체의 기획

과 가정위탁, 패밀리홈 등과 유아원, 아동양호시설, 시정촌 등을 포함하는 관련기관과의 연계·조정과 함께 자립지원계획 작성이다.

‘가정위탁등 추진위원회’의 설치는 아동상담소의 ‘가정위탁 담당직원’, ‘위탁가정 등 위탁조정원’, 시설의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 ‘가정위탁 부모’에 의해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학계의 전문가나 시정촌의 육아지원담당자 등을 위원회 참가에 의뢰할 수 있다. ‘가정위탁 등 추진위원회’는 소속 지역에서 가정위탁 등에 관한 사업 목표의 설정, 필요한 조언 및 지도 그리고 제3자의 시점에서 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는 위원회에 학계전문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위탁가정 등 위탁조정원’의 자격요건은 ‘가정위탁 리쿠르터’와 동일하다.

4) 가정위탁세대 방문 등 지원사업

가정위탁부모나 패밀리홈의 양육자 또는 가정양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생활 원조, 교류 촉진 등, 위탁가정의 아동 양육에 관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하여 적절한 양육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사업으로 ① 위탁가정 등 방문지원, ② 위탁가정 등의 상호교류가 있으며 임의사업으로 ③ 부모자녀 재통합을 위한 면회교류지원, ④ 야간 및 주말 상담지원이 있다. 사업의 실시 체제는 ‘위탁가정등 상담원’ 및 ‘상담지원 보조원’의 배치를 통해 수행하며, 위탁보호된 아동 중 피학대 아동, 장애 등 특별한 욕구에 의해 전문성 높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심리방문지원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특히 ① 위탁가정 등 방문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정위탁부모가 ‘레스파이트 케어’를 이용할 경우, 의뢰처가 되는 가정위탁부모와 시설의 담당자(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신뢰관계를 구축

하게 된다. '위탁가정등 상담원'의 자격요건은 '가정위탁 리쿠르터'와 동일하다.

5) 위탁가정 등 위탁아동 자립지원사업

가정위탁의 보호아동에 대해 진학 및 취업 등의 자립지원 또는 애프터케어(위탁해제 후 지원)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① 자립지원계획 작성에 대한 조언 및 진행 관리, ② 아동 학습, 진학지원, 취업활동 및 직업 지도에 관한 지역자원 연계, 타시설이나 관련기관 연계, ③ 학업중퇴자 등 개별대응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생활 지원, 재진학 또는 취업지원 등, ④ 위탁해제 전부터 자립을 위한 상담지원 등, ⑤ 위탁해제 후 지속적인 상황파악 및 상담원조, ⑥ 그 외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업무 등이 있다. 사업의 실시 체제는 '자립지원 담당 지원요원'을 배치하여 수행하게 하며, 자격요건은 '가정위탁 리쿠르터'와 동일하다.

6) 맞벌이 가정을 위한 가정위탁 촉진사업

가정위탁과 직업활동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대응 과정에 관한 분석 및 성과를 전국적으로 보급·확대하는 것을 통해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위탁가정의 촉진을 도모한다.

사업내용은 위탁을 받은 일정기간 동안 특별휴가제도의 도입이나 재택근무제도의 도입 등 위탁가정의 양육자가 양육과 직업활동이 양립가능하도록 가정위탁지원기관이 기획·입안한다. 그리고 그 사업을 민간기업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관리하며 그 성과를 가정위탁지원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성과를 검증하여 사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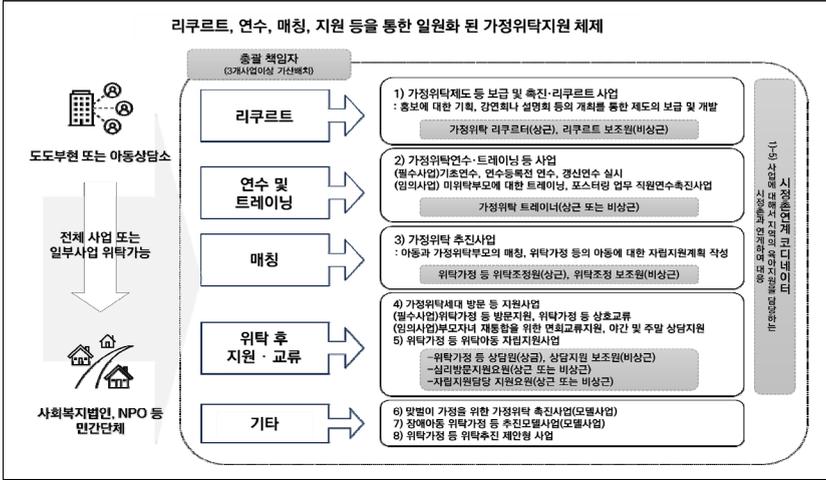
7) 장애아동 위탁가정 등 추진모델 사업

장애아동이나 그 양육자의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아동발달지원센터, 장애아동입소치료시설 등과 연계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으로는 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등 지원 욕구 파악, ② 장애아동복지시설과 연락 조정, ③ 장애아동복지시설 직원과의 연계에 의한 지원, ④ 그 외 아동복지서비스나 장애복지서비스 등과 연계지원 등이 있다.

8) 위탁가정 등 위탁추진 제안형 사업

위탁가정 등 가정위탁 추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선구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대응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으로 도도부현 등이 제안하는 위탁가정 등 위탁추진을 위해 선구적으로 대응한 사업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해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다.

[그림 5-2] 위탁가정 양육포괄지원 사업의 전체상



자료: 厚生労働省(2021).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3年5月). 子ども家庭局家庭福祉課. p.91과 子ども家庭庁(2023a).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5年4月5日). 子ども家庭庁支援局家庭福祉課. p.95를 수정하여 작성함.

이상으로 [그림 5-2]를 통해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 사업 전체상을 요약하였다. ‘총괄책임자’는 1)~5) 사업 중 3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할 시 총괄책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촌연계 코디네이터’는 1)~5)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수준의 육아지원을 담당하는 시정촌과의 연계활동을 위해 배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지역자원을 통한 가정위탁 리쿠르트 활동, ② 아동상담소가 보유하는 위탁가정의 정보 공유, ③ 지역 육아지원 자원으로서 위탁가정의 활용, ④ 육아단기지원사업 매칭이나 쉿스테이 기간 중 지원, ⑤ 그외 시정촌과의 연계 등을 수행한다.

현재,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 사업은 전국 275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지자체가 146개소, 민간위탁이 129개소의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 운영하고 있다(早稲田大学総合研究機構, 2022).

‘1) 가정위탁제도 등 보급 및 촉진-리쿠르트사업’과 ‘2) 가정위탁연수-

트레이닝 등 사업'은 각 89.8%, '3) 가정위탁추진사업'은 76.3%, 가정위탁세대 방문 등 지원사업은 78.0%로의 비율로 사업은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과제로서 '미위탁 부모에 대한 대응' 64.4%, '계속적인 지원을 위한 안정된 지원실시체제' 62.7%, '위탁가정양육포괄 지원 사업의 질 확보' 로 응답하고 있었다. 등록위탁 수가 급증한 것은 리쿠르트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매칭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정위탁 활성화로 성과이기 때문 미위탁 부모에 대한 대응책의 과제가 남겨지고 있다.

마. 가정위탁·시설의 지역 분산화 등 가속화 플랜

2016년 가정양육우선 원칙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가정보호 활성화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책정하였다고 전술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도도부현 등의 지자체에 대해 가정위탁이나 아동양호시설의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 등의 추진을 위한 '도도부현 사회적 양육 추진계획'의 책정(계획기간: 2020~2030년)을 의뢰하였다(こども家庭庁, 2023a). '도도부현 사회적 양육 추진계획' 안에는 가정위탁율의 진행실적 및 연도별 목표 수치, 위탁가정 사업을 위한 대응 등을 '가시화(見える化)'하여 그 결과를 2021년 3월 공표하였다. 정부는 '가시화(見える化)'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 도도부현 등에 대해서 국가 재정면의 지원 활용을 포함한 대응이나 위탁가정 등 목표치 향상방안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시화(見える化)' 정책에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과 계획의 가속화를 위해 2024년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하였고, 매년 '가정위탁 시설의 지역분산화 등 가속화 플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표 5-7〉 ‘가시화(見える化)’ 항목

	가정위탁세대 아동1인당 지급되는 비용
수치목표의 수준 (4항목)	① 3세미만의 가정위탁율 ② 3세이상 취학전 가정위탁율 ③ 학동기이후 가정위탁율 ④ 특별입양 성립건수
계산과정	① 대체양육을 요하는 아동수를 예상할 때 잠재적수요 파악 유무 ② 위탁가정 등이 필요한 아이 수의 전망 유무 ③ 위탁가정 등 위탁이 필요한 아동수 전망 유무
대응	① 시설에서의 가정위탁지원 대응 ② 위탁가정 지원체제 강화 ③ 위탁가정 등 위탁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④ 위탁가정 수 확충 ⑤ 특별입양 지원 대응

자료: 厚生労働省 홈페이지(2023). https://www.mhlw.go.jp/stf/newpage_12886.html에서 2023. 8.9. 인출

예를 들어 ‘집중대응기간’에는 목표 달성에 의욕적인 지자체에 대해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 사업의 보조율의 증액(1/2→2/3), 아동양호시설 등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를 위한 시설정비비용의 보조율 증액(1/2→2/3), 시설의 정원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적인 요소를 장려하고 있다.

2023년 가정위탁 가속화 플랜을 제출한 75개 지자체 중, 40개의 지자체가 채택되었다(子ども家庭庁, 2023a, pp.38-39). 2024년 3세미만 아동의 가정위탁율의 예측치에 대해서 75%이상의 지자체가 19개, 2019년 실적에 비해 3배 이상 위탁 수를 증가시킨 지자체가 21개로 나타났다.

바.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사례: 후쿠오카시(福岡市)

1) 후쿠오카시의 개요와 가정보호 활성화 추진의 경위

厚生労働省(2018c)와 子ども家庭庁(2023a)의 사례에 따르면 후쿠오카시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집계인구 1,631,409명 그 가운데 아동인

구(18세 미만)는 242,605명의 정령지정도시로서, 일본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10대 후반 및 20대 중반 인구층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으며 정령지정도시 가운데, 청년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후쿠오카시의 가정위탁 추진에 대한 열의와 그 성과는 전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내 가정위탁 활성화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가정위탁율 수치는 2004년 6.9%에 머물던 가정위탁율을 2013년 31.9%, 2018년 47.9%로 향상시켜, 일본 전체의 가정위탁율에 비해 2배~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全国里親委託等推進委員会 2013; こども家庭庁, 2023a). 후쿠오카시는 2022년, 2023년 「가정위탁·시설의 지역 분산화 등 가속화 플랜」의 지자체 중 채택된 지역이며, ‘가시화(見える化)’의 공표에 의하면 가정위탁율에 관한 성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후쿠오카시의 가정위탁 활성화 사업 현황

	2013년	2018년	2024년 (목표치)	
			전체	3세미만
등록 가정위탁수	130세대	221세대	403세대	-
위탁가정 등 위탁아동 수	147명	181명	242명	27명
대체양육이 필요한 아동 수	461명	378명	390명	35명
가정보호율	31.9%	47.9%	62.1%	77.1%

자료: こども家庭庁(2023a).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5年4月5日). こども家庭庁支援局家庭福祉課.

아동상담소의 가정위탁 담당 직원(공무원)은 7명이며, 위탁가정양육포괄지원 사업은 행정(아동상담소) 1곳, 민간(NPO법인) 1곳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민·관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아동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인력을 배치하여 소규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은 유아원 2곳, 아동양호시설 3곳, 총 5개 시설에 5명이 배치되어 있다 (子ども家庭庁, 2023a).

〈표 5-9〉 후쿠오카시의 가정위탁 활성화 사업 현황

	리쿠르트	연수 트레이닝	매칭	위탁 후 지원·교류	모델사업 (국고보조)
아동종합상담센터 (아동상담소)	●	●	●	●	●
NPO 법인 '케어aset(키에셋)'	●	●	●	●	●
아동가정지원센터 ¹⁹⁾ 'SOS子どもの村福岡'		●		●	
아동가정지원센터 'はぐはぐ'				●	

자료: 子ども家庭庁(2023a).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5年4月5日). こども家庭庁支援局家庭福祉課.

후쿠오카시의 가정위탁의 추진을 증진시킨 배경에는, 요보호 아동의 다양화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아동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위한 대응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보호 강화가 아닌 가정보호의 강화 및 확대에 대응을 초점화 한 것이다. 특히 후쿠오카시는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에 대응하는 시민단체 및 NPO가 다수 있으며 이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

19) 아동가정지원센터는 ① 지역아동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조언, ② 시정촌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 조언 및 그 밖에 필요한 원조사업, ③ 요보호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지도, ④ 아동상담소와 아동복지시설 등과의 연락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 등 가정에 대한 상담에 대응하고 필요한 조언, 지도를 수행하여 지역아동 및 가정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운영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부설기관으로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2009년부터는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단독설치도 가능하게 되어 되었다.

적 민간자원의 여력이 있었다(全国里親委託等推進委員会, 2013).

행정기관인 아동상담소는 가정보호 강화 전환의 원동력을 시민단체 및 NPO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기관이 서포트하는 민·관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급격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子ども家庭庁, 2023a).

2) 행정(아동상담소)과 민간(NPO)의 공동 체제

厚生労働省(2018c)와 子ども家庭庁(2023a) 사례에 따르면, 후쿠오카 시 아동종합상담센터(아동상담소)는 민간과 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아동NPO센터 후쿠오카’에 「시민참여형 가정위탁보급(현재는 가정위탁양육지원공동 개칭)」 사업을위탁하여 가정위탁 보급 및 지원에 대한 공동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의 저하의 이면에는, 과거 아동노동착취 문제 등 일본 문화 및 관습에 의한 ‘어두움’ ‘가여움’ ‘폐쇄성’과 같은 부정적 면이 아직 일반시민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카피라이터나 디자이너와 함께 가정위탁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시민포럼, 가정위탁 칼리지(미니강좌), 가정위탁 카페(살롱), 실행위원회 ‘패밀리샵(ファミリーシップ福岡)’창설 등의 활동을 통해 실현하였다. 특히 실행위원회 ‘패밀리샵’은 ‘아동NPO센터 후쿠오카’의 스태프, 아동지원에 관련 민간단체나 가정위탁회 대표, 소아과의, 변호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학계전문가 등 전문직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공동체제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추진력이 되었다.

가정위탁 칼리지는 가정위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의 설명과 가정위탁의 체험담 등을 공유하며, 가정위탁 카페는 등록 가정위탁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류 및 모임으로 가정위탁 양육이나 과제, 정보 다양한 정보교류와 함께 가정위탁 지지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2016년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키에셋’과 함께 「영유아 가정위탁 리쿠르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취학전 영유아를 시설보호 조치하는 것을 가능한 지양하며 가정위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가정위탁 발굴 및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3) SOS 어린이 마을 JAPAN(후쿠오카)

후쿠오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치도리 만쥬(千鳥饅頭総)의 고 하라다 미츠히로 (原田光博)사장이 오스트리아의 가정위탁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SOS어린이마을’을 다녀온 뒤, 후쿠오카에도 ‘SOS어린이마을’을 유치하고자 하였다(치도리 만쥬 공식홈페이지, 2023). 이와 함께 민간 아동전문가로 이루어진 ‘패밀리쉽(ファミリーシップ福岡)’과 함께 2006년 7월 ‘NPO법인 어린이 마을 후쿠오카를 설립’ 하는 모임이 발족하게 되고, 후쿠오시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과 기업,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민관이 참여하는 후원회가 설치되게 되었으며 2010년 SOS 어린이 마을 후쿠오카가 개소되었다. 설립은 위한 모든 재원이 1,000명 이상의 개인 후원자, 250개의 기업 및 단체부터의 기부와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간 1억3천만엔정도의 운영자금의 약 70%가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6월 ‘SOS어린이 마을 인터내셔널’로부터 135개국 인정 NPO법인으로 정식 가맹을 승인받았다.

후쿠오카시가 임차한 1200평의 대지에 센터 하우스, 다목적 홀 그리고 가족의 집 5개동이 마련되어 현재 4세대의 가정위탁세대와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① 팀양육과 전문가 지원, ② 원가정과의 연계 및 교류, ③ 지역과 함께 양육, 이상의 3가지 방침과 함께 가정위탁양육과 지원모델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일시보호 및 쉼스테이 등 지자체 위탁사업과 모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육아지원을

위한 아동가정지원센터도 부설되어 있다. 선도적인 모델사업으로 2020년 가정위탁형 쉼스테이 모델사업, 2021년 영케어러 지원사업 등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척 및 운영하고 있다 모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방안

가. 시설의 소규모화

1) 소규모 그룹 케어

대규모 케어 단위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양호시설, 유아원, 아동심리치료시설 및 아동자립지원시설을 소규모 그룹에 의한 케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준비를 통해 시설의 케어형태를 가정적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소규모 그룹 케어의 단위는 시설종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동양호시설 6인, 유아원 4~6인, 아동심리치료시설 및 아동자립지원시설 5인 이상 6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그룹 케어의 구성은 각 그룹에서 상호교류할 수 있는 거실이나 식당, 그 외 일상생활이 가능한 방, 욕실,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안전 및 보건위생을 배려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담당 직원이 입소한 아동에게 적절한 지도 및 개별원조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로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은 아동양호시설 1인당 4.95㎡ 이상(영유아만 있는 거실은 3.3㎡ 이상), 유아원은 1인당 2.47㎡ 이상, 아동심리치료시설 및 아동자립지원시설 1인당 4.9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개인공간을 배려해 구성해야 한다.

소규모 그룹 케어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유니트 케어는 시

설의 하드웨어는 대규모 형태이나 그 안의 케어 단위를 유니트 단위로 소규모화 또는 가정화하여 유니트 별 담당 직원과 아동이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단, 유니트 케어는 궁극적인 소규모 그룹 케어의 목표는 아니며 시설 소규모화 과정의 과도기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별동형은 시설 본원의 부지내에 독립된 그룹홈을 설치하는 것이며, 분원형은 시설 본원의 부지 밖에서 그룹 홈을 설치한다. 이를 시설이 지역으로 분산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룹홈이 마치 일반가정과 같이 지역사회에 동화하여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분원형 소규모 그룹 케어는 자칫, 직원과 아동이 고립화 및 밀실화될 염려도 있어 본원의 직원 등과 연계가 가능한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설 밖에 위치하는 경우 지역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그룹 케어의 인력운영은 전임직원으로서 각 그룹에 아동지원 및 보육사 1명 및 관리숙직직원(비상근 가능) 등을 추가 배치하여 타 직원과 연계하여 케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관리숙직직원 외에 일과 중 바쁜시간을 서포트 할 수 있는 가사직원을 수행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배치하여 임의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다.

현재 <표 5-10>과 같이 아동양호시설은 대규모 시설로부터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를 실시한 소규모 그룹케어 및 그룹홈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13,762명 58.6%, 유아원은 1,270명 52.4%이다.

〈표 5-10〉 소규모 그룹케어 현황(2021년10월1일 기점)

(단위: 명, 개소, %)

구분	입소 아동수	시설부지 내			시설부지 외	
		기존시설 (대/중/소)	소규모 그룹 케어		지역소규모아 동양호시설	
	비율		본원내 유니트케어	별동		분원형
아동양호시설	23,503	9,741	7,584	2,061	1,242	2,875
	100.0	41.4	32.3	8.8	5.3	12.2
유아원	2,422	1,152	1,062	155	53	-
	100.0	47.6	43.8	6.4	2.2	-

자료: とも家庭庁(2023a).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5年4月5日). とも家庭庁支援局家庭福祉課. p.110.

2)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은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2000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제도로서 지역사회의 민간주택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주민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담당직원과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 안에서 일상생활 및 원조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자립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입소아동 중 본원과 떨어져 가정적인 환경하에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며 정원은 6명이다. 분원형 소규모 그룹케어와 지역소규모아동시설은 가정적 환경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그룹홈으로 목적과 형태는 동일하다. 단, 조치제도에서 조치비(보호단가)를 선정하는 규정이 다른데, 분원형 소규모 그룹 케어는 본원의 조치비상 규정에 의해 아동1인당 보호단가가 책정되지만,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은 조치비상 별도의 규정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2000년 시설의 소규모화를 최초로 추진한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보호단가를 설정한 경위와 관련이 있다. 즉 재원의 운영상 분원형 소규모 그룹케어 보다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이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시설의 소규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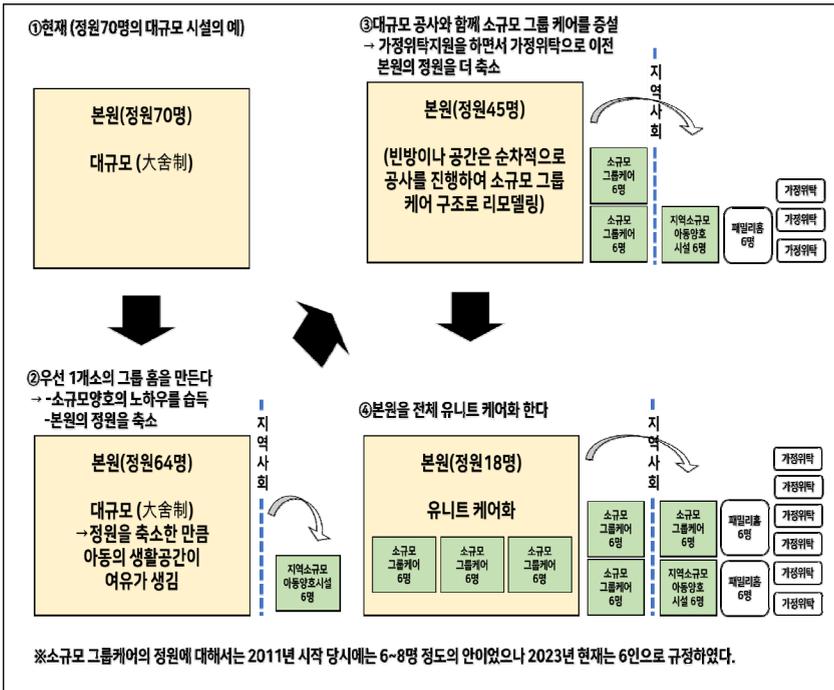
대규모 아동양호시설을 소규모화와 지역분산화로 전환하기위한 기본적인 바탕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1). 첫단계는, 본원의 케어 단위 소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해 본원은 전시설을 소규모 그룹 케어화(유니트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본원의 소규모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시설의 정원을 45인 이하로 축소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시설에 의해 패밀리홈을 개설하거나 지원, 그리고 가정위탁 지원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설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화시켜 시설을 지역의 사회적 보호로 거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설의 소규모화 및 분산화의 구체적인 방법(厚生労働省, 2012b)은 [그림 5-3]과 같다. 예를 들어 아동양호시설의 경우, 표준적인 형태는 본원 내부에는 3개의 소규모 그룹 케어(유니트 케어)를 만들고 4개의 소규모 그룹케어 형태(분원형 또는 별동,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를 두며 이와 별도로 2개 정도의 패밀리홈을 개설하거나 지원하는 것이다. 이 때, 본원은 가능한 일반적인 가정과 같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환경을 염두하며 신축 또는 개축을 진행할 때 동일 시설의 부지내에서 단독주택형(별동)으로 한다. 또는 부지의 조건이 단독주택형태가 어려운 경우, 동일한 건물에서의 합축 형태이지만 각 유니트별 독립적인 현관을 설치하여 생활의 독립성(유니트 케어화)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본원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실, 지역교류공간, 단기보호공간 등 향후 다기능 전환을 위한 기능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분원형도 일반가정에 가까운 생활을 할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단, 외관이 시설적인 형태를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가능한 일반단독주택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 하며 직접 신축이 어려운 경우 임차비 가산제도를 통해 임차하는 경우도 활용가능하다. 패밀리 홈의 개설 및 지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전 직원이 독립적으로 패밀리 홈을 개설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지역의 가정위탁모가 개설하는 패밀리 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림 5-3] 시설의 소규모화 가정의 예



자료: 厚生労働省(2012b). 児童養護施設等の小規模化及び家庭的養護の推進のために(平成24年9月), 施設の小規模化及び家庭的養護推進ワーキンググループ. p.20-21.

4) 시설의 소규모화 과정에서의 직원배치 운영 방법

시설의 소규모화는 시설의 여건상 그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설의 주체의 적극성과 정부의 서포트가 매우 중요하다. 시설이 소규모화를 위한 직원체제를 살펴보면(厚生労働省, 2012b), 정원 6인 기준으로 직원 3

명 대 아동 6명이 기본적인 바탕이다.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은 조치제도의비용에 의해 아동지도원 또는 보육사 3명, 관리숙직직원1명(비상근), 연휴대체요원 등을 책정하여 직원과 아동의 1:3 비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규모 그룹 케어의 경우는 기존의 본원 정원에 의해 배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 45인 정원의 직원배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0~1세 1.6:1, 2세 2:1, 3세 이상 4:1, 초등학교 이상 5.5:1로 각각의 아동 연령과 직원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원에 따른 직원배치 규정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가산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그룹 케어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현원에 따라 직원 배치+소규모 그룹케어 가산직원 1명의 배치가 기본적인 바탕이다. 단, 여기에 개별대응직원(1명), 정원45인 이하 소규모시설 가산(1명), 조리원 및 가사지원, 정원35인인 이하 시설지도원 특별가산(비상근1명), 시설본원의 관리숙직전문원(비상근 1명), 피학대아동입소가산(1명당 26,200엔), 연휴대체직원비용 등의 서포트 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을 시설의 여건에 따라 가산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하여 조합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직원과 아동의 1:3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직원배치와 근무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계자의 창의적이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며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나. 시설 소규모화의 사례: 아동양호시설 후타바카쿠엔(二葉学園)²⁰⁾

1) 시설 개요 및 소규모화 경위

사회복지법인 후타바 가쿠엔은 인가정원 40명 그리고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 12명, 총 52명의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아동양호시설이다. 본원에는 3개의 유니트, 분원형 및 그룹홈 6개소를 구성하고 있다. 본 시설은 1947년부터 목조건물로서 아동보호사업을 개시하여 1968년에 철근건물로서 개축하여 대규모(大舍) 집단양육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정원을 유지하며 분원형 그룹 홈을 1981년, 1986년에 1개소씩 증설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4개소가 신설되었다. 본원은 1992년 대규모시설은 형태를 유니트 케어 형태로 전환하였다. 해당시설은 본원의 소규모화나 본원의 지역분산화를 추진하고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사례이다.

2) 각 그룹의 구성 시에 유의했던 사항

본원에는 3개의 유니트, 6개의 분원 및 그룹홈이 있다. 각 그룹별 아동을 배치할 때 본원에는 예를 들어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남녀혼합, 남자 홈(초등, 중학, 고등)과 여자 홈(중등, 고등의 고학년 아동) 등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여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다양한 홈 구성을 편성하였다. 단, 남녀혼합 홈에는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였고, 형제 및 자매는 같은 홈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동갑내기끼리 라이벌 의식으로 인한 경쟁에 의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또래 학년은 분리시

20) 필자가 2022년 1월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외 7개 단체에서, 주최한 아동탈시설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한 사례(조정우, 2022)를 발췌하였다.

켰다. 각 그룹의 직원체제는 기본은 아동 6명에 대해 직원 3명의 팀으로 구성한다. 남성 1명과 여성 2명 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근무경력에 따른 경험이나 대응력에 따라 조합하며, 특히 고학년 아동을 담당하는 경우 직원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분원 및 그룹 홈을 지원하는 서포트 직원을 배치하여 분원 및 그룹홈에 있어 ①직원이 휴무나 갑작스레 근무가 어려울 시 ②야간에 긴급환자나 사건이 있을 시 ③아동의 송영, 식사 및 만들기 지원 ④아동이 불안정한 경우 분원의 양호주임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연한 근무운영을 위해 숙직 횟수가 늘어나 근무에 부담이 발생하여 관리숙직직원²¹⁾을 주1회 홈에 배치하고 1일 4~5시간 가사를 지원 하는 가사도우미도 배치하였다. 본원과 분원의 역할 분담은 분원 및 그룹 홈 지원직원(동경도 지원사업)을 분원 양호주임으로서 배치하여 분원의 아동대응의 책임과 직원 내부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개별대응직원을 분원 양호주임으로서 (특히 문제행동이 있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성 애착장애 등 케어욕구가 높은 아동을 대응) 배치하여 본원의 아동대응 책임과 직원 내부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였다. 시설장은 시설전체의 아동지원 및 직원지도를 수행하며 운영의 책임을 가진다. 필요에 따라 분원에 숙박을 함께 하며 그룹홈을 지도·감독한다. 기타사항으로 아동은 연말에 시설장관 면담하여 그룹 홈의 배치나 건의사항 등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듬해 반영하도록 하였다.

3) 소규모화에 의한 변화와 과제

첫째, 아동은 소규모화(그룹홈) 및 지역분산화(분원)에 따라 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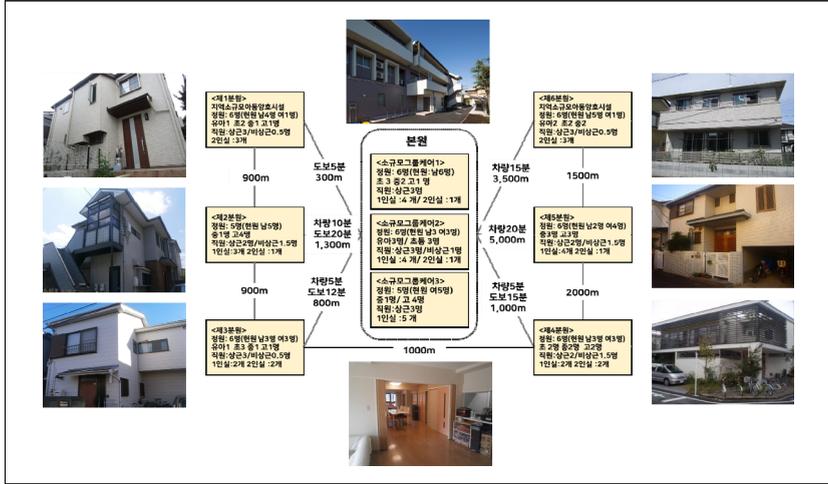
21) 원칙적으로 아동양호시설에 취업을 희망하는 20세 이상의 학생 등

생활을 하고 있다. 분원을 지역으로 분산한 것으로 교우관계나 통원(학원, 병원 등), 그 외 지역생활이 보통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양식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이로 인해 아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아동은 사회에 나가 비교적 안정되고 자립적인 생활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는 아동의 성장에 도움 되는 한편으로 개개인의 직원에게는 부담이 매우 컸다. 소규모화 또는 지역분산화한 시설에 대해서 직원의 근로조건에 배려나 심리적 부담의 경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 및 육성시스템, 고립화나 밀실화(폐쇄화)에 따른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권리 옹호의 관점에서 각 분원 및 그룹홈과 관련되는 직원은 담당직원 3명이나 그 외에 상시적으로 타 직원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타 직원이란 시설장, 주임, 심리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숙직전문원, 가사지원도우미, 봉사자 등이며 이러한 타직원이 때때로 그룹홈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타직원들은 회의를 개최하여 부적절한 대응은 없는가, 아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등 각 분원이나 그룹홈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분원 및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생활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속을 아동과 직원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스스로 할 것, 담당직원 지도를 잘 따를 것, 이웃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으로 이 세 가지를 어길 시에는 본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그림 5-4] 아동양호시설 후타바카쿠엔의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 현황



자료: 厚生労働省(2013c). 施設の小規模化等事例集(平成25年4月). 施設の小規模化及び家庭的養護推進ワーキンググループ. p.21을 참조하였으며, 사진은 후타바카쿠엔 시설 홈페이지(2023). https://www.futaba-yuka.or.jp/int_gak/에서 2023.08.01. 인출

다. 소규모주거형 아동양육사업 : 패밀리홈

소규모주거형 아동양육사업인 패밀리홈은 양육자의 가정에 아동을 맞이하여 가정에서의 양육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양육을 행하는 것으로 일본형 가정보호체계의 하나이다. 대상아동은 가정과 동일한 양육환경에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이며 정원은 5명 또는 6명으로 한다.

패밀리홈의 운영주체인 양육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첫째, 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포함)보호자로서 위탁아동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자가 자기 거주지를 패밀리홈으로 하여 스스로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가정위탁 보호자이며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가 거주지를 패밀리홈으로 하여 스스로 사업자가 되는 경우이다. 법인의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용한 직원을 양

육자로 하여 해당법인 제공하는 거주지를 패밀리홈으로 하여 사업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패밀리홈의 양육자는 2명의 양육자와 1명 이상의 보조자를 배치해야 하며 이 2명의 양육자는 원칙으로 법적인 부부여야 한다. 단, 위탁아동의 양육을 할 수 있는 양호한 가정환경을 확보한 경우에는 1명의 양육자와 2명 이상의 보조자로 구성이 가능하다.

양육자는 요건은 첫째, 가정위탁 보호자로서 2년 이상 또한 2명 이상의 위탁아동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자, 둘째, 가정위탁 보호자로서 5년 이상 등록하고 합계 5명 이상의 위탁아동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자, 셋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양육을 3년 이상 종사한 자 가운데 어느 한곳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양육자와 보조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연수를 수강하고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패밀리홈은 가정위탁의 가정이 커진 것이지 시설이 작아진 것이 아니다. 아동에게 있어 직원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따라서 양육자는 생활기반을 패밀리 홈에 두고 아동함께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또한 패밀리홈은 복수의 아동을 맞이하여 그 아동들과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간의 안정을 도모하며 위탁을 받는 경우,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원 구성, 관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상담소, 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패밀리 홈은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주체가 운영하며 사업형태나 회계는 시설에 준하는 조치제도에 의거한다(厚生労働省, 2014a). 그러나 시설운영의 행정력과 가정위탁의 장점을 혼용하여 기본적으로는 가정위탁의 발전형이며 그 위치는 가정보호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가정위탁율이 저조하며 시설보호가 강한 일본의 사회적 보

호의 특성에 기인하여, 가정위탁형 그룹홈으로서 지자체에서 독립적 수행하던 사업을 법정화한 사례이다(日本財団, 2020). 즉 조치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가정보호 전달체계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패밀리홈 가운데, 개인형으로서 가정위탁세대의 보호자가 패밀리홈의 운영주체가 되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도 생겨나 이를 가정위탁형 패밀리홈이라 부르기도 한다(厚生労働省, 2014a).

라. 패밀리홈의 사례

패밀리홈 제도는 가정보호가 저조한 요보호 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설운영의 조치제도의 행정력과 가정위탁의 장점을 혼용하여 신설한 제도라고 전술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정위탁 또는 소규모화된 그룹홈에서의 운영 및 양육에 대한 과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의 혼용한 만큼 야기되는 운영상의 한계와 설치경위는 실천점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개인 또는 법인 및 시설이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주체로부터 신설되는 원칙에 따른 설치경위는 운영상의 과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패밀리홈 설치 경위와 운영상의 과제

개인의 경우 패밀리홈을 설치한 경위는 사회적 보호에 대한 본인이 경험과 관련되었으며, 개인적인 목표나 양육에 대한 이상 실현과 같은 동기가 높았다(厚生労働省, 2014b). 즉 기존의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경험이 보다 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실현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패밀리 홈으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패밀리 홈을 개소 할 경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양육의 충분한 실천 또

는 지식의 경험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며, 개인의 삶과 가정위탁의 양육과의 분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다(厚生労働省, 2014b). 이는 특수한 욕구가 높은 아동이 패밀리홈으로 입소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패밀리홈이 고립되지않고 주변 지지체계와 함께 양육해간다는 시점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과는 다르게 조치제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의 서류작성, 회계정리 등 업무가 발생하여 양육 외 업무가 부담이 될 수 있다(厚生労働省, 2014b). 즉, 일반적인 가정위탁과는 달리 부과되는 업무가 생기므로 가정위탁에서 패밀리홈으로의 전환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인이 설치한 경우, 법인내 패밀리홈 개설이 필요한 특수한 양육환경의 사정이나, 정책의 소규모화 전환에 맞추어 패밀리홈을 개설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로서 개인의 경우와 유사하나 양육자가 부부인 점을 전제할 때 인재양성이나 선발의 어려움, 그리고 패밀리홈은 ‘양육자의 가정에 아동을 맞이하여 가정에서의 양육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양육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법인의 경우 패밀리 홈의 양육자는 고용된 직원이기 근로기준법 위헌의 소지를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14b).

〈표 5-11〉 패밀리홈 설치 경위와 운영상의 과제

사례 유형	설치 경위	과제
개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더 전문적으로 가정위탁양육을 하기 위해 패밀리홈으로 전환함. - 다수의 위탁아동을 케어하기 위해 패밀리홈 전환. - 아동복지시설 근무 경험이 퇴직 후 패밀리홈 운영이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명의 가정위탁 경험 후 패밀리홈 전환을 장려 - 패밀리홈은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양육자도 휴식이나 개인생활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 - 고립되지 않는 타 홈이나 가정위탁 등과 교류가 중요함. - 특수한 욕구가 높은 아동에 대한 양육을 서포트 받아야 함. - 조치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양육외의 서류회계 등의 업무도 주의해야 함. - 자가 소유의 홈에 대한 운영비 필요(수선비나 유지비등)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가정위탁하기 위해 법인에서 패밀리홈을 개설 - 소규모하 정책의 전환과 함께 법인에서 패밀리홈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경험이 있는 양육자를 고용 - 법인(시설)의 양육에 대한 노하우를 패밀리홈에 전수 - 패밀리홈의 근로가 가능한 법인내 기존직원을 선발 - 양육자는 부부배치가 전제이기 때문에 인력발굴의 어려움 - 패밀리홈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위험여지 등

자료: 厚生労働省(2014b). 패밀리홈事例集. 패밀리ホームの設置運営の促進ワーキンググループ에서 소개한 8개 사례 중, 개인(2개)과 법인(3개)에서 설치한 5개 사례로부터 요약·정리.

2) 패밀리홈 운영상의 과제

패밀리 홈의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패밀리 홈은 요보호 아동의 다양화에 의해 특수요구를 가진 요보호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밀실화 또는 고립화 되지 않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패밀리홈이 가정보호의 또 다른 전달체계로 자리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패밀리홈을 신설하고 2016년에 전환된 가정양육우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과 패밀리홈은 그 정책 목적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예를 들어 가정위탁은 2~4명의 아동이 양육되며 패밀리홈은 5~6명 정원이 가득 채워져 있으며, 또한 패밀리홈은 연장아동이나 일시보호기능 수행, 피학대나 장애아동 입소율이 높음 등 조치제도상의 시설적 성격을 도모하기 쉬워 단순히 가정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패밀리홈과 가정위탁의 성격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日本財団, 2020)

셋째, 패밀리 홈 개설을 장려하는 분위기 가운데 법인형의 경우 경영자의 입장에서 24시간 아동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 부분이, 관리자로서의 사업개시에 대한 망설임도 우려된다(堀場純矢, 2022). 소규모 그룹 케어(분원형)나 지역소규모아동양호시설을 관리숙직지원, 가사지원 등 서포트 직원배치, 또한 본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유연성있는 운영이 가능하나 패밀리홈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육자의 조건이 가정위탁 또는 시설경력자 게다가 부부라는 원칙의 엄격성도 있어 인력확보가 과제이다. 하지만 일반가정위탁세대보다 사회적 보호의 경험이 있는 양육자에 의해 요보호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보호형 전달체계로서의 그 잠재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4. 시사점

일본사례가 국내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가 가정양육우선 원칙을 설정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시설 신규입소 중지 선언과 '3세 미만은 5년이내, 취학전 아

동에 대해서는 7년 이내 각 가정위탁을 75% 이상, 학령기 이후 아동은 10년 이내 가정위탁을 50% 이상' 등 구체적인 가정양육 우선원칙의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의 구체적 지향점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가정위탁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일본은 가정위탁 강화로의 이행은 다소 점진적이며 그 과정에서 과제도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역적인 편차이다. 그 차이는 정책적 요인에서 아동상담소의 인식이나 인력의 확충 등 공공인력의 내실화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가정위탁사업을 아동상담소의 업무로 제도화한 이후에야 가정위탁제도가 내실화되고 지원체계가 확대되었으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20년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 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부기능이 공적체제로 전환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신설되었다. 공공인력의 인식 및 인력의 전문성과 규모 확충 등 공공의 전달체계를 내실화할 때, 가정위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정위탁의 발굴부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일본 내 가정위탁의 성공사례에는 적극적인 가정위탁 개발 및 보급을 주도하는 리크루트 사업과 지원체계의 확립이었다. 특히 시민단체나 NPO 등 민간단체들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부정적인 가정위탁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심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함께였으며 이는 가정위탁의 잠재성을 적극적으로 끌어 올렸다.

한국에서도 최근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이슈가 매스컴을 통해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자립지원에 대한 시스템의 확대와 지원자원의 내실화가 이루어 선행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주체는 공공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NPO 등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단, 앞서 강조한 것처럼 공공책임이 전제된 하에 민관기관과의 협업이 부가될 때 성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대피해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요보호 아동이 증가 가운데, 전문적인 지원체제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지지체제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듬해 2002년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약 20여년이 지났지만 전문가정위탁제도는 약 11%에 밖에 머물고 있지 않다. 이러한 원인으로 전문가정위탁보호 자격의 엄격함에 의한 리크루트의 실패, 보호아동 욕구의 다양화의 급증이 공급체계를 초과, 지지와 지원체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고립의 위험성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일본은 대안적 방안으로 패밀리홈을 신설하여 가정보호체계를 도모하였고, 또한 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그룹홈, 가정위탁, 패밀리홈과 같은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된 보호체계에 대해 전문적인 케어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한국은 2021년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직 시행초기의 단계이라 성과와 과제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으나, 일본의 사례는 참고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피학대 아동의 보호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일본과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정위탁제도 초기부터 과감한 지원과 지원체제의 내실화 및 다변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한 휴식지원, 맞춤형이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근무지원, 일시휴식 및 쉿스테이 등 위탁부모의 스트레스 완화와 양육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국내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위탁의 활성화는 시설보호의 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함이다. 일본은 시설보호 특성이 강하며 특히 아동복지 전달체제내에 그 영향력

이 크다. 일본의 가정보호 약화의 배경에는 시설보호의 강화가 있었으며 시설보호의 개혁이 가정보호의 증가세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하였던 일본형 사회적 보호란 '구미에서 시도한 시설 폐지를 통해 가정위탁을 이행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본의 조치제도를 통해 4~6인의 소규모 케어, 개별케어의 충실 및 강화를 도모하면서 시설과 가정위탁이 연계하여 시설의 사회복지적 기능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는 상생적인 입장이며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역할 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방증하는 제도가 시설에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시설은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시설이 아니라 가정위탁으로 조치 변경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일임하였고 추진하였다.

한국도 2022년 보호아동에 대한 탈시설 로드맵 마련과 가정형 보호 확대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고 한국형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전문화, 다양화 및 개방화, 소규모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과 함께 가정위탁의 활성화 정책도 하나의 과정 안에서 통합된 모색이 필요하다.

제2절 미국사례

미국은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중심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의 가정위탁 제도 특성과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보호아동 탈시설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가정외 아동보호 체계와 현황

가. 아동보호 조치 절차²²⁾

미국에서 아동복지체계(child welfare system)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아동·가족은 학대나 방임이 주요한 이유²³⁾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일반적인 아동보호 절차는 [그림 5-5]와 같다.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면, 누구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는 주 법에 근거한 의무 신고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ce Services)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스크리닝을 통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른 서비스나 추가 지원을 위한 법 집행 기관에 연계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학대와 같은 즉각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나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쉼터, 위탁 가정, 또는 친인척의 집으로 일시보호 조치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또한 가족내 강점과 욕구를 사정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를 시작한다.

조사가 종료되면 아동보호기관 사례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입증되지 않음(근거없음)” 또는 “입증됨(근거있음)”으로 판단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 보호 또는

22) How the child welfare system works. U.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Children’s Bureau(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a)에 기초하여 작성함.

23)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은 부모나 주양육자에 의해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과 같은 심각한 위해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음(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a).

부양 절차와 같은 법원 조치를 개시한다. 아동학대가 “입증됨(근거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아동과 부모를 위한 다음 단계는 주 또는 지역 정책, 학대의 심각성, 아동의 즉각적인 안전에 대한 평가, 지속 또는 미래의 학대에 대한 인지된 위험, 가족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아동의 분리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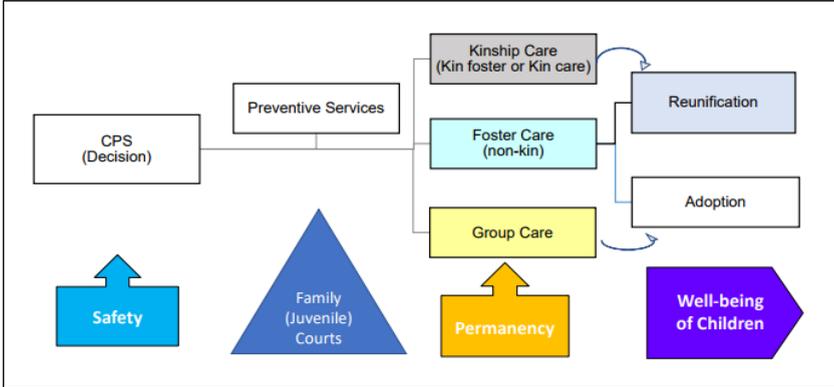
[그림 5-5] 아동보호 단계



자료: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a).How the child welfare system works. U.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Children’s Bureau. <https://www.childwelfare.gov/pubs/factsheets/cpswork/> 에서 2023.6.12. 인출.

아동학대가 법원에 의해 “입증됨(근거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법원은 학대나 방임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부모에게 명령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해당 명령은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방문 요건,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의 의미,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사례의 심각성과 다른 요인들에 따라 아동은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위탁 보호아동은 친척 또는 위탁 가정에 보호조치되지만 일부는 그룹홈이나 시설에 배치되기로 한다.

[그림 5-6] 가정의 보호조치 절차



자료: 이은주(2023). Out-of-Home Care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Family Foster Care[비발간]. 세미나 자료(2023.9.6.).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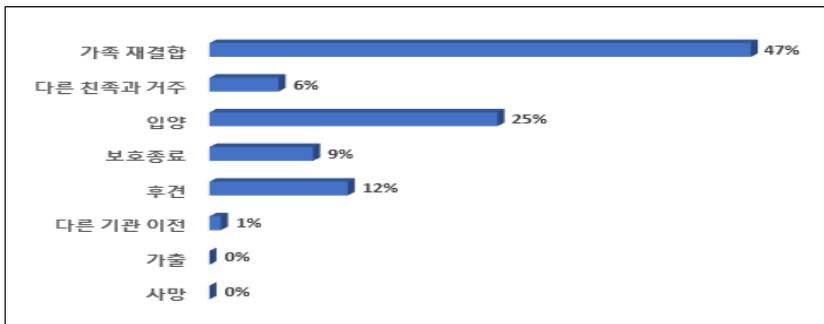
한편, 위탁 보호를 받는 모든 아동은 영구 계획(permanency plan)이 있어야 한다. 연방법은 법원이 영구 심리(permanency hearing)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아동의 영구 계획(permanency plan)이 수립된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이 위탁보호에 들어간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12개월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법원은 각 기관이 아동의 영구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자주 각 사례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평균 위탁 보호 기간은 21.9개월로 보호아동의 66%가 2년 미만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2).

일반적으로 가족은 아동의 영구 계획(permanency plan) 및 자신들의 서비스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동의 영구 계획(permanency plan)은 가족 재결합이다. 가족 재결합이 희박해 보일 경우에는 다른 영구 계획이 동시에 수립될 수 있고, 가족 재결합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입양이나 친인척에게 양육

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이 다른 영구 보호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아동보호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선 순위를 가족 재결합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림 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탁보호를 받는 약 2명 중 1명(47%)이 원가족과 재결합 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2). 그리고 다음으로 선호되는 입양이 25%로 많고, 후견(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2).

[그림 5-7] 위탁보호 종료 이유



주: 가족 재결합(reunification with parents or primary caretakers, 100,004명), 다른 친족과 거주(living with other relatives, 12,531명), 입양(adoption, 53,546명), 보호종료(emancipation, 19,130명), 후견(guardianship, 25,023명), 다른 기관 이전(transfer to another agency, 2,290명), 가출(runaway, 552명), 사망(death of child, 368명)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2). The AFCARS Report.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afcars-report-29.pdf>

나. 가정외 보호 조치 원칙

1)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미국의 모든 주는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 배치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고려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b).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유형, 조치, 명령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는데 누가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때 법원이 수행하는 심의를 의미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b).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많은 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목표, 목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정과의 분리를 최대한 지양한다.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등 28개의 주에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아동의 건강, 안전, 보호의 원칙으로 21개 주에서 이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아리조나 주를 비롯한 19개 주에서는 시의적절한 영구 배치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라바마, 콜로라도, 조지아 등의 12개 주에서는 원가족과 분리된 가정외 보호아동이 성인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b).

더 나아가 23개 주에서는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을 고려할 것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b). 해당 요인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과 부모, 형제·자매, 가족 및 가족 구성원, 혹은 다른 주양육자와의 정서

적 유대 및 관계; (2) 안전한 집, 적절한 음식, 의복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 (3)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련 욕구; (4) 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4) 가정 폭력 유무. 그리고 일리노이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법령에 명시된 모든 요인이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욕구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b). 이 외에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등의 13개 주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선호, 의사를 묻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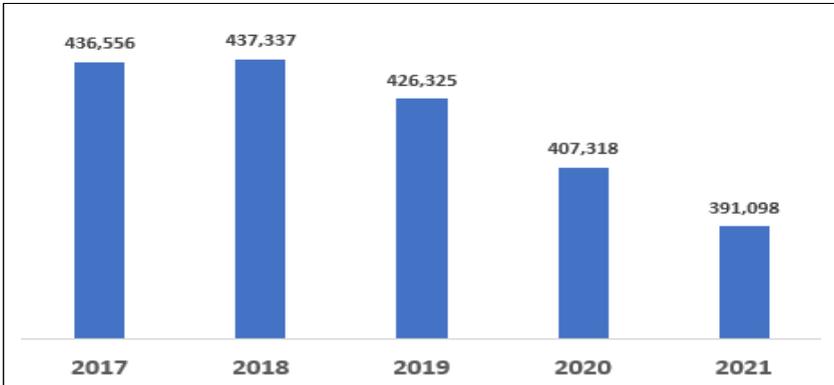
2) 친인척 가정위탁 보호 조치 우선

미국은 “연방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ederal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 of 2018)”에 기반하여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우선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룹(group) 또는 시설(residential) 형태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다(Group and Residential Care, n.d.). 그룹 또는 시설보호는 지역사회 기반 보호서비스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고려해야 된다(Group and Residential Care, n.d.).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연방)는 위탁 가정 또는 자격을 갖춘 거주 치료 프로그램이 아닌 배치에 대한 연방 비용 지원을 2주로 제한하고 있다. 즉,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에서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가정위탁에 우선적으로 보호조치되며, 가정위탁 중에서도 친인척 위탁이 선호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3). 친인척 위탁이 원가족과의 연결, 가족 문화 유지를 통해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아동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3).

아동 보호조치와 관련된 미국의 이러한 원칙은 위탁아동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2). 2017년 이후 미국의 위탁보호 아동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그림 5-8] 참조), 2021년 9월 기준, 시설(Institution) 보호조치 아동은 5%, 그룹홈(Group Home) 보호조치 아동은 4% 수준이다. 반면, 가정위탁(Foster Family) 보호조치 비율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친인척(Relative) 가정위탁이 35%를 나타내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34% 정도만 가정위탁(입양전위탁 포함)으로 보호조치되고, 이의 2배 수준인 63% 이상이 시설로 보호 조치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n.d.b).²⁴⁾

[그림 5-8] 미국의 위탁보호 아동 수

(단위: 명)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2). The AFCARS Report.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afcars-report-29.pdf>

24) 2021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총인원(3,437명) 중 시설보호(2,183명)와 가정위탁(1,179명)의 각 비율을 저자가 직접 산출하여 제시함.

〈표 5-12〉 2021년 아동보호조치 현황

(단위: 명, %)

보호 유형	명	%
입양전위탁(Pre-Adoptive Home)	16,381	4
친인척 가정위탁(Foster Family Home, Relative)	133,873	35
일반 가정위탁(Foster Family Home, Non-Relative)	171,627	44
그룹홈(Group Home)	15,432	4
시설(Institution)	19,929	5
자립생활기관(Supervised Independent Living)	8,633	2
가출(Runaway)	4,240	1
시범가정방문(Trial Home Visit)	17,439	4
합계	391,098	100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2). The AFCARS Report.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afcars-report-29.pdf>.

2. 친인척 위탁 중심의 가정위탁제도²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의 보호체계 유형은 크게 위탁가정과 시설보호가 있지만, 위탁가정 중심으로 가정외 보호체계가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조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가정외 보호제도는 곧 가정위탁제도로 인식되고 있다(이은주, 2023).

미국의 가정위탁보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이은주, 2023): 친인척이 아닌 가정위탁 보호(non-relative family foster care), 친인척 가정위탁(kinship care), 치료가정위탁(treatment foster care). 가

25) "Kinship guardianship as a permanency option(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9)"에 기초하여 작성함.

정위탁 부모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있으며, 이는 Social Security Act - Title IV-E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책임이다(이은주, 2023).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단위 보조금이 지원되며, 치료전문 위탁가정은 일반 위탁가정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치료전문 위탁부모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치료 욕구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뉴욕 주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 아동의 연령과 전문치료 욕구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하고 있다(그림 5-9 참조). 일반 위탁가정의 경우 월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전문 위탁가정은 약 3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림 5-9] 위탁가정 경제적 지원(뉴욕주 사례)

(단위: 달러)

Maximum State Aid Rates for Payments to Foster Payments and for Adoption Subsidies						
	Age 0 – 5		Age 6 – 11		Age 12 and Over	
	Monthly Amount	Per Diem	Monthly Amount	Per Diem	Monthly Amount	Per Diem
Metro *	1,028.00	33.80	1,212.00	39.85	1,230.00	40.44
Upstate	894.00	29.39	1,065.00	35.01	1,077.00	35.41

	Monthly Amount	Per Diem
Special Children	1,930.00	63.45
Exceptional Children	2,925.00	96.16

Maximum State Aid Rates for Payments to Foster Parents for Emergency Placements	
Maximum State Aid Rate is 200% of the MSAR for a Non-Special or Non-Exceptional Child.	

* Metro includes the following districts: New York City and Nassau, Rockland, Suffolk and Westchester counties.

자료: 이은주.(2023). Out-of-Home Care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Family Foster Care. 세미나 자료(2023.9.6.). p.29.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아동보호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 재결합이며, 원가족과의 분리가 꼭 필요한 경우 친인척 가정위탁을 우선 순위로 둬으로써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아동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인척 위탁보호는 일반적으로 "친척, 또는 인척 구성원, 대부모, 의붓부모 또는 아동과 가족 관계가 있는 기타 성인이 아동을 풀타임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²⁶⁾. 아동과 친인척의 관계는 가족의 문화적 가치와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존중되고, 친척이나 다른 친인척에게 아동을 배치하면 가족 관계와 문화적 전통을 유지할 수 있어 심리정서적 안정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이러한 측면에서, '친인척(kin)'은 단순히 혈연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아동을 잘 알고 유대관계가 있는 가까운 이웃, 가족의 친구, 지역사회 멤버 등도 인정될 수 있다(이은주, 2023).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사례관리자는 "Family Finder" 등을 통해 아동을 위탁보호할 수 있는 친인척(kin)을 최우선적으로 탐색하고, 해당 가정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가정조사(home study)를 수행한다. 그 결과에 기반하여 친인척 위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approved) 받게 된다(이은주, 2023). 가정조사는 신청이 접수되고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가정조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이은주, 2023): (1) 21세 이상의 연령, (2) 전염병이 없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3) 아동양육에 적합한 고용 형태, (4) 아동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결혼 상태, (5) 3명의 참고인, (6) 위탁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과 되고자 하는 이유 등이다.

26)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About Kinship Care.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outofhome/kinship/about/>에서 2023.6.15.인출.

또한, 아동보호기관은 아동 방임과 학대를 예방하고 위탁부모가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메사추세츠 주를 포함하여 많은 주에서 10주, 30시간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 MAPP(Model Approach to Partnerships in Parenting)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이은주, 2023). 한편, 친인척 위탁부의 경우,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둔 신속 가정조사가 진행되거나 위탁부모 요구 조건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교육은 친인척 위탁부모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이은주, 2023).

3. 후견(Guardianship) 제도

위탁보호 수당을 받는 모든 아동은 Title IV-E, 연방법에 따라 문서화된 “사례 계획(case plan)”이 수립되어야 하고, 15개월 이상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면, 친권박탈을 포함하여 입양이나 후견과 같은 영구 계획(permanency plan)이 고려되는데, 최근 친인척 후견(kinship guardianship)이 증가되어 2021년 기준 12%에 이르고 있다(이은주, 2023).

부모와의 재결이나 입양을 통한 영구 계획(permanency plan)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경우 친인척 후견이 영구적 선택(permanency option)이 될 수 있다. 친인척 후견 제도는 친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은행업무, 학교, 의료 등과 관련된 법적 권한을 법원으로 친인척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원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나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이은주, 2023).

위탁부모로서 친인척이 아동을 보호한 경우, 법원은 영구적인 후견인으로 해당 친인척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후기 아동에게 적합할 수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1) 아동이 해당 친인척으로부터 상당 기간 안정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2) 아동이 입양 의사가 없는 경우; (3) 부모 친권을 박탈할 수 없는 경우; (4) 친가족과의 관계로부터 아동이 계속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5) 친인척이 입양 의사가 없거나 입양하기 어렵지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일부 주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14~18세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인 지정에 대해 아동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이은주, 2023).

가. 후견(guardianship) 자격

후견(guardianship) 자격은 아동이 일정 기간(보통 6개월)동안 예비 후견인의 집에 거주했고, 배치가 적절하고 안정적인 경우에만 영구적인 보호조치로서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후견인(guardian) 가정 또한 다른 친인척 위탁 보호조치와 마찬가지로 연방 범죄 기록, 아동학대·방임 기록 조회를 포함하는 가정조사(home study)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정조사는 또한 후견인(guardian)이 아동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가정조사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 아동은 예비 후견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고 후견인은 아동을 영구적으로 보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 예비 후견인은 기꺼이 자녀에게 안전하고 영구적인 집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

- 예비 후견인은 주 아동 복지 기관의 지속적인 감독 없이도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교육적 및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예비 후견인은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매우 어린 아동의 경우)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며, 아동은 말이나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예비 후견인의 집에서 보호자 및 그 가족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냈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은 후견인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했다.
- 후견인과의 영구 배치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다.

나. 친인척 후견(guardianship) 절차

친인척의 후견(guardianship) 자격을 설정하려면 부모, 자녀의 법적 양육권을 가진 주 또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예비 후견인, 자녀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 또는 해당 사건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해당 아동을 관할하는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청원을 검토하기 위한 심리 일정을 정하게 된다. 법원은 요청된 친인척 보호가 아동에게 적절하고 영구적인 배치인지를 심리 기간동안 결정하게 되는데, 법원이 이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 가정조사(home study) 결과, 예비 후견인의 집이 안전하고 아동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 예비 후견인과 그 가족의 모든 성인 구성원에 대한 범죄 기록 및 아동 학대 및 방임 등록 확인 결과,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사항이 전혀 없다.

- 아동은 예비 후견인 및 그 가족 구성원과 편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예비 후견인은 아동 후견(guardianship)의 영구적 특성을 인지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아동은 후견(guardianship) 및 보호배치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예비 후견인, 친인척의 집이 아동에게 적합하고 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면 해당 친인척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임명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친인척 후견인은 아동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 양육권 및 통제권과 함께 관계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는 많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는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미국의 많은 주에서 친인척 후견인은 후견 명령(order of guardianship)을 통해 결혼, 군입대, 수술을 포함한 주요 의료적 처치, 아동의 입양과 같은 주요 생활 사건에 대한 동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다. 친인척 후견인 지원서비스

아동 양육에 대한 완전한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영구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친인척 보호자의 경우, 주 정부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일련의 서비스 및 재정(위탁보호시, 월 보조금 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에는 친인척 내비게이터 서비스(Kinship navigator services), Title IV-E를 통한 연방 기금 보조금 및 주 기금 보조금이 포함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친인척 네비게이터 프로그램(Kinship navigator programs)은 친인척 위탁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정보, 추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데, 커넥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그리고 오하이오 주는 법령에 기반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미국 전역의 ‘warm’라인을 연방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친인척 보호자가 필요할 때 상담, 자원 연계,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이은주, 2023).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민간, 지역사회 및 종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 (2) 사회보장급여(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또는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포함한 재정 지원에 대한 아동의 적격성 결정; (3) SSI 또는 TANF 신청 지원; (4) 보호자의 법적 비용 및 비용 환급; (4) Medicaid 또는 주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건강 비용 지원; (4) 친인척 보호자의 월별 보조금 신청 지원. 친인척 보호(guardianship)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주에서도 SSI, TANF 또는 Medicaid와 같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친인척 보호자는 개별적으로 혹은 사례관리자를 통해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친인척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는 월별 보조금 지원시, Title IV-E를 통해 연방에서 재정을 지원 받거나 주 재원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등의 34개 주에서는 Title IV-E 친인척 보호 월별 보조금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4. 소결: 우리나라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친인척 가정위탁 보호와 공식적·체계적 모니터링

미국에서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조치 할 때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며, 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가정과의 분리를 최대한 지양하되, 가정위탁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원가족과의 연결, 가족 문화 유지를 통해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인척 위탁으로의 보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가정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례계획 담당 종사자(Case Planner)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인척을 탐색하여 발굴한다(이은주, 2023). 가정조사(home study)에 기반하여 친인척 위탁 부모 및 동거가족에 대한 자격심사 및 양육 의지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위탁보호 자격을 부여 받는다(이은주, 2023). 친인척 위탁부모가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아동이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가 되면, 사례관리자(Caseworker)가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는 동안 월 1회 방문하여 양육 상황을 살피고, 친인척 위탁부모를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연계한다(이은주, 2023). 약 2년 동안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친인척 위탁 부모에게 후견인 자격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영구적인 조치로서 사례관리를 종결한다. 보호조치와 사례관리 등 친인척 위탁보호 과정 전반에 걸쳐 공공의 개입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은주, 2023).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친인척 위탁가정으로 보호조치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가령, 조손가구에 아동이 있으면 위탁가정으로 편입시켜 양육비 등을 만 18세 이상의 성인 연령이 되어 보호종료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사례관리나 모니터링 없이 친인척 위탁가정으로 영구적인 조치로 방치되어 아동 스스로도 위탁보호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친인척 가정위탁의 아동보호효과가 시설보호에 비해 긍정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이상정 외, 2017;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이상정 외, 2020). 친인척 가정위탁은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가정이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친인척 위탁보호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질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미국 사례와 같이 친인척 위탁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친인척 위탁부모 선정 기준 마련, 친인척 위탁 부모 교육 의무화, 정기적·체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약 2년 동안의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보호환경을 제공한 후, 친인척 위탁부모에게 법적 후견권을 부여하여 아동 보호의 영구성을 확보하는 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친인척 위탁가정 지원서비스 및 정보접근성 제고

우리나라는 위탁가정 또는 위탁부모의 자격기준의 첫 번째로,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조). 따라서 적합한 수준의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동이 있는 조손가구도 위탁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히려 위탁가정제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배

제되고 보호대상아동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동을 위탁보호할 친인척을 발굴, 선정할 때 자격기준으로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고용 형태를 증명해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이은주, 2023).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약 2배에 이르는 현실적인 양육비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거, 의료보험, 사회보장급여 등 각 위탁가정에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것은 종사자 1인당 20사례 이하 담당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은주, 2023).

사례관리는 아동의 적응 및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고연령의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부모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역할이 부여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시도 단위 설치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위탁부모는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이상정 외, 2019; 이상정 외, 2020). 친인척 위탁보호를 포함하여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반의 가정위탁 사례관리 기반 구축, 적정 사례관리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Kinship Navigator Program을 통해 친인척 위탁 및 후견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가정위탁제도의 대상자가 아닌 조손가구나 친인척 후견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친인척 보호자와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발굴, 교

육,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 민간, 지역사회 및 종교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친인척 가정의 욕구에 맞게 지원하고 필요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사례관리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와 아동의 정보접근성을 높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체계에 포괄되지 않는 조손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또다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조손가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제3절 불가리아·리투아니아 사례

1. EU 국가들의 가정보호 촉진을 위한 노력과 진전

EU 탈시설 전환 보고서에서도 시설보호 아동 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위탁 보호를 포함한 가정위탁이 전향적으로 증가했다는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탈시설이 일찍부터 시도된 국가에서도 변화에 대한 저항은 있었고, “시설문화(institutional culture)”는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생활시설에 여전히 존재한다(Šiška & Beadle-Brown, 2020, p.6).

하지만 시설보호의 관행과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EU의 경험은 탈시설 정책 또는 전략, 선언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Šiška와 Beadle-Brown(2020)에 따르면, ‘탈시설’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국가에서는 초기에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시설보호 아동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루마니아는 시설보호 장애아동이 크게 줄었고, 불가리아에서는 지적장애아동 시설 및 대규모 아동시

설이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Šiška & Beadle-Brown, 2020). 슬로바키아에서 시설을 퇴소한 아동은 자립 또는 가족 재결합, 가정보호로 배치되어 최소한 타 시설로 전원되지는 않으며, 체코에서도 탈시설 관련 전략 및 행동계획이 수립된 초기에 아동의 지역사회 기반 거주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Šiška & Beadle-Brown, 2020).

물론, 시설을 폐쇄하고 시설 입소를 금지하며, 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단행하는 것이 곧바로 가정보호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전문화된 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족재결합을 목표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대안양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는 탈시설 정책에 기반해 가정위탁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대중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EU라는 지역 기구의 기술적 지원과 자원의 배분은 지역적 특성으로 국내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홍보와 인식 개선에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겠다(Šiška & Beadle-Brown,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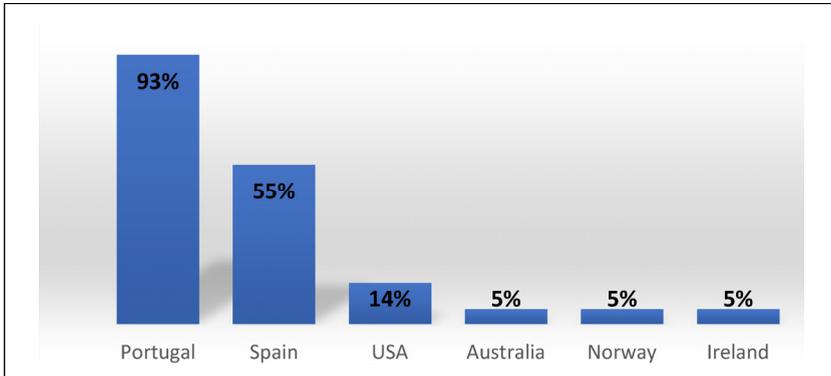
가. 아동보호체계의 개혁

1) 대안양육의 가정보호 현황

가정위탁은 탈시설화의 경로에서 유럽과 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안적 양육 방안이다(Sacur & Diogo, 2021). 영국은 가정 밖 보호아동의 약 75%가 위탁가정에 있고(Department for Education Children, 2020.01.15.; Sacur & Diogo, 2021에서 재인용), 아일랜드에서는 시설보호가 5%인 반면 가정위탁과 친족돌봄이 93%이며, 노르웨이에서도 시설보호 5% 대비 위탁보호가 89%, 미국은 시설보호 14% 대비 위탁보

호 75%, 호주는 시설보호 5% 대비 위탁보호 88%로 확인된다(Furey & Canavan, 2019; Sacur & Diogo, 2021에서 재인용).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시설보호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의식하며, 2021년 EU의 전략을 전환할 방안을 탐색한 Sacur와 Diogo(2021)는 예방적 접근과 가족 지원 서비스의 강화, 신중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원가족의 재결합 강화, 아동의 시설 배치 점진적 중단, 특히 영유아의 가정위탁 촉진, 그리고 소규모 거주시설의 확장(Greenberg & Partskhaladze, 2014; Terziev & Arabska, 2016) 등을 제안했다.

[그림 5-10] 국가별 아동의 시설보호 비율



자료: Sacur & Diogo(2021). The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European Child Guarantee-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Alternative Care. *Children*, 8(12), p.6.

즉,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가정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아동보호체계의 개혁과 맞닿아 있다. 원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모든 과정은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충분한 인력이 필수적이기에, 정책 추진 체계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인식 증

진을 위한 캠페인 등 민간의 NGO와 협력하는 홍보에도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2) 가정위탁 관련 법 제정

아동 탈시설을 선언하면서 가정위탁법을 제정한 다수 국가를 찾아볼 수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2016년 2월 채택된 「가정위탁법 (zakona o pěstounské péči v BiH), Službenim novinama Federacije BiH 19/17)」은 위탁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3세 이하 아동은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위탁가정의 선정 기준 및 의무교육(기본, 심화), 경제적 지원(아동 1명당 €75~250/월), 위탁가정을 아동의 필요와 특성에 맞춰야 할 필요성 및 상호부조화를 이유로 하는 배치 변경의 최소화, 위탁가정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사회복지센터의 의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개별계획 수립(누가,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아동과 가족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배치 기간, 보호 상황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등), 나아가 아동이 시스템 내에서 “잊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은 계획을 보완할 것 등을 규정한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n.d.a).

벨기에도 2017년 3월 「위탁 양육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tot wijziging van de wetgeving voor wat betreft de rechten en plichten van pleegouder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은 위탁부모가 아니라 위탁 양육자로 지칭한 이유는 가정위탁이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을 목적에 둔 과정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와 관련된 위탁 양육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다는 해설(ARTIKELSGEWIJZE TOELICHTING)을 제시한다(De Kamerleden, n.d.)²⁷⁾ 이처럼 위탁 양

육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법은 ‘가능한 한 친부모 또는 후견인이 선택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제11조)’고 밝힌다. 보호 중인 아동에게 일정 기간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동이 원가정에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며, 부모가 설정한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점은 원가정 보호자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위탁 양육자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명확히 해 줄 수 있다는 이유이다(제11조 해설). “위탁 양육자와 아동 사이에 형성된 안정적인 관계가 아동의 가족 재결합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응하며(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16b), 아동의 가족재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보호로서 아동의 안정적인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가정위탁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다만, 2017년 개정된 법은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결정 권한을 위탁 양육자에게 더 많이 위임하도록 하였다. 위탁 양육자는 학교 서류에 대한 서명, 예방접종과 같은 아동의 일상에 관한 개입은 물론, 응급의료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다. 건강, 여가, 종교, 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결정은 친부모의 권한에 따른다. 중장기 보호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당사자가 상호 노력해야 할 합의 사항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탁가족이 위탁 보호 1년 후에 판사에게 권한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된다. 그 밖에 위탁 양육자는 1년 이상 아동을 보호했을 때, 면접교섭권도 갖는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n.d.b). 아동 발달에 있어 양육의 연속성이 갖는 의미를 상기하며, 위탁가정과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를 담은 규정이다(제15조 해설).

27) 제안된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벨기에 의회(De Kamerleden) 사이트 (<https://www.dekamer.be/kvcr/showpage.cfm?section=flwb&language=nl&cfm=flwb.n.cfm?lang=N&dossierID=0697&legislat=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도 2018년 법률 제4538/2018 「가정위탁 및 입양 제도의 촉진을 위한 조치 및 기타 규정(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institutions of foster care and adoption and other provisions)」이 발표되었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15). 이 법률에 근거하여, 더 많은 법인이 주거형 거주시설 대신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위탁 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유형의 가족 구조(예: 편부모가족, 시민 파트너십 계약에 서명한 동성부모)가 전통적인 가족과 동등하게 위탁 양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Eurochild,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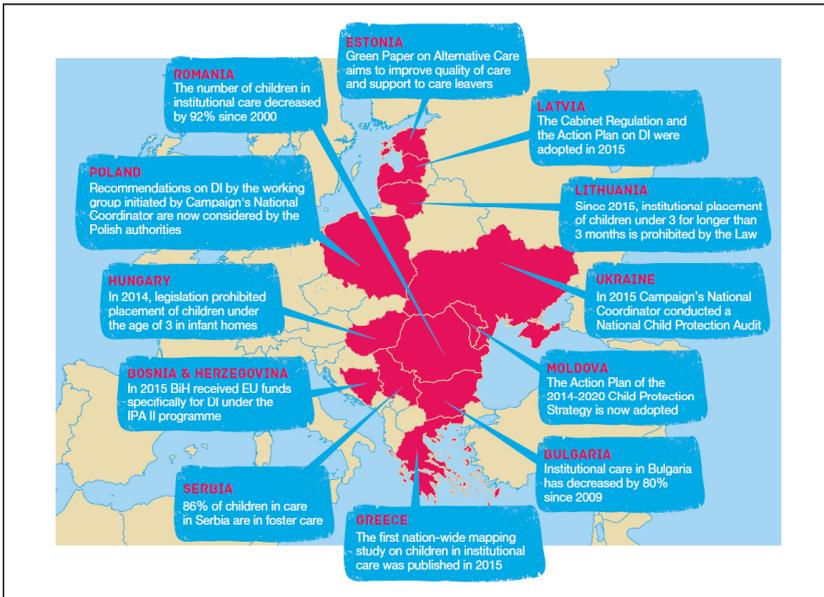
리투아니아도 탈시설 로드맵 시행 과정에서 2018년 가정위탁에 관한 법규가 제정·시행된 국가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전문위탁가정을 모집, 교육훈련, 지원하는 돌봄센터 네트워크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15). 위탁 보호자는 친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동일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고, 양육수당(childcare allowance)을 지급받는다(Zory, 2021).

3) 시민사회의 옹호 활동: Opening Doors 사례를 중심으로

Euro Child와 Hope, Homes for Children은 EU 및 각국의 탈시설 노력에 동참하며, 2013년 유럽에서 가족 강화 및 시설보호 종식을 촉구하는 “유럽 아동을 위한 문 열기(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캠페인(이하 OD 캠페인)을 시작했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8). OD 캠페인이 계획될 당시, EU에서는 탈시설이 정치적 의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으며, 각국에서도 탈시설 정책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던 때였다([그림 5-11] 참조). OD 캠페인은 시민사회단체가 유럽의 정책 및 자금 지원 수단을

알고 활용함으로써, 탈시설을 반영하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16a, p.3).

[그림 5-11] 2013년 OD 캠페인 국가의 탈시설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 동향



자료: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2016a), 2016 country factsheet from belgium here. p.4.
<http://www.openingdoors.eu/wp-content/uploads/2016/12/country-fiche-Belgium-2016.pdf>.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2020, p.10)이 설정한 캠페인의 전략적 목표는 계속하여 달라지는 상황 속에 수정·보완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하게 도모하고자 하였다. (1) 탈시설을 최우선 과제로 유지하며, 유럽 국가들이 가족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도록 EU 기금 및 정

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2) 각국 시민사회 파트너가 국가 차원에서 탈시설을 옹호하고 EU 정책 및 기금을 활용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식 및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3) OD 캠페인은 광범위한 국제 파트너십과 신뢰할 수 있고 존경받는 국가 코디네이터들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탈시설 개혁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변화의 세력이 된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10).

구체적으로, OD 캠페인의 1단계는 12개 유럽 국가, 8개 EU 회원국(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2개 EU 가입 전 국가(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개 EU 인접 국가(우크라이나, 몰도바)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8). 캠페인을 통해 각국의 시설보호아동 현황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시설 폐쇄에 따른 대안 개발이 촉진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16a, p.5). 이후, 1단계에서 얻은 교훈과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캠페인이 시작되었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16a, p.2;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8). 특히 OD 캠페인은 2단계로 나아가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및 스페인 등 지역적으로도 확장되어, 중앙 및 동유럽에서만 시설보호가 존재한다는 통념을 깨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된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8)

특히 OD 캠페인의 일환으로 EU 기금²⁸⁾이 각국에서 사용된 현황은

28) EU 기금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간 결속 강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결속기금(Cohesion Fund, CF), 농촌지역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등이 있다(조선 외, 2018, p.1). 한편, IPA는 EU 가입 전 지원기구(Instrument for Pre-Accession)를 말한다.

〈표 5-13〉과 같다. 기금의 쓰임새를 대략 보았을 때, 예방적 가족 지원 서비스 및 아동을 위한 양질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예: 가족재결합 지원, 가정위탁, 활동지원, 사회주택 등)에 충분한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21). 일부 국가(불가리아, 헝가리, 그리스, 폴란드)는 EU 기금을 활용해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소규모 시설로 재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수년 동안 OD 캠페인이 진행된 국가들에서 시설보호아동 수가 감소했고, 2018년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가족 기반 돌봄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이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p.15).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정책적 표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인식과 행동이 가정보호로 변화하는 데 지속적이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정보호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표 5-13〉 EU 기금의 사용 현황 (2014~2020년)

국가	금액 (백만 유로)	기금	세부내용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2.5	IPA II	4개 시설이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며, 98명의 전문가가 훈련 세미나를 받음
불가리아	160	ESF, ERDF, EAFRD	건물 재건축 및 유지보수(예: 소규모 그룹홈), 아동과 가족을 위한 신규 서비스 개발(의료-사회 서비스, 커뮤니티 센터), 서비스 제공자 훈련 및 슈퍼비전, 위탁양육 개발 및 노동자 급여
크로아티아	50	ESF, ERDF	성인 및 장애아동의 탈시설 지원, 탈시설 과정 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 예방,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 탈시설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인프라 개선, 탈시설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복지센터의 인프라 개선

국가	금액 (백만 유로)	기금	세부내용
에스토니아	6	ESF	인터넷/전화 상담, 개별 심리상담, 멘토링, 다양한 형태의 집단상담, 입양 및 위탁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PRIDE(정보, 개발 및 교육을 위한 부모 자원) 등 양육 개혁에 대한 지원
그리스	15	ESF, ERDF	장애인(아동·성인) 시설 폐쇄 지원. 그러나 탈시설 전략이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은 탈시설 개혁 아닌 아동거주시설에 분배됨
헝가리	18.7	ESF, ERDF	Compass Home For Children Project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를 600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림. 이 프로젝트에 따른 첫 번째 인프라 개발은 심리적 문제가 있는 소년의 학교 교육을 위한 20명 규모의 아동 전용 주택으로, 3개의 독립된 주거(housing units)로 구성됨
라트비아	91	n/a	개별 아동의 탈시설 계획 준비, 아동양육시설 개편(reorganisation), 지역 탈시설 계획 개발, 소통, 홍보 및 탈시설 관리를 통한 탈시설 지원
리투아니아	76	ERDF, ESF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전환을 위한 신규 사회 서비스 개발, 시범 운영 및 시행, 인프라 개발
폴란드	n/a	ESF, ERDF	사회 통합과 빈곤 퇴치를 위한 자원 이용. 일부 기금은 최대 아동 14명을 위한 현대적이고 시설이 잘 갖춰진 소규모 그룹홈 건설 지원에 사용됨
루마니아	100	ESF, ERDF	장애아동시설 등 50개의 구형(old-type) 시설 폐쇄 및 예방 서비스 개발 지원

주: 원문의 표 중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국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료: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2020), 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families and end institutionalisation for children in Europe. pp.19-20.

2. 불가리아의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

불가리아는 가장 먼저 탈시설화를 추진한 EU 국가 중 하나이며, 2010년 2월에는 “불가리아 아동을 위한 탈시설화 비전(Vision for de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in the Republic of Bulgaria)”을 채택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활동 계획을 제시하는 등 아

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누적해왔다(UNICEF, 2014, pp.14-18). 그 역사가 긴 만큼, 진전 과정의 여러 시도와 평가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사례는 실제적인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요소들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불가리아의 아동보호체계 탈시설화

불가리아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지역사회 내 가족을 지원하여 아동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아동을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가족 또는 가정환경과 유사한 보호로 대체하며, 가족 및 확대가족 지원, 어린 아동을 위한 입양과 가정위탁 강화, 시설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지원 부문 전반에 걸친 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UNICEF, 2014, p.14).

이에 따른 불가리아의 탈시설화 국가전략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부모, 잠재적 입양 부모, 위탁 보호 또는 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의 이익보다 우선할 것, 가족은 아동 발달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탈시설화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시설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질 것, 아동의 사회적 포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모든 아동이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함해 지역사회 활동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고, 지역 보건, 교통 및 여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명시하며, 일련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Terziev & Arabska, 2016, p.288).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탈시설화 비전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2010-2015)을 채택하여, “아동이 가정 밖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별 아동과 그 가족의 개별화된 욕구에 맞추며, 더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라는 더 명료화된 목적을 설정하였다(UNICEF, 2014, p.14). 행동계획은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모두를 위한 가족(Family for All)”을 비롯한 ‘5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으며, 그 밖에 지역별 계획, 홍보, 법 개정 등의 과제가 언급되었다(UNICEF, 2014, pp.16-17).

아동거주시설 폐쇄, 소규모 주거 확충의 구체적인 목표와 더불어,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중앙-지방의 일관된 시스템 구축, 대중의 인식개선 등을 촘촘하게 구상한 불가리아의 사례는 가정보호의 맥락에서 탈시설 국가전략의 의미를 시사한다.

〈표 5-14〉 행동계획에 명시된 ‘5개 프로젝트’ 및 기타 주요 활동

활동	목표	예산 (100만 Euro)	계획된 결과: 2020년까지 시설보호아동 2,000명 이하로 감소; 2022년까지 공식 양육 아동 ¹⁾ 30% 감소	기간
프로젝트 1 Childhood for All	24개 장애인시설에서 아동 1,370명 탈시설	37.8	아동 50명 가족재결합, 아동 100명 전문 가정위탁 배치, 아동 1,220명 105개 신규 가정형보호센터 ²⁾ 및 25개의 보호주택 배치	2010-2014
프로젝트 2 Posoka Semeistvo	32개 영아원에서 영유아 2,050명 탈시설	27.5	장애영아 270명(지역당 10명) 및 가족과 재결합 못한 영유아 630명, 유기 방지를 위한 18개 신규 모자가구 ³⁾ , 지역당 30개 신규 주간보육시설(840개소), 위탁 이후 입양 630명, 장애영아 360명 전문가가정위탁 배치, 장애영아 160명 가정형보호센터 배치, 위기센터 4개 추가	2011-2017
프로젝트 3	74개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동 3,050명 탈시설	19	아동 1,700명 가족재결합, 아동 1,680명 방과후지원, 4-11세 아동 350명 입양 또는 위탁, 일부 장애아동 150명 입양 또는 위탁	2015-2020
프로젝트 4 Family for All	가정위탁 개발	22.6	다양한 전문(영유아, 장애아동 등) 가정위탁 신규 양육자 2,100명(지역당 75명),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사회복지사	2011-2013

활동	목표	예산 (100만 Euro)	계획된 결과: 2020년까지 시설보호아동 2,000명 이하로 감소; 2024년까지 공식 양육 아동 ¹⁾ 30% 감소	기간
			147명(지자체 아동보호국별 1명)	
프로젝트 5	사회복지사 경력 개발	5	아동보호부 및 사회지원국의 훈련된 종사 자 2,100명	2010- 2014

주: 1) 공식 양육(formal care)이란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법당국의 명령에 따라 가족 환경에서, 그리고 행정 또는 사법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시설을 포함한 시설 환경에서 제공되는 모든 돌봄”을 말한다(UNGA, 2010: para. 29(b)(ii); UNICEF, 2014, p.83). 참고로, UN 대안양육 지침은 비공식 양육(informal care)을 “가족 환경에서 제공되는 사적 돌봄으로, 행정 또는 사법당국 또는 정당하게 승인받은 기관의 배치 명령을 받지 않고, 아동, 아동의 부모 및 기타 개인에 의해 친척 또는 친구(비공식 친족돌봄) 또는 기타 개인의 역량 안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무기한으로 제공되는 돌봄”으로 정의한다(UNGA, 2010: para. 29(b)(i)).

2) 불가리아는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주거(small residential units)로 ‘가정형보호 센터(Family-Type Placement Centres, FTPCs)를 새롭게 도입하여 과거의 대형 거주시설을 탈피하는 대안으로 활용하였다(UNICEF, 2014, p.2). 청소년기 아동(older children) 혹은 홀리스 아동을 위한 보호주택(sheltered houses)/쉼터(shlter for children)도 최대 3개월의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분류된다(UNICEF, 2014, pp.18, 84).

3) 불가리아의 모자가구(Mother and Baby Unit)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UNICEF, 2014, p.84).

자료: UNICEF(2014). Deinstitutionalisation of Children in Bulgaria - Hos far and wherto? Independent review of progress and challenges. pp.16-17. 에서 5개의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만 제시하였음.

나. 슈만(Shuman) 지역의 “모든 아동을 위한 가족” 프로젝트

Joanna Rogers와 Elayn, Luba(2020)는 유니세프 불가리아가 불가리아의 아동 탈시설화 국가전략 및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협력하여 진행한 슈만(shuman) 지역의 “모든 아동을 위한 가족(Family for Every Child)” 프로젝트를 자세히 소개한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가족 지원의 핵심 서비스 네트워크 개발, 시설보호아동 수 감소, 궁극적으로 슈만 지역에서 아동치료·양육시설(Home for Medical and Social Care for Children, HMSCC) 폐쇄를 목표로 하였다.

Joanna Rogers와 Elayn, Luba(2020)의 연구에서 검토한 유니세프

불가리아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에 불가리아는 슈만 지역의 아동치료·양육시설을 폐쇄했다. 영아원(infant's home)에 입소했던 아동 150명 중 대부분은 위탁 보호 후 입양 등 가정환경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아동은 가족재결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모 교육, 상담, 가족계획 및 의료 서비스 이용 등 임신 초기부터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기반의 가족 상담 센터(Family counseling centres, FCCs)의 설립, 영아 가정위탁 서비스는 슈만 지역 아동보호체계의 기초적인 부분이 되어, 영아원에 있는 아동을 위탁할 곳을 찾고 신생아를 직접 양육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아동 치료·양육시설 폐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3세 미만 아동의 가정보호와 관련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배경이며, 위기 예방, 조기 개입, 가족 지원 및 가족 또는 가족과 유사한 환경의 대안 양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유니세프 불가리아는 가족 상담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강조했다. 초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 프로젝트에 따른 가족 상담 센터 서비스를 '유니세프 서비스'로 간주했고, 그 결과 지역의 주인의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가족 상담 센터가 국가 위임 서비스로 인정되자, 법정 아동 보호 부서로부터 공식적인 의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역 당국은 점차 가족 상담 센터의 관리와 추가 발전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법률에 근거한 체계 내에서 더 나은 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보고한다 (Joanna Rogers et al., 2020).

다. 시기별 점검 및 제언

Terziev와 Arabska(2016)는 아동 탈시설화를 위한 국가전략 및 행동

계획 추진된 경과를 바탕으로, 2014년은 현실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평가하였다. 특히 유럽 구조기금의 지원 등으로 시행된 “프로젝트 4. 모두를 위한 아동기(Childhood for all)”를 통해 아동을 시설에서 새로운 주거 서비스로 이동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관행들이 드러났던 점에 주목한다. 예컨대, 아동은 보호계획이 최신화되지 않거나 준비 없이 이동했고, 그 결과 때때로 소규모 그룹홈에서 시설로 다시 복귀하는 심각한 사례가 발생했다. 보호조치 변경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서비스의 수를 채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심각한 우려도 있었다. 별도의 기준(standard maintenance services) 없이, 배치된 아동 수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아동을 배치하려는 의존성과 욕구를 유발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서 “새로운” 서비스로의 정보 이전과 어떤 아동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신규 서비스로 변경된 아동의 생활 및 변경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고, 이들의 낮은 임금, 훈련과 슈퍼비전 부족으로 인한 동기부여 및 아동의 도전적인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한계도 있다.

Terziev와 Arabska(2016, p.291)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정책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에 대한 철학의 변화, 이로 인한 부문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모든 아동의 복지를 위한 광범위한 개념 채택과 더불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면서 대안양육 및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는 서비스 마련, 산전·산후 여성을 지원하고 아픈 아동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부모와 장기간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강 관리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 방식 개발, 모든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와 자원을 갖춘 교육 시스템 구축, 사

회적 지원체계와 명확하게 분리된 아동보호체계, 범죄의 피해자이든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든 법정에 출두하는 모든 아동을 아동으로 간주하는 아동사법체계, 나아가 아동 서비스 재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의 특정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집중하도록 서비스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하여, 아동의 가정보호를 도모하는 과정이 빈곤을 비롯한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가족의 위기 개입 및 가정외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등에 국한되지 않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유니세프가 설정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도 아동 및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든 아동의 가족 기반 돌봄을 보장하는 통합적 개입 실현, 피해자·가해자 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아우르며, 관계 분야의 종사자 확충과 이들의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를 주요한 목표로 제시한다(UNICEF, 2018, pp.16-18). 가정보호는 특정 부처의 전적인 책임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시설보호의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총체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교훈을 읽을 수 있다.

라. 불가리아의 가정형 보호 변화와 현황에 대한 논의

불가리아는 2012년 「아동보호법(Закон за защита на детето: Child Protection Act of 2012)」 개정으로 “위탁 양육(foster care)” 서비스가 구체화 된 것으로 파악된다. 불가리아는 201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우선 전문위탁가정(professional foster family)과 “위탁 양육 사회서비스 제공자(provider of the “foster care” social service)” 간의 고용관계에 변화 생겼다고 밝혔다. 전문위탁가정 협의(arrangement)는 근로계약

(employment contract) 형태가 아니며, 따라서 근무일 기준 8시간 근로의 제한이 없게 되었다. 공적 책무가 강화되어, 친인척이나 친구의 가족, 위탁가정 지원자, 승인된 위탁가정은 위탁 양육 사회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위탁 양육 사회서비스의 활동 유형에는 위탁가정 지원자의 모집, 평가·훈련, 상호적응, 양육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이 있다. 배우자 또는 위탁가정의 구성원이 친권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5, paras. 135-136).

각료회의 의정서 제51.19호로 채택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국가 전략 "불가리아 공화국 아동 탈시설화 비전"에 따른 실행 계획 이행에 관한 세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²⁹⁾를 함께 살펴보면(Министерския съвет, n.d), 2012년 「아동보호법」 개정에 따라, 위탁가정의 신청을 위한 조건과 절차, 위탁가정의 선정 및 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도 확인된다. 지역 당국이 관리하는 위탁부모 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탁가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조례 제31조 제3항). 아동가족수 당법도 개정되어, 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이나 친구, 또는 위탁가정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허가받은 위탁 양육 사회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었다. 불가리아 탈시설 및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유니세프 보고서(UNICEF, 2014; 2019)와 탈시설화 비전과 실행 계획의 3차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고 그만큼 시설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된 결과도 통계로 나타난다.

다만, 장애아동의 가정형 보호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확인된다. “장애 아동 지원서비스가 부족하고, 기존 서비스가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고르

29) 모니터링 보고서는 영문자료가 없어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가리아어 문서를 영어로 변환하여 살펴보았고, 이에 해당 문서의 페이지와 원문을 표기하기에 제한이 있었다.

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는 2010년과 2011년의 1, 2차 모니터링 보고서와 동일하게 지적되었으며, 2014년 기준 여전히 시설(infant home)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상당수는 (90명 중 88명) 장애아동이었다(UNICEF, 2014, p.3). 실행계획 제3차 모니터링 보고서는 장애아동을 가정형 거주시설(가정형보호기관)로 배치하는 것은 대형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대체하게 되는 실질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동이 가정형 거주시설에 있는 경우, 부모들이 일종의 반영구 서비스로 이용하면서 느슨한 연락만 유지할 뿐 부모로의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UNICEF, 2019, p.72). 탈시설 비전 이후로 위탁가정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2,300개의 전문가정위탁에 90명의 장애아동만 배치되는 이유”가 연구질문으로 제시된 2019년의 박사학위 논문도 실태를 방증하는 문장이다(С т о я н Г е о р г и е в М и х а й л о в. 2019, p.9).

유니세프 보고서에서는 위탁부모 선정에 따른 계약이 합의(Contractual arrangement)의 형태가 되면서 위탁부모가 착취된다는 목소리도 나타난다(UNICEF, 2014, p.46). 해당 보고서에서는 위탁부모의 노동권과 병가, 휴일, 대체 보호나 기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내법상 금지되지 않음에도 위탁부모는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기대가 예시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2020년에는 불가리아인의 63%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탁부모가 되지 않을 것이며, 불가리아인의 1/6은 국가가 급여와 아동 양육비를 제공할 때에만 위키아동을 입양하겠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Н а ц и о н а л н а а с о ц и а ц и я з а п р и е м н а г р и ж а, 2021; Radulova, 2021, p.934에서 재인용). 위탁가정의 실직이나 외부와의 대면교류가 제한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있겠지만, Radulova(2021, p.938)는 위탁가정이 아동

을 양육하면서 겪는 주된 어려움은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부족한 팀워크와 ‘가정위탁’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사회의 이해 부족에 있다고 언급했다.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생애에 대한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다른 관계자들과 동등한 주체로서 양육자의 권한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입양이나 가족재결합 조치가 결정될 때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Radulova(2021, pp. 936-937)는 청년들이 가정위탁에 관심이 없는 주된 이유로 사회장의 부족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시적인 취업불능, 실업 및 모성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쓰거나(장기적인 고용이 아니어서) 은행의 신용을 받을 수 없으며, 임대물품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원가정을 상실한 모든 아동이 머물 수 있는 가정위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족재결합에 목적을 둔 대안양육의 일시성에 대한 이해, 가정형 보호(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는 환경, 양육자의 일관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장애아동 혹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탈(시설)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3. 리투아니아의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

리투아니아도 각령(order) 및 전략 수립 등으로 아동 탈시설을 추진한 국가이다. 리투아니아는 아동의 가정보호를 도모하는 국가전략 프레임워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 외에, 소규모 시설 등으로 나아간 현실 등도 참고 가능한 사례로 보이기에 검토 국가로 선정하였다.

가. 리투아니아의 아동보호체계 탈시설화

리투아니아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은 2012년 사회보장노동부가 전략적 지침으로 탈시설화를 승인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Pivorienė, 2020, p.122). 구체적으로, 2012년에 「탈시설화를 위한 전략 지침(Strategic Guidelin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2012, 각령 제A1-517)」(2012)이 승인된 뒤, 2014년에는 「장애인과 원가정 상실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 for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Based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Children Deprived of Parental Care, 2014, 각령 제A1-83)」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보호를 전환하는 과정은 (1) 전환에 필요한 여건 조성(2014~2017년), (2) 지역사회 내 인프라 개발(2017~2020년)의 두 단계로 계획되었으나(Pivorienė, 2020, p.122), 예상보다 진척이 느려 2023년까지 연장된 상황이다(Pivorienė, 2020, p.129).

나. 리투아니아의 시설보호 전환의 주요 내용

리투아니아는 2014년 「장애인과 원가정 상실 아동을 위해 시설보호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7개년 계획(seven-year Action Plan for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care to family- and community-based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deprived of parental care)」을 채택하면서, 아동과 장애인의 시설보호 예방에 초점을 둔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시작하였다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n.d.c.).

이 계획은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유엔 대안양육 지침과 유럽장애행동전략(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에 기초한 것으로, 아동과 관련해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하며,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표 5-15〉 리투아니아의 원가정 상실 아동을 위한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전환 계획

	내용
용어	3.4.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원가정 상실 아동, 장애아동 및 장애인 성인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용하는 거주형 돌봄 시설이나 영아원에 배치하는 것 3.6. 가정보호(Child care in family): 법률 및 기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부 또는 한 사람이 원가정 상실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 3.10. 지역사회 아동보호주택(Community Children's Care Home): 가정환경에 가까운 모델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건물(주택 또는 아파트)에 설치되며, 원가정 상실 아동, 장애아동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최대 8명)을 보호함. 이 시설은 그 특성상 지역사회 서비스로 분류됨
목표 1	12.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원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원가정 상실 아동은 후견인이나 위탁가정 또는 사회적 부모에 살면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목표 2	14. 장애인 성인과 그 가족/후견인/지원사(carers)가 그들의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목표 3	16. 제도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사회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고, 그 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사회에 만연하고, 정신적 장애에 대한 두려움과 지식 부족으로 인해 사회가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다. 빈곤 및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보호아동을 낙인찍는다. 아동보호시설/후견/보호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보호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그 결과 사람들은 아동의 후견인이 되거나 양육 또는 입양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자료: Order No. A1-83 of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r of the Republic of Lithuania(2014.02.14.).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based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children deprived of parental care 2014-2020 year action plan에서 아동과 관련한 용어 및 주요 목표를 정리함.

한편, 위 계획에서 ‘가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아동 개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서비스 개발, 전국적인 후견인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통한 후견인의 숙련도와 선발 과정 개선, 아동의 사회복지사와 후견

인 및 위탁부모에 대한 훈련·상담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사회복지사가 후견인 선발과정에 참여, 지속적인 훈련, 개별 상담, 자조모임 등 가족지원 체계 개발, 효율적인 후견인 보상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Order No. A1-83, para. 13.2.4.). 아동의 가정보호에 있어 법정 보호자의 역할에 주목한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가정위탁에 있어 위탁부모의 권한과 의무를 다루었던 사례와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보인다. 현실의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는 일상의 권한을 인정하되, 가족재결합을 지향하는 일시보호의 원칙을 최우선하는 균형을 찾는 것은 가정보호의 또 다른 과제라 할 것이다.

다. 리투아니아의 시설보호 전환 첫 단계 평가

2020년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전환 1단계를 평가한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간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Pivorienė, 2020, pp.126-129; BGI Consulting, 2020).

- 지역사회 아동보호주택(bendruomeniniuose vaikų globos namuose, BVGN³⁰⁾)은 시설보다 보호아동의 개인적·사회적 발달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여 지속가능성도 확보하였다고 평가
- 그러나 아동보호주택도 여전히 시설의 잔재가 남아 있음: 규정과 식사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 일과 및 ‘귀가 시간’ 기록, 교대근무, 아동보호시설의 일반적인 규칙, 아동간 서열 문화, 고아원 ‘라벨’, ‘당국’의 방문 등

30) 영어로는 “Community Children’s Care Home”으로 번역된다.

- 아동은 아동보호주택에서 더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으며, 마음을 열 수 있음. 더 편안한 생활 환경, 더 적은 아동 수, 더 많은 프라이버시 및 더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에서 아동간 아동과 종사자 간의 관계가 대부분 개선되고 더 가까워짐.
- 그러나 일부 아동보호주택에서는 친밀감과 신뢰가 부족하고 폭력 및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함. 모든 아동보호주택이 연령 및 성별 적합성을 고려하지는 않음. 형제자매가 항상 함께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원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되고, 가까운 친척의 관여가 부족함.
- 아동보호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상당수는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있고, 비행을 하고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율도 높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지원은 부족함.
- 학교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며, 아동보호주택에 있는 상당수 아동이 수업 준비와 학습에 도움을 필요로 함. 그러나 종사자가 돌보는 아동 수가 많고 다른 업무가 많으며 과목별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지원이 제한적으로 제공됨.
- 여전히 보호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함. 시골 지역은 다양한 과외활동 기회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제한된 문제, 대도시는 결속력과 통합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음.

전반적으로 리투아니아의 가족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 7개년 계획은 소규모 아동시설을 확충한 측면이 주되게 나타난다. 그 결과, 여전히 '시설문화'의 잔재가 지목되면서, 시설(아동보호주택) 관리자를 포함한 외부인이 거주자 동의 없이 방문하는 등 시설을 점검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일상에 대한 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면서 교육으로 갈음하도록 하며,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라는 권고가 도출되었다. 인원수를 줄인 소규모 거주환경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한계를 알 수 있다.

라. 리투아니아의 가정형 보호 진전과 현황

리투아니아는 2018년 1월 1일, 개정 사회서비스법(Law on Social Services of the Republic of Lithuania)과 민법(Civil Code) 시행을 통해 위탁 양육의 새로운 형태를 도입하였고, 이는 양육권 있는 위탁 보호를 말한다(CRC, 2020b, part 1, table 16). 우선 위탁양육센터(Foster Care Centre)는 모든 입양아동, 위탁 배치된 아동(custody), 전문위탁부모에게 양육되는 아동은 물론 전문위탁부모, 위탁부모(custodians), 입양부모, 전문위탁부모나 위탁부모(custodians)가 되려는 사람이 필요한 상담, 심리사회적, 법적 및 기타 지원을 받아 가정환경에서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과 양육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CRC, 2020a, para. 146). 위탁양육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원가정 상실 아동은 위탁양육센터를 통해 전문위탁부모(professional foster parents)에 배치된다(CRC, 2020b, part I, table 16). 이러한 위탁보호 센터는 리투아니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CRC, 2020a, para. 63), 모든 유형의 대안양육과 돌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 기반 양육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탁양육 모델이 추가로 개발되었고, GIMK 프로그램(Training and counselling programme for foster parents (custodians), professional foster parents, adoptive parents, the staff members of the Community based

Children Care Homes)에 대한 중요한 보완도 이루어졌다고 보고한다(CRC, 2020a, para. 64). 실제로 리투아니아의 통계에 따르면, 영유아는 대부분 위탁 양육환경에 보호되고 있으며, 시설보호아동(Care in a child care institution)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결과를 알 수 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위탁가정, 양육권 있는 위탁가정, 위탁양육센터, 아동양육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종전 지자체에서 CP 서비스(State Child Rights Protection and Adoption Service under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ur)로 이전된 변화도 있다(CRC, 2020a, para. 149). 최근에는 위탁부모가 해임된 사례가 50% 증가했고, 이는 위탁부모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불관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시되었다(CRC, 2020a, para. 144). 더 정확한 의미를 도출하려면, 아동양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상담의 빈도와 질적 수준, CP 서비스의 독립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최소한 아동양육센터가 모든 지자체에 배치되고, 외부 감독 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된 여건은 긍정적으로 참고할 수 있겠다.

4. 시사점

아동이 원가정을 상실한 상황에서 가정 기반의,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단계적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 공공·민간 이해관계자의 인식 개선과 교육·훈련, 그리고 광범위한 자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10년이 넘도록 중장기 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 국가의 사례는 기존의 ‘시설보호’ 관행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게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님

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은 시작되어야 하고, 앞선 경험과 선례를 좇아간다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EU 국가들의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탈시설 전략 수립은 가정보호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 실제로 EU의 다수 국가는 탈시설 전략이 마련되면서, 가정위탁 및 입양 관련 법 개정, 아동보호체계 개편 등이 단행되었다. 집권 정당이 달라지면서 중장기 계획의 동력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만큼 같은 방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거주시설 폐지’에 대한 선언과 정책적 시행이 중요하다. 실제로 다수 사례에서 ‘거주시설 폐지’가 단행되었고, 가족재결합과 가정보호를 현실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시설 보호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시설의 기능전환 명목으로 소규모 시설이 계속 유지된다는 문제도 익히 지적되었다. ‘시설 형태의 보호’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하는 것은 가정보호로 전환하는 기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 영유아 돌봄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의 돌봄의 질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예산의 부족과 전문가정위탁이 부족한 현실은 곧 시설보호가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장애아동은 시설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연히 높았고, 소규모 시설에서 학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때의 시설보호는 ‘기숙학교’ 형태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된다. 집중적인 자원의 투입이 담보되지 않는 한, 가정보호 활성화 전략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다. 장애아동을 별도의 법이나 계획으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 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담아내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아동 탈시설의 주된 목표와 점점에 장애아동 탈시설 추이가 핵심적으로 검토된 EU 사례처럼, 장애아동의 가정형 보호

는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인식하는 관점과 태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많은 경우 완전한 가정보호가 달성되지는 않았다. 상당수 국가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 소규모 거주시설은 각종 통계에서 '가정보호'로 분류되기도 하고, '시설보호'로 분류되기도 하는 등 다른 관점하에 정책이 집행되고 있었다. 시설보호를 탈피하고 가정보호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사회관계적·지리적 으로 분리되지 않은 소규모 거주시설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아동의 사회통합과 자립 증진에 기여한다는 다수의 증거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동의 인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환경은 '시설화'의 위험이 계속하여 상존한다는 것이다. 가정보호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시보호의 목적으로 가정보호 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보호를 개념화하는 핵심요건이 법·제도에 반영된다면, 그에 기초해 가정위탁의 유형과 서비스를 세분화하는 규정을 포함해 다양한 가정보호의 모델도 본격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시설 중심으로 고착화된 기존의 제도를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전환 하는 과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특별히 '더 이상 시설에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불필요하게 분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적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다양하고 질 좋은 대안양육 환경의 개발, 성인이 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즉, 탈시설 전략이나 가정위탁 지원 강화 등의 법·제도 보완, 예산 할당만으로 '가정보호 활성화'는 달성될 수 없다. 아동보호에 직간접적인 책무를 분담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협력한 아동보호의 원칙과 정책적 목표, 대안양육 방안의 홍보, 가정보호의 적극적 참여를 뒷받침하는 높은 시민의식과 그에 필요한 아동권리교육, 가정외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아동권리가 주류화되는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아동의 분리 예방 및 가정보호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EU 회원국 모두가 아동의 가정보호라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합의와 자원의 배분 사례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이나 단발적인 시도를 넘어선 지속성과 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시사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제1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쟁점

제2절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제 6 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제1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쟁점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가정보호 제도와 이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실무자의 가정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위탁 보호 경험 및 대안적 사례 추진 경험을 탐색하고, 국외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와 실무자 및 이용경험이 있는 청년 그리고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상에서 도출된 쟁점들을 정리한 표는 <표 6-1>과 같다.

도출된 쟁점들은 크게 제도의 추진 방향성과 관련된 사항, 위탁부모의 발굴의 어려움, 책정의 어려움, 사례관리의 강화 및 질제고의 필요성, 아동 보호의 질 제고와 관련된 문제, 가정보호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가정보호에 대한 대안적 방안 고려의 문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쟁점에서 확인된 장기적 계획 수립,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문제는 제도의 효과성과 아동의 이익의 최우선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각 쟁점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도출된 쟁점들은 다수 상호 연관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가정위탁의 질과 관련된 문제는 인프라의 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제도의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가정보호의 대안적 방안의 고려에 대한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가정위탁의 질이나 인프라의 문제는 아동보호의 질 제고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출된 쟁점 간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각 쟁점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6-1〉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활성화의 쟁점

구분	쟁점의 내용	비고
추진방향	탈시설 전략으로 가정보호 활성화의 우선적 수행 필요	해외사례, 선행연구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 천명 필요	해외사례
	가정보호의 개념 정의 필요	해외사례
	가정보호는 아동 이익 최우선 실현에 부합	실무자
	가정의 아동 보호 시 아동보호의 영구성 확보 필요	해외사례, 현황분석
위탁부모 발굴의 어려움	가정보호의 우선순위 부여와 실현의 문제	해외사례
	인식과 홍보의 문제	해외사례, 실무자
책정의 어려움	위탁부모의 풀 확대 - 자격기준 문제(소득, 지인/이웃)	해외사례
	아동 욕구 중심의 책정이 어려운 문제	현황분석
사례관리의 강화 및 질제고 필요	가정위탁 책정 및 배치 시 행정절차 소요시간 최소화 필요성 문제(시설보호로의 배치 유인 축소)	실무자
	특수욕구에 대응하는 위탁으로서의 문제(전문가정위탁의 내실화)	해외사례, 실무자, 현황분석
	장기적으로 위탁아동의 변화를 추적하고 위기를 모니터링할 필요성	자립준비청년, 선행연구
	사례관리의 서비스의 질 제고 필요성	해외사례, 현황분석, 실무자
	위탁부모-아동의 정서적 유대 지원 필요성	자립준비청년
	양육보조금의 국비지원 필요성	현황분석, 실무자
	위탁아동(가정) 대상 정보제공 및 이용률 제고 필요: 위탁아동이 서비스와 정보에서 고립되는 문제	자립준비청년, 실무자, 해외사례
	질 제고를 위한 위탁부모 및 가정 대상 서비스 확대 필요성(위탁부모 휴식지원, 숏스테이 등)	해외사례
	추가 서비스 욕구(중고등연령 사고육비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에 대응할 필요성	실무자
	아동보호의 질 제고 문제	위탁아동의 보호조치 간 이동 및 표류의 위험을 낮출 필요성
준비되지 않은 원가정 복귀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원 가정/친부모 대상 개입의 강화 필요성		자립준비청년, 실무자
친족돌봄아동의 발생, 현황, 욕구 등 점검 및 지원		실무자, 현황분석
가정보호 인프라 확충 필요	인력의 부족	실무자
	인력의 전문성(위탁부모, 기관, 지자체) 강화 필요	해외사례, 실무자
	예산의 확대 및 투입 필요성	해외사례, 실무자
대안적 방안의 고려	제공기관의 접근성 문제	자립준비청년, 실무자
	탈시설 전략으로서 시설의 소규모화 불가피 ↔ 시설보호의 연장선으로서 경계	해외사례, 실무자
	시설소규모화를 위하여 예산, 인력, 인프라 및 인력-아동 간 정서적 유대 증진 필요	대안적 사례
	직업적 위탁부모의 도입 필요성 ↔ 공동생활가정과 차별성 점검 필요	실무자

제2절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본 연구 결과, 파악된 쟁점들에 대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제도의 방향성 설정

가. 가정보호의 개념정의 필요

국내 선행연구에서 가정보호의 개념은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형 보호에 대한 이해 또한 시설과 현장, 학계 등에서 일관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정보호의 활성화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가정보호의 개념 정의와 합의일 것이다. 가정보호의 개념이 명확하게 범주화되지 않은 채 가정보호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달성되기 어렵다.

향후 가정보호 활성화가 시설의 1인 1실 마련, 개별화된 식사, 소규모 분원의 설치 등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이와 같은 소규모 거주시설의 확산이 오히려 가정보호의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19항에 대한 일반견해에서도 그룹홈 등 ‘가정과 같은 보호’가 ‘가정기반보호’를 대체하게 된다면,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가정보호의 개념과 관련된 핵심요건을 법과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정보호의 개념은 시설보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UN이나 UNICEF 등에서와 같이 ‘부모보호(parental care)’, ‘가정기반보호(family-based care)’로 구분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보호유형별로는 원가정 보호와 입양은 부모보호에, 친족돌봄, 가정위탁, 후견보호는 가정기반 보호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가정형 보호라는 명칭이 ‘가정 같은 보호(family-like care)’와 ‘가정기반 보호(family-based care)’ 간의 경계를 흐리고 있으므로, 가정형 보호라는 용어 대신 ‘가정기반 보호’ 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가정같은 보호(family-like care)’에는 소규모 그룹홈 혹은 유급가정위탁이, 그룹홈이나 시설은 ‘시설보호(residential care)’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유형과 현행 제도의 보호방식을 교차시킨 결과는 <표 6-2>와 같다.

<표 6-2> 본 연구의 가정보호 개념정의

구분	가정보호		시설보호	
	부모보호	가정기반보호	가정같은 보호	시설보호
원가정보호	○			
입양	○			
가정위탁		○		
친족돌봄		○		
소규모 그룹홈			○	
그룹홈				○
대규모 시설				○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도의 실무 매뉴얼 상에 가정보호를 구성하는 ‘부모보호’ 및 ‘가정기반보호’와 시설보호를 구성하는 ‘가정같은 보호’, ‘시설보호’를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의 조문 중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는 ‘가정기반 보호(family-based care)’가 최우선

적으로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보호 활성화로 인한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아동보호의 영구성에 기반한 가정보호 활성화 필요

위탁아동의 현황 검토 결과 국내 위탁아동은 평균 보호기간이 8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혈연위탁아동의 평균 보호기간은 9년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정위탁이 일시보호를 목표로 두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보호조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체계에 진입한 이후, 영구적인 보호조치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행 아동보호 관련 법과 제도에 부재하다.

앞서 해외사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분리조치가 되는 위탁아동들은 학대피해아동이며, 이들이 15개월 이상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면 원가정의 보호자가 분리된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정 복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박탈을 포함한 입양이나 후견과 같은 영구 계획(permanency plan)의 시한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원가정 복귀나 입양을 통한 영구적보호가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의 재승인 절차를 통하여 친인척 후견제도를 연계하고, 장기 위탁보호의 영구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과 제도 상에 위탁가정에 대한 재승인 시점과 절차를 통해 후견인제도와 연계하여 아동보호의 영구성에 대한 계획과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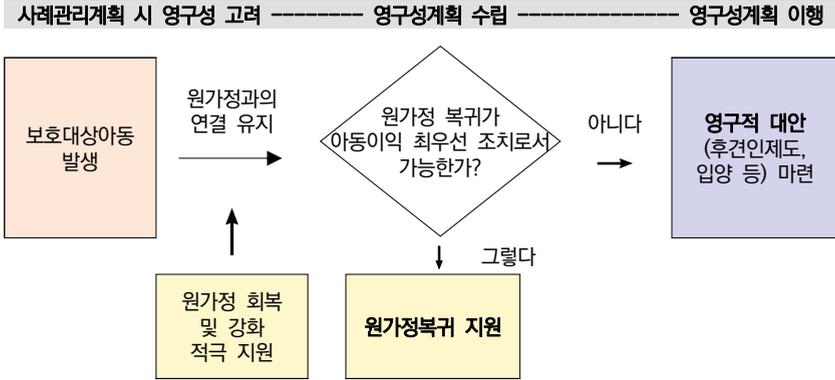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국내 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 실무매뉴얼 상에 보호대상

아동의 영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시한이나 세부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구 계획은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시점인 사례관리서비스의 첫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가족관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원가정 복귀의 시점과 방법을 계획해야 하며, 원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양과 후견인제도를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위탁을 후견인제도와 연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안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서 가정위탁은 당초 제도의 목표대로 일시적인 보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대상아동의 영구적 보호조치 마련에 있어서 원가정 복귀와 입양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제도들이다.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부모와 원가정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이를 견인하기에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입양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위탁에서 입양으로 이어지기 위한 유인은 부족하였다. 입양대상아동의 입양 전 위탁 또한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위탁체계와는 단절이 되고 있다. 위탁아동의 사례관리에서 관계회복과 관계구축을 토대로 한 원가정복귀중심 사례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원가정 복귀지원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침과 친부모가 자녀를 원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한 준비를 지원하는 개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에서 입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고, 입양 전 위탁가정을 가정위탁의 정책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상아동 보호절차 중 이와 같은 영구성 계획의 절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도식화한 개념도는 다음 <표 6-3>와 같다.

〈표 6-3〉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영구성 계획의 절차에 대한 개념도



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위탁아동의 보호에 있어 위탁부모의 아동을 포기하지 않는 양육의지와 주양육자의 장기적이고도 일관된 존재감은 아동의 애착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등, 시설보호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가정보호의 장점이다. 가정보호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고 할 때, 가정위탁은 시설보호 대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자 인터뷰 결과,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의 배치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시설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및 방임과 같이 야간에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위탁가정으로 연계되기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시설로 배치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보호 절차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가 지연되거나 저해된다면,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정보호의 책정 및 배치 행정절차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시설보호로 배치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일시보호로서 친족돌봄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친족돌봄과 가정위탁제도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확장된 범위의 친인척(지인, 이웃 등) 가정위탁을 일시보호조치로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탁부모의 아동 특성에 대한 선호도가 위탁가정-아동 간 매칭에 영향을 주어 중고등 학령기 아동,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정서 및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등은 가정위탁으로 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 파악되었다. 가정위탁이 위탁부모의 사명감과 봉사정신 등에만 의지한다면, 책정된 이후에 위탁의 중단될 수도 있다. 현행 위탁가정-아동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동 이익의 최우선 조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아동 욕구 중심의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고등 연령대의 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정서 및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의 역량강화와 전문적인 교육, 치료적 서비스의 제공 강화 및 치료적 보호의 확대 등을 통하여 위탁부모와 아동의 어려움을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위탁가정 및 아동에 대한 정서심리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비 20만원 이내(1회)와 심리치료비로 12개월 간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으며,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도 양육 상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그러나 위탁아동 및 위탁보호자 외 위탁형제자매 등 다른 위탁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는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상담비 지원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욕구가 있는 위탁부모와 위탁가정의 구성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 가정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지향점 설정 필요

국내 아동인구수의 감소와 함께 보호대상아동이 감소하는 가운데도 시설보호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아동 십만명 당 시설보호율은 전 세계 평균 대비 1.8배 수준으로 높았다. 반면 가정위탁 보호비율은 시설보호비율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므로, 가정위탁의 활성화는 시급적으로도 그리고 양적으로도, 시급하고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보호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과 장단기적으로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국외사례 검토 결과 대규모시설의 폐지에 대한 선언과 시행이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사례에서 다수의 국가가 대규모 거주시설의 폐지를 단행되었고, 이로부터 가족재결합과 가정보호를 현실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시설보호와 가정보호 사이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가정적 보호’의 의미를 ‘가정양육우선 원칙’으로 변경하고 정부 차원에서 취학 전 아동의 신규 시설보호조치를 전면 중지하고 가정위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하면서 가정보호의 활성화가 견인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거주시설의 폐지’ 혹은 ‘신규 시설보호조치의 전면 중지’와 같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방향의 설정과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한국은 2020년 가정위탁 활성화 6대 중점과제를 설정하면서 가정위탁 보호율을 25%(‘20)로부터 37%(‘24)까지 높일 것을 제시하였으나, 일본과 같은 구체적이거나 장기적 탈시설 목표의 설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설 신규입소 중지 대상 아동의 범위를 제안하고, 가정보호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목표치를 구체화(‘3세 미만은 5년 이내, 취학전 아

동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 각 가정위탁을 75% 이상, 학령기 이후 아동은 10년 이내에 가정위탁을 50% 이상' 제고)한 일본의 사례와 국내의 보호대상아동 규모와 위탁가정의 배치여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되, 특히 어린 연령의 아동에 대한 신규 시설보호조치의 전면 중지 시점을 명시하고 탈시설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시설 소규모화, 시설의 기능전환 등 탈시설 전략의 일부 정책에는 시설보호의 요소들이 잔존해 있다. 보호대상아동 규모 대비 가정보호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대안적 조치가 시설보호의 부정적 영향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탈시설 전략을 마련할 때, 그 무엇보다도 가정보호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시설보호아동의 발달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존 시설보호아동의 시설보호의 기간을 단축하고 어린 연령의 아동일수록 우선적으로 탈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2.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위탁부모의 풀 확대

가. 친인척위탁부모의 범위의 확대 필요

국내 일반위탁부모의 선정기준으로서 설정된 범위는 혈연관계가 있는 조부모 및 친인척 이거나 혹은 기존에 유대관계나 친밀감이 없는 비혈연 관계인 사람이다. 본 연구결과 비혈연 위탁의 가정환경이나 양육의 질 등이 혈연위탁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비혈연 위탁가정에 배치 이후에 위탁부모-아동 관계에서 애착형성이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경험에서도 보호대상아

동의 지인에 의하여 일반가정위탁을 신청하게 되는 경로를 따르는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실무자 인터뷰 결과에서도 보호대상아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인 유대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가정보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은 보호대상아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대관계와 가족문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친인척 위탁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도록 제도적 원칙으로 설정하였으며, 친인척에는 혈연관계 뿐 아니라 아동을 잘 알고 유대관계가 있는 가까운 이웃, 가족의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 등 또한 포함하여 위탁가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일반가정위탁 희망자의 신청 자격 중 하나인 현행 민법 상 보호대상아동과 혈연관계를 확대하여, 가까운 이웃,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 중 보호대상아동과 유대관계와 친밀감이 돈독한 위탁희망자를 선별하여 이들을 친인척위탁가정으로서 일반위탁가정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시, 아동과 기존에 유대관계가 있는 혈연관계, 이웃, 지인, 지역사회 구성원 등을 충분히 파악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하여, 아동이 친밀감이 형성된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 신규 위탁가정 발굴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마련

가정위탁은 아동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인식되었으나,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예비 위탁가정의 인력풀이 부족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일부만을 보호할 수 있었다. 또한 위탁부모들과의 인터뷰 결과, 가정위탁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위탁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고 신규 위탁가정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와 캠페인이 필요하다.

대중적인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일반인에 대한 위탁가정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실무자, 이용자와 후원자 등 기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둔 집단과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 등 아동양육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담은 적극적인 홍보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가정위탁의 질 제고 방안

가. 사례관리의 강화와 질 제고 필요

위탁가정은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변화를 겪고 있었다. 혈연위탁가정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위탁부모의 사망, 위탁부모간의 갈등, 수급비나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위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비혈연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적응의 어려움, 위탁기간 중에 발생한 가정 내 경제적 위기, 위탁부모의 질병 및 사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지만, 일부 다른 위탁가정에서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탁을 해제하고 위탁처를 변경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는 등 관계가 종결되기도 하였다. 가정위탁의 초기에 없었던 어려움이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여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는 데에 사례관리서비스 등 정부의 지원이 위기극복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서비스와 양육점검을 내실화하여 위탁가정과 아동의 위기상

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집중적으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가정보호가 악화되는 요인 - 위탁부모의 고령화, 정년초과, 질병의 진행경과, 사춘기 시기 아동과의 갈등 고조 등 - 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성장과정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인력 증원을 통해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미국사례의 경우 종사자 1인당 20사례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며, 위탁배치 초기 2년 간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 및 입양 등 영구적인 조치로 전환될 수 있는 조치들을 집중적인 사례관리 시기 중에 병행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례관리의 빈도와 방식 등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양질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나.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내실화

본 연구에서 수행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현황 검토 결과,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문제행동 등을 보이는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탁가정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적인 치료시설이나 치료서비스 또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청소년 쉼터 등에서 보호하게 되거나 혹은 장애인보호체제로 전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애아동, 영유아 돌봄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의 돌봄의 질 및 전문성 저하, 전문위탁가정의 부족 및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부족은 곧 시설보호가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내에서도 가정보호의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가정보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정위탁의 자격기준을 차등적으로 설계하고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마련하여 치료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가정 중 직접 치료적 보호가 어려운 경우라면, 치료적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방문서비스와 서비스 횟수 등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다. 정부지원 및 서비스 강화 필요

1) 양육보조금의 국비지원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중 현금급여인 양육보조금은 지방비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어,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정부의 권고기준에 맞추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다수 존재하며, 지자체별 지급액의 편차 또한 큰 편으로 나타났다. 양육보조금은 위탁부모의 신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보호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양육보조금의 액수를 정부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는 조치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수준의 위탁아동 보호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이 주(state) 별로 상이한 것은 주(state) 별로 생활비나 급여기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이나 아동수당 등에 있어서도 지자체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다. 위

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또한 국비로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보호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위탁아동 및 가정 대상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

본 연구결과 위탁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세부적 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한 경우는 적었으며, 이용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자립준비청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스스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보의 부족은 위탁아동들의 자립을 저해하고, 위탁부모와의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연위탁가정의 경우 위탁부모와 아동의 정보접근성이 가장 낮은 편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지원체계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Kinship Navigator Program을 통해 친인척 위탁 및 후견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가정위탁 제도의 대상자가 아닌 조손가구나 친인척 후견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아동보호체계에 포괄되지 않는 조손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또다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정보제공과 자원연계,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자원관리서비스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위탁부모와 후견인, 친족돌봄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추가 서비스 욕구 대응 방안 마련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체력적인 부담과 육체적 어려움, 위탁아동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위탁아동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 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과 비교해 볼 때, 양육보조금, 교육비 및 아동용품구입비 등의 지원은 낮은 편인 것으로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기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위탁부모가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례중심의, 실천 중심의 양육기술교육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국외사례의 위탁부모 대상 휴식지원(respite care) 서비스 등과 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소진을 예방하는 지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의 아동은 드림스타트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조기개입관련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사례관리라는 사업방식의 중복성 보다는 조기개입이라는 드림스타트의 사업 목표가 가정위탁지원의 사례관리와는 다르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의 아동 또한 드림스타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위탁부모의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탁아동의 보호종결과 보호종료 연령(성인)도달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는 위탁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위탁부모-아동 간 정서적 유대는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탁부모-아동의 여행지원, 가족상담, 의사소통기술 교육, 자조모임 등을 확충하여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애착의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자립준비청년 위탁경험에 대한 인터뷰 결과, 과거 위탁보호 시 지급되었던 양육보조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인지하게 되면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간 갈등이 위기로 촉발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우선적으로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하되, 위탁부모를 통하여 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와 서비스에 대하여 위탁부모와 아동이 함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아동보호의 질 제고 방안

가. 위탁아동의 보호조치 간 이동 및 표류의 위험 감소 방안

자립준비청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위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 위탁보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돌발적인 보호 필요상황에서,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하거나 혹은 아동이 직접 비공식적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을 곳을 찾게 된 이후에 아동보호체계에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위탁에서 보호되다가 위탁가정의 심각한 어려움(주양육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하여 위탁이 중단되거나 다른 위탁가정, 시설, 친족보호 등의 보호조치로 전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탁아동의 보호처를 이동하고 표류하는 것은 아동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분리의 상황과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하며, 적응과 발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탁아동의 전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하여 위탁아동의 특히 시설보호로의 전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원가정·친부모 대상 개입의 강화

자립준비청년의 사례분석 결과, 성급한 원가정 복귀는 위탁아동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원가정 복귀 경험은 주로 친부모가 위탁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원가정의 환경을 준비하지 못하여, 원가정으로 복귀 시도가 좌절되거나 혹은 복귀 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여 다시 다른 가정위탁이나 시설로 표류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위탁아동을 위한 원가정 복귀는 면접교섭으로 제한하지 않고, 원가정 복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친부모의 양육의지를 제고하고, 원가정의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친부모의 취업활동 지원, 친부모의 양육기술 교육, 가족구성원의 의사소통기술 교육 등 친부모와 원가정의 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분기별 1회’ 수준의 사례관리로서는 견인되기 어려우므로, 보다 집중적인 친부모/원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원연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 친족돌봄아동 대상 모니터링 제도 도입

현행 가정위탁제도는 혈연관계에 있는 성인이 위탁부모로서 적합한 소득이 없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책정되기 어려웠으며, 가정위탁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보호대상아동들은 더욱 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상황을 방임하고 있다.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한 소득이 없는 위탁부모를 가정위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탁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보호대상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대안 없이 보호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친족보호 아동에 대한 발생, 현황, 욕구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가정위탁 제공 기반의 내실화

가.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강화

현재 가정위탁 담당 인력의 규모는 양질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수행하기에 부족하였으며,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들은 기존에 축적해왔던 사례관리 담당자와 아동보호전담요원과의 친밀감을 잃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역량이 위탁의 책정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무엇보다 이들 인력의 전문성과 근속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규모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상으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양성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예산의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가정 대상 재정적 지원은 가정위탁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한 재정 및 서비스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인력의 보강과 전문성 강화, 슈퍼비전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예산, 시설보호 위험이 높은 장애, 영유아 돌봄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의 돌봄의 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

다. 제공기관의 접근성 강화

현행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18개소로 시도별로 1개소씩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지역의 면적이 비교적 넓어 상담원의 사례관리서비스에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 가정위탁의 사례관리의 중요성과 사례관리서비스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은 위탁가정에 직접 방문이 필수적인 사례관리의 수행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시도 기반의 가정위탁 사례관리체계를 장기적으로 시군구 기반의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라.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가정보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많은 기관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 가정위탁제도의 수행에 읍면동 및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사회 사회복지자원 제공 기관 등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계와 협력은 위탁가정의 발굴 및 책정부터 위탁아동의 보호와 위탁가정의 유지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위탁과정의 전반에 걸쳐 필수적이다.

탈시설 전략과 가정보호의 활성화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이 크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가정보호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뿐 아니라 탈시설에 참여하는 아동보호체계 내의 각종 시설 및 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본은 시설보호의 개혁을 전제로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시설의 소규모화와 더불어 시설에 가정위탁지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가정위탁과 시설 간의 연계를 도모하고, 시설보호아동 중 가정보호로 전환이 가능한 아동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특색이 있다.

한국은 시설에서 탈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이봉주 외, 2022), 아직까지 탈시설에 대한 방향성의 모호성이나 시설 내에서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과거 일본과 같이 시설과 가정보호가 대립하는 구조는 가정보호의 활성화를 전인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시설에서도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시설의 개혁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보호아동의 가정보호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대안적 방안의 고려

본 연구의 목표는 가정보호의 활성화이나, 연구결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위탁가정의 규모 확충이 단기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정보호의 대안적 보호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직업적 위탁부모 제도화에서의 고려사항

일본은 유급가정위탁과 유사한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 자신의 가정에서 소수의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패밀리홈’ 제도를 도입하여,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 영유아 등에 대해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안적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일부 실무자들은 직업적 위탁부모를 제도화하고자 의견을 주었으나, 이를 제도화하기에 앞서서 직업적 위탁부모와 패밀리홈 형태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차이를 구별지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적 위탁부모를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근로자로서의 위탁부모의 특성을 보수체계와 근로시간 및 근로체계 등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직업적 위탁가정을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둘 경우, 직업적 위탁가정과 전문가정위탁 간의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나. 시설의 가정적 요소의 강화 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EU와 일본의 사례에서 많은 경우 완전한 가정보호가 달성되지는 않았으며, 상당수 국가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동의 인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는 시설화의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시설의 소규모화는 단기적인 대안으로만 활용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화된 시설의 보호에 적절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가정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대안사례와 일본사례 검토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육시설 소규모화의 유인책으로서 예산지원, 인력 및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라 24시간 인력의 교대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의 수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인력-아동 간 친밀감과 애착의 형성 및 강화가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 강향숙·강현아·정익중·오세현. (2021). 여러 번 가정위탁 양육을 진행한 일반 위탁부모의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70(2), 35-66.
- 강현아. (2005). 위탁아동의 학업성취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위탁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59-72.
- 강현아. (2006). 가정위탁양육 중도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59-87.
- 강현아·정익중·강현주·이화조·오세현. (2020). **2020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고아입양특례법. (1966). 법률 제1745호.
- 관계부처합동.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 관계부처합동. (2023).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성장기회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 권지성·정익중·민성혜·신혜원. (2012). 위탁아동 입양부모의 양육경험에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86-1315.
- 권지성·정익중. (2013). 가정위탁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지역과 세계**, 37(2), 35-77.
- 그리스 가정위탁 및 입양 제도의 촉진을 위한 조치 및 기타 규정(*Μέτρα για την προώθηση των Θεσμών της Αναδοχής και Υιοθεσίας και άλλες διατάξεις*), Law 4538 (2018).
- 김경희·반정호. (2005). 대체가정 서비스 유형에 따른 아동의 발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설보호 아동과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입양 전 신체적 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9), 107-139.
- 김귀분·김미영. (2001). 시설아동의 삶 (현상학적 접근). **동서간호학연구지**, 6(1), 23-36.
- 김선숙·박호준. (2020). 가정밖 보호체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비교: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10(1), 1-18.

- 김연정·정선영. (2022).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준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1), 93-120.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숙·이근무. (2005). 위탁아동의 양육계약해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41-74.
- 김진숙·이혁구. (2007). 일반위탁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9(1), 87-116.
- 김진숙·정선옥·최경옥. (2021).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지원을 위한 가이드: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김현용. (1994).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의 개선방향. **한국아동복지학**, (2), 61-87.
- 김형태·노혜련·김진석·이수천·조소연·이유진. (2017).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서울기독교대학교.
- 김희연·김형모·김정숙. (2007). 아동복지시설 기능다각화 모델 구축 연구. **정책연구**, 1-1.
- 김희연·박은미·이주현. (2006). 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1-1.
- 노혜련·장정순. (1998). 육아시설 아동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 65-92.
- 류정희. (2021).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성 강화 방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1(6), 7-21.
- 류정희·이상정·이주연·권지성·김진석·이현주. (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리투아니아, 가정위탁센터와 아동을 돌보는 전문위탁부모 활동의 질 관리 감독에 관한 사회보장노동부장관의 각령(jsakymas “Dėl Globos centro veiklos ir vaiko budinčio globotojo vykdomos priežiūros organizavimo ir kokybės priežiūros tvarkos aprašo patvirtinimo”),

- No. A1-28 (2018).
- 리투아니아, 가정위탁센터 운영 승인에 관한 리투아니아 공화국 정부 결의 (nutarimas “Dėl vaiko globos organizavimo nuostatų patvirtinimo”), 제405호 (2002).
- 리투아니아, 민법(CIVILINIO KODEKSO), Nr. XIII-241 (2017).
- 리투아니아, 사회서비스법(SOCIALINIŲ PASLAUGŲ ĮSTATYMO), Nr. XIII-246 (2017).
- 민법. (2022). 법률 제19098호,
- 박세경·강혜규·류정희·이주연·노충래·이상균…황옥경. (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수경. (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18(1), 205-234.
- 박현선. (2004. 3.).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65, 18-20.
- 배태순. (2000).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 그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국내 해체 가정의 아동보호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9), 227-246.
- 벨기에, 위탁 양육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tot wijziging van de wetgeving tot invoering van een statuut voor pleegzorgers), 2017030192 (2017).
- 보건복지부. (2019).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20).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65716 에서 2023. 7. 10. 인출.
- 보건복지부. (2022).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6885 에서 2023. 7. 10. 인출.
- 보건복지부. (2023).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
- 보건복지부. (n.d.a). **2022년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예산지원 단가**[비공개].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n.d.b),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3. 6. 15. 인출.

보건복지부. (각년도a).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_003_K000008&lang_mode=ko&vw_cd=MT_OTITLE&list_id=213_001_002_001_007&conn_path=I4에서 2023. 6.17. 인출.

보건복지부. (각년도b).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3. 6.17. 인출.

보건복지부. (각년도c).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3.4.13.). **공정한 성장 기회,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윤석열 정부가 실현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5822 에서 2023. 7. 10. 인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5.21.).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398>에서 2023. 7. 10. 인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0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매뉴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가정위탁법(zákona o péstounské péči v BiH), Službenim novinama Federacije BiH 19/17 (2017).

불가리아, 아동보호법(Законa за закрила на детето), ДВ, бр. 68 (2012).

불가리아, 위탁가정의 신청을 위한 조건과 절차, 위탁가정의 선정 및 승인에 관한 조례(Наредбата за условията и реда за кандидатстване, по

- дбор и утвърждаване на приемни семейства и настаняване на деца в тях), № 314 (2012).
- 성미영. (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 신건철·신민선. (2011).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정복지연구**, (21), 45-66.
- 아동복지법. (1961). 법률 제912호.
- 아동복지법. (1981). 법률 제3438호.
- 아동복지법. (2000). 법률 제6151호.
- 아동복지법. (2011). 법률 제11002호.
- 아동복지법. (2020). 법률 제17784호.
- 아동복지법 시행령. (2021). 대통령령 제31843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2022). 보건복지부령 제893호.
-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양심영. (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31-148.
- 오승환. (2003). 해체가족 아동의 보호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보호유형에 따른 아동의 적응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7(1), 99-120.
- 오정수·정익중. (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 우석진·노충래·강현아·정익중·전종설·이혜경...노하나. (2015). **대안양육제도 양육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 유영주. (1993). **가족이란?. 한국가족학연구회 (편저)**, 가족학.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이강이·성미영. (2003). 유아의 정서 지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시설보호 유아의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24(1), 33-45.
- 이미정. (2011).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이화젠더법학**, 2(2), 79-107.

- 이배근. (199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아동복지학**, (1), 46-57.
- 이봉주·박정민·김선숙·이재운·백아름·김선영. (2022).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상정·강현아·노충래·우석진·전종설·정익중. (2017). 가정의 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3), 97-119.
- 이상정·류정희·김지연·김무현·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김지민·류정희·허은영·박세경·임성은…김무현.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2020). 가정외보호아동의 자립준비 경험과 실태 1. **동광**, 115, 28-61.
- 이선화·서해정·정익중. (2021). 장애아동 가정위탁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2(1), 55-79.
- 이은정. (2002). 가정위탁 (Foster care) 제도에 대한 소고. **가족법연구**, 16(1), 209-234.
- 이은주·박명숙. (2016). 양육시설 아동들의 인권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보호연구**, 1(2), 23-53.
- 이은주. (2023). **Out-of-Home Care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Family Foster Care**[비발간]. 세미나 자료(2023.9.6.).
- 이재혁. (2022.10.20.). **조손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자체마다 최대 3.3배 차이…“국고지원 사업 전환 필요”**. 메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68690440670>에서 2023. 10. 10. 인출.
- 이주연·조경옥·최지훈. (2019). **전라북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지원방안**, 전북연구원.
- 이현정. (2019. 11. 27.). **표 안 되는 위탁아동… 정부도 지자체도 “네가 챙겨라”**.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28012005>에서 2023. 10. 10. 인출.
- 이현주. (2007). 저소득 조손가족 아동의 성인아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로분석: 수용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

- 학, (23), 7-32.
- 임성은·황주희·이민경·강지원·조영림·김형모…손병덕. (2020).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미영. (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 시민의 천안. (2023). **천안시,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아동 지원 강화**. <https://blog.naver.com/fastcheonan/222633491663>에서 2023. 10. 11. 인출.
- 장영인. (2020). 보호대상아동 보호의 국가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령과 지침의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143-172.
- 장영인. (2021). 아동의 '원가정보호'와 '가정내양육'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방안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2(1), 3-36.
- 장혜림·김시아·김선숙·김희주·정정호. (2021). 코로나 19 시기,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8(9), 171-199.
- 장혜진·최은희·윤혜미. (2014). 가정 외 보호유형에 따른 보호제공자와의 유대관계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9, 25-50.
- 정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68.
- 정선욱·김은영. (2020).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가족중심실천 중요도 및 실행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9(2), 1-29.
- 정익중·오정수. (2021).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정익중·우석진·강현아·전종설·이정애. (2012).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linder-Oaxaca 분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3(4), 107-127.
- 정혜선·김진숙. (2004). 위탁아동의 가정위탁에 관한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2), 115-134.
- 조선·전상현·허종원·이성기·김현준·강다길…김정근. (2018). **Global Market**

Report 18-035: EU 기금을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 KOTRA.

- 조소연·노혜련. (2018). 공동생활가정 아동-친가족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 사례 연구: 탈북아동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4, 65-106.
- 조정순·백혜순·최주순·오열근·임명호·김현우. (2009). 시설아동과 정상아동의 감정·행동 특성 비교. **스트레스研究**, 17(4), 341-348.
- 조정우. (2022). 일본의 아동양육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시사점. 아동의 시설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 **아동 탈시설 국회 토론회 자료집**, 37-56.
- 주해란·길건혁·이예진·안태구. (2022).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성장 환경에 따른 정서적 경험과 지원정책 비교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9(10), 141-176.
-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23).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2.12.31. 기준)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에서 2023. 10. 5. 인출.
- 제철용·장영인. (2019). 성인기 전이과정에 있는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방안—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27(1), 35-77.
- 치도리 만주 공식홈페이지. (2023). <https://www.chidoriya.co.jp/museum/csr.html> 에서 2023. 9. 8. 인출
- 통계청. (각년도).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visual/nsportalStats/detailContents.do?statJipyoId=3640&listId=A&vStatJipyoId=5072> 에서 2023. 6. 17. 인출.
- 하승민·임동호. (2006).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4(1), 145-171.
- 허남순·길호섭·박영순. (1999).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7-91.
- 허남순. (2000).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가정위탁제도. **한국아동복지학**, (10), 57-81.
- 허남순. (2004). 친인척 가정위탁과 일반가정 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243-270.

홍수현·김경희. (2005).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기능과 대인불안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9(2), 277-296.

후타바카쿠엔 시설 홈페이지. (2023). https://www.futaba-yuka.or.jp/int_gak/에서 2023. 8. 1.인출.

Bakermans-Kranenburg, M. J., Steele, H., Zeanah, C. H., Muhamedrahimov, R. J., Vorria, P., Dobrova-Krol, N. A., ... & Gunnar, M. R. (2011). III. Attachment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institutional care: characteristics and catch up.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6(4), 62-91.

Barr, S. E. (2019). *Understanding Caregiver Perceptions of Attachment with Drug Exposed Foster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Barth, R. P. (2002). *Institutions vs. foster homes*. The empirical base for a century of action.

Berrick, J. D., & Boyd, R. (2016). Financial well-being in family-based foster care: Exploring variation in income supports for kin and non-kin caregivers in Californi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9, 166-173.

BGI Consulting. (2020). *Institucinės globos Pertvarkos I-ojo etapo vertinimas* [Assessment of the 1st stage of the Institutional Care Transformation]. http://www.pertvarka.lt/wp-content/uploads/_mediavault/2020/03/Pertvarka_santrauka_20200328.pdf에서 2023년 8월 24일 인출.

Bowlby, J. (1951).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 (Vol. 2)*.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Browne K (2009) *The risk of harm to young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London: Save the Children UK.*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9). *Kinship guardianship as a permanency op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20a). *How the child welfare system works.* U.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Children's Bureau.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20b).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23). *Placement of children with relativ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ystemwide/laws-policies/statutes/placement/>.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About Kinship Care.*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outofhome/kinship/about/>에서 2023.6.15.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About Kinship Care. Group and Residential Care. (n.d).*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outofhome/group-residential-care/>에서 2023. 6. 11. 인출.
- Desmond, C., & Gow, J. (2001). *The Cost-effectiveness of six models of care for orphans and vulnerable children in South Africa.*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015).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 Convention Third, fourth and fif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3 Bulgaria(CRC/C/BGR/3-5)*.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BGR%2F3-5&Lang=en에서 2023. 8. 24. 인출.
- CRC. (2020a).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Lithuania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due in 2019 (CRC/C/LTU/5-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LTU%2F5-6&Lang=en에서 2023. 8. 24. 인출.
- CRC. (2020b). *Lithuania_State party report Annexes(CRC/C/LTU/5-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RC%2FADR%2FLTU%2F42136&Lang=en에서 2023. 8. 24.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 *Year Ending 31 March 2019. (2020.01.15.)*. Available online: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ren-looked-after-in-england-including-adoption-2018-to-2019>.
- De Kamerleden. (n.d.) *Wetsontwerp tot wijziging van de wetgeving tot invoering van een statuut voor pleegzorgers*. <https://www.dekamer.be/kvvcr/showpage.cfm?section=flwb&language=nl&cfm=flwbn.cfm?lang=N&dossierID=0697&legislat=54>에서 2023. 8. 24. 인출.
- Eurochild. (2020.09.08.) *Child protection reform in Greece gets new impetus thanks to Eurochild and Martin James Foundation support*. <https://eurochild.org/news/child-protection-reform-in-greece-gets-new-impetus-thanks-to-eurochild-and-martin-james-foundation-support/>에서 2023. 8. 24. 인출.
- Fox, N. A., Almas, A. N., Degnan, K. A., Nelson, C. A., & Zeanah, C. H. (2011). The effects of severe psychosocial deprivation and foster

- care intervention on cognitive development at 8 years of age: findings from the Bucharest Early Intervention Proje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9), 919-928.
- Furey, E., and Canavan, J. (2019). *A review on the availability and comparability of statistics on child protection and welfare, including children in care, collated by Tusla: Child and Family Agency with statistics published in other jurisdictions*. UNESCO Child and Family Research Centre.
- Greenberg, A. L., & Partskhaladze, N. (2014). How the Republic of Georgia has nearly eliminated the use of institutional care for childre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5(2), 185-191.
- Hanlon, R., Simon, J., Day, A., Vanderwill, L., Kim, J., & Dallimore, E. (2021). Systematic review of factors affecting foster parent retention. *Families in Society*, 102(3), 285-299.
- Harlow, E. (2022). Children's rights, *deinstitutionalisation and the development of foster care services across the world*. *Practice*, 34(3), 171-183.
- Hudson, P., & Levasseur, K. (2002). Supporting foster parents: Caring voices. *Child Welfare*, 853-877.
- Joanna Rogers, Elayn M. Sammon, Luba Devetakova. (2020). *Has deinstitutionalization improved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Bulgaria?*. UNICEF Bulgaria.
- Johnson, D. E., & Gunnar, M. R. (2011). IV. Growth failure in institutionalized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6(4), 92-126.
- Juffer, F.,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2017). Structural neglect in orphanages: Physical growth, cognition, and daily life of young institutionalized children in

- India. *Child maltreatment in residential care: History, research, and current practice*, 301-321.
- Kang, H., Chung, I. J., Chun, J., Nho, C. R., & Woo, S. (2014). The outcomes of foster care in South Korea ten years after its foundation: A comparison with institutional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9, 135-143.
- Lee, R., Chun, J., Chung, I. J., Kang, H., Nho, C. R., & Woo, S. (2017, June). *Kinship foster care and school adjustment: Evide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in South Korea*. In *Child & Youth Care Forum* (Vol. 46, pp. 335-356). Springer US.
- McCall, R. B., Groark, C. J., Hawk, B. N., Julian, M. M., Merz, E. C., Rosas, J. M., ... & Nikiforova, N. V. (2019). Early caregiver-child interaction and children's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St. Petersburg-USA Orphanage intervention research project.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2, 208-224.
- Ministerio de Derechos Sociales y Agenda 2030. (2020). *Boletín de Datos Estadísticos de Medidas de Protección a la Infancia. Boletín número 22, Datos 2019*.
- Mulheir, G. (2015). *Ending institutionalisation: an analysis of the financing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process in Bulgaria*.
- Myers, J. E. (2008). A short history of child protection in America. *Family law quarterly*, 42(3), 449-463.
- Nelson, C. A., Fox, N. A., & Zeanah, C. H. (2014). *Romania's abandoned children: Deprivation, brain development, and the struggle for recovery*. Harvard University Press.
- Olson, D. H., & DeFrain, J.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ountain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n.d). UN Treaty Body Database.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Lang=en에서 2023. 8. 24. 인출.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16a). Ensuring EU funds and policy make a positive difference for children. Looking Back. Looking Forward.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16b). 2016 country factsheet from belgium here. <http://www.openingdoors.eu/wp-content/uploads/2016/12/country-fiche-Belgium-2016.pdf>에서 2023. 8. 24. 인출.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20). 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families and end institutionalisation for children in Europe.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n.d.a). Bosnia and Herzegovina becomes a step closer towards transformation of its child protection system. <https://www.openingdoors.eu/bosnia-and-herzegovina-becomes-a-step-closer-towards-transformation-of-its-child-protection-system/>에서 2023. 8. 24. 인출.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n.d.b). After 20 years of waiting, foster care law in Belgium gets finally adopted: but who are the stakeholders? <https://www.openingdoors.eu/after-20-years-of-waiting-foster-care-law-in-belgium-gets-finally-adopted-but-who-are-the-stakeholders/>에서 2023. 8. 24. 인출.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n.d.c). Where the campaign operates - Lithuania. <https://www.openingdoors.eu/where-the-campaign-operates/lithuania/>에서 2023. 8. 24. 인출.

Order No. A1-517 of the Minister of Social Security and Labour of the

- Republic of Lithuania. (2012.11.16.). “Strategic guidelin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social care homes of disabled children deprived of parental care and adult disabled persons”.
- Order No. A1-83 of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r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2014.02.14.).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based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children deprived of parental care 2014-2020 year action plan”.
- Patton, M.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Pivoriene, J. (2020).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child care system in Lithu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Youth and Family Studies*, 11(4), 121-131. <https://doi.org/10.18357/ijcyfs114202019941>
- Radulova, T. (2021). FOSTER CARE IN BULGARIA-CHALLENGES FOR FOSTER PARENTS. *KNOWLEDGE-International Journal*, 46(5), 933-938.
- Rutter, M., Sonuga-Barke, E., & Castle, J. (2010). I. Investigating the impact of early institutional deprivation on development: Background and research strategy of the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ERA)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5(1), 1.
- Sacur, B. M. and Diogo, E. (2021). The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European Child Guarantee-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Alternative Care. *Children*, 8(12), 1181.
- Stake, Robert E.(1995). 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2000). *질적 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 Šiška, J. and Beadle-Brown, J. (2020). *Report o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based services in 27 EU member states. European Expert Group on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

- Sonuga-Barke, E. J., Kennedy, M., Kumsta, R., Knights, N., Golm, D., Rutter, M., ... Kreppner, J. (2017). Child-to-adult neurodevelopmental and mental health trajectories after early life deprivation: The young adult follow-up of the longitudinal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study. *Lancet*, 389, 1539-1548.
- Spitz, R. (1945). 1945. Hospitalism. *Psychoanal. Study of the Child*, 1, 53-74.
- Terziev, V. and Arabska, E. (2016).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at risk in Bulgaria.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33, 287-291.
- UNICEF. (2014). *Deinstitutionalisation of Children in Bulgaria - How far and wherto? Independent review of progress and challenges.*
- UNICEF. (2018). *Bulgaria Child Protection Thematic Report 2018.*
- UNICEF. (2019). *Analysis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Bulgaria: Final Report.*
- UNICEF (n.d.a). *15 years of De-Institutionalization Reforms in Europe and Central Asia. Key results achieved for children and remaining challenges*, https://www.unicef.org/eca/sites/unicef.org/eca/files/2018-11/Key%20Results%20in%20Deinstitutionalization%20in%20Europe%20and%20Central%20Asia_0.pdf 에서 2023. 1. 20. 인출.
- UNICEF (2020). *White Paper - the role of small-scale residential care for children i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 and in the continuum of care in the Europe and Central Asia Region.* <https://www.unicef.org/eca/>

- media/13261/file 에서 2023.6.15. 인출
- UNICEF(2023). UNICEF Global Database, <https://data.unicef.org/topic/child-protection/children-alternative-care/>에서 2023. 8. 10. 인출.
- UNICEF. (n.d.b).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https://www.unicef.org/eca/definitions>에서 2023.1.30. 인출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10).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64/142.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 UN CRPD. (2017). General comment No.5 on Article 19 -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general-comment-no5-article-19-right-live>에서 2023. 1. 30. 인출
- UNGA, (2010).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A/RES/64/142 (2010).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2022). The AFCARS Report.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afcars-report-29.pdf> 에서 2023. 6. 11. 인출.
- van IJzendoorn, M. H., Bakermans-Kranenburg, M. J., Coughlan, B., & Reijman, S. (2020). Annual research review: Umbrella synthesis of meta-analyses on child maltreatment antecedents and intervention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3), 272-290.
- Villodas, M. T., Litrownik, A. J., Newton, R. R., & Davis, I. P. (2016). Long-term placement trajectories of children who were

- maltreated and entered the child welfare system at an early age: Consequences for physical and behavioral well-being.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41(1), 46-54.
- Vorria, P., Wolkind, S., Rutter, M., Pickles, A., &Hobsbaum, A. (1998).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children in long-term residential group care and in two-parent families: II. Possible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2), 237-245.
- Yin, Rogert K. (2002). 신경식 외 역. **사례연구 방법**. 서울: 한경사.
- Zeanah, C. H., Egger, H. L., Smyke, A. T., Nelson, C. A., Fox, N. A., Marshall, P. J., &Guthrie, D. (2009). Institutional rearing and psychiatric disorders in Romania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6(7), 777-785.
- Zeijlmans, K., López, M., Grietens, H., &Knorth, E. J. (2017). Matching children with foster carers: A literature review.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3, 257-265.
- Zory. (2021). Foster care development in Lithuania. Conscious parent academy. <https://consciousparentacademy.com/wp-content/uploads/sites/4/2021/08/Original-Foster-care-development-in-Lithuania-Asta-min.pdf>.

일본문헌

- 伊藤嘉余子.(2007). 児童養護施設におけるレジデンシャルワーク:施設職員の職場環境とストレス. 明石書店.
- 伊藤嘉余子.(2017). 里親支援にかかる効果的な実践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大阪府立大学.
- 堀場純矢.(2019). 政策転換期における社会的養護の役割と課題. 朋, 10, 20-22

- 全国社会福祉協議会·全国養護施設協議会.(1995). 養護施設の近未来像報告書(平成7年2月23日). 全養協制度検討特別委員会.
- 全国養護施設協議会.(2003). 子どもを未来とするために: 児童養護施設近未来像 II. 全養協制度検討特別委員会.
- 厚生労働省.(1998). 児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에서 2023.08.21. 인출.
- 厚生労働省.(2003a). 社会的養護のあり方に関する専門委員会 報告書(平成15年10月). 社会保障審議会児童部会.
- 厚生労働省.(2003b). 児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에서 2023.08.21. 인출.
- 厚生労働省.(2003c). 福祉行政報告例.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에서 2023.08.21. 인출.
- 厚生労働省.(2007). 社会的養護体制の現状と今後の見直しの方向性について (平成19年12月). 第1回社会保障審議会少子化対策特別部会資料
- 厚生労働省.(2008a). 児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에서 2023.08.21. 인출.
- 厚生労働省.(2008b). 福祉行政報告例.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에서 2023.08.21. 인출.
- 厚生労働省.(2011). 社会的養護の課題と将来像(平成23年7月). 児童養護施設等の社会的養護の課題に関する検討委員会·社会保障審議会児童部会社会的養護専門委員会とりまとめ.
- 厚生労働省.(2012a). 児童養護施設等の小規模化及び家庭的養護の推進のために (概要)(平成24年11月). 社会保障審議会児童部会社会的養護専門委員会とりまとめ.
- 厚生労働省.(2012b). 児童養護施設等の小規模化及び家庭的養護の推進のために (平成24年9月). 施設の小規模化及び家庭的養護推進ワーキンググループ.

- 厚生労働省.(2013a). 児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에서 2023.08.21.인출.
- 厚生労働省.(2013b). 福祉行政報告例.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에서 2023.08.21.인출.
- 厚生労働省.(2013c). 施設の小規模化等事例集(平成25年4月). 施設の小規模化及び家庭的養護推進ワーキンググループ.
- 厚生労働省.(2014a). ファミリーホームの設置を進めるために. ファミリーホームの設置運営の促進ワーキンググループ.
- 厚生労働省.(2014b). ファミリーホーム事例集. ファミリーホームの設置運営の促進ワーキンググループ.
- 厚生労働省.(2016). 里親支援専門相談員等の調査結果. 新たな社会的養育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 資料8.
- 厚生労働省.(2017). 新しい社会的養育ビジョン(平成29年8月2日). 新たな社会的養育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
- 厚生労働省.(2018a). 児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에서 2023. 8.21.인출.
- 厚生労働省.(2018b). 福祉行政報告例.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https://www.e-stat.go.jp/>에서 2023. 8.21.인출.
- 厚生労働省.(2018c). 確かな絆をすべての子どもに:里親委託と特別養子縁組に関する調査. 政策統括官付政策評価官室アフターサービス推進室.
- 厚生労働省.(2021).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3年5月). 子ども家庭局家庭福祉課.
- 厚生労働省 홈페이지(2023). https://www.mhlw.go.jp/stf/newpage_12886.html 에서 2023. 8. 9. 인출.
- 日本財団.(2020). ファミリーホーム制度に関する提言書.
- 木村容子.(2012). 里親制度の啓発と普及についての一考察. Human Welfare, 4(1), 27-40.
- 全国里親委託等推進委員会.(2011). 里親支援専門相談員及び里親支援機関の活

- 動,里親サロン活動に関する調査報告. 全国里親会.
- 全国里親委託等推進委員会.(2013). 里親等委託率アップの取り組み報告書. 全国里親会.
- こども家庭庁.(2023a).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令和5年4月5日). こども家庭庁支援局家庭福祉課.
- こども家庭庁.(2023b). 児童福祉法による児童入所施設措置費等国庫負担金について」通知の施行について. こども家庭庁支援局長.
- 全国児童相談所長会.(2011). 児童相談所における里親委託及び遺棄児童に関する調査報告書. 全国児童相談所長会事務局.
- 三輪清子.(2011). 里親委託と施設委託の関係の長期的動態:1953年~2008年の時系列データの分析から. 社会福祉学, 52(2), 43-53.
- 三輪清子.(2012). 2000年以降の里親委託の増加をもたらしたものの:児童虐待の増加の直接的効果と間接的効果をめぐって. 社会福祉学, 53(2), 45-56.
- 野辺陽子, 三輪清子, 安藤藍, 山口敬子, 由井秀樹.(2020). 社会的養護の自治体間格差の実態と要因に関する調査報告書. 科研報告書.
- 貴田美鈴.(2007). 里親制度における政策主体の意図:1960年代から1980年代の社会福祉の政策展開に着目して. 人間文化研究, 8, 83-97.
- 貴田美鈴.(2008). 2002年の里親制度の改定に影響を及ぼした社会的要因:子どもの権利条約批准と児童虐待の社会問題化. 人間文化研究, 10, 77-89.
- 貴田美鈴.(2011). 児童福祉法成立期の里親委託の位置づけ. 岡崎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 44, 7-16.
- 貴田美鈴.(2019). 里親制度の史的展開と課題:社会的養護における位置づけと養育実態. 勁草書房.
- 岩永公成.(2006). 児童相談所の組織構成の成立過程:三部制の導入をめぐって,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573, 61-73.
- 二村玲衣.(2021). 専門里親制度の展開と当事者評価に関する一考察:養育の難しい子どもの家庭養護の発展に向けて. 社会教育研究年報, 35, 38-51.
- 塚谷文武.(2022). 現代福祉国家における社会的養護と財政システム. 大阪経大

論集, 73(3), 41-60.

早稲田大学総合研究機構.(2022). フォスターリング機関の評価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堀場純矢, (2022), 労働問題からみたファミリーホームの課題：児童養護施設との比較から, 社会的養護とファミリーホーム 12, 20-24

불가리아 및 리투아니아 문헌

Министерския съвет . (n.d.). Мониторингов доклад за изпълнение то на Плана за действие на Национална стратегия „Визия за де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ация на децата в Република България” з а периода юли 2012 г. - юни 2013 г. <https://www.strategy.bg/StrategicDocuments/View.aspx?lang=bg-BG&Id=601>에서 2023. 11. 21. 인출.

Агенция за социално подпомагане. (2021.03.18.). Експертите по приемна грижа реагират на проблема с незаеетостта на регистрирани приемни семейства. Available online: <https://asp.government.bg/bg/novini-i-akcenti-asp/ekspertite-po-priemna-grizha-reagirat-na-problema-s-nezaetostta-na-registrirani-priemni-semeystva/>.

Стоян Георгиев Михайлов. (2019). Де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ация или ре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ация на децата в риск в България - предпоставки, логика и метаморфози. Available online: <http://unilib-dspace.nasledstvo.bg/xmlui/handle/nls/35517>.

Национална асоциация за приемна грижа. (2021.02.15.). “Тренд: намаляват българите, които биха станали приемни родители”. Available online: <https://napg.eu/%d1%82%d1%80%d0%b5%d0%bd%d0%b4-%d0%bd%d0%b0%d0%bc%d0%b0%d0%bb%d1%8f%d>

0%b2%d0%b0%d1%82-%d0%b1%d1%8a%d0%bb%d0%b3%d0%b0%
d1%80%d0%b8%d1%82%d0%b5-%d0%ba%d0%be%d0%b8%d1%8
2%d0%be-%d0%b1%d0%b8%d1%85%d0%b0/#.